

주식회

11월 16일 (17일) 7시
45-25 TEL. 73-

大韓建築士協會誌 SEPTEMBER 1985 NO. 198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거환경

단열재 청색, 호파가 뛰어나 갑니다.
위생적인 단 로폴로 아늑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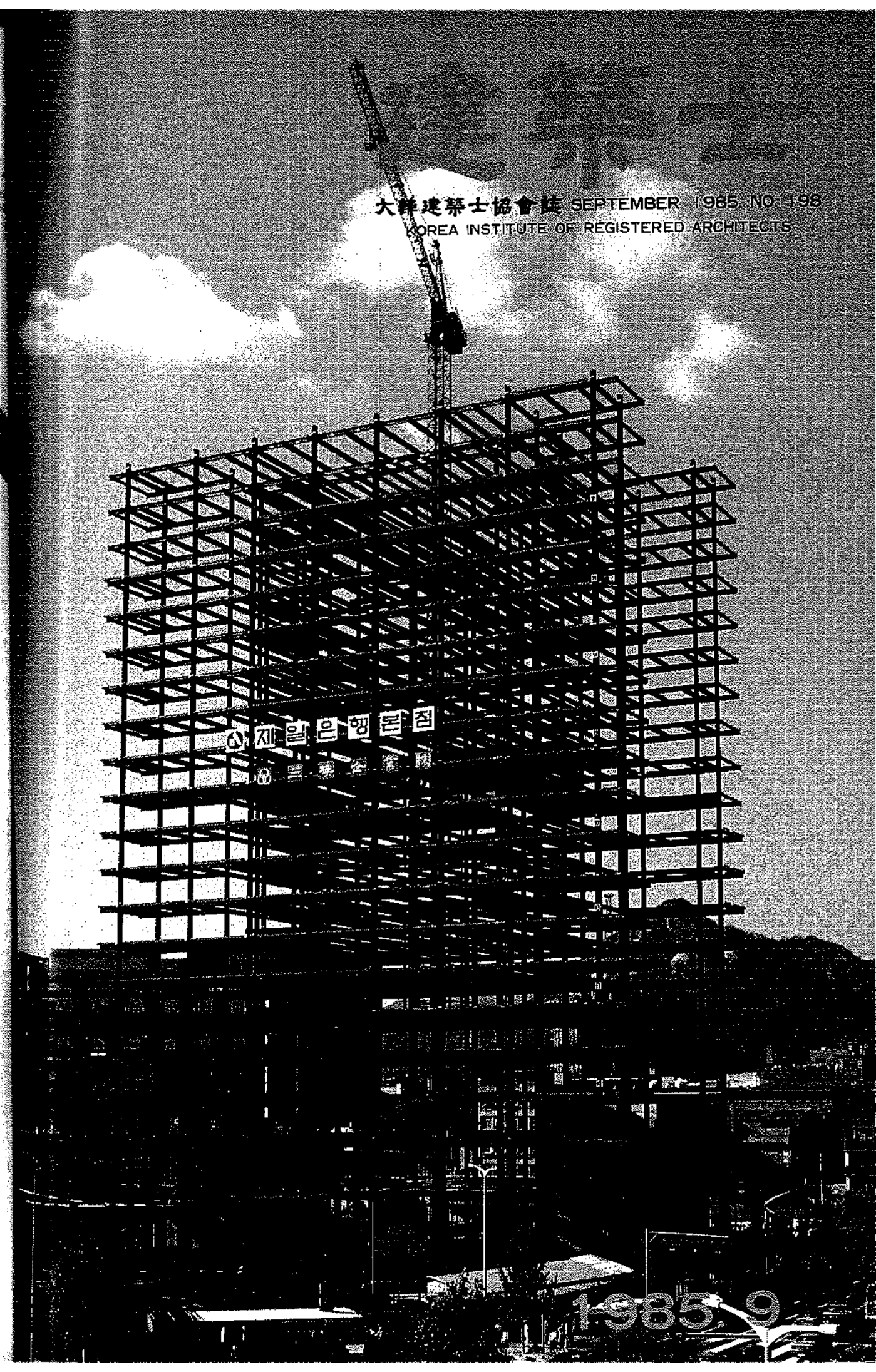
세요.

정부가 인정 되어 있습니다.

1. 단열보온 효과 우수
2. 방수 방비를 할 수 있음
3. 방화 성능이 우수함
4. 단열 성능이 우수함
5. 단열 성능이 우수함
6. 단열 성능이 우수함
7. 단열 성능이 우수함
8. 단열 성능이 우수함
9. 단열 성능이 우수함
10. 단열 성능이 우수함

폴

주요 제품 사양



1985.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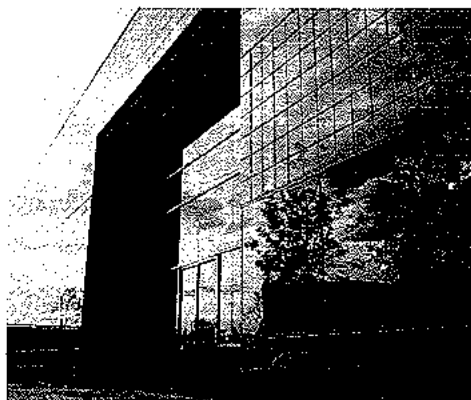


세계는 지금 대형타일의 시대!

삼영정보타일의 품질이름

삼영정보타일은 종전의 수입에만 의존해오던 대형 타일을 국내최초로 삼영요업에서 개발시판하여 우수한 대형타일의 새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 자기질 내한성 타일로서 혹한에도 동파현상이 없습니다.
- 방수 방습효과가 뛰어나 비위생적인 곰팡이나 잠균·벌레의 서식을 막아주므로 주거공간을 항상 쾌적하게 해줍니다.



(200mm×300mm 건물외벽시공의 예)

- 규격이 균일하여 시공이 정확하며 시공기간이 단축됩니다. 또한 고층 건물의 P·C 공법이 용이합니다.
- 천연 화강석, 대리석의 대체효과가 높은 고급건축자재이며, 세계적인 소비자의 기호에 따라 선택되어진 다양한 컬러와 디자인은 미를 추구하는 당신에게 큰만족을드릴 것입니다.
- 수입대형타일보다도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공급됩니다.

150×150mm, 144×194mm, 200×200mm
200×300mm, 300×300mm, 400×400mm
300×600mm, 기타 특수 규격은 주문에 의해 생산됩니다.



타일종합메이커

삼영요업주식회사

서울사무소 ☎ (02) 757-2295-6

부산사무소 ☎ (051) 44-6390, 463-6390

장 : 경남 김해군 진영읍 하계리

☎ (0525) 5-2017-3792

■ 전국대리점 및 취급점 / 서울지역 : 동우상사/266-2567 • 동영 타일상사/266-7011 • 신려타일상사/266-3766 • 영남타일상사/285-1455 • 우일타일상사/266-5587 • 유원나스름(주)/562-8565 • 유원타일상사/269-7242 • 해세동상/533-9589 • 부산지역 : 국일도기/89-0229 • 동아건설/23-0312 • 한양건설/68-0604 • 동양건설/652-2112 • 성진건설/88-8916-7 • 홈림건설/242-8949 • 영남인조석/89-8327 • 이화타일/523-6621 • 유선건설/463-7578 • 동진건설/22-3371 • 동해지역 : 대우타일/253-3857-8 • 중앙도기/22-1148 • 합동타일/252-5693 • 과천지역 : 아산건설/2-4729 • 상원건설/55-6038 • 신화건설/56-7585 • 양창건설/55-0943 • 한일건설/94-5115 • 대전지역 : 동신타일/22-3392 • 광주지역 : 동양타일/2-3439 • 전주지역 : 현대건설/2-4501 • 군주시역 : 대광타일/34-6926 • 삼화타일/33-8213

建築士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月刊建築士 1985年 9月 15日 発行

1985.9 NO. 198

目次

發行人 = 吳進錫

編輯 = 出版事業部

編纂委員會

委員長 李永熙

副委員長 金 麟

委員 姜哲求

委員 金現碩

委員 徐千植

委員 金基雄

委員 呂鴻九

發行 = 大韓建築士協會

서울特別市江南區瑞草洞 山61-3

郵便番號 = 135

電話 = 서울(02)交 581-5711(代)

5712, 5713, 5714

登録番號 = 第21-1251

登録日字 = 1967年 3月 23日

U. D. C. 69/72(054-2) : 0612 (5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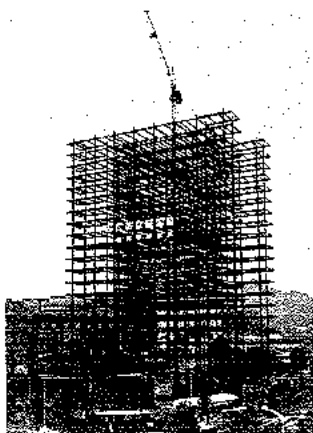
印刷人 = 全允珪

(流文精版社 / 712-2329)

建築士憲章

- 一 建築士는 建築設計 業務人으로서 創造力을發揮하여 建築文化를 推進해 나가기 한다.
- 一 建築士는 國民의 快適한 生活環境을 實現하 爲 努力하여 建築士의 責任을 盡한다.
- 一 建築士는 技術發展에 建築技術의 實效의 向上을 위하여 專門人으로서의 使命을 盡한다.
- 一 建築士는 社會와 國民을 바라보고 善美한 環境을 創造하여 社會와 國民을 幸福한다.
- 一 建築士는 科學의 發展을 가지고 建築設計의 進化에 努力하여 社會에 貢獻적으로 奉仕한다.

大韓建築士協會



표지설명 : 제일은행본점

● 설계 : 윤승중+이영희 사진 : 정정웅

회원작품

•경남대학교 본관

강태석 / (주)한건종합건축사사무소

•이태원 테라스하우스

김준웅 / 상지·필종합건축사사무소

•경북대학교 다목적강당

이 성 / 대아건축사사무소

•코리아시티

이용홍 / 일신건축사사무소

•부산교육대학 체육관

이봉준 / 비전건축사사무소

외국작품

•Georgetown Water Front

Arthur Cotton Moore

회원 PLAZA

4 ● 논단 · 건축사사무소의 활성화를 위한 제언 / 한종언

20 ● 협회소식

26 ● 지부순례 ㉠ / 전라북도편

38 ● 정화칼럼 · 역사가 숨쉬는 건축예술 / 심광섭

29 ● 제언 · 초가는 타는데 건축문화는... / 김영수

68 ● 대화의 광장 · 우리의 오늘 / 김인철

30 ● A.I.A. 총회를 다녀와서 / 오웅석

39 ● 특집 : 한밭도서관지명경쟁설계공모작

• 당선작

아도부건축연구소 · 장석웅(안)

• 가작

(주) 원도시건축 · 윤승중(안)

• 응모작

가람건축 · 장연철(안), 신건축연구소 · 장덕형(안)

(주) 공간연구소 · 김수근(안)

• 연구논문

57 ● 인테리어의 디자인 · 발코니 / 조성룡

62 ● 창조공간의 도전 · 국제그룹관 / 한도룡

64 ● 외부환경설계 · 어린이놀이터 / 최기수

✓ 70 ● 한국의 구조물설계용 적설하중에 관한 연구 / 최문식

✓ 77 ● 타일접착강도 개선방안(하) / 이재욱

83 ● 헤겔에 있어서 예술의 죽음 / 최부득

• 자료·기타

88 ●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중 개정령

91 ● 건축허가면적변동추세

90 ● 신입회원

분류번호	建築士誌
도서번호	통권 제 198 호
구입년월일	1985. 9. 70.
대한건축사협회 제주도지부	

建築士事務所의 活性化를 위한 提言

韓 鍾 彦

本協會 理事·綜合建築士事務所 錦成

근래 協會를 자주 드나들다 보니 가끔 건축사 사무소의 補助員, 建築士補에 대한 여러가지 이야기를 듣게된다. 내용인즉 건축사가 사무소를 개설하는데 보조원 문제로 제약을 받는다고 해서야 되겠느냐는 것이다. 특히 지방회원님들에게서 이와같은 불만이 淸々인데 일리가 있다고 본다. 마침 지난달 法 개정으로 建築士補의 資格基準이 완화되어서 펍 다행이라고 생각된다.

필자가 학교를 졸업하고 건축을 시작할때만 해도 건축설계 사무소에서 일하는 建築志望生들의 수는 그리 많지 않았다. 물론 6.25한국동란으로 사회적인 여건도 그러하였지만 건축을 한다해도 고작 설계규모가 幾百㎡ 되는 건축물이 대부분이었고, 幾千㎡ 만 되어도 큰 프로젝트였으니까. 따라서 설계 사무소도 그 수가 많지 않았으며 대개 어느어느 사무소하면 거의 알 수 있을 정도였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사회, 경제, 문화 등 다방면으로 발전하고 戰後 건축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설계 사무소도 그 수가 많이 생겼으며 규모도 대형화되어가고 建築士補도 수적으로 상당히 많아졌고 수준 또한 괄목할 만큼 향상되어갔다. 때마침 建築士法이 제정되어 朝鮮總督部令 이후 그간 무질서했던 건축계에 일단은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었다.

1966년 이후 건축설계 사무소의 형태가 그 특성을 나타내기 시작하면서 70년대에 들어서자 설계 사무소의 규모도 大形化하기 始作했다. 사무소의 성격도 각양각색으로 나타났으며 건축사 사무소에서 일하는 建築士補도 그 수가 전국에 걸쳐 일만여명에 달하게 되었고 분야별로 상당한 專門性을 띄게 되었다.

70년대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중동붐으로 건설업체의 해외진출과 아울러 국내 건설경기의 활성화로 우리 건축사 사무소에는 큰 회오리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겨우 자리를 잡고 질서를 찾아 열심히 일하고 있던 건축설계 지망생들은 중동진출로 인한 기술인력을 감당할 수 없었던 건설업체들에 의하여 마구잡이로 무방비상태에 있는 건축사 사무소에서 수

없이 스카웃 해 갔다. 줄잡아 그 수는 약 일만여 명을 상회하리라고 본다.

건축설계 사무소는 젊은 건축지망생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었을지도 모르지만 財政面에서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기업과 맞서 이들 유능한 건축설계지망생들을 유치할만한 능력이 없었다. 따라서 건설업체에서는 자체인력을 양성 활용하지 않고 건축사 사무소에서 겨우 키워둔 인력을 힘안들이 고 데려다 활용하였던 것이다.

이 사실을 정부나 대기업 건설업체 어느 누구에게도 하소연 할 길이 없었으며 建築士 이외에는 이 가슴아팠던 시절을 몰랐을 것이다.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우리나라 건설업의 해외진출에 일익을 담당·기여하였다고는 하겠지만 우리 건축사 사무소는 상당기간동안 큰 피해를 입는 결과를 감수해야 했었다. 이점에서 관계당국이나 대기업 건설업체에서는 한번쯤은 고마움과 미안함을 공식적으로 표해야 할 것으로 안다.

건축설계 사무소는 技術蓄積이 다소나마된 建築士補는 상당수 빼앗기고 갖 대학을 졸업한, 아니면 공고를 졸업한 실습생과 확고한 신념으로 건축을 하겠다는 일부 熱望生으로 60년대 후반기와 비슷한 시절을 맞이해야만 했었다. 건축사들로서는 참으로 어려웠던 시절이었다. 대형프로젝트는 나오고 따라서 턴키이베이스(turn-key base) 사업까지 쏟아져 한동안 많은 고통을 겪었던 것은 건축사면 누구나 다 체험했으리라.

세월이 흐르면서 건축사 사무소의 구조는 더욱 다양화 되었으며 이제 안정추세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제야말로 건축사 사무소가 內實을 기하여 質적으로 알차야 하며 국제화시대에 대응하여 차원 높은 건축문화를 발전시켜야 할 때인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또한 문제점은 있는 것 같다. 建築에 立志하여 대학졸업후 5~10년쯤 실무경력을 쌓고 어느정도 기술축적이 되어 같이 팀(team)으로서 일할 수 있는 시기에 建築士資格을 얻어 따로 독립해서 建築士事務所를 개설하

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각자 독립하여 자기의 영역을 넓혀가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보다 더 좋은 건축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또한 대형화된 프로젝트를 소화하기 위해서는 유능한 팀이 필요하게 되는데 각자 독립함으로 인해서 유능한 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高級人力을 건축사 사무소에서 수용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지 못한것 또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建築士法 改正으로 사무소의 형태가 單獨, 綜合으로 구성됨에 따라 건축적인 작업을 해야할 인력이 경영에 참여하게끔 유도됨으로써 문제점이 야기되며 국제경쟁력과 기술축적을 위한 요건으로서의 大形化 綜合事務所의 원래의 法趣旨의 의미가 없어지지 않을까 염려된다. 다시 말해서, 綜合事務所의 원래의 취지를 살려 대표건축사 이외는 개업건축사가 아니라라도 건축사 자격만 가지고 있으면 종합건축사 사무소 개설이 가능한 방향으로 유도되었으면 한다.

결론을 요약한다면 건축사 사무소에서 보다 전문성을 띄고, 축적된 기술을 갖춘 유능한 인력이 共同으로 일할 수 있는 條件이 조성되어야겠으며 아울러 책임만을 부여하고 기술육성법과 같은 혜택은 하나도 없는 현재제도에서의 건축사 사무소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려울지 않을까 염려된다. 제도적인 뒷받침이 따라야 보다 나은 건축사 업무를 볼 수 있으며 건축문화 발전과 국제경쟁력도 배양되리라 본다. 관계당국은 건축사 사무소 업무의 특수성을 심본 참작하여 보다 효과적인 육성책과 稅制惠澤이 주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고, 건축사 사무소에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국내의 소규모 업무를, 대기업에서 海外用役을 목적으로 만든 엔지니어링 회사를 내세워 蠶食하는 행위 등은 근절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건축사 자신도 스스로의 자세를 정비해야 하고 일반사회에서도 새롭게 인식을 가져줘야 할 필요를 절실히 느끼면서 이 글을 맺는다.

회 원 작 품

경남대학교 본관
KYUNGNAM UNIVERSITY MAIN BUILDING

강 태 석
(주)한건종합건축사사무소

이태원 테라스하우스
YITEAWON TERRACE HOUSE

김 춘 웅
상지·필종합건축사사무소

경북대학교 다목적강당
AUDITORIUM OF KYUNGBOK
NATIONAL UNIVERSITY

이 성 대
대아건축사사무소

코리아시티
KOREA CITY

이 용 흠
일신건축사사무소

부산교육대학 체육관
PUSAN EDUCATION COLLEGE GYMNASIUM

이 봉 춘
건축사사무소 비전

외국작품

Georgetown Waterfro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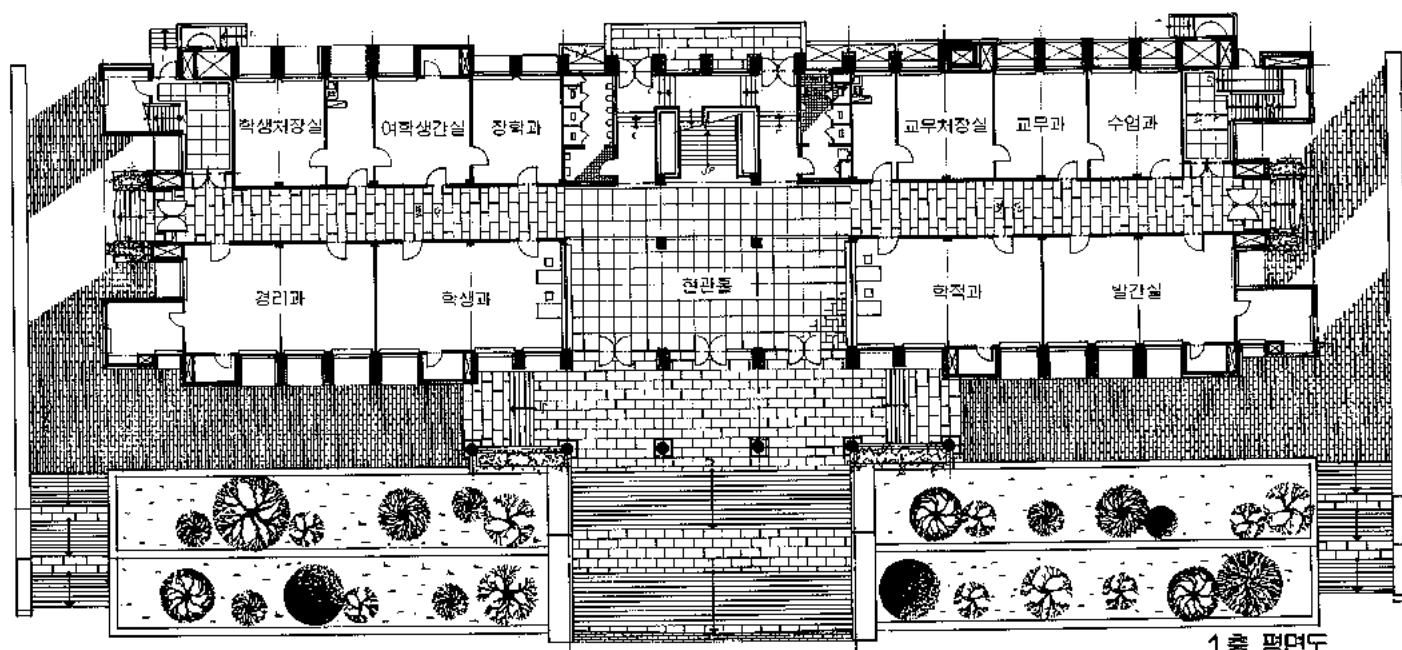
Arthur Cotton Moore

경남대학교 본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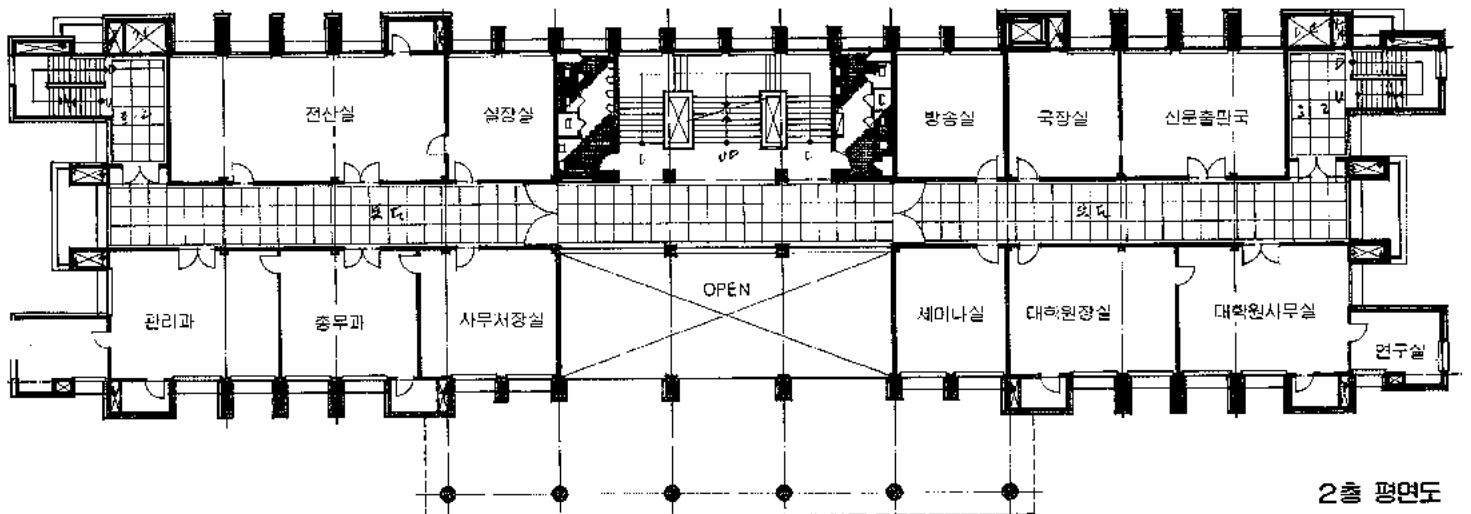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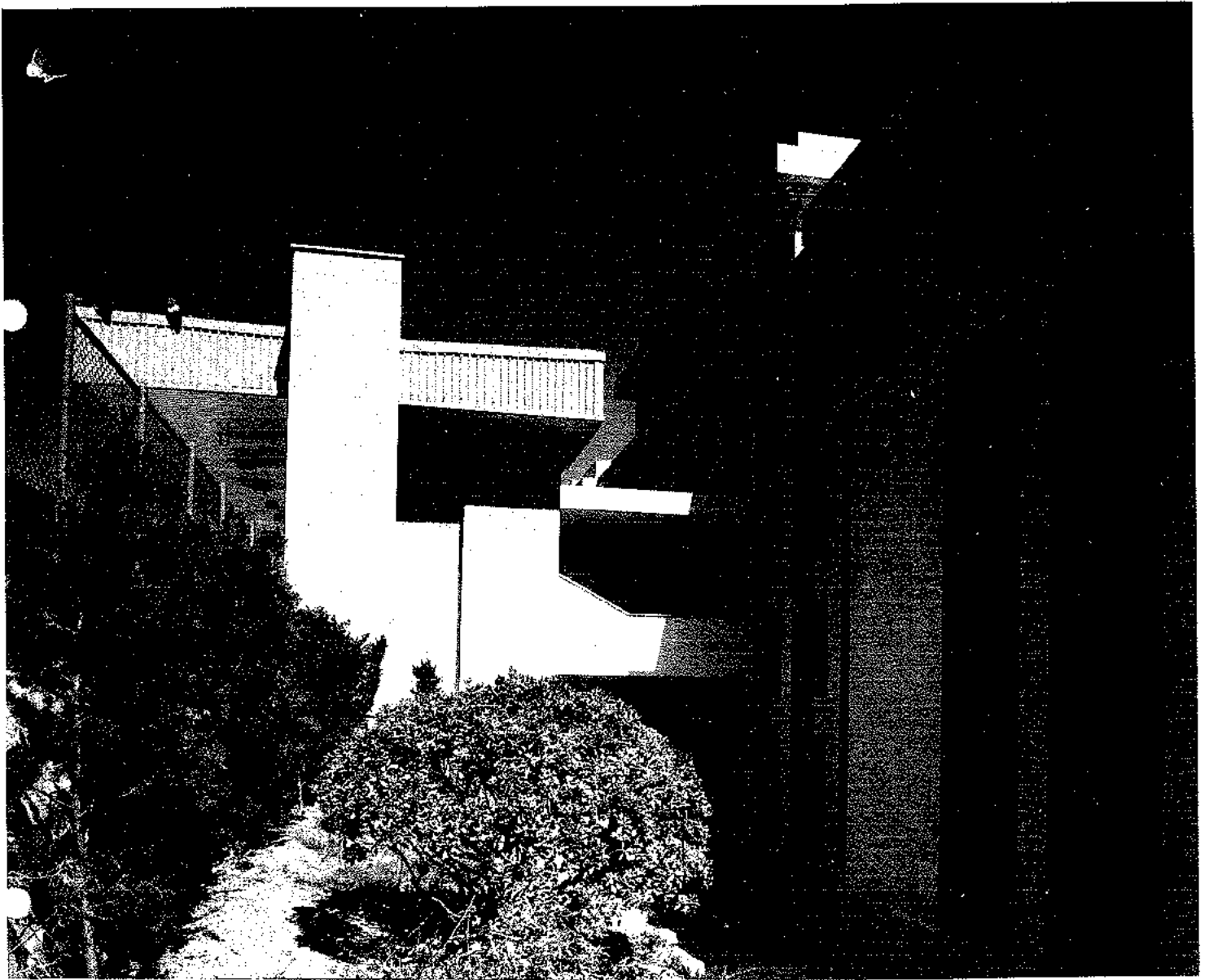
KYUNG NAM UNIVERSITY MAIN BUILDING

강태석 / (주)한건종합건축사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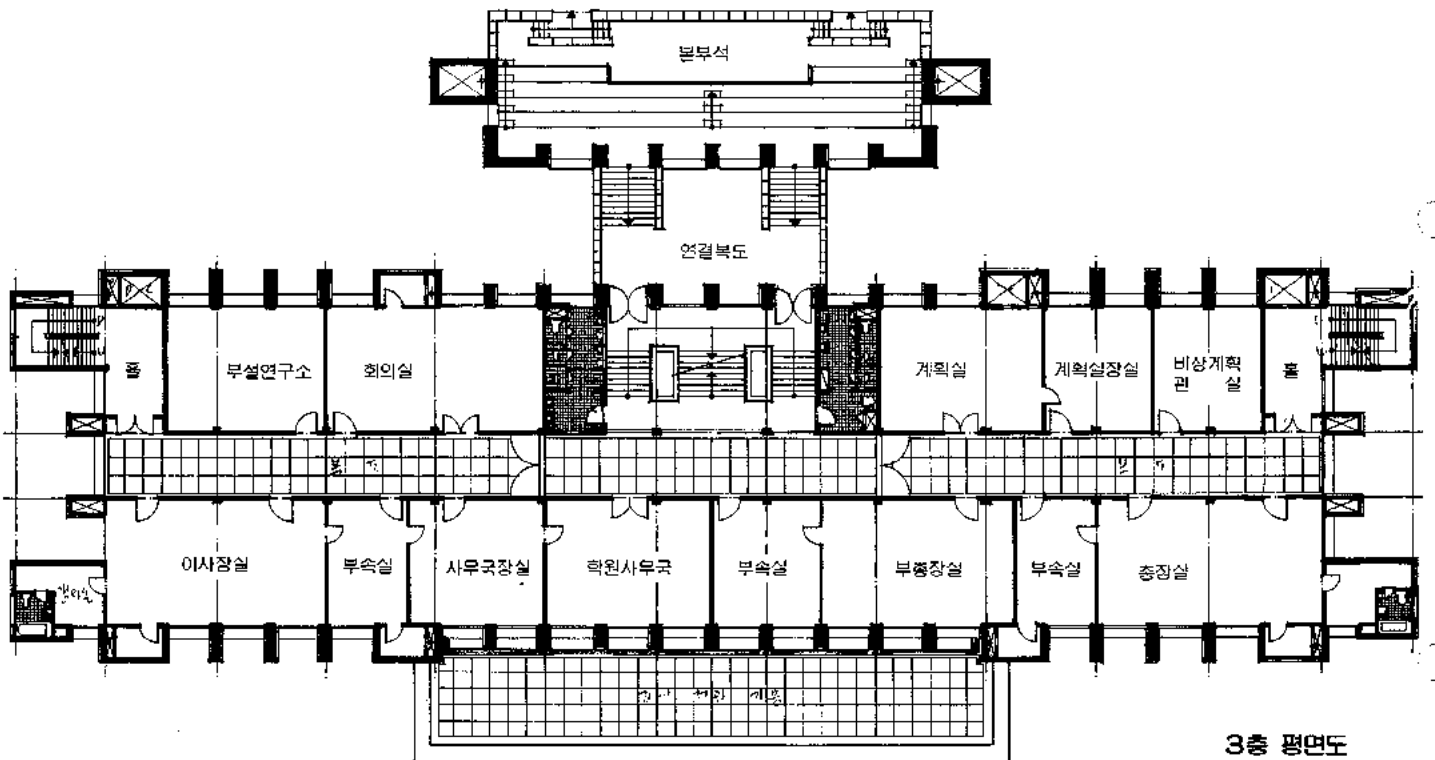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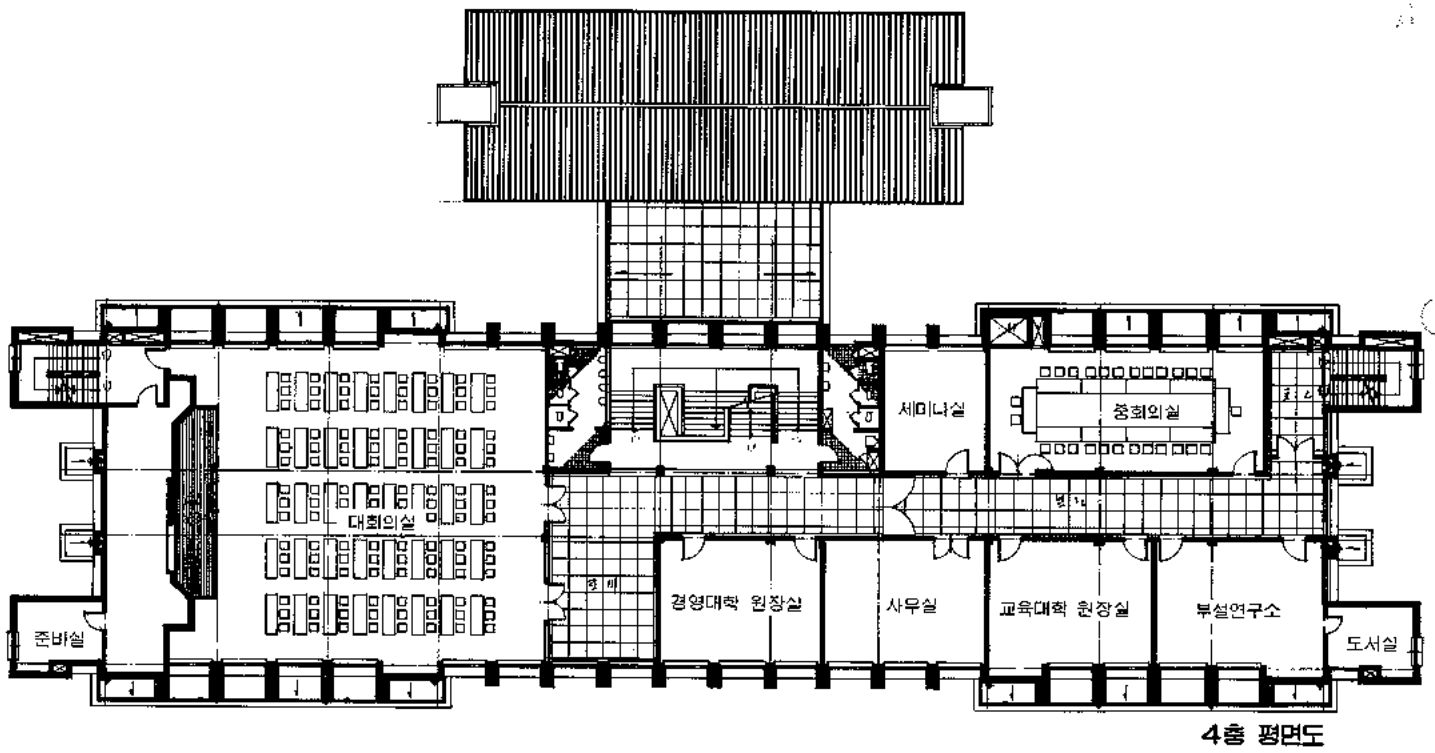
- 대지위치: 경상남도 마산시 월영동
- 건축면적: 1,950m²
- 연 면 적: 6,050m²
- 구 조: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 외부미감: 화강석 판재붙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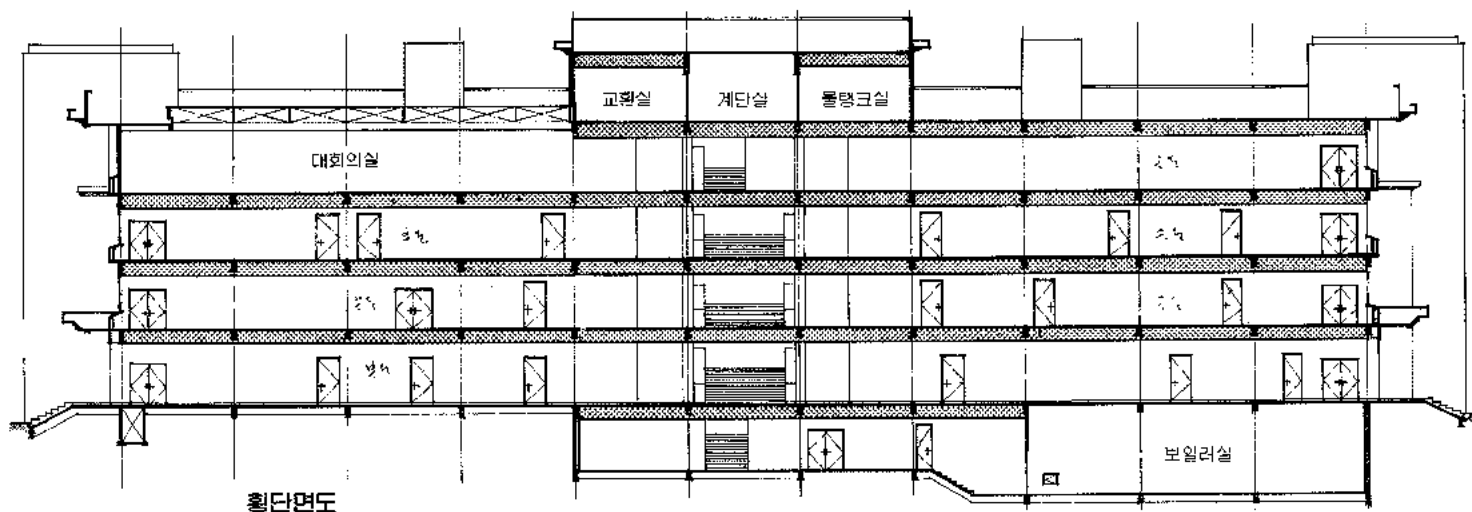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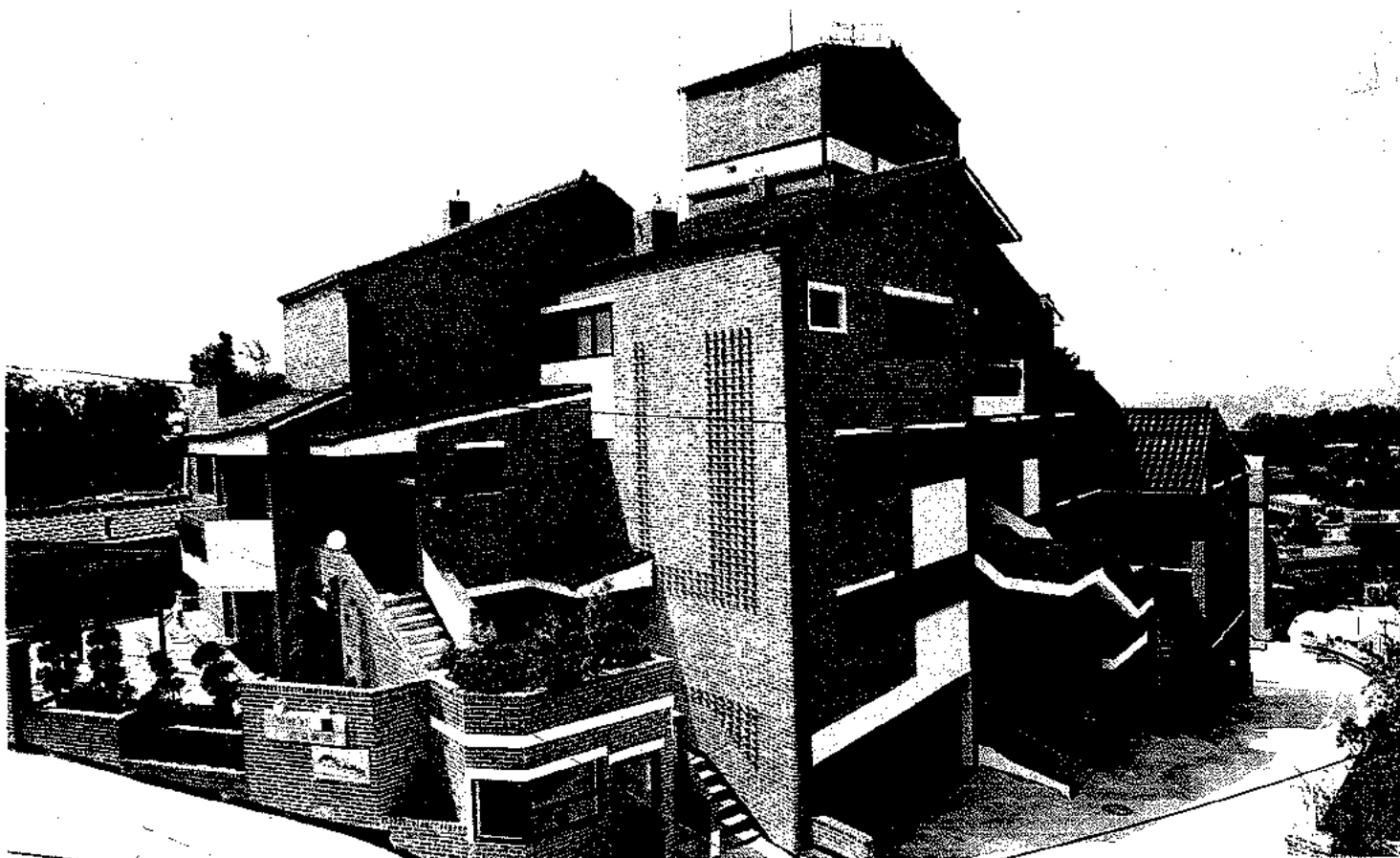


이태원 테라스하우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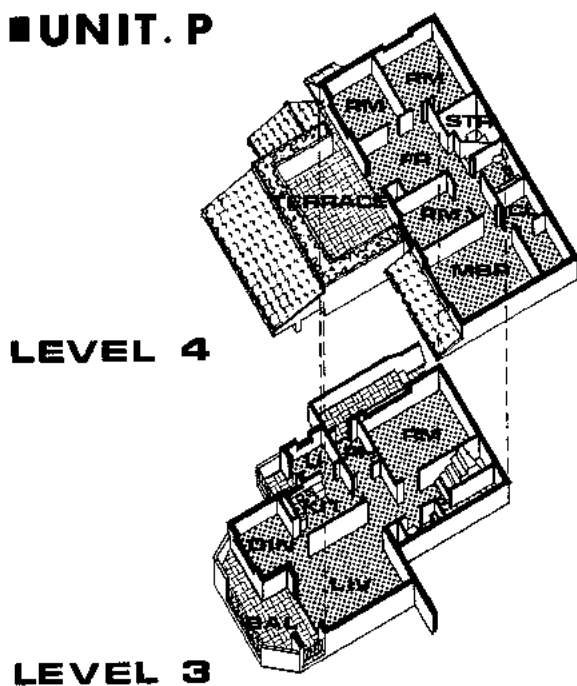
YITEAWON TERRACE HOUSE

김춘웅 / 상지 · 필종합건축사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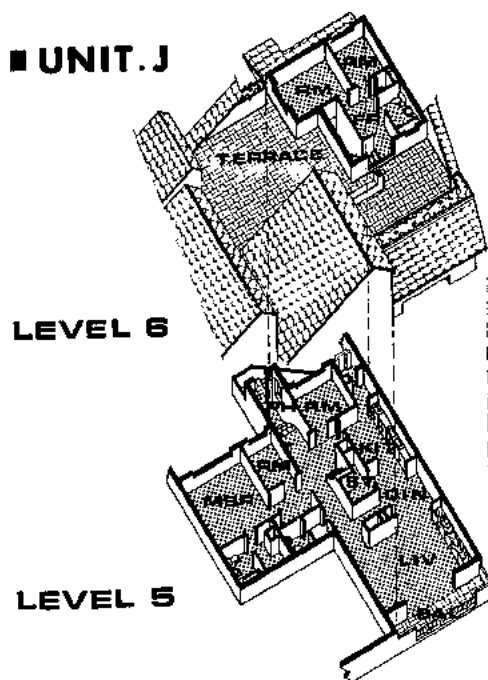
- 대지위치 :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154
- 대지면적 : 3,121㎡
- 건축면적 : 1,197.85㎡
- 연 면 적 : 3,742.96㎡
-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 외부마감 : 변색 벽돌치장쌓기
- 형 식 : 테라스 하우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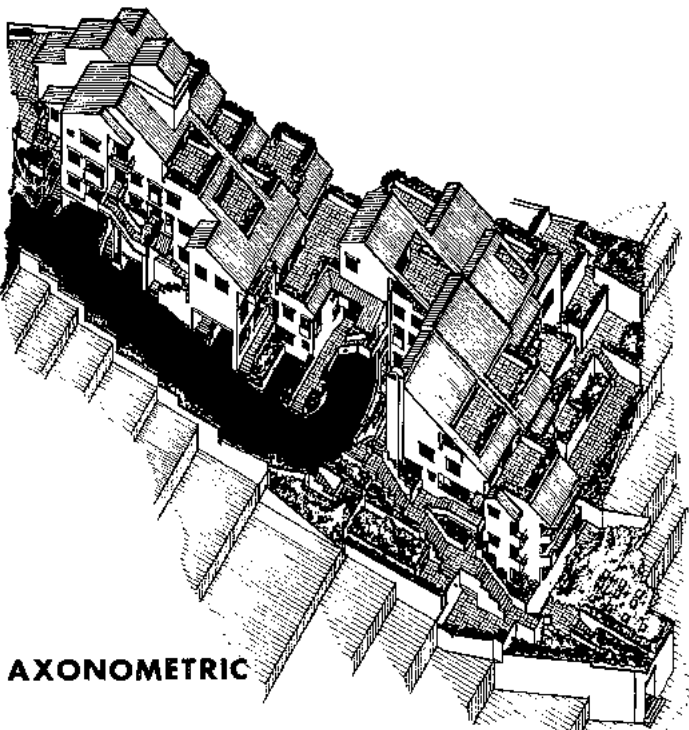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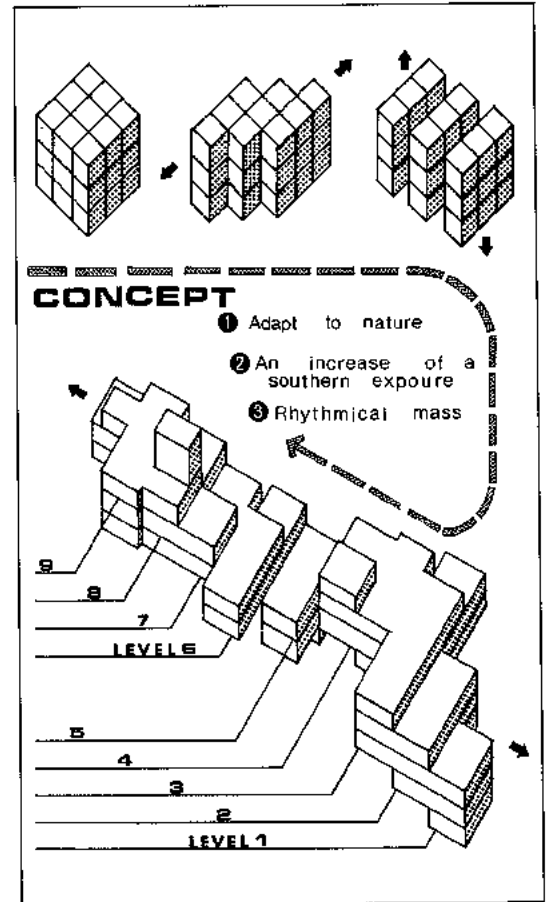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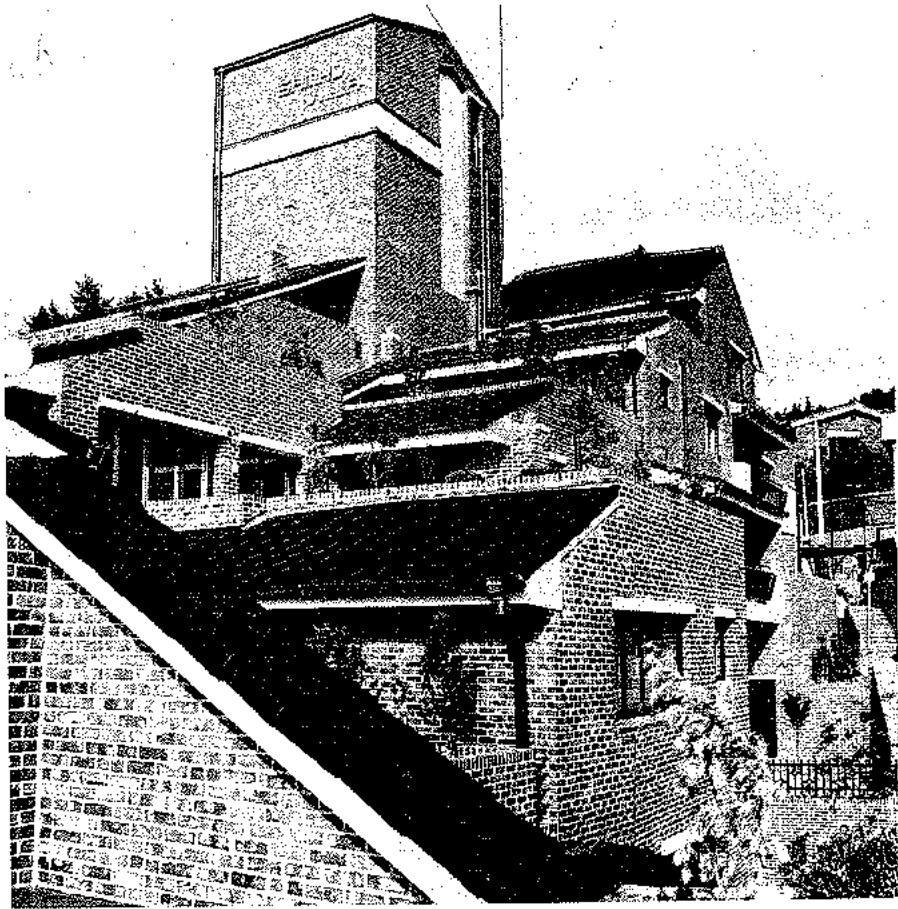


■ UNIT. P



■ UNIT. J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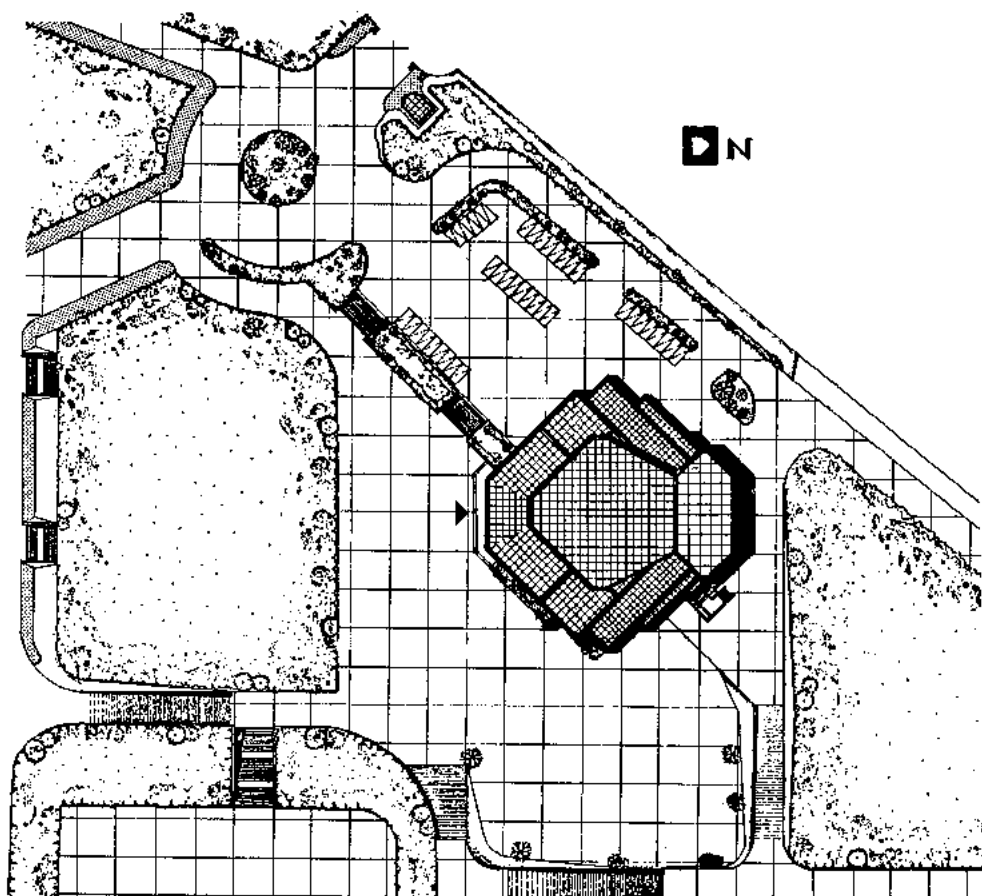


경북대학교 다목적강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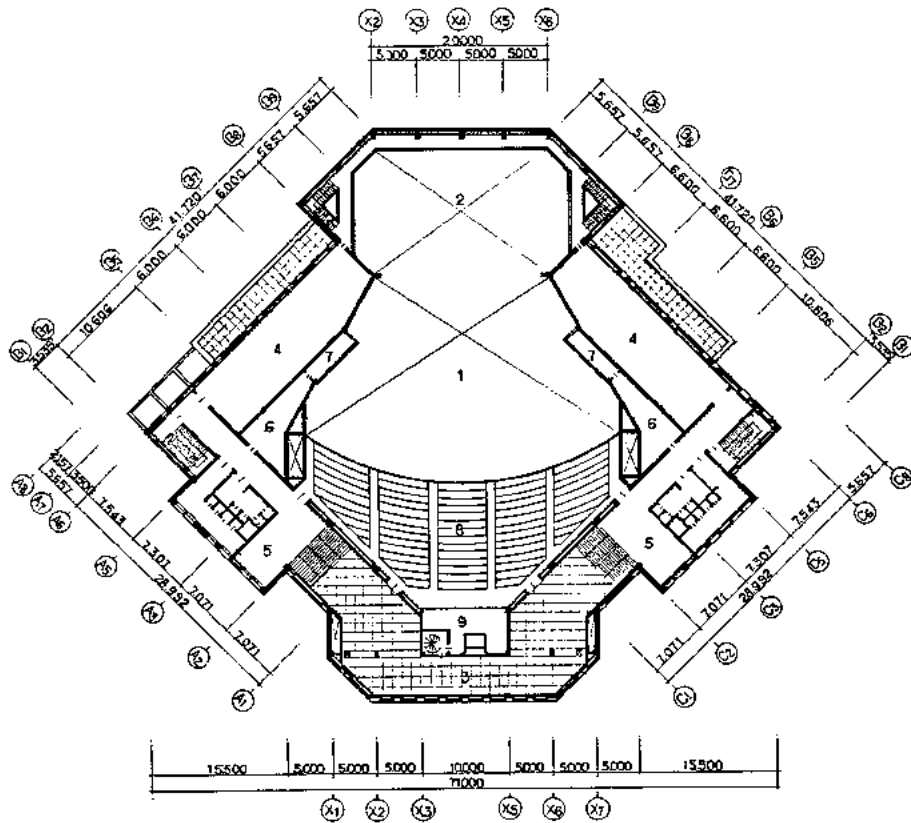
AUDITORIUM OF KYUNG POOK NATIONAL UNIVERSITY

이 성 / 대아건축설계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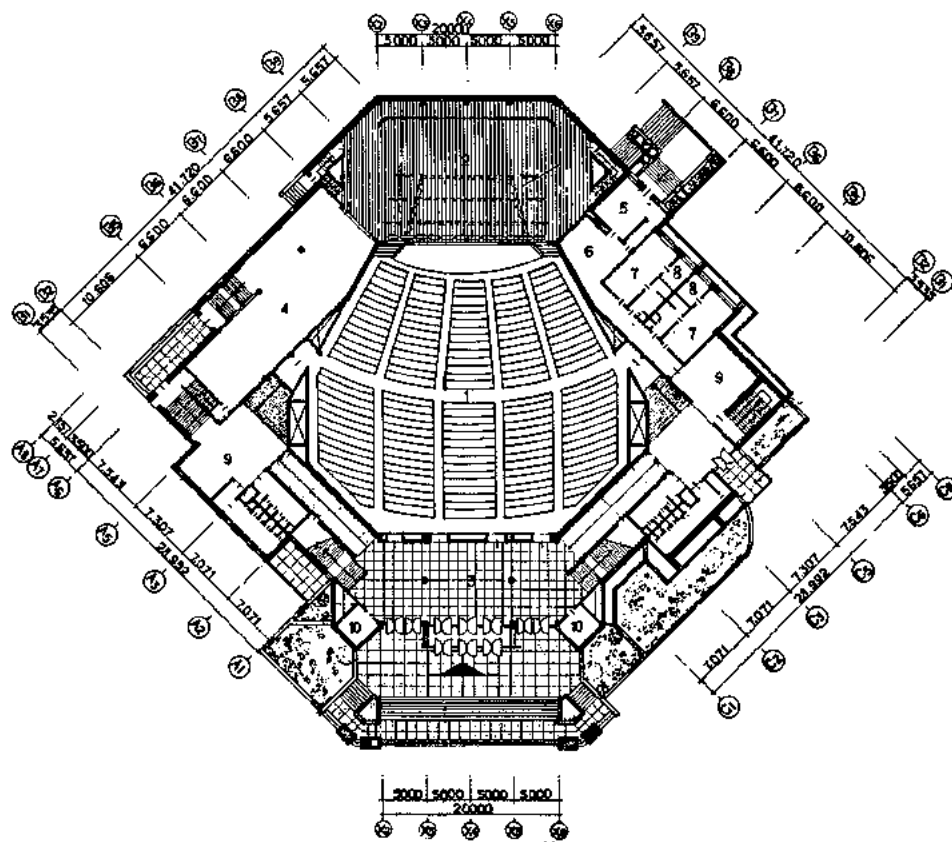
- 대지위치 : 경북 대구시 북구 산격동
- 건축면적 : 2,935.84㎡
- 연 면 적 : 6,971.00㎡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 규 모 : 지하 1층, 지상 3층
- 외부마감 : 화장석돌치장쌓기



배치도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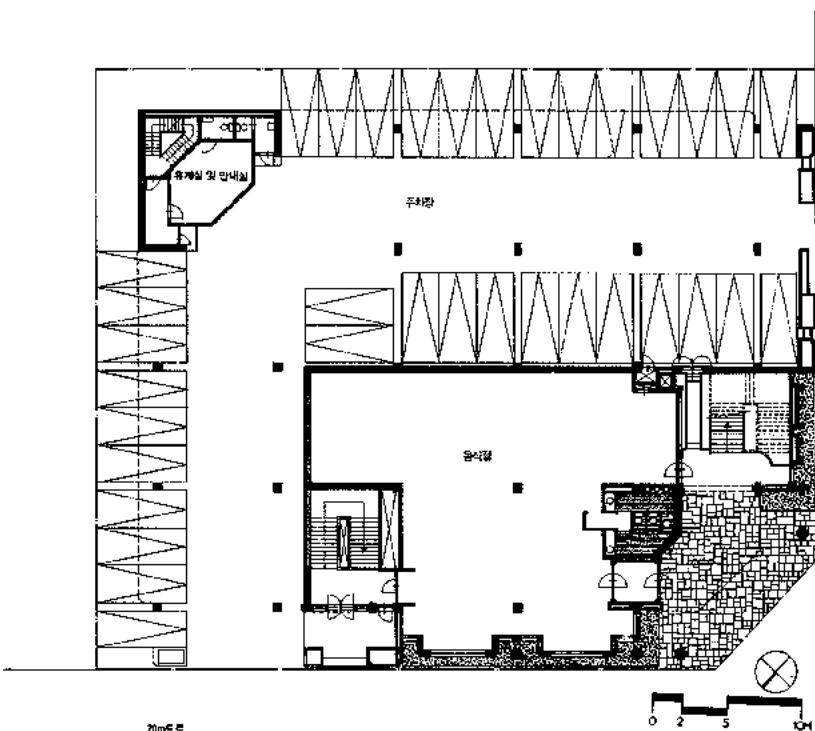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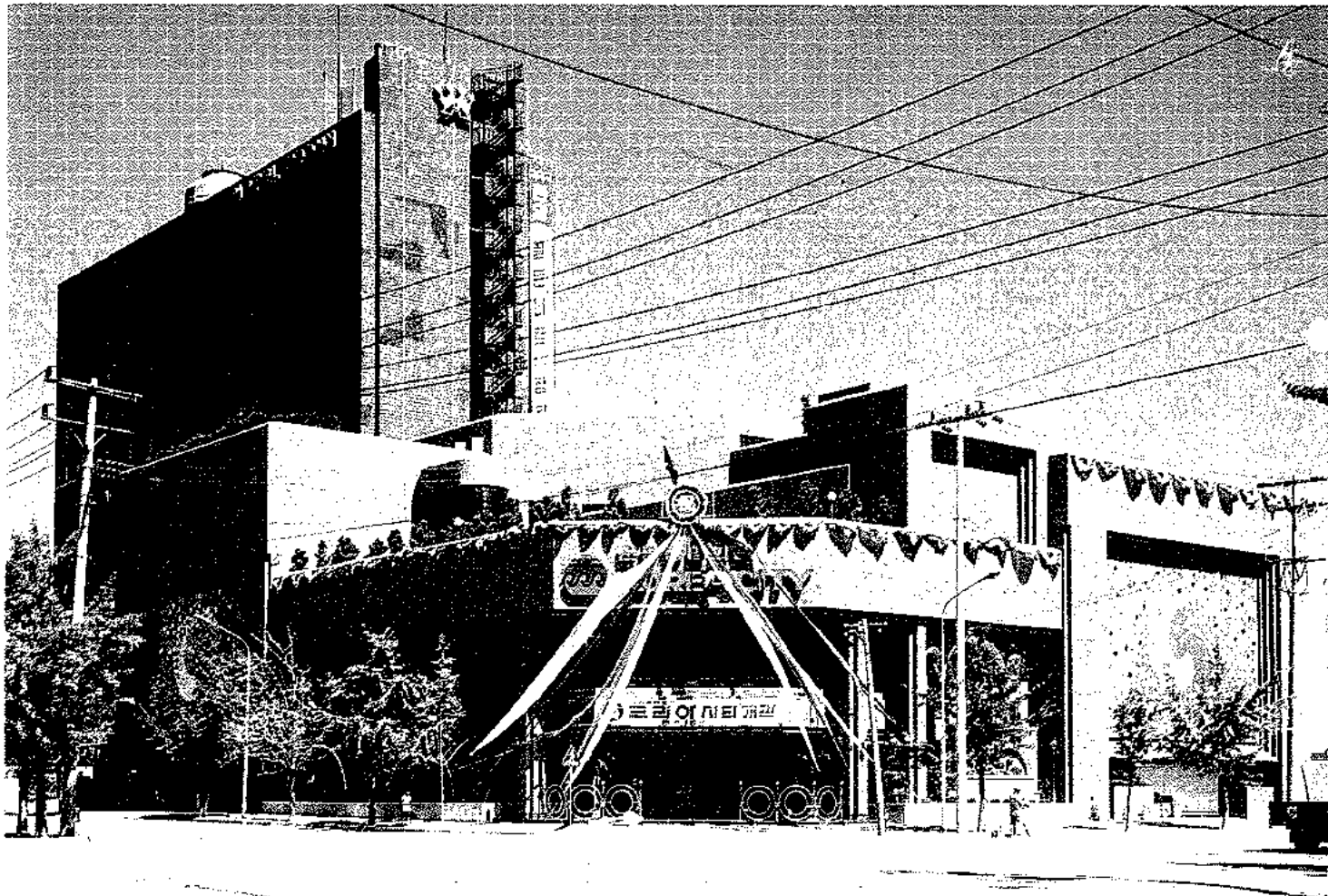
1. 객석
2. 무대
3. 로비
4. 도구제작실
5. 귀빈실
6. 대기실
7. 분장실
8. 의상실
9. 휴게코너
10. 관리실

코리아시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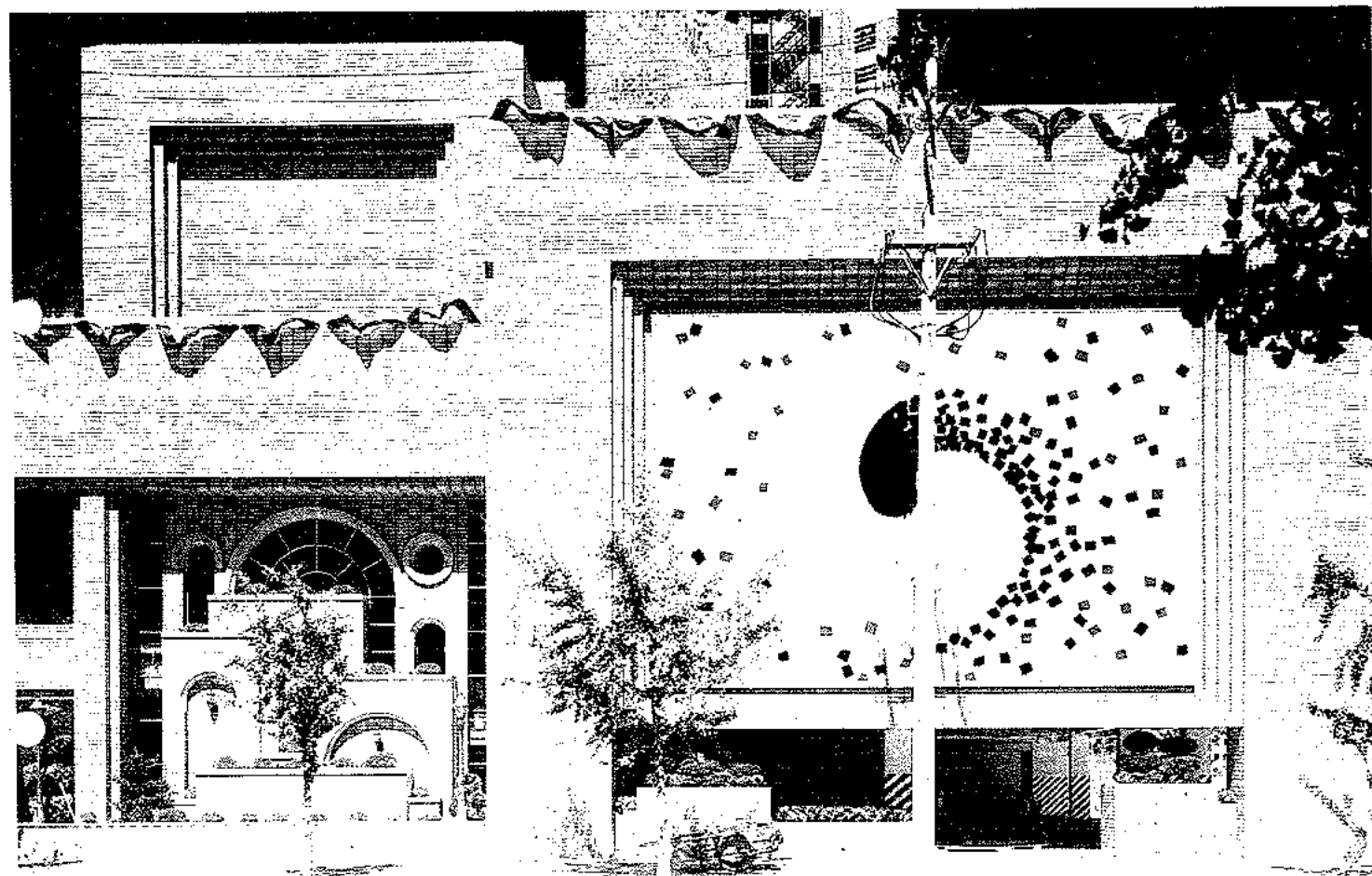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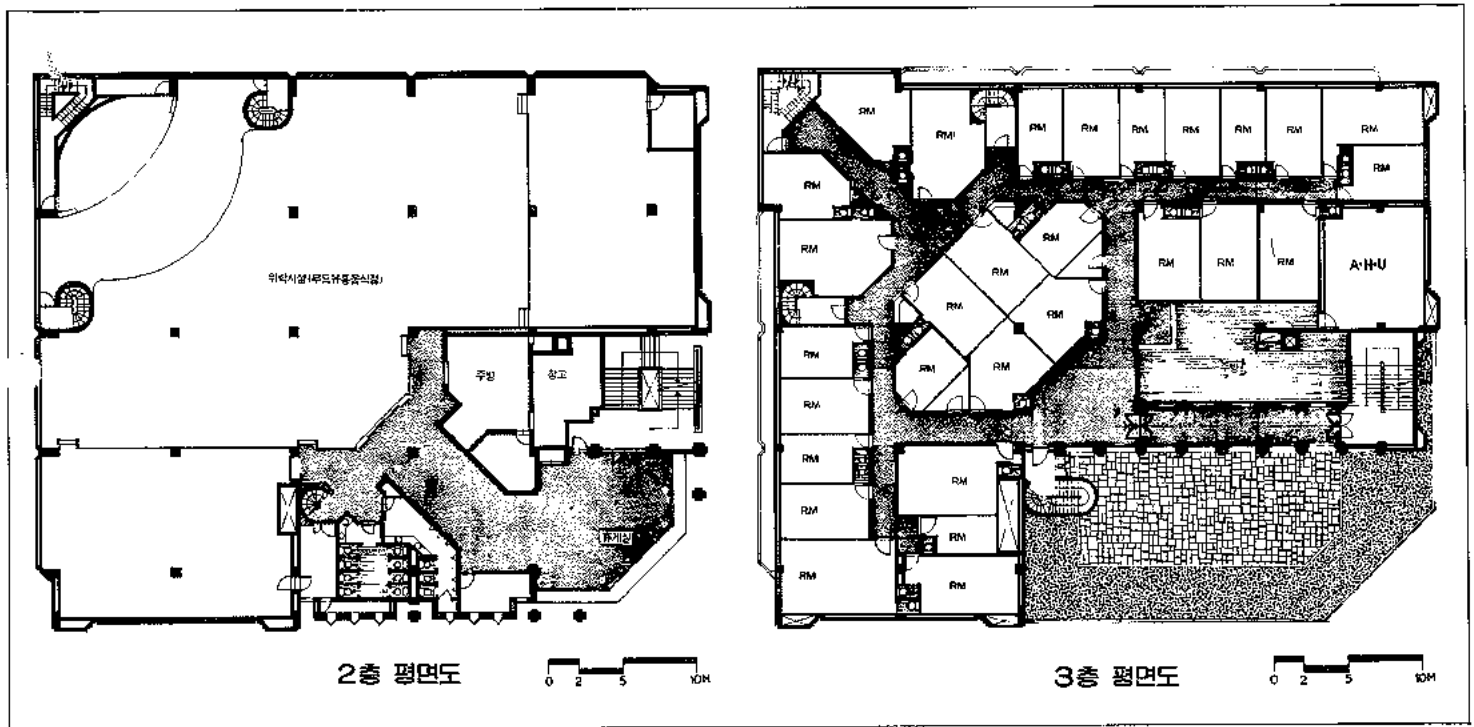
KOREA CITY

이용훈 / 일신건축사사무소

- 대지위치 : 부산직할시 동구 범일동
- 대지면적 : 1,909.80㎡
- 건축면적 : 1,546.56㎡
- 연 면 적 : 6,763.39㎡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 규 모 : 지하 1층, 지상 5층
- 외부마감 : 캐논세라믹 타일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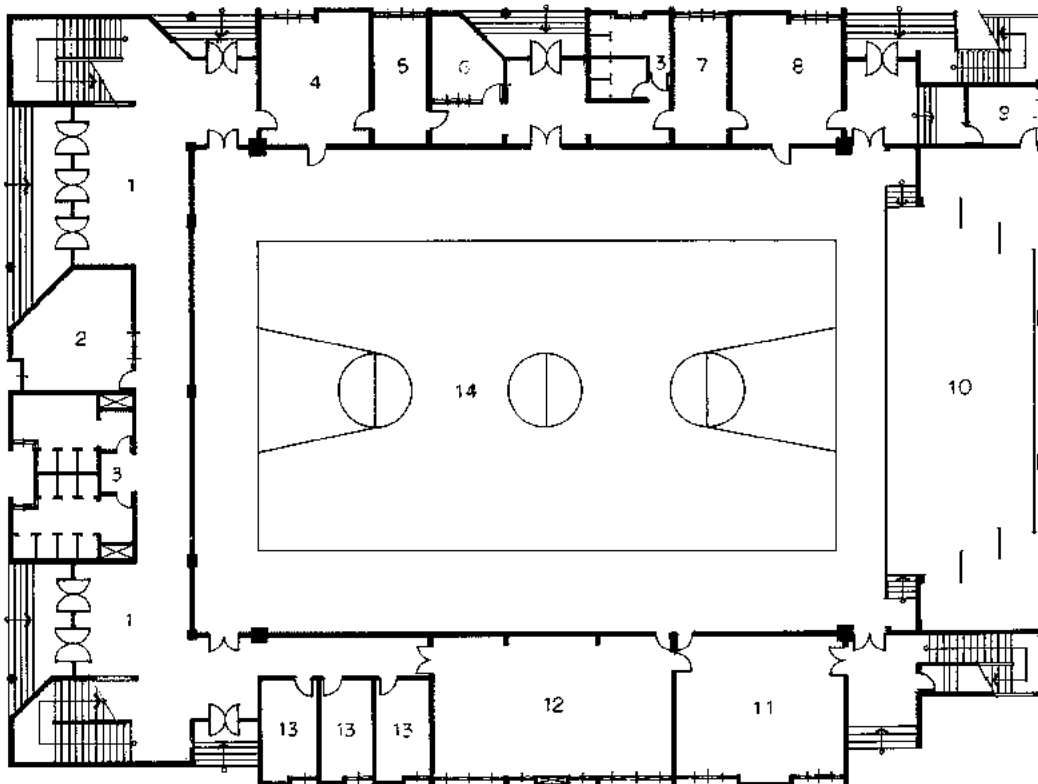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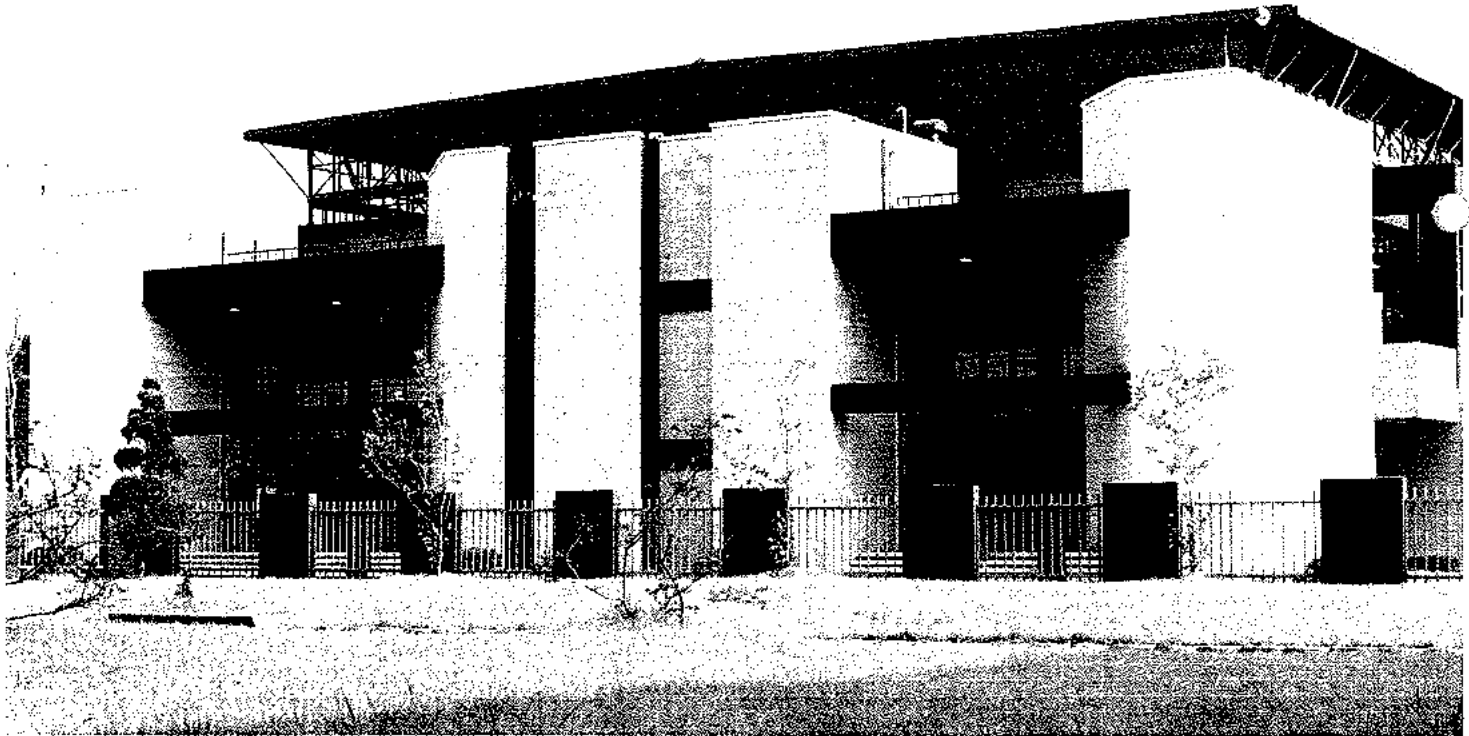


부산교육대학 체육관

PUSAN EDUCATION COLLEGE GYMNASI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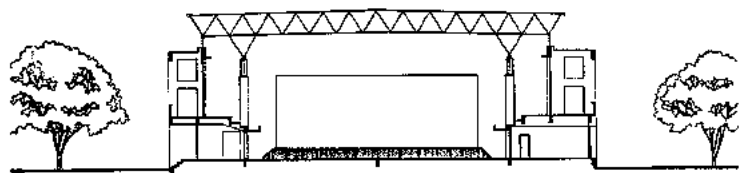
이봉춘 / 건축사사무소 비전

- 대지위치 : 부산 동래구 거재동 204-1
- 건축면적 : 1,784.40㎡
- 연 면 적 : 2,179.79㎡
- 구 조 : R.C 조+임체파이프 트러스
- 외부마감 : 화강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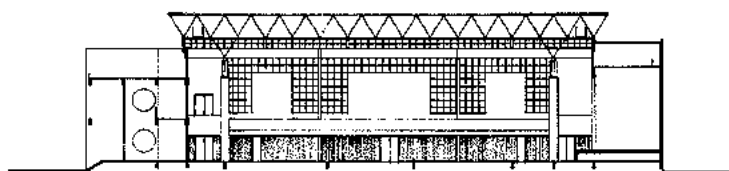


1. 주 현 관 홀
2. 관 리 실
3. 화 장 실
4. 경 의 실 (男)
5. 사 위 장 (男)
6. 양 호 실
7. 사 위 장 (女)
8. 경 의 실 (女)
9. 무 대 준 비 실
10. 무 구 대
11. 도 구 실
12. 강 의 실
13. 교 수 연 구 실
14. 경 기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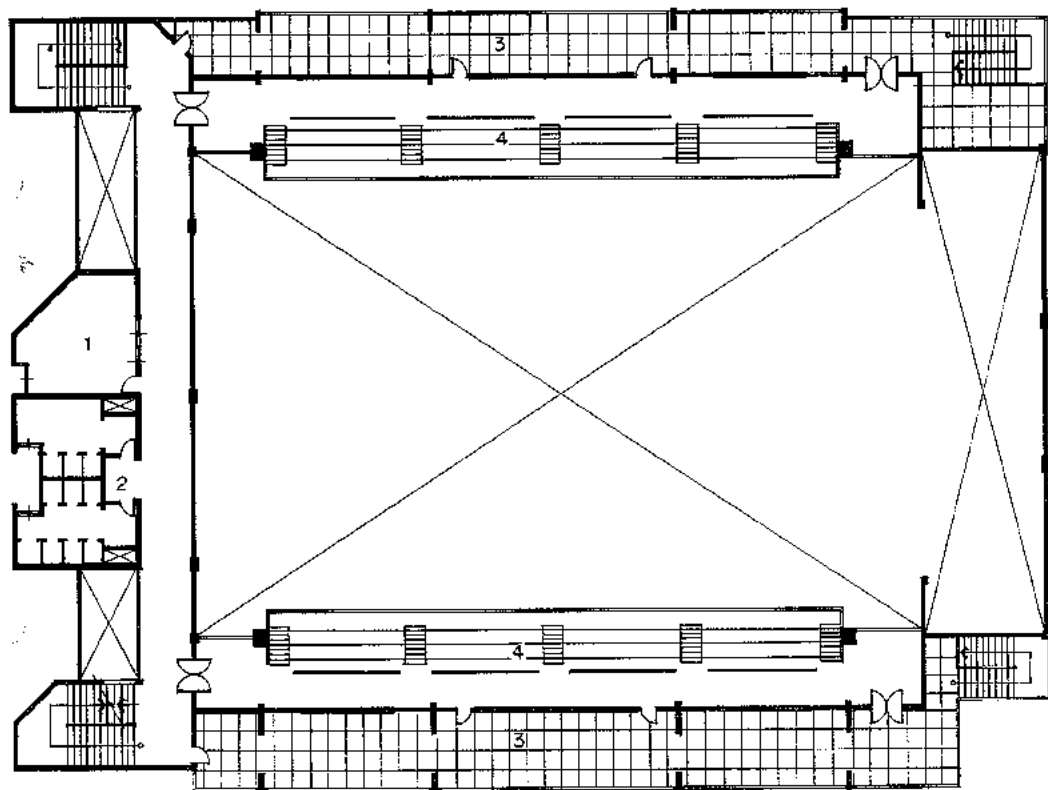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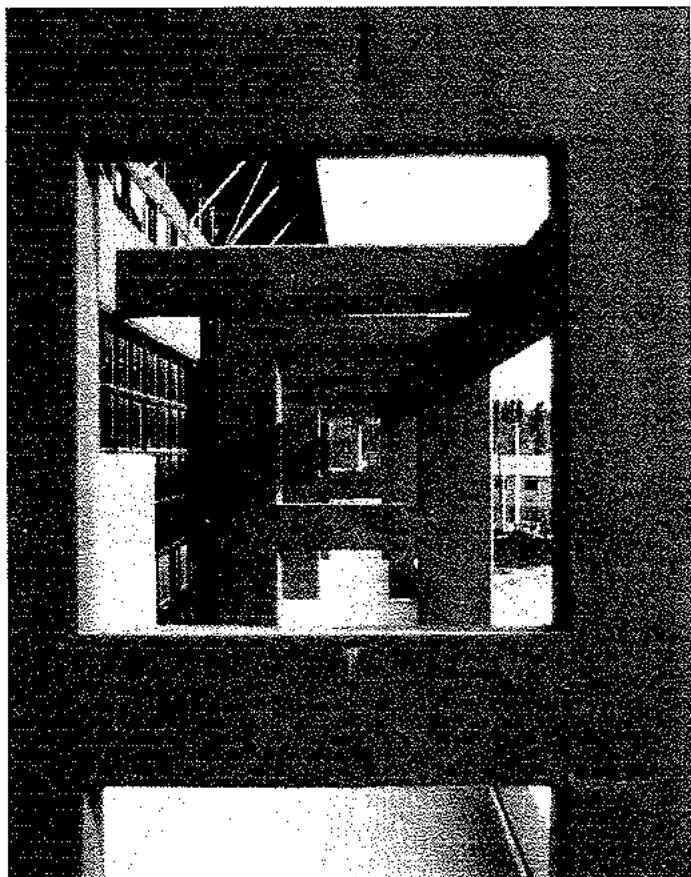
1층 평면도



CROSS SE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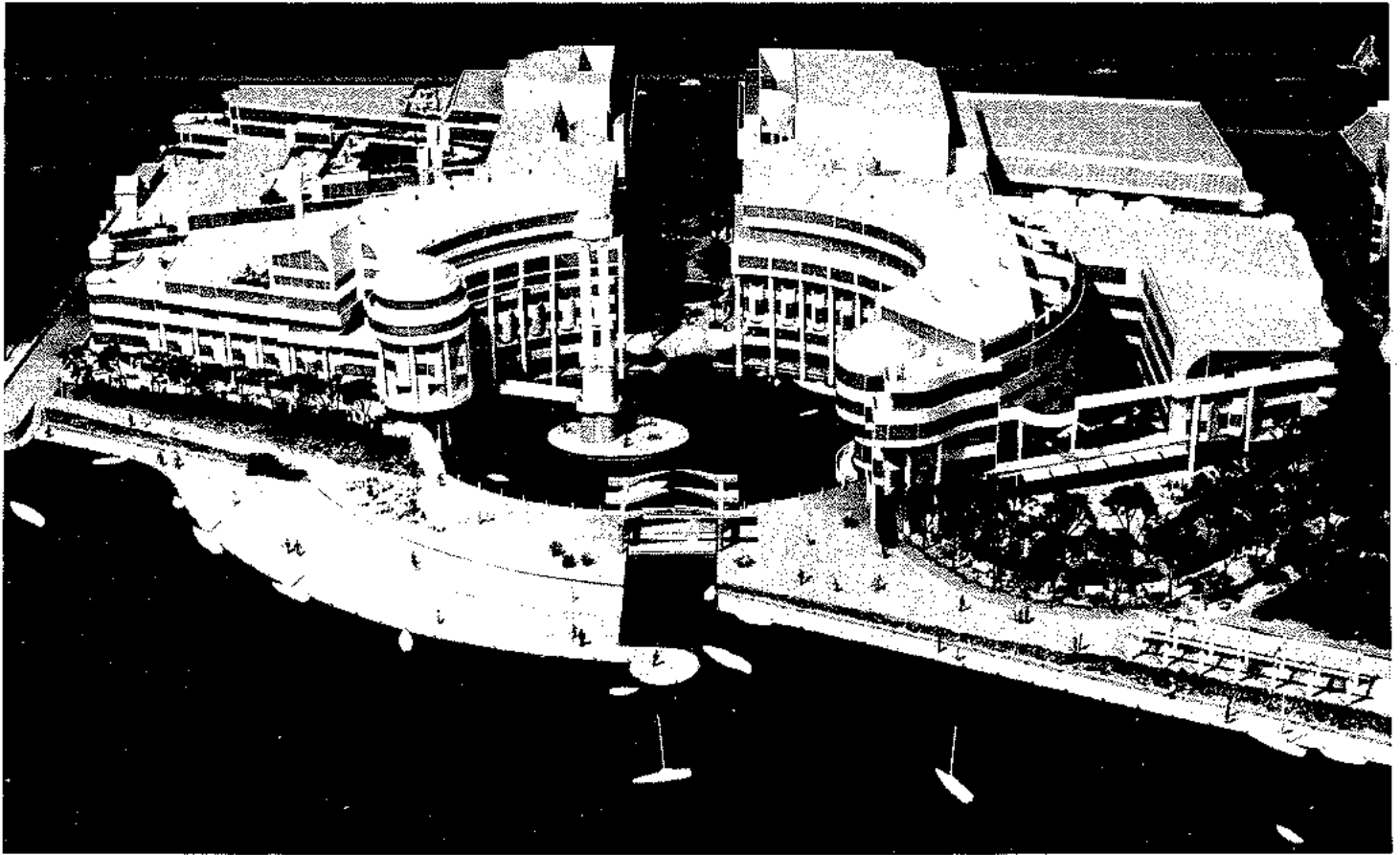
VERTICAL SECTION



1. 교재개발실
2. 화장실
3. 베란다
4. 스텐드

Georgetown Waterfront

Arthur Cotton Moore





제8회 理事會 개최

8월29일 오후 5시부터 2시간 여에 걸쳐 본회 회의실에서 제8회 理事會가 열렸다.

吳雄錫 회장 주재하에 金基壽 부회장, 金圭泰·金奉熙·金在佑·金亨仁·申貞桓·俞景哲·李永熙·林在植·韓鍾彦 理事, 柳根洙·李康植 監事, 李春相 서울지부장, 李鍾殷 경기도지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理事會에서는 13건의 부의안건과 1건의 협의사항, 3건의 기타사항이 다루어졌는데 안건별 심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부의안건

第1號議案 86년도 예산편성지침(안) 승인의 건: 예산편성 운용방법은 일부를 수정 또는 삭제하고(3항의 2개목을 단일목으로, 5항은 삭제) 나머지 1, 2, 4항은 원안대로 승인. 지부 사업비의 사용계획은 지부 간사회에서 정하도록 하고 각지부의 예산요구액을 제출받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검토 조정후 86예산을 편성토록 결의(예산편성 소위원회 구성은 會長에게 위임)

第2號議案 창립20주년 기념행사및 정기총회 개최일정 승인의 건: 20주년 기념행사준비위원회에 위임하여 결정토록 하고 전 임원이 위원으로 참여하여 협조토록 결의.

第3號議案 회원명부 광고게재료 조정 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

第4號議案 감사패수여 승인의 건: 본 협회 정보자료실 자료로 건축사지 결호본 144권을 기증한 서울지부소속 김병일 회원과 협회 업무의 간소화를 위하여 소형 컴퓨터 1대를 기증한 인천지부소속 신형범 회원에게 감사패를 수여토록 승인.

第5號議案 회원사무소 간판모형 결정의 건: 건축사법 개정으로 회원사무소 명칭이 일제히 갱신되어 사무소 간판을 재제작 설치하게 됨에 따라 간판의 모형을 전국적으로 통일시키기 위한 간판모형을 제작 심의 승인하도록 부의하였는바 간판모형 도안을 보완하여 차기 이사회에서 결정기로 결의.

第6號議案 사무실 임대시 공유면적 포함을 및 임대료 결정의 건: 회관관리소위원회에 위임하여 집행부와 협의 결정기로 결의.

第7號議案 위원회운영 총칙(안) 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

第8號議案 건축물의 조사감정업무 시행지침(안) 승인의 건: 건축물의 조사감정 업무규정에 의하여 현재 본부 및 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감정업무에 대하여 적정 공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3회 감정위원회(85. 6. 19)에서 협의결정되어 제9회 법규위원회(85. 8. 2)에서 검토된 동지침(안)의 심의 승인을 부의하였는바 시행지침(안) 3번 다항 내용을 법규위원회에 위임하여 일부 수정토록 하고 기타 사항은 원안대로 승인

第9號議案 건축사 직접비(일당) 기

준 변경 승인의 건: 기술용역 육성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기술용역 대가의 기준"이 개정(과학기술처 공고 제 85-47호 '85. 4. 20)됨에 따라 건축사 및 건축사보의 직접 인건비 기준을 건축사 업무 및 보수기준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안)과 같이 변경 시행로 자 부의한 바 원안대로 승인.

第10號議案 문서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 본협회의 문서규정중 운영상 문제점이 있는 일부 내용을 보완 개정코자 부의한바 원안대로 승인.

第11號議案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 경남지부의 수선수수료 예산이 부족되어 회계규정 제32조에 의거 부족액 10만원에 대한 예비비 사용요청이 있어 부의한바 원안대로 승인.

第12號議案 예산목간전용 승인의 건: 본부 85년도 예산집행상 경조비, 소모품비, 보험료, 수선수수료 등에 과부족 현상이 발생되어 부족예산을 부득이 목간전용코자 회계규정 제31조에 의거 부의한바 원안대로 승인.

第13號議案 서울지부 분소설치 승인의 건: 서울지부로부터 운영비 예산을 서울 건축사 복지회에서 충당하는 것을 전제로 8개소의 분소설치 승인을 요청하여 이를 부의한 바 분소통폐합 및 분소설치 운영규정 개정 등을 도서신고연구위원회에 위임, 연구토록 하여 협의된 사항을 차기 이사회에 부의, 결정기로 결의.

협의사항

第1號議案 회관 이용계획(안) 협의: 서울지부장과 협의한 후 차기 이사회에서 다루기로 협의.

기타사항

第1號議案 아카시아(ARCASIA) 가입문제: 재정임원에게 위임하여 결정기로 함.

第2號議案 다세대주택 현상설계 심사위원 구성: 다세대주택 현상설계 소위원회에 위임, 결정토록 함.

第3號議案 건축사업무및 보수기준 개정령(안)의 건: 한종언 이사 주관하에 김재우 이사가 협조하여 검토후 결정토록 위임함.

제4회 支部長會議 및 淨化中央協議會 개최

본회 지부장회의 및 정화중앙협의회가 8월29일 오후 1시부터 본회 회의실에서 열려 4시55분까지 약 4시간 동안, 5건의 의안과 건의사항, 기타사항 등을 협의 처리하였다.

吳雄錫 회장 주재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본회 임원 전원과 시도지부장 전원이 참석하였는데 안건별 협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第1號議案 86년도 예산편성 방향 설정

[협의] ① 86년도 예산은 현행대로 통합예산으로 편성하되 85년도 예산범위내로 동결시키고 지부 사업비 예산은 융통성을 가질 수 있도록 다목화 되도록 지침을 정하기로 협의.

② 감리 실적회비 징수는 유보키로 하되 계속 연구키로 협의.

第2號議案 협회창립20주년 기념행사 및 정기총회 개최준비에 대한 협의

[협의] 20주년 기념행사준비위원회 위원장은 지부장 회의시 협의된 내용을 수합하여 이사회에 부의 결정키로 협의.

第3號議案 회원사무소 간판모형에 대한 협의

[협의] 차기 지부장의회까지 각지부에서 간판모형안을 제시하여 결정키로 하고 이사회에 위임토록 협의.

第4號議案 85년도 회원건축 설계 작품전시회 개최에 관한 협의

[협의] 내용을 검토하여 문제점이 있으면 본회로 통보키로 협의.

第5號議案 건축사법 시행규칙에 대한 협의

[협의] 다세대주택의 건설부 지시사항을 각지부에 통보토록 협의

건의사항

부산지부장: 10년으로 되어있는 도면 보관 기간을 단축해 주도록 건의

경기지부장: 의료보험 탈퇴문제에 대한 대책수립 건의

전북지부장: 남원분소 설치 요망

대구지부장: 표준설계도에 대한 유권해석 회신요망

전남지부장: 분리감리에 있어서 도시지역에서는 설계자 본인이 직접 감리할 수 있도록 건의

서울·대구지부장: 계획도면을 제외한 원도는 증판으로 통일해 주도록 건의

부산지부장: 문제가 발생한 건물에 대한 감리는 설계자가 할 수 있도록 건의

전남지부장: 지부 정화위원회가 회원

을 제재할 길이 없으며 제도적인 차원에서 단속이 필요함을 건의.

기타사항

第1號 淨化小委員會 구성: 정화위원회 위원장은 김형인 이사로 하고 위원 선정은 회장에게 위임하되 김형인 이사와 협의 결정토록 협의



김경환씨(왼쪽)가 나상기회장(오른쪽)에게 아천건축상기금 1천만원을 전달하였다.

建築3團體 朝餐會

韓國建築家協會(회장 羅相紀)가 주최한 建築3團體 朝餐會가 8월13일 오전 8시 롯데호텔에서 열렸다.

본회의 吳雄錫 회장 俞景哲·李永熙 이사, 李春相 서울지부장, 任仁赫 사무처장, 大韓建築學會 任員, 韓國建築家協會 任員 등이 참석한 본 조찬회에서는 특히 본회의 회원으로 10여년간 설계사무소를 운영하던 김경환씨가 아천건축상 기금으로 1천만원을 기탁하는 전달식의 순서가 있었다.

금년 74세인 김경환씨는 모든 건축활동에서 손을 떼고 연천 일우에서 자연과 더불어 유유자적하며 여생을 보내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후배를 양성하겠다는 평소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 애써 오다가 이번에 한국건축가협회에 후진양성을 위한 기금의 일부로 쓰일 수 있도록 1천만원의 성금을 기탁한 것.

또 이날 朝餐會에서는 본회의 吳雄錫 회장이 지난 6월 9일부터 14일까지 방미하여 참석했던 미국 AIA 총회 상황을

설명했으며 10월 16일에는 일본건축사회 연합회 초청으로 총회에 참석하여 祝辭를 하게 되었음도 아울러 설명했다.

金眞一 大韓建築學會 會長은 學會誌가 9월호부터는 論文만을 게재하던 종전의 편집방침을 지양하고 읽는 잡지로 발전적인 탈바꿈을 하게 되었음을 알렸고 9월 21일 漢陽大學校에서 創立40周年 記念行事를 할 계획임을 밝혔다.

羅相紀 韓國建築家協會 會長은 中共에서 개최될 예정인 北京 심포지움에의 참석이 정책적인 문제로 아직 결론이 나지 않고 있음을 설명했다.

이날 특히 3團體가 합의한 事項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3단체 총연 합회 설립방안을 연구키로 합의
2. 각단체 실무책임자(국장)는 정보 교류를 유기적으로 할 것에 합의
3. 앞으로 조찬회에는 필히 실무책임자를 참석시킬것에 합의
4. 차기 11월 조찬회는 學會에서 주관할 것에 합의

多世帶住宅懸賞設計에 368명 응모

건설부의 다세대주택 설계지침도 작성 보급계획에 따라 본협회가 실시하였던 다세대주택 설계계획안 현상공모는 계획대로 8월31일 마감되었다.

현상응모 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 현상응모 현황

지부명	응모자	응모신청현황		
		건축사사무소	학생	일반
서울	227	178	66	33
부산	13	10	3	
대구	13	8	5	
인천	4	1	3	-
경기	15	8	5	2
강원	3	3	-	-
충북	12	6	5	1
충남	11	2	9	-
전북	2	-	2	-
전남	7	1	5	1
경북	9	3	6	-
경남	1	-	1	-
제주	1	1	-	-
계	368	221	110	37

나. 현상설계 계획유형

2세대형	3세대형	4세대형	6세대형
527건	190건	559건	406건

病院建築設計 計劃세미나

본회는 8월20일 본회 강당에서 일반회원과 2급회원 209명을 대상으로 건축사업부에 참고하고 9월1일 실시되는 건축사 2차 실기시험에 대비토록 병원건축설계 계획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구분	2급회원		건축사사무소회원 및 비회원 (기타)	계
	특별회원 참석자	일반회원 참석자		
인원수	125	88	97	209

85년도 제2차 建築士研修 실시

본협회는 건축사법 제30조의 7 및 동

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본협회에서 주관하여 시행중인 '85년도 건축사 연수중 제2차 연수(지방순회연수)를 9

월9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실시했다. 지역별 순회일정과 참가인원은 다음과 같다.

지역별 순회일정 및 장소

지역	교육진행지부	교육참가지부	교육일	교육장소
대전	충남지부	충북·충남	9. 9 (월)	카톨릭문화회관
광주	전남지부	전북·전남	9. 10 (화)	광호회관
부산	부산지부	부산·경남	9. 12 (목)	반공연맹부산지부회관
대구	대구지부	대구·경북	9. 13 (금)	대구지부회관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제주지부는 별도계획에 의거 시행예정)

연수내용 및 강사

시 간	내 용	전 공 과 목	강 사
12:30~13:00	등 록		
13:00~14:50	제 1 교시	건축물에너지 절약계획	손장열 한양대 공대교수
15:00~16:50	제 2 교시	한국의 건축사	신영훈 문화재위원회 전문위원
16:50~17:30	교육정리		

참석현황

지부 참석	충북	충남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전북	전남	계
대상인원	53	117	229	56	293	100	57	128	1,033
참석인원	51	120 (신규3포함)	229	59 (신규3포함)	287	95	57	127	1,025

支部消息

仁川直轄市支部 (지부장 高鼎永)

市廳舍竣工紀念植樹 기증

신축중인 市廳舍가 85년말로 준공일을 앞두게 됨에 따라 지부 회원 전원이 뜻을 모아 기념식수를 위한 수목 2그루를 인천시에 기증하였다.

50년생 사철나무는 키가 3m 둘레가 4m나 되며 역시 50년생 라일락은 키가 3.5m 둘레가 4.5m나 된다.

優秀, 貧困學生에 장학금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나 가

정이 빈곤하여 학업에 어려움을 받고 있는 각급학교 건축학도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장학금을 마련, 8월27일 오후 2시부터 지부 회의실에서 그 전달식을 가졌다.

고창영 지부장이 장학증서를 전달한 자리에는 지부임원과 복지회 임원 10명이 동석하여 장학생들을 격려하였는데 장학금 지급 총액은 1백45만원에 달했으며 장학금 수혜자는 다음과 같다.

정원국: 인하대 3년 장학금 30만원
민문규: 인천대 3년 장학금 30만원
조소연: 인하공전1년 장학금 20만원

장학증서를 전달하는 고창영지부장



기능자대회 출전선수에게 격려금 전달한 이종은 경기도지부장(오른쪽끝)



이광행: 인천전대1년 장학금 20만원

전효구: 인천기계공고2년 장학금

15만원

공재복: 대헌공고2년 장학금 15만원

고동규: 운봉공고2년 장학금 15만원

京畿道支部 (지부장 李鍾殷)

淨化委員會 개최

비위회위원회에 대한 경고조치를 발했다.

경기도지부는 8월3일 정화위원회를 개최하고 6월25일부터 7월23일까지 건축사사무소 기초조사를 실시, 조사지 지적된 비위회원 조치에 대하여 협의하였는데 1차적으로 위원장이 개인면담을 한 후 경고조치하기로 한것. 일정기간내 시정이 안될 경우 지부정화위원회는 다시 위원회를 소집, 처리하기로 하였다.

技能者大會 출전선수에게 격려금

제20회 전국기능대회가 9월4일부터 11일까지 8일간 전주에서 개최됨에 따라 출전하는 경기도 대표 선수들을 성원하는 뜻으로 8월29일 지부장단이 직접 현지를 방문하여 파주중고와 서신석재에서 출전하는 선수들에게 격려금으로

40만원을 전달하였다.

忠清南道支部 (지부장 閔榮基)

시즈오카縣 建築士會와 交流合議書
충남지부는 8월26일 일본 시즈오카縣 건축사회와 건축사 교류촉진을 위한 합의서에 조인함으로써 양지부 건축사간의 이해와 우호증진, 상호 기술교류와 건축정보·자료교환의 길을 터놓았다.

조인식에는 충남지부에서 역대지부장, 임원, 회원 다수가 참석하였으며 시즈

충청남도지부는 시즈오카縣 건축사회지부와 건축사교류 합의서에 조인하였다.



오카縣 건축사회에서는 하마마스 지부장, 가네코 게이시씨등 9인이 참석하였다. 이후 양지부는 정기적인 간행물과 자료의 교환및 의견교환을 도모하고 상호 방문과 시찰을 행함으로써 우호증진을 도모하고 기타 양지부간의 필요사항 발생시는 수시로 협의하기로 하였다.

全羅南道支部 (지부장 趙奎元)

體育誠金 기탁

전라남도지부는 8월9일 자매결연단체인 전라남도 조정협회 경기단체 선수들의 사기를 높이고 道體育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 체육회를 통하여 조정협회에 체육진흥성금 50만원을 기탁하였다.

水害復舊 지원

전라남도 지부는 수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295동의 수해가옥에 대해 무료로 설계지원을 해주는 한편 현지기술지도도 해주기로 하였다.

濟州道支部 (지부장 梁昌完)

결연아동에 誠金

제주도지부는 8월23일 결연아동에게 하반기 지원금을 전달하였다.

2명의 교육보조비로 6만원, 2명의 양육보조비로 8만4천원, 도합 14만4천원을 전달한 결연아동 지원사업은 연간계속사업으로 책정, 추진하고 있다.

委員會消息

제 4 회 制度委員會 개천

제 4 회 제도위원회(위원장 安箕泰)가 8월10일 오후2시부터 6시30분까지 大邱支部 회의실에서 吳雄錫 회장을 비롯 黃鑄周 대구직할시 지부장, 黃在澤 부산직할시지부장, 金永吉 경북도지부장과 제도위원회의 安箕泰 위원장, 俞景皙 부위원장, 金在佑 위원, 朴弘雨 위원, 尹鉦 위원, 李海星 위원 및 본부 任仁赫 사무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본 위원회는 각위원회별 연구과제에 대한 진행성과 분석과 과제의 추가선정 및 대책수립에 대한 진지한 논의로부터 시작되어 기타사항의 토의를 끝으로 회의를 마치고까지 4시간이상 시종 열띤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었는데 회의내용을 요약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聯合會制度研究

安箕泰 : 연합회건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時流와도 긴밀한 관계가 있으므로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강조.

俞景皙 : 협회 활성화를 위하여 제도적 측면에서 연구한 결과를 발표, 日本의 연합제도와 현황 설명.

黃在澤 : 협회의 점진적 발전을 위한 연합회제도 연구의 필요성 재강조.

吳雄錫 : 87년부터 지방자치제가 실시될것을 감안, 본협회도 체제, 조직, 운영, 예산 등과 관련한 법개정, 정관개정 등 광범한 작업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총회전에 심포지움을 개최하여 방향을 설정할 것을 제안.

圖書申告制度研究

吳雄錫 : 도서신고제도 개선문제에 관하여는 회원의 저작권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고 신고위원회의 정립과 인식이 필요하며 이와 더불어 전국 각분소의 통폐합 조정 등 균형있는 분소업무를 위한 연구도 지속해야할 필요가 있음을 피력.

支部特別豫算研究

吳雄錫 : 분소운영비가 광범위하여 이

를 양성화하는 방안이 좋겠으나 우선 지부별로, 필요한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되 타회원이 도서신고시 징수하는 회비는 일정하게 집행되도록 해야 할 것 같으며 다만 ① 지부위원회 구성, ② 지방사업 전시회등 세분화 사업전개 ③ 지방관공, 섭의, 홍보비 양성화 ④ 자동차구입, 유지비등 지부별로 필요한 사업을 별도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는 의견제시.

金永吉 : 사업비 일부분을 일정%를 정해 지침으로 하달하면 지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되기를 건의.

[합의사항] 차기회의시에는 지부에서 등록할때 그 룰에 따른다는 내용을 연구해서 다루기로 하고 신입회원 가입등도 연구토록 함의.

福祉厚生研究

朴弘雨 : 그간에 연구한 결과 각지부별로 복지회등을 운영하고 있어 중복되는 관계로 전에 협회에서 운영하던 실적회비 징수시 별도 1%를 장기적으로 받아 시행하는 방안 설명.

吳雄錫 : 각지부마다 내용이 상이하므로 이에대한 통일화가 필요하다는 내용 설명.

[합의사항] 통일화 될 수 있는 방안을 9월에 내놓도록 연구할 것.

稅務研究

李海星 : 금년 10월경, 내년 세율조정 때 맞춰 조정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세율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무기장자에 한한 사항으로서 기장을 원칙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설명.

吳雄錫 : 세율조정은 계속 연구 건의가 필요하므로 노력할 것 당부.

尹 鉦 : 건축사의 특수성을 감안 일선사무소에서 인정되도록 필요성 강조와 기장에 문호개방, 합리적으로 기장유도 그리고 20%의 소득표준율이 되도록 요

망.

金永吉 : 세무는 계속해서 연구해야 하며 고율의 세율을 낮추도록 요망.

監理點檢研究

金在佑 : 그간 수차례에 걸친 회의로 설계, 감리 구분시행의 문제점을 시정해서 지역실정에 맞도록 운영되고 있으며 성실한 업무와 책임의 한계 그리고 충분한 보수를 받도록 연구할 필요를 강조.

金永吉 : 교체와 전담하는 과정에서 노약자는 감리업무에서 가급적 제외하고 능동적이고 활동성 있는 회원이 할 필요를 강조.

黃鑄周 : 동일한 설계로 대지필지가 각각 다른 일건의 대지내 감리비는 각각 다르게 책정도록 보수기준을 명문화할 필요성 강조. 표준설계로서의 정의 정립의 필요성 강조.

吳雄錫 : 표준설계도의 정의와 보수기준의 잘못된 부분을 개정 작업하고 있음을 밝힘.

기타사항 협의

- 다세대 주택 보수요율의 상이점을 개선, 단위세대별로 조정 요망.
- 20주년 기념행사는 2안이 바람직하나 현실적으로 좋은 방향 실시토록.
- 상주 감리비의 현실화(설계, 감리비등 문제 포함)
- 건축사가 일한만큼 받도록 개정 필요성 강조.
- 회원회에 의한 부회장 및 부지부장제도 필요성.
- 이사의 수가 9인보다 15인선으로 개정 필요.
- 개정전이라도 수석이사, 수석간사제도 필요성.
- 지부장 이·취임식제도와 인수인계는 총회후 유예기간 필요.
- 타지부와 동일하도록 인천, 대구지부는 내년까지로 임기연장 방안강구.
- 지부별로 정화사업 활성화 필요성 강조.
- 우선 근린생활 시설에 한하여 건축사의 업무제한 상한선을 총회에서 결의 되기를 요망.

日本建築士會聯合會 訪問



일본건축사회연합회 건물 앞에서 기념촬영

日本建築士會聯合會의 초청을 받아 8월10일과 11일 KAL기편으로 日本建築界 視察의 길에 올랐던 視察團 1진 18명, 2진 17명등 35명이 7박8일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8월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귀국하였다.

日本 건축계 시찰중 김형인 이사를 비롯, 박용한, 김정웅, 김세호, 최용정, 설영웅, 김동환,곽정석 회원과 서울지부 윤용진 사무국장, 본부 김성배 기술부장등 10명은 8월12일 오후 3시 도쿄 소재 日本建築士會聯合會를 예방하였으며 오다 회장, 가나가와 부회장, 와다 전무이사, 이노 이사, 호리우찌 도쿄 건축회장, 하기와다 도쿄 전무이사, 이도 건축기술보급소 역원, 마찌다 사무국장 등의 따뜻한 환대를 받았다.

양국 인사들은 회관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각기 자기나라 인사에 대한 소개와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으며 선물교환 후 오후 4시경 간담회를 마쳤다.

다음은 간담회 석상에서 양국인사들이 나눈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오 다 : 여러분들의 본연합회 방문을 환영하며 지난 3월 訪韓시 배풀어준 환대에 감사한다.

귀국의 建築士法이 잘 된 것이 부러웠다. 우리 法은 운영상 문제점이 있었는데 귀국의 建築士法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

곧 日本 國立劇場 설계를 현상공모할 예정이므로 돌아가면 많이 응모해 주시기 바란다.

김형인 : 초청해 주어서 감사하다. 오다 회장께서 지난번 우리 협회 임시총회에 참석하여주어 감사했다. 자세한 말씀은 오웅석 회장께서 귀연합회를 방문하여 말씀 드릴 예정이므로 이만 인사에 대신 한다.

일본 방문단 36명중 10명이 귀연합회를 방문하였다.

여기 개정된 우리 건축사법을 가지고 왔다. 참고하기 바란다.

오 다 : 각국의 법을 수집하던 차인데 개정된 법을 보내주어 대단히 고맙다.

일본은 설비기술자격이 별도로 없는데

앞으로는 할 예정이다. 귀국의 士法 내용은 어떤 것인가?

박용한 : 우리는 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건축설비 기술사가 있다.

김형인 :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체제 갱신, 주택등 소규모 건축물의 설계자와 공사감리자 분리 등 士法改正 主要内容 소개)

와 다 : 일본의 보수기준은 몇년 전 없어졌다가 있어야할 필요성이 있어 새로운 보수기준을 마련하였다. 그 내용은 설계 감리 및 설비업무로 나누어 건축사의 노고에 따라 보수기준을 구분하였다.

김형인 : 우리는 건축사업무 및 보수기준에 의해서 정부예산편성에 반영하고 있다.

오 다 : 일본은 설계주문할 때 입찰을 허용하고 있다.

김형인 : 우리는 입찰에 참가하면 윤리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는다.

일본측 : (이구동성으로) 부럽다.

김형인 : 그렇지만 지명현상및 공개현상등 현상용모제도는 있다.

이 노 : 일본의 입찰제도는 민간에게는 없고 정부시행공사에서만 있으며 없애달라고 해도 없애주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요코하마 현에만 입찰제도가 없다.

김형인 : 우리 협회에서는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귀국의 건축사법, 보수기준, 연합회 규정 등을 필요로 한다.

마찌다 : 보수기준은 이번에 개정된 내용이 어제 인쇄가 되어 준비된 것이 있으며 기타 준비된 자료를 드리겠다.

「오다」 회장 환영사



全羅北道支部篇



全炯直 支部長

지부장인사

지부순례란을 통하여 처음으로 전국회원 및 편집관계자 여러분에게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건축사지에 본란을 기획하고 편집함으로써 여러지부의 현황과 사정을 알게되는 계기가 되고 이를 토대로하여 미흡했던점 개선해야될점 등을 연구할 수 있게된 것은 대단히 보람된 일이라 생각되어 새삼 깊은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 협회도 설립된지 20여년 온갖 시련과 역경을 디딘고 뚝뚝하고 의젓한 성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창립당시와 지난과거를 회상하여 볼 때 이 엄청난 발전에 엄숙한 역사의 순간을 대하는 경건함과 깊은 감회를 억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발전은 결코 몇몇회원만의 힘이 아니요 회원총화의 소산이며 거룩한 회원의 상아탑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양적인 비대가 질적인 향상만을 의미할 수 없다는 생각에 미칠때는 아직도 요원한 아쉬움을 안겨줍니다.

내적인 질량감·외적으로의 지위향상, 나아가 회원의 복리증진 등, 아직도 이룩해야될 숭한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진정한 창작예술을 위한 토대는 아직도 안정된 것이라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부터가 우리의 최대한의 힘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지위는 우리의 힘과 인격으로만이 상승시킬 수 있을 것이고 총력으로 복지향상에 주력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적은 이익에 집착하지 않는 대범성으로 대의를 위하여 매진할 수 있는 회원총화가 더욱 절실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회원 여러분의 건투를 빌며 인사에 가뵙합니다.

성장과정

법률 제1536호로 제정 공포된 건축사법에 의하여 인주성회원의 7 인이 1965년 10월 16일 회동하여 발기를 하였다.

이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1965년 11월 18일 전라북도 공보관에서 건축사 12인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초대 김성근지부장을 선출하고 감사 3인과 감사 2인등의 임원을 선임하여 전주시 경원동 1가128번지에 사무실을 개설 함으로써 명실공히 대한건축사협회 전북지부가 결성되었다.

지부 출범이래 두번의 사무실이전을 거쳐 1980년 2월 17일 전주시 서노송동 635번지 대륙빌딩(508호)에 41평의 그 리 넓지는 않지만 불편없는 공간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

또한 지부소속회원 57명이 전주를 비롯 한 군산, 이리, 정주, 남원시 및 김제, 부안, 고창군등에 주재하여 건축사사무소 47개소로 분포되어 있으며 지부산하에 군산 이리의 2개분소가 설치되어 각각분소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위에서 기술한바와 같이 창립당시의 회원이 17인이 오늘에 57명이라는 많은 숫적증가가 있었으며 회원의 업무실적으로도 1971년에 229,801평방미터에서 1984년에는 1,232,619평방미터로 약 6배의 업무 신장이 되었다.

그러나 이 업무의 신장이 과연 회원의 실적업무 및 소득의 증가라고 볼 수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그 이유는 타지부 회원들의 무분별한 업무의 침식으로 도세가 약한 본 지부회원들로서는 왕왕이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에 봉착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대형건축물에 대한 업무수탁은 연고권이나 사무소시설비미라고 자위한다손 치

드라도 비정당한 보수로 소형건축물까지 업무침식을 감행한다는 것은 우리 전국 회원이 자성해 볼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회원의 총회를 통한 건축사의 업무의 정상화와 회원복리증진을 목적으로 1977년 전북지방건축사 공재회를 발족하여 온갖시련과 난관을 극복하고 제정비하여 오늘의 전북건축사 복지회가 운영되어 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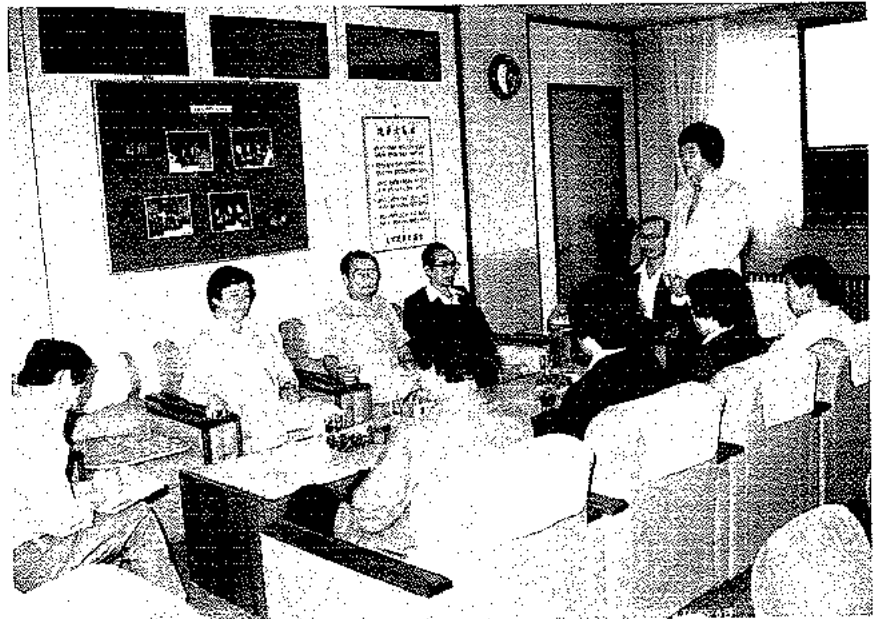
이를 통하여 지부사업을 보조하면서 한정된 업무의 영역을 넓히고 조형창작 예술인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견지하면서 사회사업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예를 들어 1977년도의 이리역 대형폭발사건에 따른 피해건물과 1978년도의 부안 제화도 수몰 이주민 주택의 주민 안전을 위한 건물안전진단 등을 통해 피해복구에 전회원이 무료봉사하며 사회사업에 적극참여함으로써 협회의 홍보와 더불어 건축사 이미지 쇄신에 기여하였고 회원의 전체적인 복리증진에 많은 성과를 이룩하였다.

또한 도복지회에서는 아직까지 지부회관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음을 통감하여 회관건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원의 업무실적에 따라 회관건립기금을 적립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기금이 계속증가 확보됨으로써 1983년 4월 22일 전주시 덕진동 2가189-4번지의 대지를 4,000여만원에 매입하여 83년 7월 21일 등기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적립된 현금이 약 7,700만원이 확보되어 있으므로써 머지 않아 지부회원의 염원인 회관건립이 실현되리라 확신하는 바입니다.

초창기에 혼란과 어둠속에서 이제는 명실공히 건축계를 주도하는 대표적 기구로 성장 발전함과 동시에 각종 지역사회



유관기관간담회광경

임원현황

직 위	성 명	사 무 소 명	전 화	비 고
지 부 장	전 형 직	동서건축사사무소	2-4983	전주
			6-7208	
간 사	최 석 규	삼인건축사사무소	2-5033	전주
	박 욱 규	군산건축사사무소	2-3453	군산
	조 용 선	유진건축사사무소	2-8732	이리
이리분소장	문 상 식	건축사사무소 신도	52-3796·3304	이리
군산분소장	문 준 영	도시동인건축사사무소	2-4060	군산
감 사	송 천 규	삼인건축사사무소	2-8667	전주
	유 철 갑	유림·전라건축사사무소	75-7801~03	전주

의 개발위원으로 위촉되어 지도자적 위치가 확보됨에 따라 회원의 권익신장과 지위향상에 많은 발전을 가져오게 되었다.

기타주요업무및사업실적

1. 위법건축물의 발생을 방지하고 위법건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조성과 건축행정질서확립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주, 군산, 이리에 자율건축현장 상설 점검반 운영

2. 원활한 건축행정수행과 행정관서의 유대강화를 위해 대관청 및 회원 연석 간담회 실시

3. 선진외국의 건축정보수집 및 현지 시찰 추진

4. 건축물의 질적향상을 꾀하고 위법

역 대 지 부 장

대 수	지 부 장
초 대	김 성 근
2 대	신 상 희
3 대	조 재 현
4 대	최 석 규
5 대	이 영 수
6 대	김 사 옥
7 대	김 광 서
8 대	김 철 수
9 대	문 상 식
10 대	전 형 직

관할별 회원현황

구 분	회 원 수	관 할 구 역
지부직할	37	전주및분소관할외지역
군산분소	9	군산, 옥구
이리분소	11	이리, 익산
계	57	

년도별 회원수 및 도서신고현황

년도	구분	회 원 수	도서신고건수	연 면 적 (M ²)
1971		26	1,973	229,801
1972		28	2,207	285,314
1973		34	3,636	460,835
1974		37	4,225	497,937
1975		41	4,145	518,783
1976		35	3,952	476,925
1977		45	4,624	759,294
1978		44	6,019	1,165,452
1979		48	6,014	1,143,740
1980		47	6,324	1,273,269
1981		47	6,315	997,580
1982		49	6,115	1,243,837
1983		50	5,246	1,248,344
1984		54	3,976	1,232,619
1985		57	2,626	751,178 (85년 7 월 말현재)

건축물 발생의 방지를 위한 공사감리반 설치 운영

5. 대민의 편리 도모를 위한 건축행정민원상담실 운영

6. 회원 및 건축사보 업무 강습회 실시

7. 회원사무소 실태조사(2회)를 실시하여 운영실태 파악과 업무지도 실시

8. 업무의 능률화와 보조원 관리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보조원 수첩발급 및 보조원 기록카드작성관리

9. 농촌 일손돕기운동 전개

10. 본도체육발전과 도민일체감 조성 위해 전북 태권도협회와 자매결혼을 맺고 체전 성금전달(100만원)

11. 자율 정화활동 적극 추진으로 정화운동 참여 의식고취와 질서확립 유도

어려웠던 지난 과거를 거울삼아 앞으로 계속 다가올 고난과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역량과 기틀을 다지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회원총화에 최선을 다하여야겠다.

첫째: 수시 친목행사 및 모임을 실시하여 회원일치감을 조성하고,

둘째: 각종 사회사업에 참여하여 지원하고 국민의 신뢰와 친근감을 유발하여 협회홍보와 아울러 건축사 이미지 쇄신에 기여하며,

셋째: 회원 복지회를 계속 연구발전시켜 회원 복리증진에 최선을 기하겠으며,

넷째: 건전한 건축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각종회의를 통한 건축사의 의식개혁 정신함양과 작품향상을 위한 국제교류를 적극 추진하고,

다섯째: 회원의 염원인 지부회관건립을 기필코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으며,

여섯째: 회원의 애로점 타개 및 건축행정의 발전과 도약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수시 간담회를 개최 회원의 권익옹호에 최선을 다 하겠음.

본회에 대한 건의

1. 지부와 원거리에 있는 남원시와 정주시 주재 회원의 업무편의를 위하여 2개분소의 설치 요망

2. 행정능률화를 꾀하기 위해 본협회의 사무기기 현대화를 추진하여 이첩공문 등을 일관서류 작성하여 지부의 업무량 경감을 요망

3. 회원의 노후 대책을 위한 장기계획 수립시행 요망.

<다음호 전라남도지부편>

草家は 塔는데 住宅文化는

金 榮 洙
종합건축사사무소 建築國

요즘 도시에서는 초가집을 구경할 수가 없다. 그야말로 깊은 시골이 아니면 찾기도 힘든 일이다. 고속도로나 국도변의 집들은 대부분이 울긋 불긋한 스텔트 지붕이다. 그러지 않았으면 종을 제주도까지도 육지를 쏙 덮고 있다. 민속촌이나 섬의 민속마을을 찾는 것이 구경의 지름길처럼 되어버렸다.

보릿고개와 더불어 초가집은 대대로 이어온 가난의 상징이었기에, 살기가 조금 나아지던 박대통령시절, 새마을운동과 함께 대부분의 지붕이 스텔트로 탈바꿈하기 시작했다.

우리의 주택문화가 왜곡되고 오도되는 시련과 충격의 절음마가 시작된 것이다.

이조때 계층에 따라 집의 구조와 규모가 달라야만 했던 왕권시대도 있었지만, 오늘날에 와서도 행정의 시행착오는 문화의 흐름까지 막아 놓거나 또 바꾸어 놓기도 하였다.

그러나 고였다가도 언젠가는 다시 흘러가는 것이 강물이듯이, 문화 또한 강물처럼 제갈길을 따라 가는 것, 흐르는 강물을 보지 못하고 저울강위의 얼음만 보는 행정의 과오가 조금 지나쳤다고나 할까.

수천년 이어져온 민족의 생활감정과 주거의식을 하루아침의 물리적 작용으로 그것도 설익은 전시행정으로서는 막을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묶어두고 얹어매는 관제의 예는 그 수가 너무나도 많다.

많은 규제 가운데서도 주택문화에는 특기할만한 금지사항이 하나 있다. 대지 250평, 연면적 150평 이상의 주택은 신축이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현실적으로 우려되고 있는 갖가지 부정적 측면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것보다는 상응하는 조건아래 점진적으로 허용하는 쪽

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생각해 본다.

문화행정의 수준을 높이면서, 다양하고 풍부한 주택문화를 우리의 세대에서도 향유하고, 또 후세에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할 문화가치를 소홀히 해서도 안 될 일이기 때문이다.

일정규모 이상의 집에서는 생활을 못해본 무경험세대, 소정평수이상의 마당은 구경도 못해본 문화의 망각세대, 정말 답답하고 우스꽝스러운 선조들도 다 있었다고 육박지도 모를 후대들이다.

그런 그렇고 또 한가지 웃지 못할 예를 들어 보자.

다름아닌 주택에서의 설계자와 감리자를 분리해야 한다는 년센스.

건축사법에서는 준공검사자지 감리자는 아니라고 슬쩍 비껴갔지만, 지정 감리자가 사실상 허가이후의 업무를 공식적으로 책임지고 있는게 현재의 실정이다.

위법주택의 해소라는 교육지책을 핑계 삼아 하나의 작품에 다른 두 건축사가 게재되는 창작의 물이해 풍토는 그 어떤 언어로도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것이다. 건축행위를 허가나 준공따위의 단순행정으로만 인식하지 말고, 예술과 문화라는 상위개념의 문화행정임을 앞질러 보았다면, 이런 종류의 요법은 심사숙고되어야 옳을 일이다.

과분한 탓인지 모르지만 어느때 어느 곳에서 이런 시대적 착오가 있었는지, 또 창작의 포기과 간섭이 타의에 따라 이렇게 무질서하게 난무할 수 있는지를 도무지 알 길이 없다.

주택문화에 대한 외구심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이번에는 다세대주택이 주택의 위계질서를 통채로 뒤흔들어 버리고 말 것 같다.

가득이나 승승장구하는 아파트나 연립주택의 틈바구니에서 눈치보기에 급급했

던 단독주택이었는데, 아예 공동주택으로 천하통일이라도 하려는 듯한 사회일각의 분위기가 우려스럽기까지 하다.

불경기라는 불청객까지 끼여들어 소형다세대주택으로 돌파구를 열어 보려는 움직임 때문에, 많은 수의 단독주택지가 다세대주택으로 매워져야 할 운명에 처해 있음도 부인키 어려운 사실이다.

무수한 생업들이 행정처분을 받아가면서 절대 금가지 되어 왔던 미니층과 옥외계단, 이제는 다세대주택이라는 합법의 탈을 쓰고 주택문화를 마구 유린하게 될것도 너무나 쉽게 예견되는 일이다. 누가 뭐래도 주거의 최적조건과 환경여건은 단독주택에서 찾아져야 하는 것, 주택문화의 진정한 이상 또한 여기에서 구하지 않으면 안될 일임에도, 단독주택의 보호보다는 다세대주택의 두둔갈아 앞일이 적정스러워 지는 것이다.

말을 줄여 한가지 분명한것은 역사의 수레바퀴가 후진해서는 안되는 것처럼, 우리의 주택문화도 그 어떤 대가를 치루더라도 후퇴해서는 안되겠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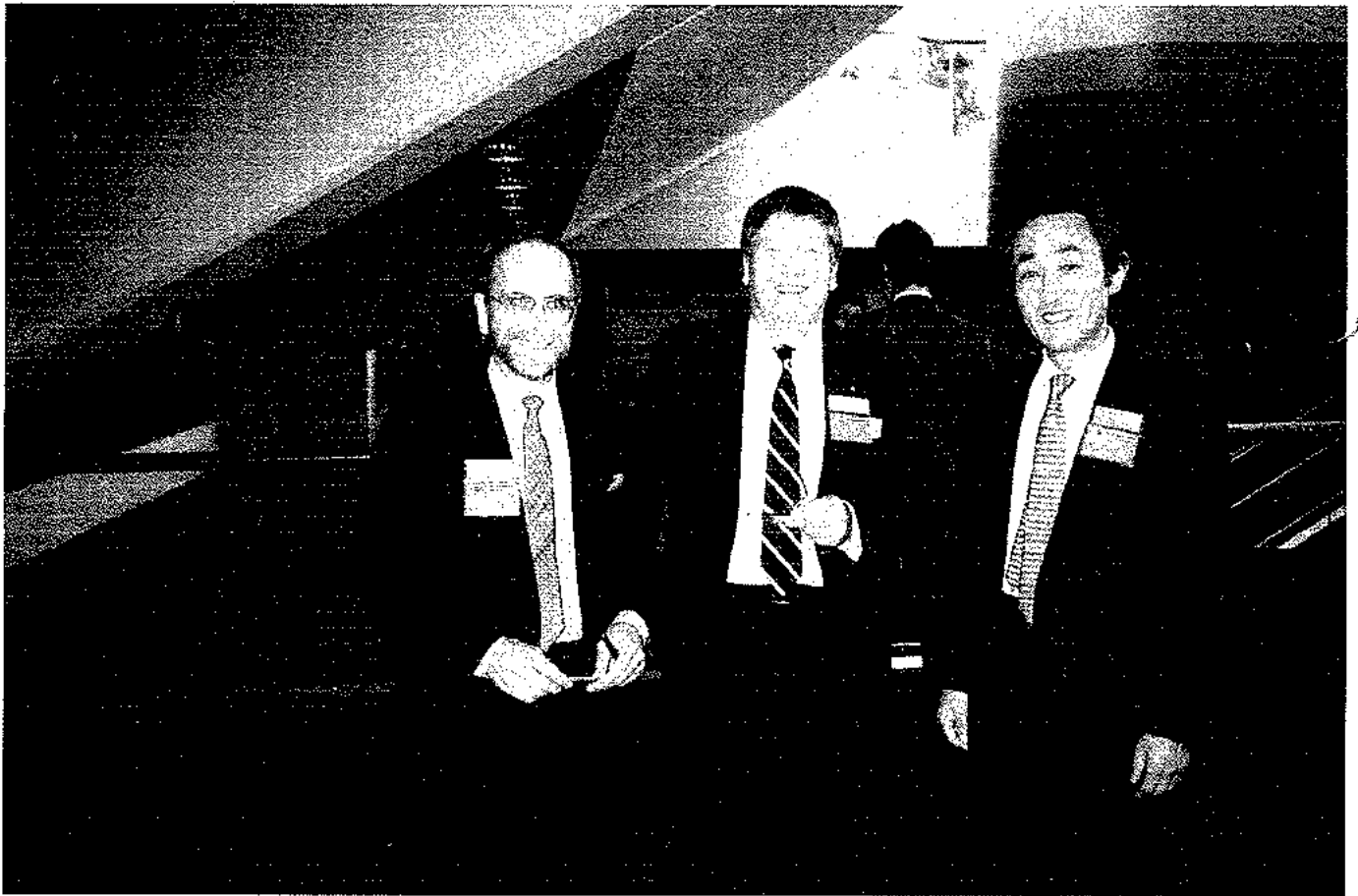
여기에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 가야할 한가지 엄연한 사실이 있다.

빈대 한마리 잡으려고 초가삼칸 태운다는 우리나라 속담을 생각해 보면 더욱 자명해 지듯이, 지금까지의 반문화적 요소들이 바로 빈대잡이식 초가태우기에 불과한 것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다.

위화감이나 위법때문에 거대한 주택문화를 표류시키거나 역류시키는 어리석음을 다시 저질러서는 물론 안되겠지만, 앞서 지적된 몇가지 어리석음 만이라도 초가가 다 타기 전에 불을 끄고 바로 집는 큰 반성과 시정을 서둘러야 할때가 바로 지금이다.

다시한번 우리의 주택문화를 생각하면서 이 글을 맺는다.

(7 월호의 "건축원"을 建築國으로 정정합니다)



AIA總會에서 (中央) AIA會長 R. BRUCE PATTY (左) 常勸副會長 LOUIS L. MARINES (右) 吳雄錫 本會 會長

'85 A.I.A. 總會에 다녀와서

吳 雄 錫
本協會 會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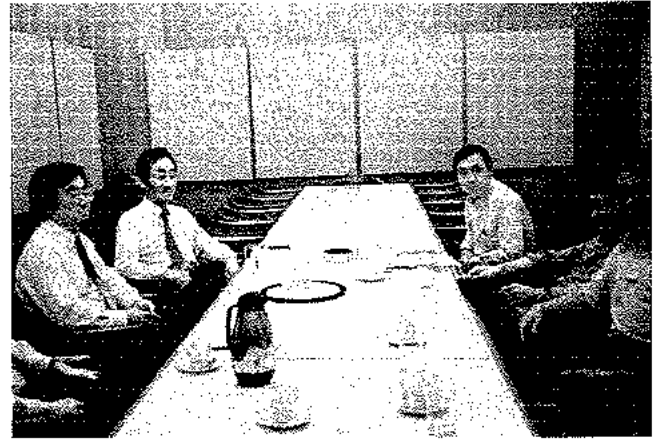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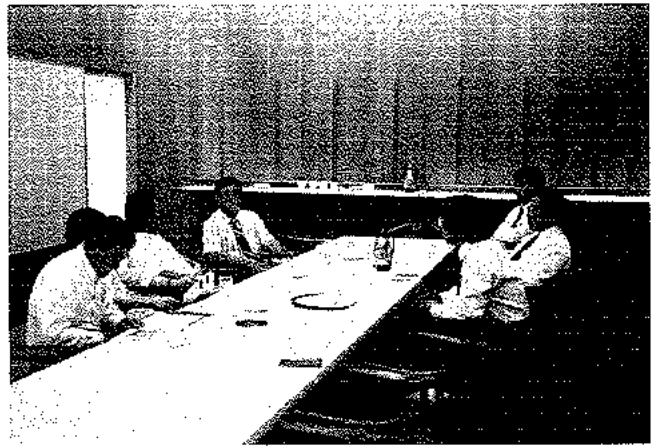
본인은 A.I.A. (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 의 초청으로 샌프란시스코 (San Francisco) 에서 개최되었던 '85 A.I.A. 總會에 참석하여 總會行事的 構成과 進行을 지켜 보았으며 아울러 WASHINGTON D. C. 에 위치한 A.I.A. 本部를 방문하여 A.I.A. 의 組織과 運營을 살펴보고 우리 協會와의 親善交流와 情報資料의 교환, 그리고 建築界의 공동관심사에 대한 의견교환을 했으며 로스엔젤레스 (Los Angeles) 를 비롯한 각 주요도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在美僑胞 建築士들을 만나 우리 協會의 소식을 전하고 美國의 건축계 현황을 살펴보고 서로의 교류와 발전을 위하여 협력할 것을 약속하고 20일간의 美國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였다.

85년 6월 5일, K. A. L. 기편으로 金浦공항을 출발하여 약 10시간의 비행으로 L. A. 에 도착하였다. 그곳에서는 4시간 머물렀으며 A.I.A. 總會에 참석하기 전에 美國의 실정을 익히는데 좋은 기회가 되었다.

제일 먼저, 우리 協會의 前任會長을 지내시고 L. A. 에서 이민생활을 하고 계신 姜大雄씨를 만나 오랫동안 단절되었던 서로의 소식을 전하며 환담하였고 L. A. 僑胞 建築士會 會長 박기서씨와 연락이 되어 매마침 앰배서더 호텔 (Ambassador Hotel) 에서 있었던 박기서씨 설계의 코리아타운 플라자 (Korea Town Plaza) 건립을 축하하기 위한 저녁 모임에 초대되어 그곳의 교포 건축사들을 위시한 그곳 30만 교포사회의 지명인사들과 만나 인사를 교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LA郊外에서 姜大雄 前任會長과 같이



LA의 GRVEN ASSOCIATES 會議室에서 LA僑胞 ARCHITECT 분들과

다음 날에는 박기서씨의 주선으로 박기서씨가 파트너로 근무하고 있는 그루엔 어소시에이츠(Gruen Associates)의 회의실에서 姜大雄 전임 회장을 비롯한 8명의 교포 건축사들이 모여 서로의 관심사에 대한 환담을 하였고 약 2백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는 그 사무실을 둘러 보았다. 그 사무실은 서울의 教保 빌딩을 설계한 “사자페리”가 그 무렵 파트너로 있던 사무실이다. 그곳 사무실의 1인당 소요면적은 한국의 사무실에 비하여 넓은 편이어서 1백20cm×2백40cm 크기의 제도판과 사무용책상하나에 참고도면과 자료등을 놓고 쓸수있는 작업대 등을 1백50cm 높이 정도로 삼방을 막은 방 안에 7자형으로 배치한 형태로 일하고 있었으며 도면보관실, 청사진실, 모형실, 컴퓨터실, 강의실, 면담실 등 부족한 것없는 화려한 분위기의 이상적인 사무실이었다. 그곳의 교포들은 그무렵 한창 '88올림픽 선수촌의 國際懸賞設計' 結果發表를 궁금하게 기다리고 있었고, 서울의 건축경기와 건축사들의 생활상같은 것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다.

샌 프란시스코에서의 A. I. A. 總會는 6월 9일부터 14일까지 1주간에 걸쳐 모스콘센터(Moscone Center)라고 하는 대회의장에서 개최되었다. 그 會議에는 A. I. A. 명예회원으로 있는 金壽根씨와 재미교포 A. I. A. 회원인 정인준씨, 우디차(Woody Cha), 유결씨등 몇 분이 동참하였고, 이웃 日本의 建築學會會長을 비롯한 몇 명이 동양인으로서는 눈에 띄었다.

會議場은 약 1만평 가량되는 지하실로 상부는 잔디밭

으로 덮여 있으며 입구부분만 지상으로 노출되어있는 이 상적인 대광장건물이었다. 내부중앙에는 약 5천명 정도가 앉을 수있는 의자가 배치되어있고 양측에는 5백餘個 社가 출품한 각종 건축자재가 전시되어 있으며 주변에는 中小會議室이 있고, 벽면은 設計作品을 전시해 놓았다.

豫備會議 등 각종모임이 6월 6일부터 시작되었고, 總會開幕式이 6월 10일(월요일) 10시에 거행되었다. 우리 일행은 식당에 도착하여 먼저 貴賓接受口에서 등록을 마치고 준비되어있는 명찰과 회의자료를 얻어들고 會長室로 안내받아 會長(R. Bruce Patty) 및 부회장들과 반기이 인사를 나누다다음 대회의장에 마련된 各國代表들과 같이 좌석에 앉았다.

회의가 진행되자 먼저 외국에서 온 金壽根 씨등 명예회원들과 대표들을 소개하는 순서가 되어 수십명에 달하는 각국 귀빈을 일일이 호명하여 일어서게 한다음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는 것이었다. 본인의 경우에도 자상한 소개와 열띤 박수를 받았고, 일어서서 손을 흔들며 답례하였다.

A. I. A. 總會中 本開幕式은 全會員과 초청된 인사등 2천원이 참석한 儀式으로 행하여지며 年間 사업계획과 예산, 임원선거등은 회의일정 마지막 날 오후에 代議員 會議에서 결의하여 결과를 발표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개막식 광경중 특히 새롭게 보여진 것은 임원선거에 대비한 회장과 부회장에 출마한 분들의 所見發表이었다. 새로 뽑힐 會長은 현 第1副會長이 당선되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으며 常勤副會長을 제외한 새로운 第1副會長과 기타 非常勤副會長 3인을 뽑는 선거전은 치열한 듯 느껴졌다.



AIA總會 會議場 앞에서 SANFRANSISCO MOSCON CENTER



AIA總會에서 (左) WOODY CHA (左中) 유걸 (右中) 김수근 (右)

사전에 추천과정을 거친 倍數의 후보들의 자기소개유인물이 미리 동일하게 준비 배포되어 있었으며 5분간씩 시간을 주어 所見發表를 시키는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마지막 날의 발표에 의하면 현 第1副會長이 會長으로 당선되었으며 새로 선출된 임원들은 명년 1월 1일부터 집무한다는 것이었다.

開幕式을 마친다음 14일까지 5일간은 1백여종의 각종 분과위원회의 발표회와 세미나등이 계속되었고, 주식과 석식등 기회가 각 모임에서 다양하게 활용되었고, 設計作品과 資材展示觀覽으로 여가시간을 보내고, 밖으로는 見學會와 지방관광 스케줄이 심심치 않게 꾸며져 있었다.

외지에서 온 대부분의 회원들이 부부동반이었고, 샌프란시스코 시내거리나 주변의 관광지에서 A. I. A. 총회의 명찰을 단 회의참가자들의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다.

회의가 계속 되는중 시간을 얻어 現會長과 第1副會長, 그리고, 常勤副會長과 만나 공동관심사에 대한 의견교환과 친선교류및 자료교환등의 협의를 마치고 워싱턴(Washington D. C)에 있는 A. I. A. 會館에서 상근부회장과 다시 만날것을 약속하고 헤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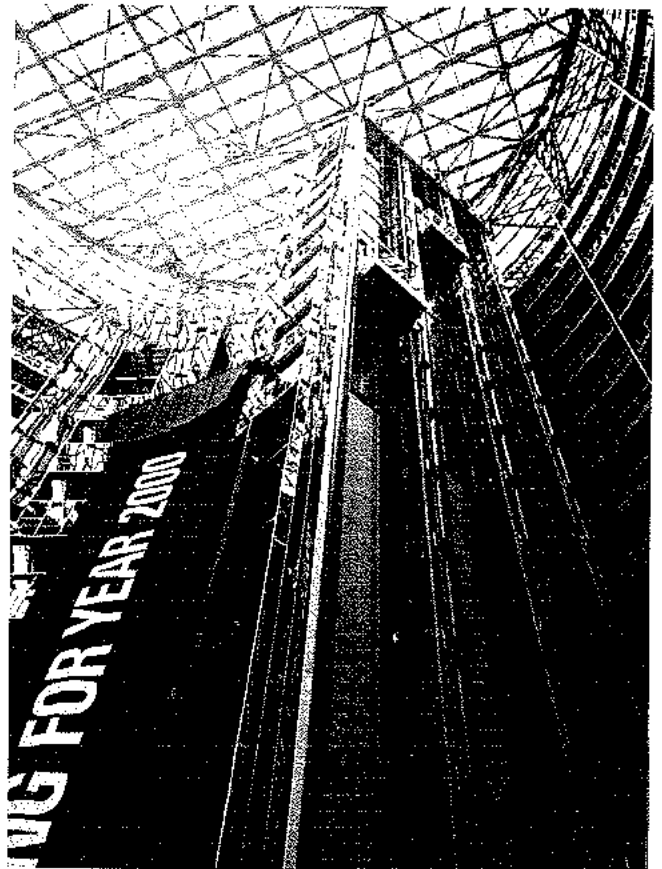
샌프란시스코에 있는동안 교포 A. I. A. 회원인 우디·차씨가 근무하고 있는 유명사무소인 K. M. D. (KAPLAN, McLAUGHLIN, DIAZ)를 방문할 기회를 얻어 참관하였다. 입구에 여비서가 앉아 안내를 하고 있었으며 면담실이 몇 개 따로 있었고, 그리 큰 공간은 아니었으나 휴게실에 그랜드 피아노가 놓여 있었다. 設計室에는 模型들이 곳곳의 탁자위와 사방벽면에 잔뜩 널려 있었다. 약 80

여명의 건축사 면허소지자와 보조원등 2백명가량이 일하고 있는 사무실이였으며 이 사무실은 특히 디자인(Design) 면에서 알려져 있다고 설명을 들었다. 본인은 A. I. A. 總會를 끝까지 지켜본다음 개막된 다음날인 15일 아침에 시카고(Chicago)로 향하였다.

시카고의 시가는 옛날에 보고, 기억하고 있는 것만큼 크거나 새롭게 느껴지지는 않았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시어스타워(Sears Tower) 1백10층 건물(S. O. M 설계) 위에 있는 전망대에 올라 사방을 내려다보니 도심부에는 고층건물들이 밀집해 있었고, 주내중 3方은 광활한 대지위에 넓게 자리잡은 주택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그리고, 한쪽은 바다같이 보이는 미시간湖에 접하여 조용한 港口都市를 보는 것같은 인상이었다.

시카고에서는 매마침 건축에 관한 국제 세미나가 개최되고 있어서 세미나에 참석한 다음 동참하였던 교포 건축사 김진환씨의 안내로 4半球形으로 생긴 시카고 시내에 있는 일리노이스(Illinois)州 聯邦政府 건물을 찾았다. 이 건물은 球形의 10층 높이의 3면이 유리면으로 덮여 외형상 특징있게 보였으며 내부는 全層이 확히 보이는 大 아트 리움(Atrium)으로 되어, 3方의 주변에 회랑으로 이어진 사무실들이 배치되어 있었다. 회랑중앙부에 놓인 엘리베이터는 4方 투명체로 만들어져 있으며, 중앙 홀(Hall)을 비롯한 건물내부의 4方에는 관광객으로 꽉 차 있었고 모든 사무실은 출입문없이 모두 개방되어 건물전체가 하나의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하층부위에는 방문객이 충분

CHICAGO市內에 있는 ILLINOIS州 聯邦政府 庁舎内部의 ATRIUM天井과 ELEVATOR SHAFT ("A BUILDING FOR YEAR 2000"이라는 글이 보인다)





김진환氏와 SOM事務所 光景



이중금氏와 같이 CHICAGO에서 열렸던 INTERNATIONAL SEMINER
會議場에서

히 설 수 있는 로비와 다방, 식당, 매점들이 화려하고 넓게 자리를 잡고 있어서 이 곳이 호텔이나 백화점이 아닌가 하는 착각을 일으킬 만큼 출입이 자유롭고 사방이 넓고 컬러풀(colorful)한 對民爲主의 시설로 되어 있어서 우리나라의 경우와는 극히 대조적인 면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그 곳이 美國政府의 官廳廳舍임은 눈을 비비고 다시한번 확인하였으나 틀림 없었다.

시카고 시내에 새로 지어진 30층 정도로 보이는 아파트들이 거의 모두가 완전히 유리상자로 덮여 있는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이 새로워 보였다.

김진환씨의 안내로 그분이 근무하고 있는 미국 제일 대규모 설계사무소중 하나인 S.O.M(Skidmore, Owings, & Merrill)을 찾았다. 한 때에는 1천명의 직원이 일하였다고 들었으나 지금은 약 5백명 정도가 같은 건물 안에서 일하고 있었다. 사무실의 넓은 공간이 1백 50cm기량의 얇은 간막이로 크게 구획된 것 외에는 사무실 중역실을 포함하여 어느 방이고 門이 안 달린 開放型으로 꾸며져 있었으며 개인의 작업공간도 넓게 차지하고 있었으나, 하나의 건물을 설계하는 데에 얼마나 많은 공을 들여 都市計劃의 측면에서부터 사용자의 편이에 이르기까지 또는 經濟的인 면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 과정을 보았을 때 우리의 경우, 일부의 建築許可爲主의 속성 과정과 비교되어 나의 마음속으로나마 부끄러움을 금치 못하였다.

시카고시에는 우리 僑胞 建築士들이 다방면으로 활동하



CHICAGO市内 韓國食堂 “新羅”에서 僑胞 ARCHITECT 문들과 面談

고 있으며 그 중, 서로 연락이 되고있는 10여명이 자리를 같이하여 본인을 환대하여 주었다. 김진환, 권진갑, 김을규씨와 현 시카고 韓人 建築士會 會長으로 계신 김군용씨 등이다. 시간가는 줄 모르고 밤늦게까지 환담하였다. 고국의 소식을 묻고 전하였으며 美國에서의 건축사 생활에 대한 실상을 단편적으로나마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특히 인상깊었던 것은 設計報酬와 質의 향상 등의 얘기에 이어 監理分離施行이나 行政處分이나 事務所의 規模類別 등의 시행에 대하여는 전혀 이해가 안간다고 하는 외아스러운 표정들이었으며, 韓國의 傳統建築의 아름다움을 현대화하여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받았으며 한국의 전통건축에 대한 美國內에서의 巡廻展示會를 개최해 줄 것을 부탁하며, 우리 大韓建築士協會의 발전을 축하하고 계속 배전의 노력있기를 격려받으며 아쉬운 작별을 하였다.



윤보균氏와 같이 NEW YORK 市内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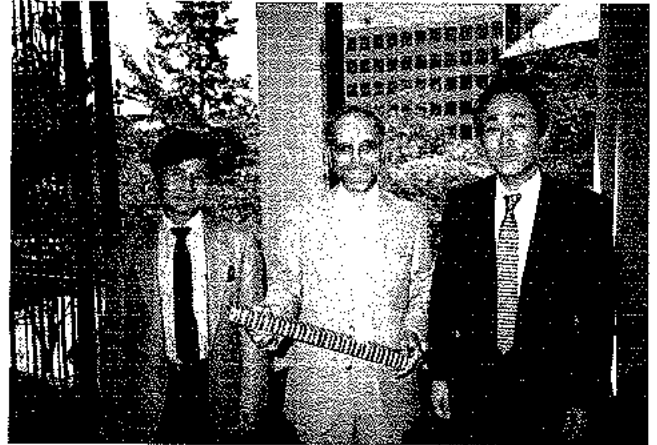
뉴욕(New York)에서는 지어진지 오래된 것같은 건물들이 많이 보였다. 우리 서울의 모습도 부러울 것이 없을 것 같다고 느껴졌다. 그렇게 크고 높아 보이던 뉴욕의 거리가 이제는 대단해 보지는 않았다. 그러나 새로 지어진 시티뱅크(City Bank)나 유엔 센터(U. N. Center) 건너편에 있는 U.N.의 외교관들을 위한 호텔 건물의 내외부는 큰 보석을 조각해 놓은 것을 보는 것같이 값지고 찬란하게 보였다.

뉴욕에서 設計事務所를 自營하고 있는 윤보균씨를 만나 시내안내를 받고 그 분이 설계한 韓國食堂에 초대받아 점심을 같이 하고, 그 분을 통하여 우리 協會의 前任會長이셨던 金在喆씨의 전화번호를 알아서 통화를 하였다.

金在喆 전임회장과는 시간관계로 뵈지는 못하였으나 본인 귀국후 보내주신 서신에 의하면 그 동안 美國聯邦政府 投資老人 아파트 공사에 종사하셨으며 지금은 새로운 老人 아파트 사업을 자영코자 준비중이시며 우리 協會의 발전을 축하하고 회원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하는 말씀이 적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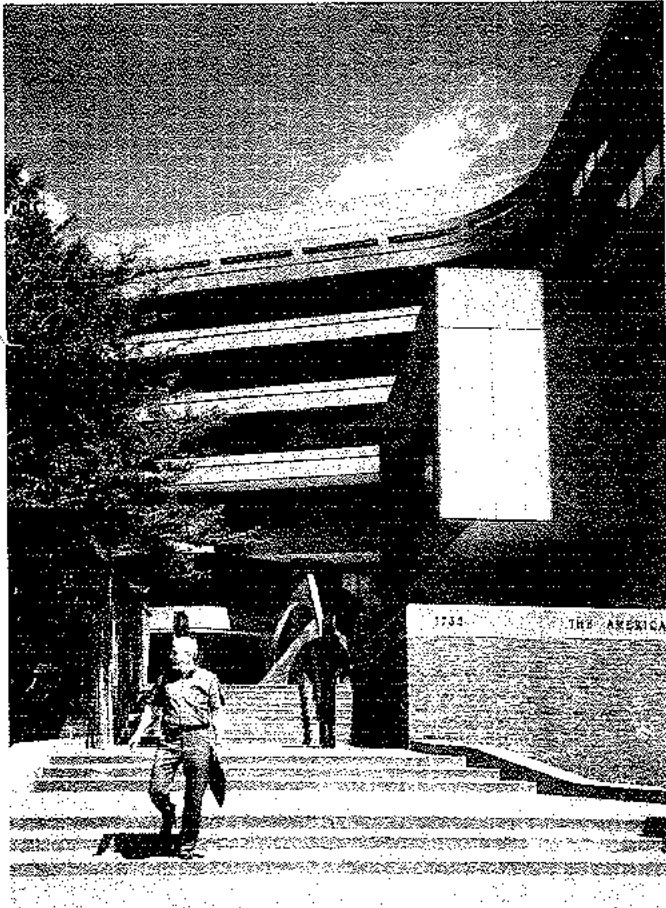
뉴욕 시내 商業地區의 建築法을 알아본즉, 전폐율 규정은 없으며 대지면적을 1백% 건축을 했을 때 4백%의 容積率이 허용되며 建弊率의 감소조정과 상충부에 올라가서의 건축선의 後退 등으로 용적율이 1천8백%까지 허용되는, 건축주가 선택할 수 있는 융통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停車場 설치규준은 있으나 地上駐車比率 같은 이중구속조항은 없다는 얘기였다.

위싱턴에서는 僑胞 建築士會의 前任會長인 김원일씨와 연락이 되어 A.I.A.에 같이 방문하였다. A.I.A.會長은 매마침 시카고에 출장중이어서 常勤副會長을 만났으며 준비된 선물(호랑이 그림이 그려진 대형집은부채)을 전하고 A.I.A.組織과 運營 등 얘기를 듣고, 앞으로 친선 관계를 유지할 것이며 서로의 정보를 교환할 것과 내년 6월에 텍사스(Texas)의 세인트 안토니오(St. Antonio)에서 개최될 '86 A.I.A.총회에서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



AIA 會館內에서(中央) AIA 常勤副會長(左) 김원일氏(右) 本會 會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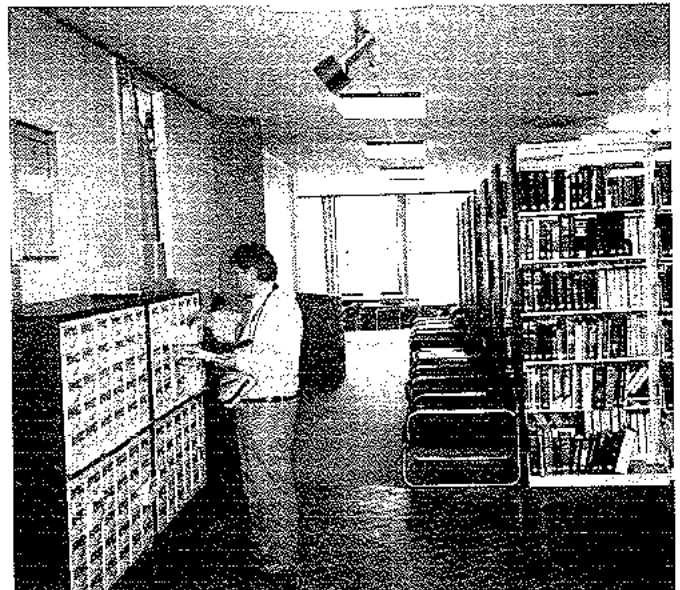
고 회관을 안내받아 두루 살핀다음 많은 자료를 얻어 회관을 나왔다. A.I.A. 회관은 워싱턴의 백악관(White House) 뒷쪽 뉴욕행(New York Ave.) 요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약 3천8백坪 가량되는 7층으로 최근에 새로 지은 건물이었다. 본부의 사무처직원인 약 2백5십명 가량이며 법개정작업이나 명년도 總會準備作業 專擔部署가 상설되어 있어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었으며, 많은 서적이 보관되어 있는 도서관과 전문서적이나 사무용품을 공급 판매하고 있는 施設空間 등이 부러워 보였다. 庭園 한 가운데에는 큰 조각물이 놓여 있었으며, 안내원의 설명에 의하면 매월 조각물을 조각가들이 자기작품 선전을 하기 위하여 바꾸어 전시를 하여주고 있다는 것이었다. 美國내에 建築士免許를 가진 사람은 약 7만명가량 된다는데 그 중 4만5천명이 A.I.A.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고 각주나 혹은 주요 도시의 독립된 會의 聯合會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會長과 第1副會長, 常勤副會長과 非常勤副會長 3명, 이사 24명으로 임원구성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30개에 달하는 分科委員會가 활동하고 있으며, 각분과위원회 委員長이 대부분 理事이며 각위원회를 크게 유별하여 非常勤副會長團이 책임을 분담하고 있는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美國의 建築大學은 5년제의 독립된 單科大學이고, 졸업생의 거의 전부가 설계사무소에 취업하며 상당한 실무경력후 建築士 資格試驗에 응시하며 합격후에도 상당한 배경이나 자신없이 독립된 사무소를 차린다는 것은 어려운 일로 알려져 있고, 대부분이 免許를 취득한 후에도 계속 큰 설계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다고 한



AIA 會館 前景



AIA 會館 事務所 光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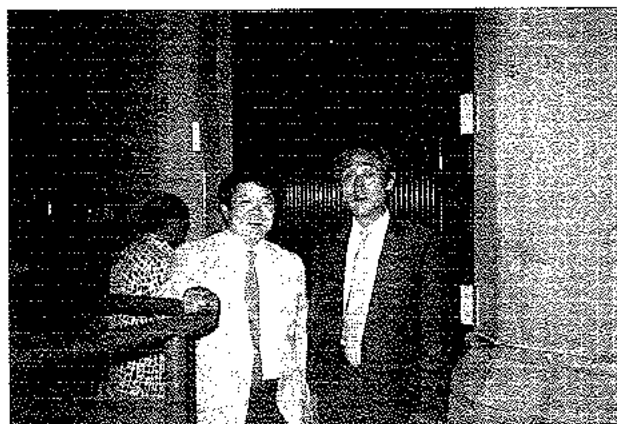
AIA 會館 圖書室 入口에서

다.

建築士의 資格試驗問題는 A. I. A. 에서 출제하며 試驗管理工團에 넘겨 各州에서 동시에 시행한다고 하는데 합격자의 결정은 州 정부권한으로 조정, 처리한다는 것이었다.

워싱턴의 夜景은 불만하였다. 그곳의 現 僑胞 建築士會會長인 홍익표씨의 안내로 그 분이 근무하고 있는 Arthur Cotton Moor & Associates의 현상설계당선 작품인 舊 우체국건물(Post Office)이며 現 워싱턴의 聯邦政府建物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내부와 종탑 등 방문을 위시하여 백악관, 링컨 기념관, 그리고, 3천명의 현역 건축사가 응모하여 17세의 소녀가 당선하여 시공되었다는 베트남參戰勇士碑 등등을 두루 살펴 보았다. 워싱턴 시내 중심의 구건물들은 그대로 보존하기 위하여 외관은 개조하지 못하게

WASHINGTON 僑胞 建築士會 會長 홍익표氏와 같이



하며 내부만을 개조하여 사용해 나가고 있으며 짧은 역사에서나마 전통을 새우고 보존해 나가려는 노력이 엿보였다.

워싱턴의 僑胞 建築士會는 생각했던 것보다 활발하고 많은 분들이 모여 있었으며 비교적 조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본인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있었던 '85 A. I. A. 총회참관과 워싱턴에 있는 A. I. A. 本部 방문을 마치고,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뉴욕, 워싱턴 등 5개도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僑胞 建築士와 면담하였으며, 미국의 설계사무소 운영 상황을 보고, 미국의 건물들을 살펴보는 등 모든 예정을 무사히 마치고, 희망에 찬 자신감을 가지고, Washington D. C. 를 출발하여 캔사스(Kansas) 와 로스앤젤레스를 경유하여 바로 서울로 돌아왔다.

금번 本人의 訪美가 大韓建築士協會의 발전은 물론이거니와 韓美建築士間의 우호증진과 서로의 권익신장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미주지역교포건축사명단

본 명단은 지난 6월, 吳雄鎬 회장께서 訪美時 임수한 美州地域 교포건축사 명단입니다. 국내에서 활약하시는 회원은 물론, 美州地域에서 활약하시는 건축사 여러분께서도 본 주소록을 활용, 상호친선의 유대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AREA	NAME	ADDRESS	TEL	NOTE
Chicago	Koon Yong Kim 김 군 용	1235 Sherwood Road Glenview Il 60025	O: (312) 722-6700 H: (312) 729-2944	회장
Chicago	Jin K. Kwon 권 진 감	707 E. 87th ST. Chicago, Illinois 60617	O: (312) 731-4992 H: (312) 532-4480	
Chicago	Earl Kyu Kim 김 을 규	1425 W. Lunt Ave. Chicago Il 60626	O: (312) 744-3630 H: (312) 251-5283	
Chicago	John Y. Kim 김 중 열	4550 Tall Daks Rolling Meadow Il 60008	O: (312) 364-8150 H: (312) 397-1076	
Chicago	Jin Han Kim 김 진 한	Skidmore, Owings & Merrill 33 West Monroe Street Chicago, Ill 60603	O: (312) 641-5959 H: (312) 251-8425	
Chicago	Jae Young Roh 노 제 영	808 Arthur Ave. Libertyville Il 60048	O: (312) 827-8833 H: (312) 362-0657	
Chicago	Byung Il Park 박 병 일	935 Knightsbridge Lane Schaumburg Il 60195	O: (312) 459-7483 H: (312) 882-1599	
Chicago	Peter M. Park 박 명 흙	213 W. Hellen Road Palatine Il 60067	O: (312) 977-1100 H: (312) 991-8957	
Chicago	William K. Uhm 엄 규 성	1404 Isabella St. Wilmette Il 60091	O: (312) 337-5800 H: (312) 256-0567	
Chicago	Hong Duke Lee 이 흥 득	460 S. White Hall Dr. Palatine Il 60067	O: (312) 882-0200 H: (312) 358-6292	
Chicago	Jong Keum, Lee 이 중 금	5650 N. Leland Ave Chicago, Il 60630	O: (312) 782-6593 H: (312) 545-1161	

AREA	NAME	ADDRESS	TEL	NOTE
Los Angeles	Ki Suh Park 박 기 서	Guren Associates, Partner 6330 San Vicente Bl., LA, CA 90048	O: 937-4270	회장
Los Angeles	Dai Ung Kang 강 대 응	580 Terrill Ave. LA, CA 90042	H: (213) 255-5098	
Los Angeles	Jungsoo Kwak 곽 정 수	Jungsoo Kwak, AIA Architect 2975 Wilshire Bl., Suite 619, LA, CA 90036	O: 382-9336 H: 726-8173	
Los Angeles	Kyo Sang Kim 김 교 상	K. S. Kim, AIA, Archeitect 4032 Wilshire Bl., # 402 LA, CA 90010	O: 386-5268	
Los Angeles	B. Hyun Kim 김 병 현	Charles Kober Associates 2706 Wilshire Bl., LA, CA 90057 1340 N. Virginia, Glendale (new Pacific & Glew Dak)	O: 386-7534 H: 244-5161	
Los Angeles	Woon H. Kim 김 운 해	Woon H. Kim Architects & Assoc. 6210 Wilsh- ire Bl., # 309	O: 937-0844 H: 935-0528	
Los Angeles	Chae Bahng 방 재 경	Chae Bahng 6637 Whitaker Ave. Van Nuys, CA 91406	O: 388-3376 H: 994-4701	
Los Angeles	Hak Sik Son 손 학 식	Hak Sik Son, AIA 1424 4th st. # 600 Santa Monica 90401	O: 394-0705 H: 390-5244	
Los Angeles	Stuart Ahn 안 성 주	Koam Co, Inc. & Sunnyland Develop- ment 1543 W. O Olympic B., # 344, LA, CA 90015	O: 388-4118 O: 386-7923 H: 246	
Los Angeles	Seung Lee 이 승 구	Becket Internatio- nal, Project Coordinator 2900 31st., Santa Monica, CA 90405	O: 450-4524 H: 968-6621	
Los Angeles	Hong Hee Lee 이 흥 희	Total Development Corporation Hong	O: 382-0196 H: 344-7205	

AREA	NAME	ADDRESS	TEL	NOTE
Los Angeles	Chaung G. Choi 최 창 근	H. Lee, AIA & Associates 3727 W. 6th St., # 200, LA, CA 90020 Chaung Choi, AIA 5225 Wilshire Bl., # 424, LA, CA 90036	O:939-6112 H:653-4877	
New York	Jae Chull Kim 김 재 철	31-41 23rd st., APT. 2J, Sec. A, Astoria, N. Y. 11106	H: (718) 545-7929	
New York	Bo Kyun Yoon 윤 보 근	555 Madison Avenue New York, New York 10022	O: (212) 980-8484	
Pittsburgh	I. J. Chung	The Design Center Bvilding Second Floor 5001 Bawn Bovlevard Pittsburgh, Pennsylvania 15213	O: (412) 681-9244	Inj- oon John Chu- ng
San Francisco	Woody, Cha	222 Vallejo Street San Francisco California 94111	O: (415) 398-5191	
Washington	Ik Pyo Hong 홍 익 료	Mr. Ik Pyo Hong 6608 Placid Street Galls, Church, VA 22043	O:337-9081 H:534-8290	회장
Washington	Mo K. Kwun 권 경 모	Mr. Mo. K. Kwun 207 Shaw Avenue Silver Spring, MD 20904	O:565-8020 565-8021 H:622-0322	
Washington	Dong Kyu Kim 김 동 규	Mr. Dong Kyu Kim 8149 E. Bucks Park Lane Potomac, MD 20854	O:232-5192 H:299-6257	
Washington	Du Shun Gim 김 두 순	Mr. Du Shun Gim 4814 New Wakefie- ld Chapel Road Annandale, VA 22003	O:272-0421 H:978-2268	
Washington	Yong Won Kim 김 용 원	Mr. Yong Won Kim 8042 Glendale Rood Chevy Chase, MD 20015	O:337-9081 H:654-2829	
Washington	Won Il Kim	Donald N. Coupard	O:840-1100	

AREA	NAME	ADDRESS	TEL	NOTE
	김 원 일	Associates, Aia Architects 1370 Piccard Drive Rockville, Maryiand 20850	H:983-0647	
Washington	Joon Ku Rha 나 준 구	Mr. Joon Ku Rha 11213 Mitscher Street Kensington, MD 20895	O:833-8945 H:933-0374	
Washington	Young W. Park 박 영 환	Mr. Young Whan Park 10704 Great Arbor Drive Potomac, MD 20854	O:789-1515 H:299-3402	
Washington	Tuck Young Yoo 유 덕 용	Mr. Tuck Young Yoo 108 Edith Drive Rockville, MD 20850	O:296-7444 H:251-8996	
Washington	Maeng Yul Yi 이 맹 열	Mr. Maeng Yul Yi 1407 Belle View Boulevard # B-2 Alexandria, VA 22307	O:683-2344 H:768-7610	
Washington	Wan Chul Lee 이 완 철	Mr. Wand Chul Lee 2815 39th Street, N. W. Washington, D. C. 20007	O:965-4260 H:338-8172	
Washington	Won K. Lee 이 원 군	1328 Apple Tree Circle State Collage. PA. 16801	O: (814) 238-1551 H: (814) 234-2627	
Washington	Han Choon Lee 이 한 춘	Mr. Han Choon Lee 59 Penny Lane Baltimore, MD 21209	O: (301) 435-6000 H: (301) 486-0993	
Washington	Andrew K. Chang 장 건	Mr. Andrew K. Chang 11731 Glen Mill Rood Potomac, MD 20854	O:840-1100 H:424-4290	

역사가 숨쉬는 건축예술

沈 光 燮
建築士事務所 圖解廳

존경하는 대선배 건축사께서 63빌딩을 보시고 격정스러운 발췌를 본지에 쓰신 것을 읽었다.

“우리의 후손들이 저 건물을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영구히 보존할 것인가?”

창작 뒤에 따르는 두려움이 의미있게 표현된 한 귀절이 아닐 수 없다. 건축물은 생명이 있는 창작물로서 대중 앞에서 뽐내려야 함을 생각하니 건축인의 사명감을 새삼 느끼게 된다.

그러면 우리의 시대에 우리의 시각으로 우리의 창작물을 스스로 평가하여 우리의 후손들에게 뽐낼 수는 없을까? 조용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본다. 수초 동안 시간이 흘러 현재(?)는 과거가 되었음을 실감하며 바로 그 과거를 지키는 것이 후손들에게 뽐낼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었다. 현대에 매료되어 과거를 손상치 않음이 건축인의 바른 자세가 아닐런지. 선조들이 쓰시던 물건에서 그 체취를 느끼게 되고 우리가 쓰던 물건에서는 우리의 후손들이 그 체취를 느끼게 된다. 우리의 것은 존재하고 있음이며 영원할 것이다.

원각사와 대연각!

우리는 새 시대에 들며 있지만 원각사와 대연각의 가치를 비교할 수는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선조들의 체취가 담긴 원각사라면 대형 화재를 불러 일으켰던 대연각보다 훨씬 더 보존의 가치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며 부끄러움과 안타까움이 앞서는 것을 느끼게 된다.

다시 생각해보면 현재의 63빌딩도 우리의 후손들이 잘 지켜 줄것이라 여겨지지만... 우리는 우리의 기술로 우리의 자재로 우리의 건물을 지어 우리의 체취를 담을 때 우리의 후손들은 더욱 포근하고 따스함을 느끼게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외국 기술, 외국의 자재로 지은 창작물을 우리나라의 상징으로 삼지 않기를 간곡히 바라며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체취를 담은 소박한 작품을 물려주도록 노력하여야겠다. 6천만 아니 수억(우리의 후손 세대들)의 두려운 눈동자들이 우리 건축인을 주시하고 있음을 잊지 않

아야겠다.

외국인의 피라밋을 우리의 서울에 세우려 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을 찾아 보존함에 앞장 설수는 없을까? 우리의 분수에 걸맞는 아름다운 작품을 세울 수는 없을까? 우리나라를 다녀가는 수많은 외국인들에게 우리나라의 멋과 역사를 담은 소박한 작품을 많이 보여줄 수는 없을까?

우리의 시대를 반영하는 몇가지 사실들을 열거하면서 정화의 차원에서 반성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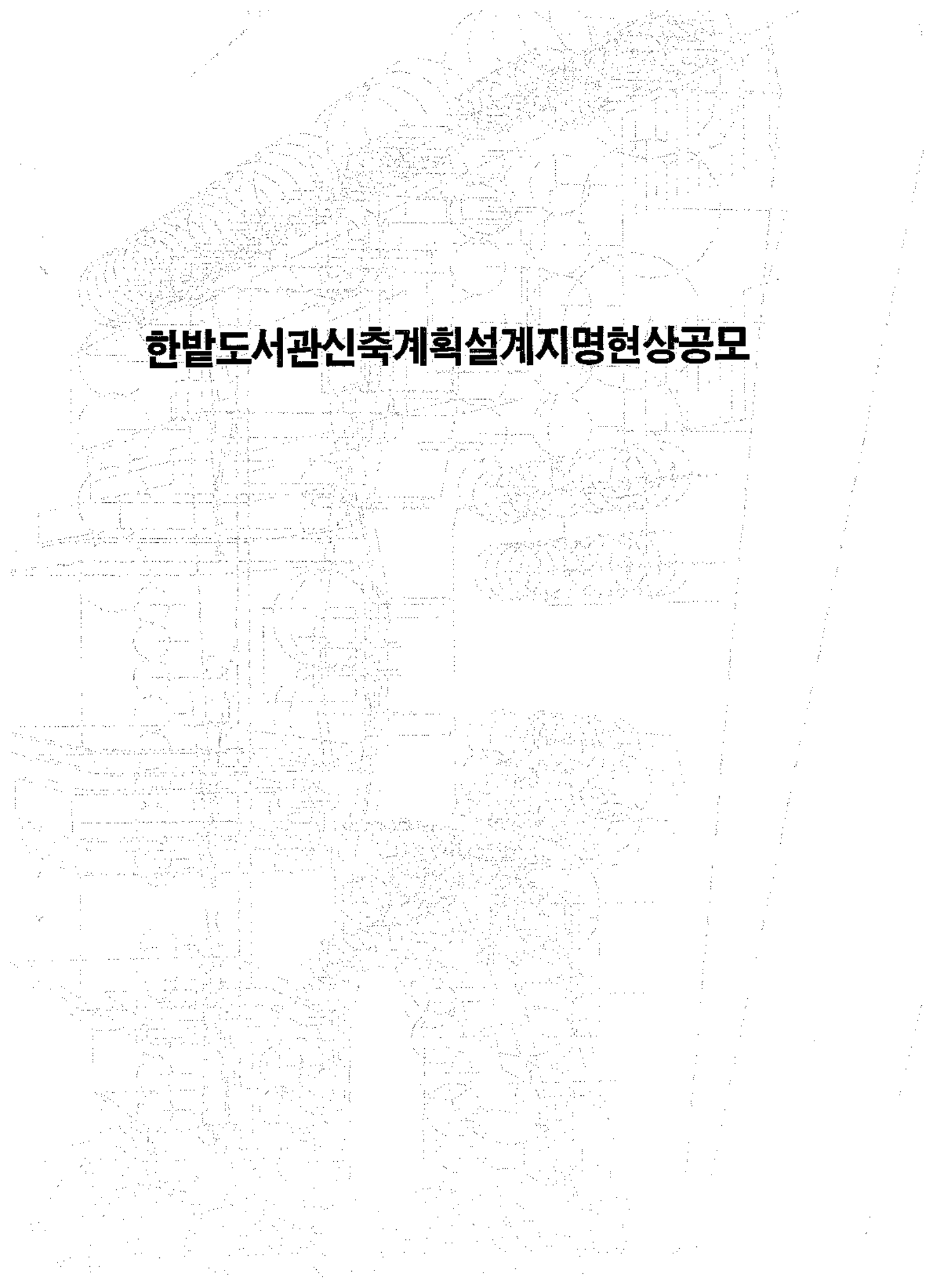
우선, 〈사실Ⅰ〉. 개발 명분에 밀려 우리의 사적지가 멸실되고 있다. 영동 신시가지 개발에서 귀중한 사적지들이 소리없이 훼손되어 갔으며 도심재개발 사업에서 역사적인 실상들이 잠들어가고 있다.

〈사실Ⅱ〉. 관광 자원등의 명분에 밀려 자연환경이 훼손되고 있다. 토암산 산정의 거대한 주차장과 일부시설들은 우리의 후손들에게 무엇을 남겨 준다고 생각하는가?

〈사실Ⅲ〉. 혹시 우리의 것을 찾는다든 명분하에 우리의 것이 왜곡되고 있지는 않는지? 콘크리트로 빚어지는 우리의 전통(?) 건축물은 경주 시내를 새로운 면모로 일신하였음을 시인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과연 그것들을 외국에 내보이며 우리의 것임을 자부할 수 있을런지.

〈사실Ⅳ〉. 우리 시대의 번영을 과시하면서 우리의 것이 아닌 외국의 것들이 세워지고 있음을 간파할 수 없다. 외국 자재로만 포장되었다는 동방빌딩을 비롯하여 외국의 기술과 자재로 외국 건물의 형태를 모방한 서울의 고층 빌딩들은 후세들에게 부끄러움을 안겨줄지도 모른다.

끝으로 우리는, 후배들에게 올바른 건축 교육을 시키고 있을까? 정성이 담긴, 분수에 맞는 소박하고 아름다운 작품들을 많이 남길 수 있도록 희생 담긴 배전의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에 있음을 상기해야겠다. 역사가 숨쉬는 작품이 시대의 흐름에 순응할 때 우리의 건축예술은 꽃 피울 것이라고 믿는다.



한밭도서관신축계획설계지명현상공모

1. 기본목표

가. 목 적

교육문화를 창달시키고 향토문화 발전의 초석이 되는 도서관 건립

나. 전 제

- 뛰어난 창조성과 경제적인 구조, 합리적인 기능 수용
- 역사적인 기념물로서 충청남도의 이미지 부각
- 교육, 문화도시로서 기능을 확보
- 연구적인 독서 시설로 이용

다. 배 치

- 현 대지 형태를 최대한 이용
-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
- 장래 도시계획, 도시발전과의 조화
- 주위환경시설 및 도시시설과의 관계 유지나 단절을 고려
- 보행, 차량, 주차, 서비스동선등 합리적인 동선체계 확립
- 장래 확장에 대비

2. 개 요

가. 대 지

- 위 치: 대전시 중구 문화동
- 계획대지면적: 17, 160㎡ (5, 200평)
- 도시계획조건: 주거지역

나. 건축규모

- 연면적: 21, 500㎡ (약 6, 500평)정도
- 열람석: 5, 000석
- 서 고: 30만권 이상

다. 건설기간

1985년 11월~1987년말 준공 예정

3. 시설개요

가. 도 서 관

- 현관, 로비, 전사실, 집회실, 대출실
- 열람실(형식은 폐가식으로 하고 개수는 응모자 임의), 신문잡지열람실, 귀중도서열람실
- 시청각실, 시청각자료실, 전적실, 향토자료실, 세미나실
- 서고(30만권 이상 확보, 개수는 응모자임의)
- 제본, 정리실, 숙직실
- 사무실(구입, 정리, 서고, 열람, 목록작성, 서무경리등 사무실)
- 관장실(비서실, 응접실, 귀빈실)
- 기타 건물에 부수되어야 할 시설(응

모자 임의)

나. 부속시설

- 전기실, 기계실, 중앙감시실, 경비실, 창고
- 주차장, 식당, 강당(300석 규모), 기사대기실
- 기타 필요한 실(응모자 임의)
- ※ 응모자 재량에 의해 도서관 건물에 포함 또는 독립시킬 수 있다.

다. 기타시설

- 정문, 담장, 옥외휴식공간, 옥외주차시설, 조경시설
- 테니스코트 1개소 정도를 시설할 수 있는 부지 확보
- 기타(응모자 임의)
- ※ 적당한 운동을 할 수 있게 대지나 건물내에 간단한 운동 시설을 응모자 임의로 배치한다.

4. 설계기본사항

가. 일반사항

1) 설계경기의 목적

이 지침은 1987년 완공될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한밭도서관계획설계 공모를 위한 것임

2) 발의처: 충남도청 내무국 회계과(전화 대전 23-6419)

3) 설계경기의 문자: 한글을 사용하며(괄호안에 영어표기도 가능) 미터법을 사용한다.

4) 응모자는 지명자에 한한다.

5) 설계경기의 공모 일정

○응 모 기 간: 1985년 5월 31일 ~ 7월 15일까지 45일간

○질의응답마감: 1985년 6월 14일까지

○질의응답발송: 1985년 6월 21일까지

○응모접수마감일: 1985년 7월 15일 오후 5시 까지

○심사위원작업: 1985년 7월 22일 ~ 7월 27일

○당 선 자 발 표: 1985년 7월 31일(개별 통지)

6) 질의응답: 서면질의서를 기한내에 내무국 회계과로 보내면 접수된 것에 한하여 공동으로 전용모자에게 화신한다. 질의는 1인 1회에 한한다.

나. 접수후의 처리

1) 응모안의 접수: 응모자가 제출하여야 할 설계도서는 판넬로 제작함을 원칙으로 하며 송부하여야 할 내용물은 다음과 같다.

가) 제도면

나) 설명서 10부(10페이지 이내)

다) 확인봉투(응모 확인서): 별첨

2) 익명사항: 익명의 원칙은 심사위원의 최종결정때까지 전 설계경기기간동안 적용되고 익명 보존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응모자는 설계지침서에 첨부된 봉투에 응모확인서를 넣고 이 봉투에 응모자에 의해 임의로 선택된 고유번호를 대문자 알파벳+5자리 아라비아 숫자를 흑색으로 표시한다.

○이 봉투는 다른 제출 설계도서와 함께 제출한다.

○응모자에 임의로 선택된 고유번호는 설계도서의 우측 상단(D-1)에 흑색으로 표기되어야 하며 여기에 어떠한 다른 암호나 기호가 첨가되어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 응모자는 참가자격이 상실된다.

○각 응모자가 제출한 설계도서가 본도에 도착되면 여기에 표시된 고유번호는 본도에 의해 접수 일련번호로 대체한다.

○응모자의 고유번호가 들어 있는 봉투는 일련번호가 있는 다른 봉투에 넣어서 설계심사종료시까지 밀봉한다.

※ 응모자는 우편으로 우송을 원칙으로 하고 지참을 불허하며 우편물은 마감일시 기간내의 소인이 있으면 유효하다. 우편발송시 작품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포장한다.

○작품 제출시 포장외부에 다음과 같이 고유번호를 부착한다(규격은 D-2에 따른다).

A	-	1	2	3	4	5
---	---	---	---	---	---	---

3) 응모안의 예비심사: 본도의 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예비심사위원회가 구성되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접수된 설계도서의 개봉과 동시에 필요이외의 암호나 표기여부 조사

○각 응모자가 제출한 설계도서와 설계지침서와의 위배여부 조사

○예비심사위원회는 각 응모안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송부되며, 위원장은 심사자문을 위해 전심사기간 동안에 걸쳐 심사에

참석하나 투표권은 없다.

4) 설계조사와 판정

- 심사위원명단은 예비심사 이전에 발표한다.
- 심사의 방법과 절차는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심사위원회는 2점 이내의 당선후보작을 선정하고 도지사는 이 중에서 당선작을 결정한다.
- 응모안의 평가기준은 심사위원회의 전권에 속한다. 또한 심사는 공개심사로 한다.

다. 시 상

- 1) 시상 내용: 상금의 배분내용은 다음과 같다.
○당선작 1점 실시 설계권
○참가자 전원에게 200만원씩 지불한다. 단, 가작 및 입선작가가 실시설계에 참가할 경우에 해당 상금은 설계비에서 공제한다.
- 2) 당선이후: 당선작가는 기본설계의 권한을 가지며 도지사는 이에 실시설계의 일부 또는 전체를 수행할 권한을 부여한다.
○도지사는 가작 또는 입선작가에게 실시설계의 일부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라. 작품공개

- 1) 전 시: 심사후 응모작품의 전부 또
- 응모작품 명단

사 무 소 명	대표자	비 고
(주)공간연구소	김수근	853
(주)원도시건축	윤승중	가작 852
야도무건축연구소	장석웅	당선 854
신건축연구소	장덕형	851
가람건축	장연철	855

심사 집계표 (2 차)

작품별 심사위원	851	852	853	854	855
1			○		
2			○		
3	탈	불		참	
4			○		
5			○		
6			○		
7					○
8	락		○		
9			○		
계					
판 정			7		1

는 일부를 공개 전시한다.

- 2) 심사후 응모작품의 처리: 주최자의 재량에 따라 처리되며 응모작은 일절 반송되지 아니한다.

5. 기술사항

가. 제공도서

- 1) 지침서
- 2) 지적도
- 3) 확인봉투: 별첨
- 4) 응모확인서: 별첨

나. 제출도서

- 1) 설계도면 8매(규격 84×118.8cm)
- 2) 설명서 10부(10페이지 이내)
- 3) 확인봉투 및 그 내용물(응모확인서)

다. 도서작성 및 제출요령

- 1) 제출하여야 할 도면은 84cm×118.8cm의 백색종이를 1단위로 하여 총 8매가 다음 내용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2) 8매의 도면은 심사시 그림 D-1과 같이 구성된다.

심사 집계표(1-1차)

작품별 심사위원	851	852	853	854	855
이 광 로	○		○		
이 해 성			○		
오 웅 석		불		참	
송 종 석					
안 영 배	○				
윤 도 근					○
강 석 원	○				
오 덕 성			○		
이 종 두	○				
계					
판 정	4		3		1

심사 집계표 (3 차)

작품명 심사위원	851	852	853	854	855
이 광 로					○
이 해 성					○
오 웅 석	탈		탈		
송 종 석					○
안 영 배		기		권	
윤 도 근	락		락		○
강 석 원					○
오 덕 성					○
이 종 두					○
계					
판 정					7

- 3) 백색바탕의 흑색잉크 표현으로 한다
(위와 다른 표현의 경우는 실격)

- 4) 단, 투시도는 자유롭게 채색할 수 있다.

- 5) 각 도면의 여백에는 적절한 다이어그램 및 설명도를 삽입할 수 있다.

- 6) 모형 및 모형 사진은 제출할 수 없다.

○일 시: 85.7.20 11:00~12:30

○장 소: 제1회의실

○심사위원 명단

- 윤도근: 홍익대학교 공대 건축과
- 이광로: 서울공대 건축과
- 송종석: 연세대학교 공대 건축과
- 오웅석: 건축사협회 회장
- 이해성: 한양대학교 공대 건축과
- 강석원: 건축가(그룹가건축)
- 안영배: 서울시립대 건축과
- 오덕성: 충남대학교 공대 건축과
- 이종두: 충남도청

심사 집계표(1-2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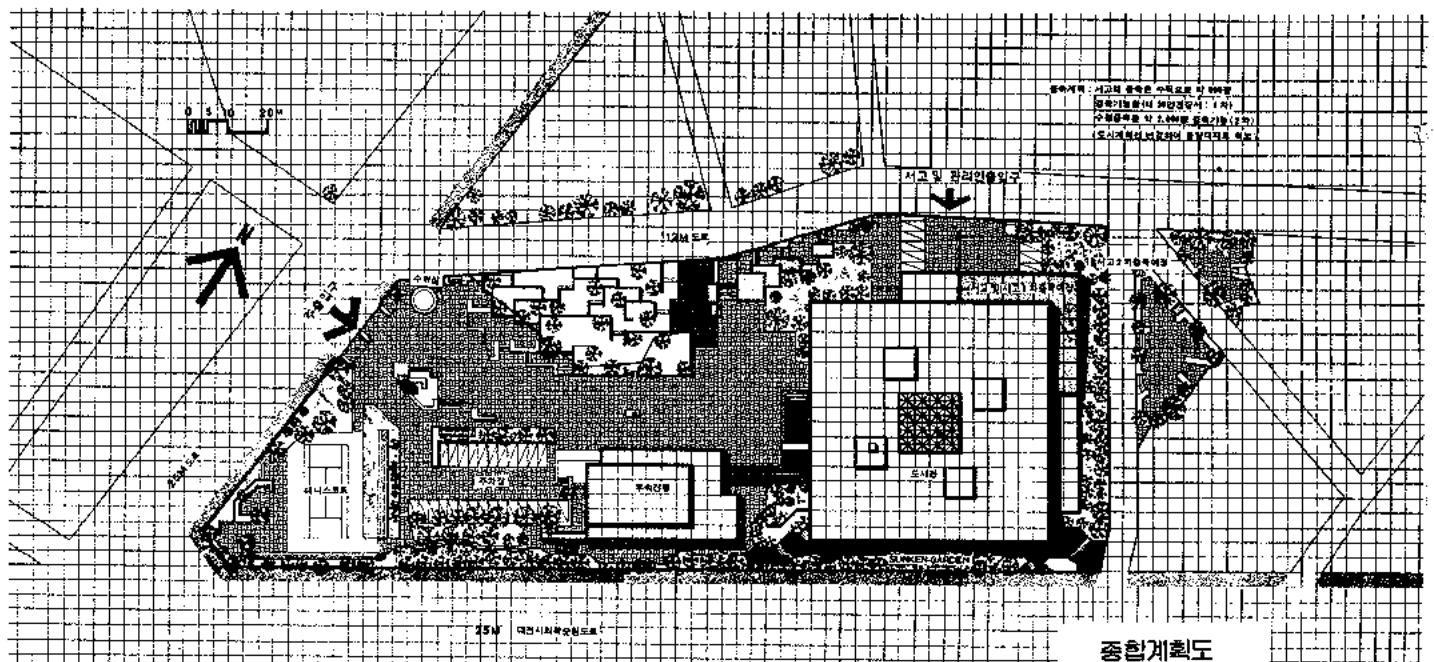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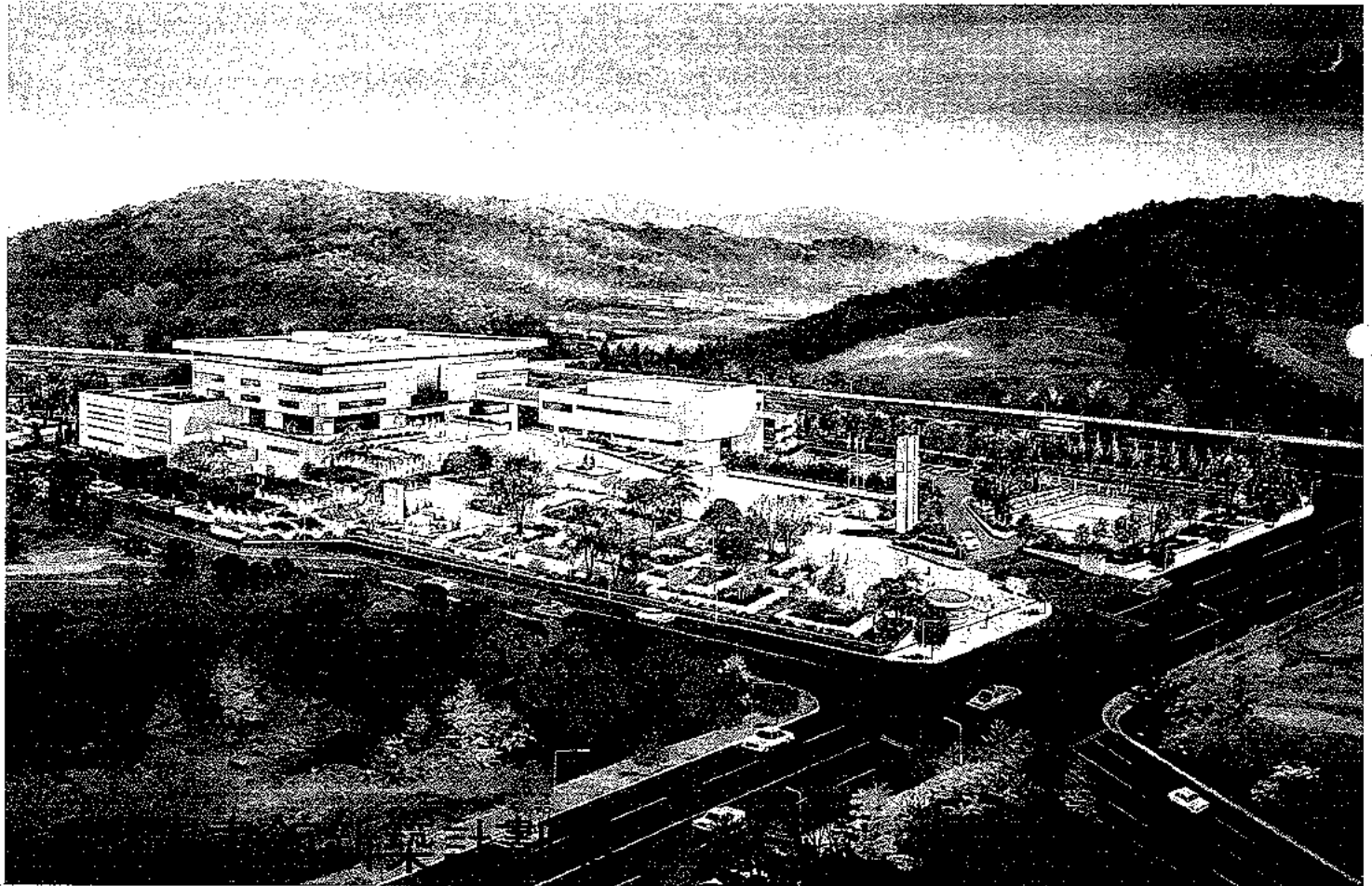
작품별 심사위원	851	852	853	854	855
이 광 로			○		
이 해 성			○		
오 웅 석					
송 종 석	○				
안 영 배	○				
윤 도 근	○				
강 석 원	○				
오 덕 성			○		
이 종 두	○				
계					
판 정	5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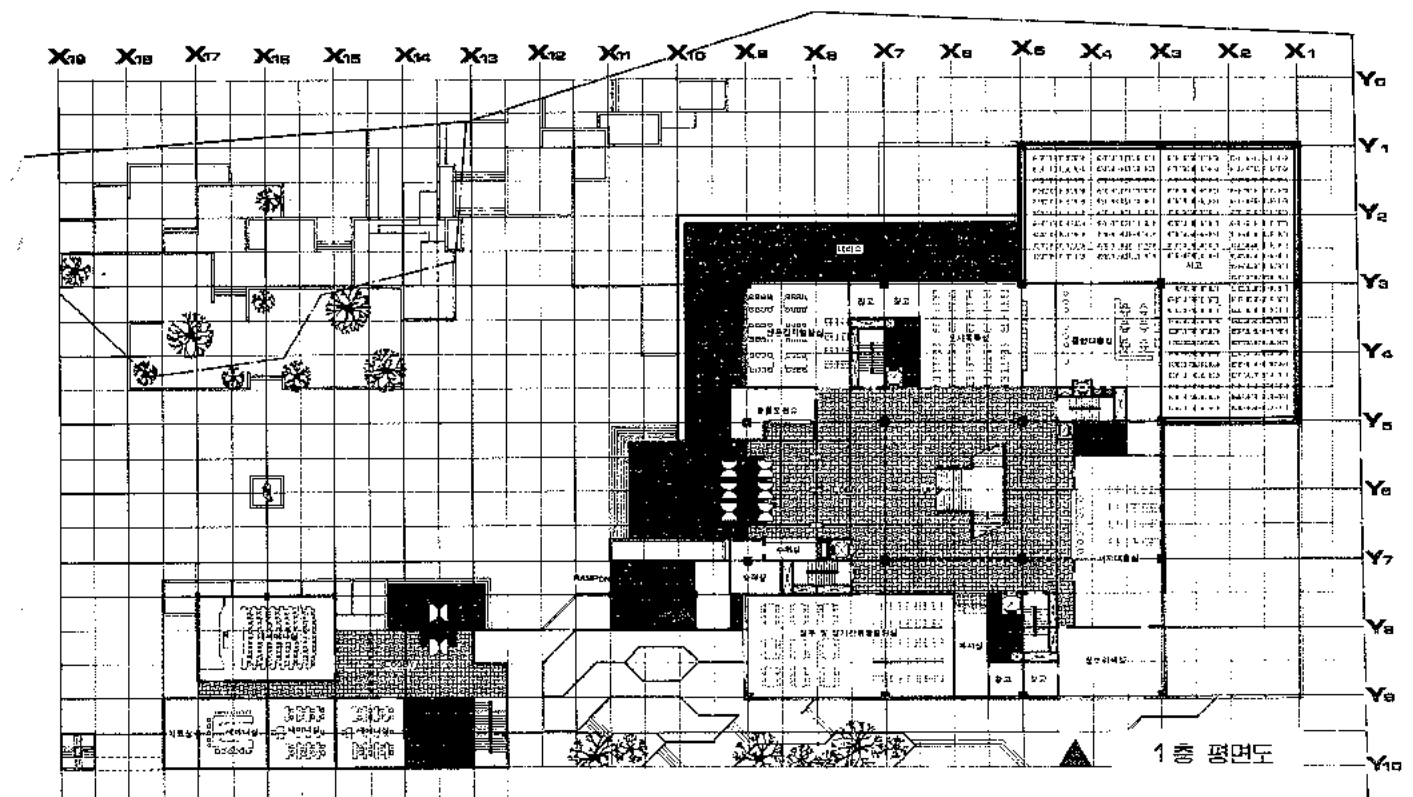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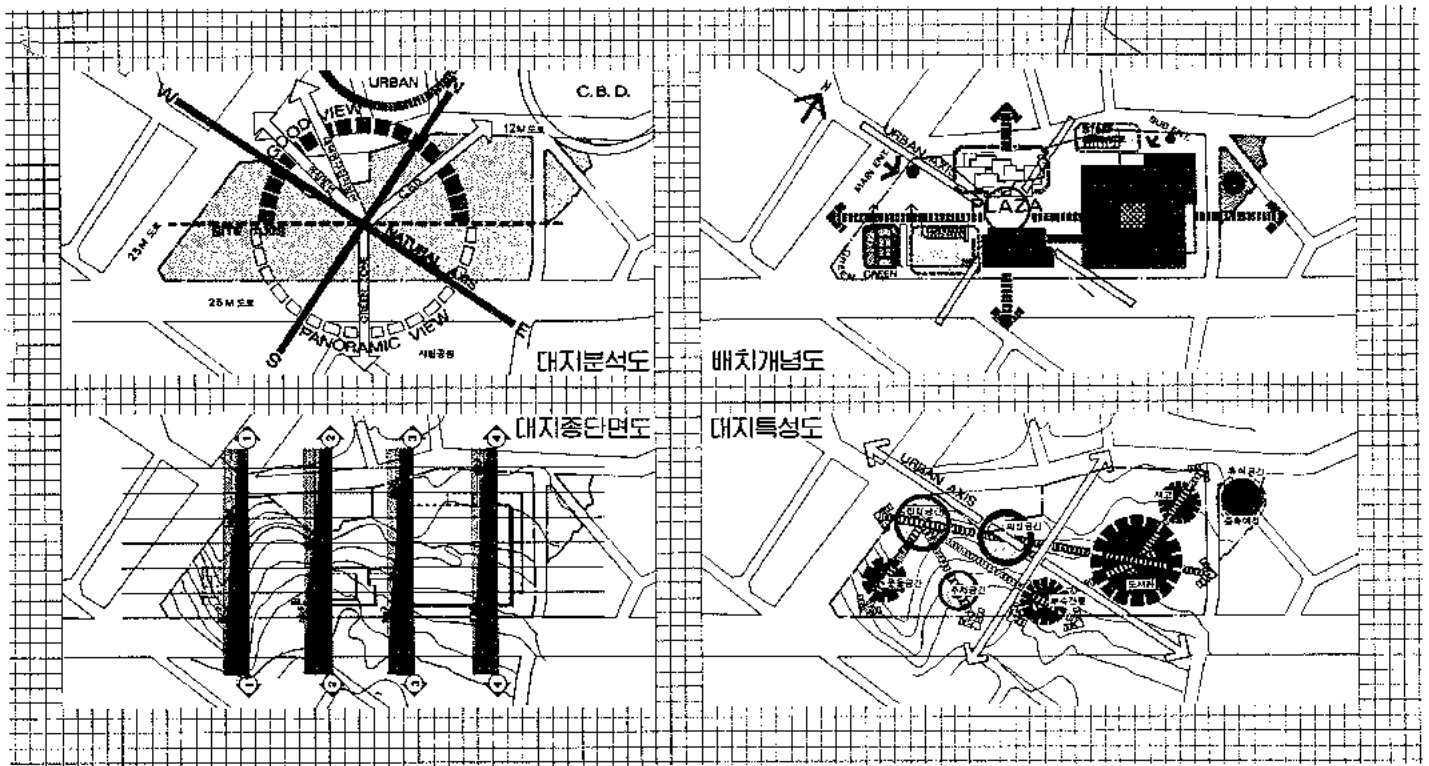
심사 집계표(최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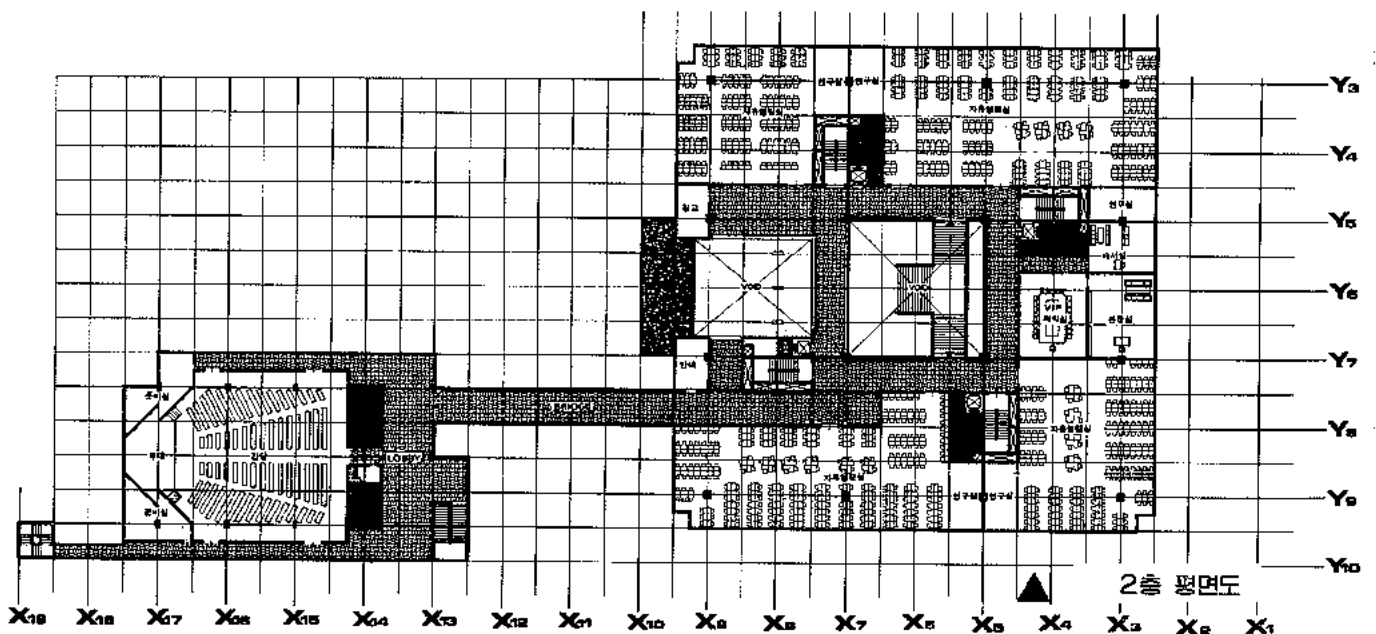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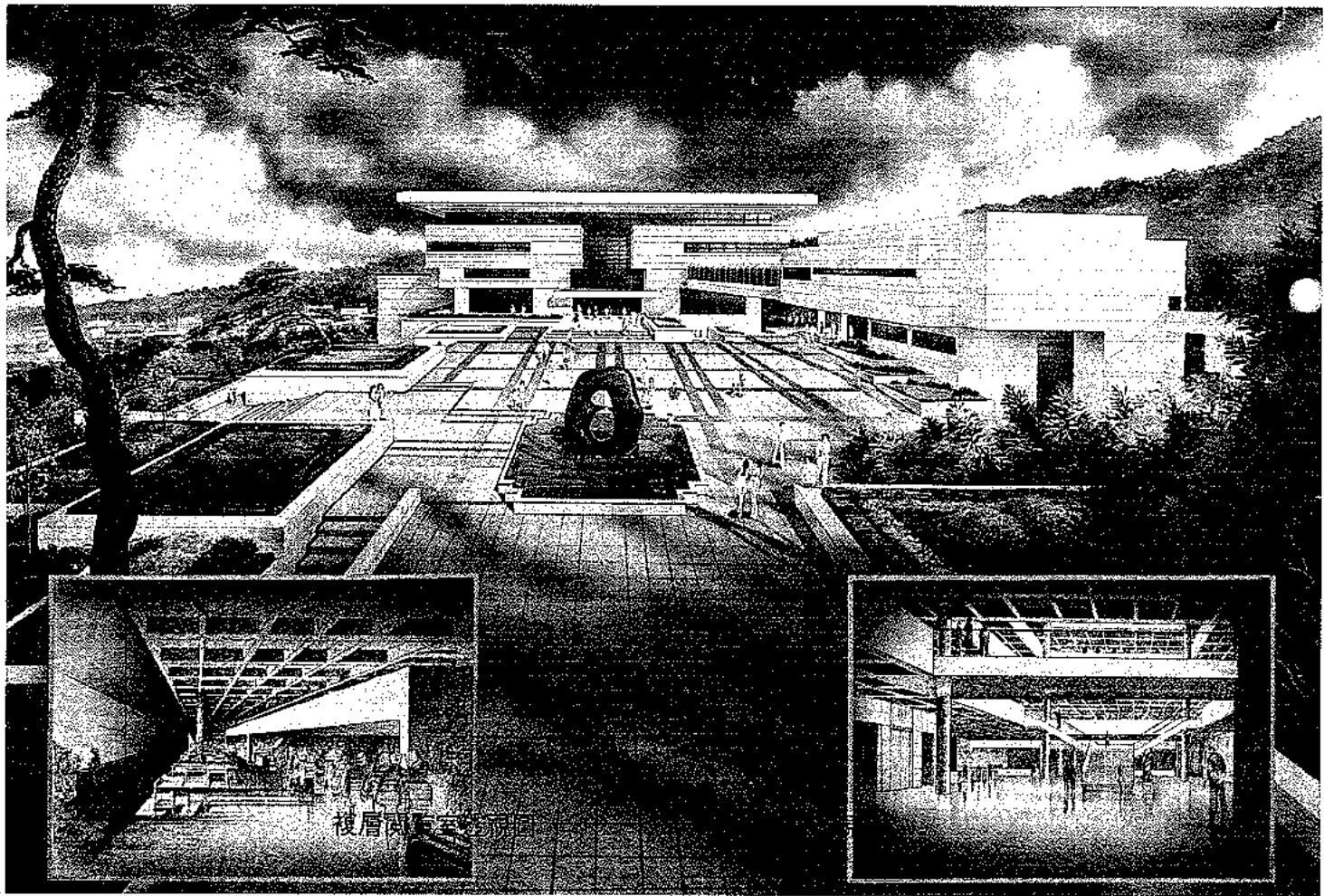
작품명 심사위원	852	854	비 고
이 광 로		○	
이 해 성		○	
오 웅 석	결		
송 종 석		○	
안 영 배		○	
윤 도 근		○	
강 석 원		○	
오 덕 성		○	
이 종 두		○	
계		8	
판 정	가 작	당선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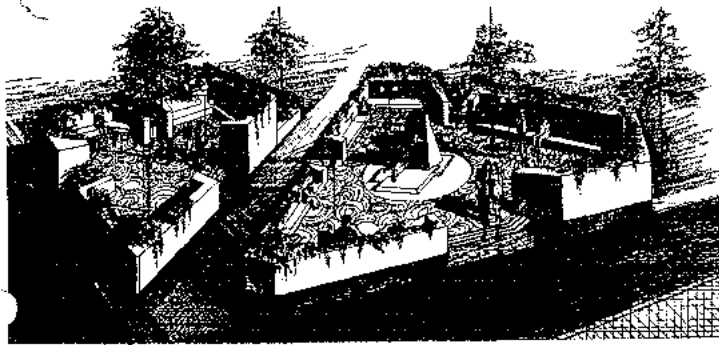
아도무건축 · 장석웅 (案)

- 대 지 면 적 : 17,160m²
- 연 면 적 : 21,245m²
- 규 모 : 도 서 관 - 지하2층, 지상4층
부속건물 - 지하1층, 지상2층
- 구 조 : 특수구조로서 철근콘크리트
Post Tension공법으로 Spar
15×15m 로 구성됨
- 외 부 마 감 : 화강석+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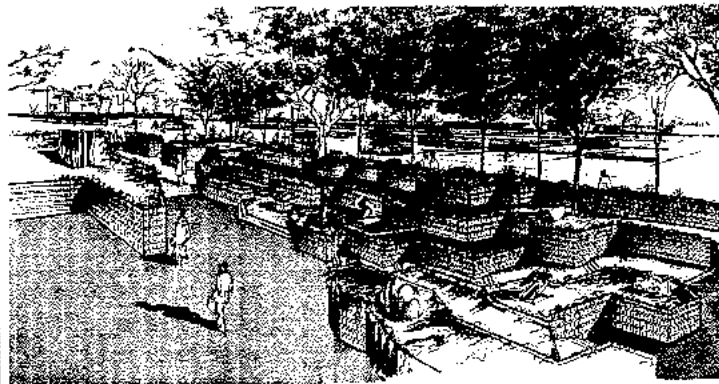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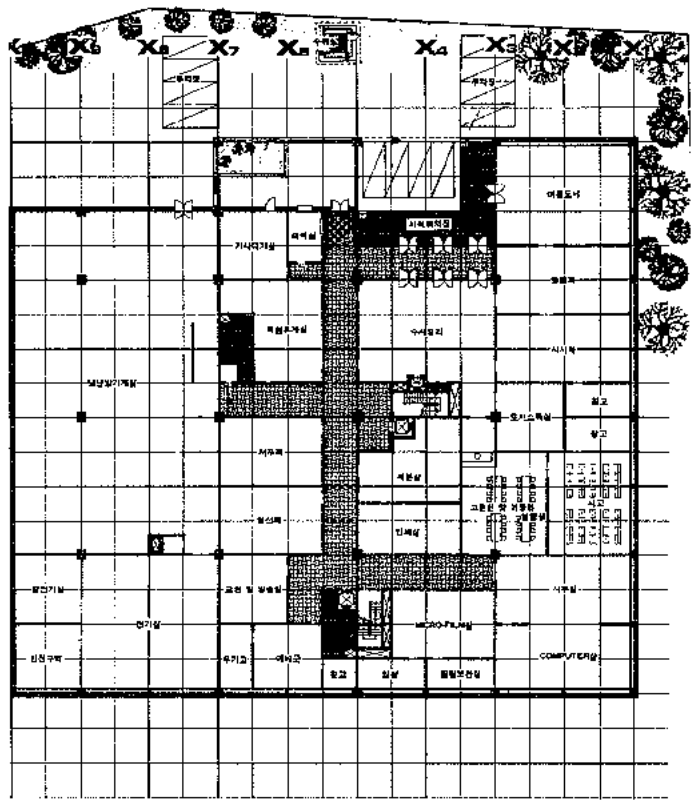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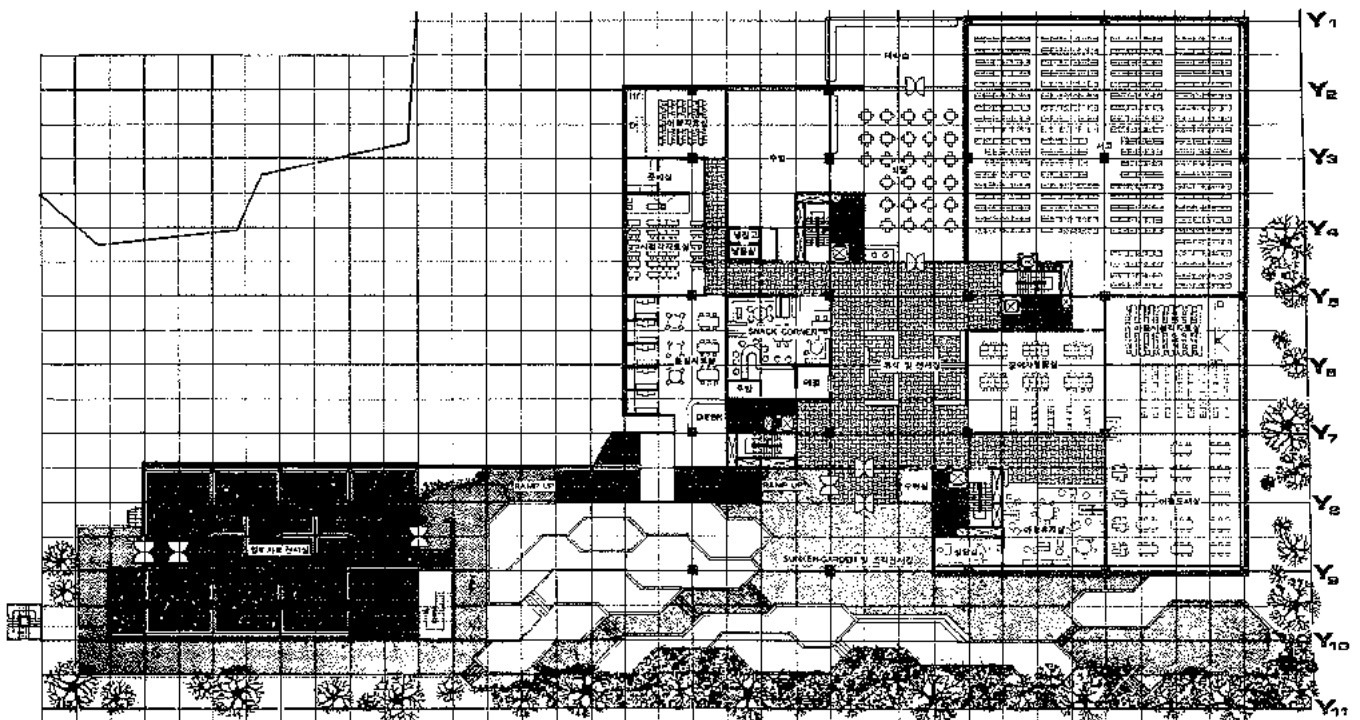
휴식공간투시도



SUNKEN GARDEN 투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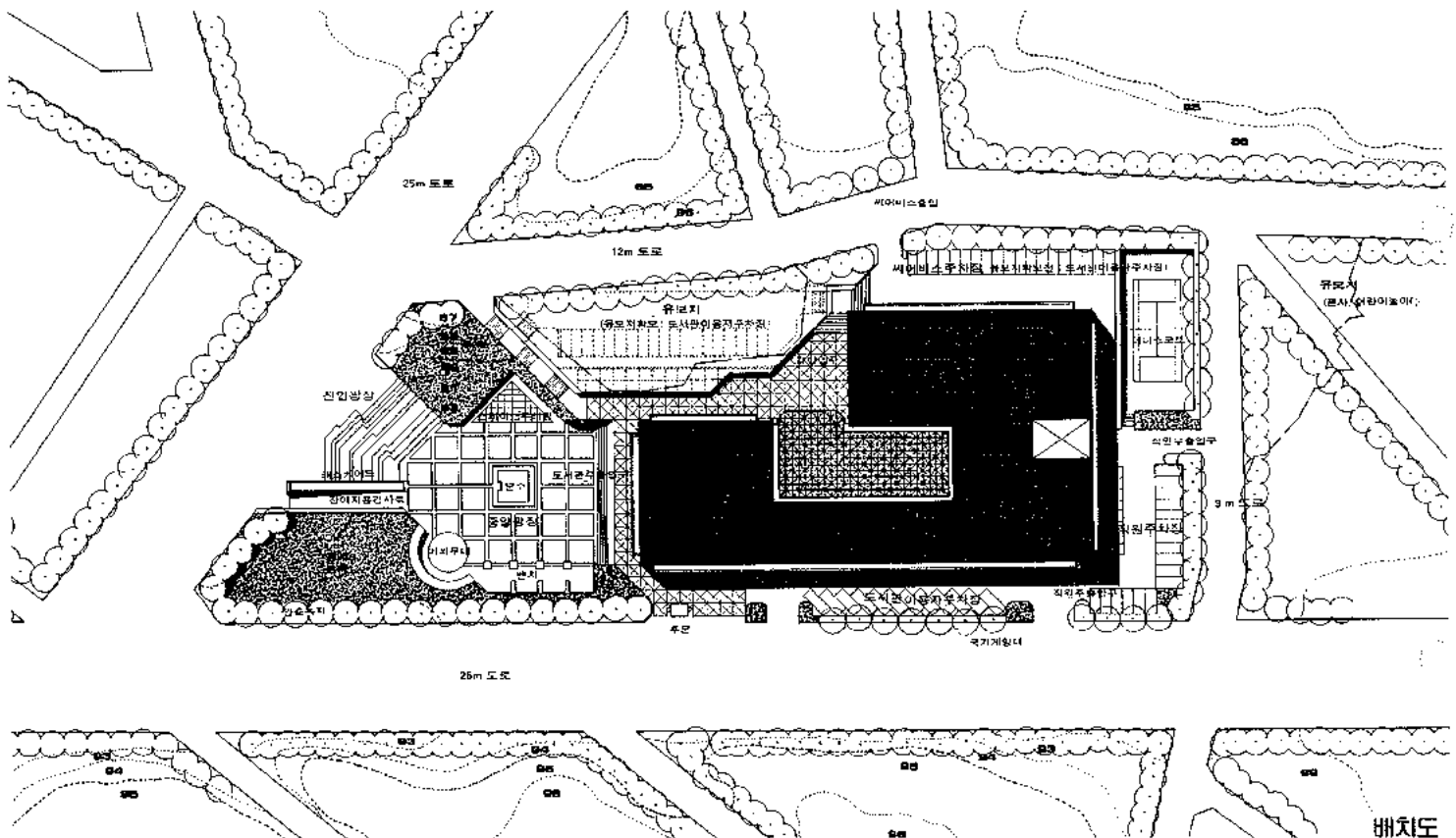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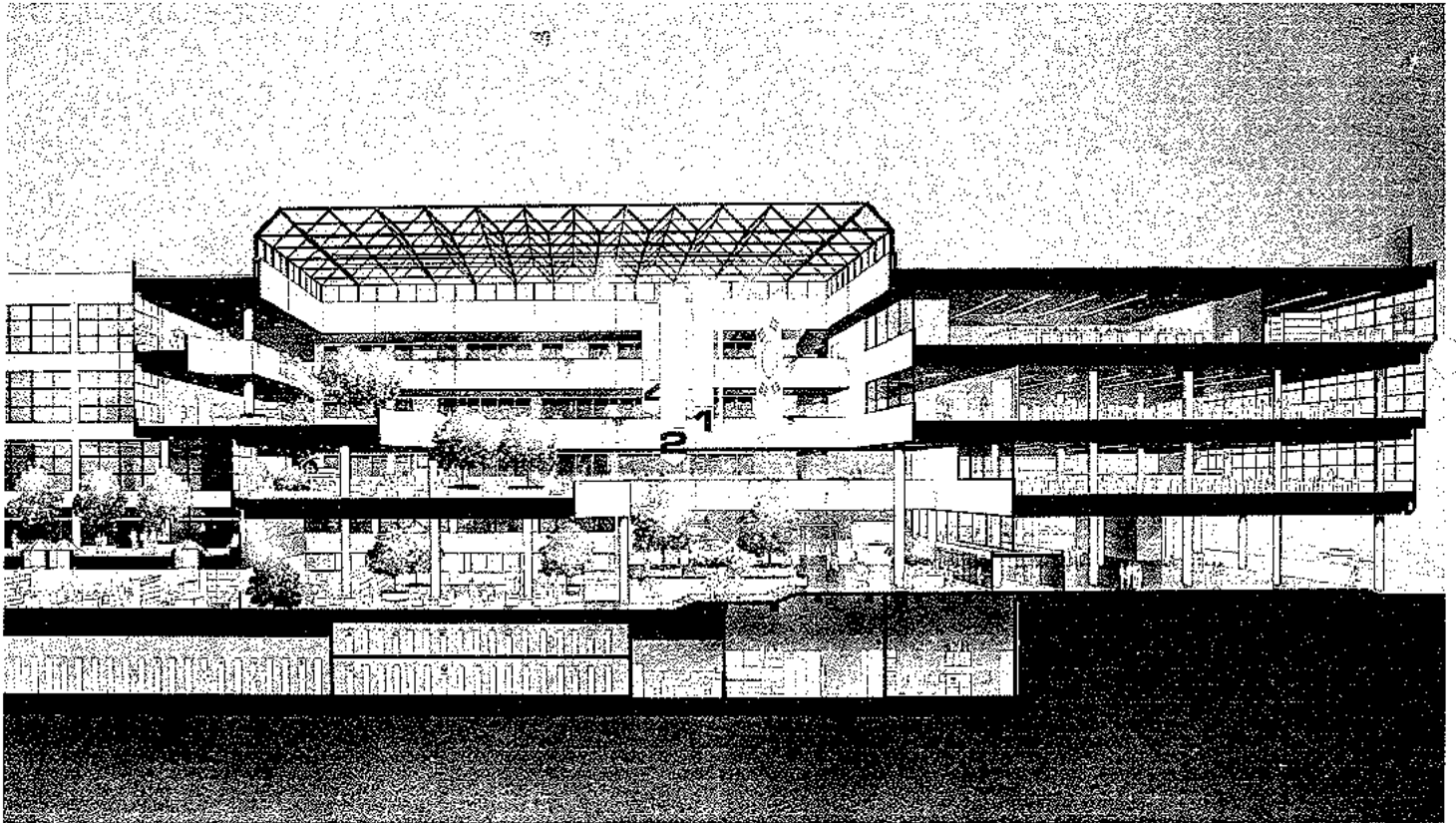
지하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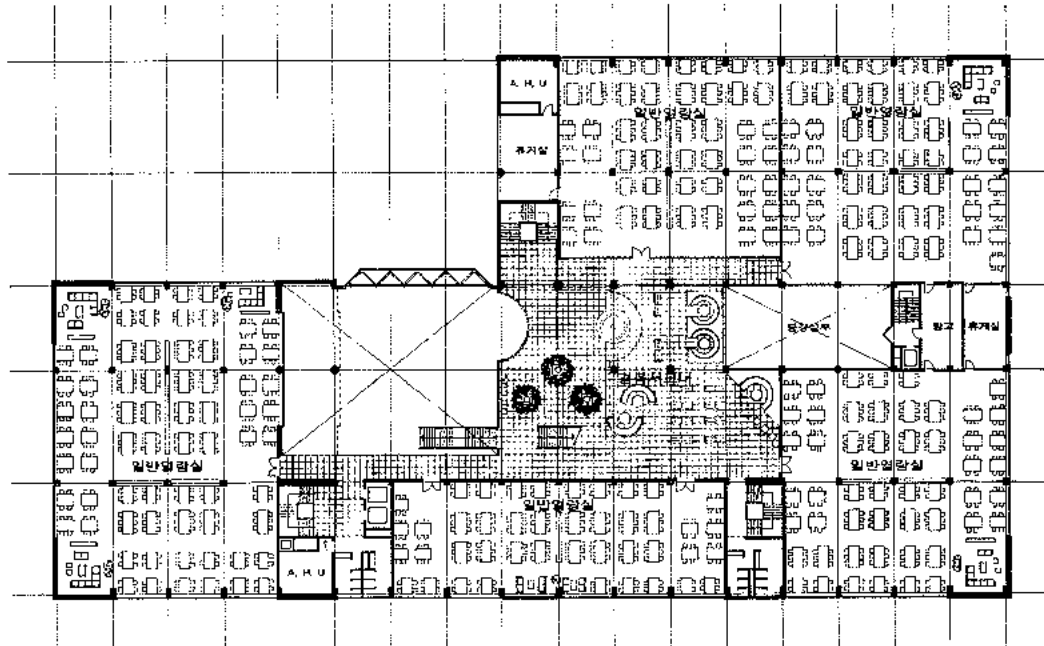


지하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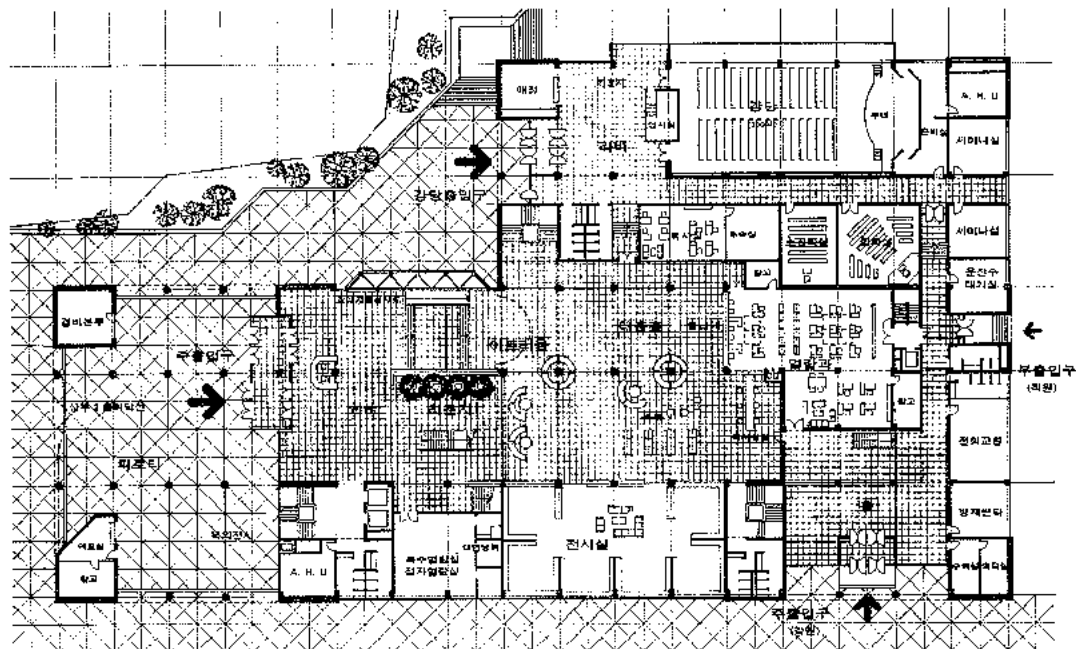
원도시건축·윤승중(案)

- 건축면적 : 5,031㎡
- 연면적 : 21,864㎡
- 규모 : 지하1층, 지상4층
- 건물배율 : 29.3%
- 용적율 : 127.1%
- 구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조+스케이프
후레이프
- 외장재료 : 외벽-화강석 버너 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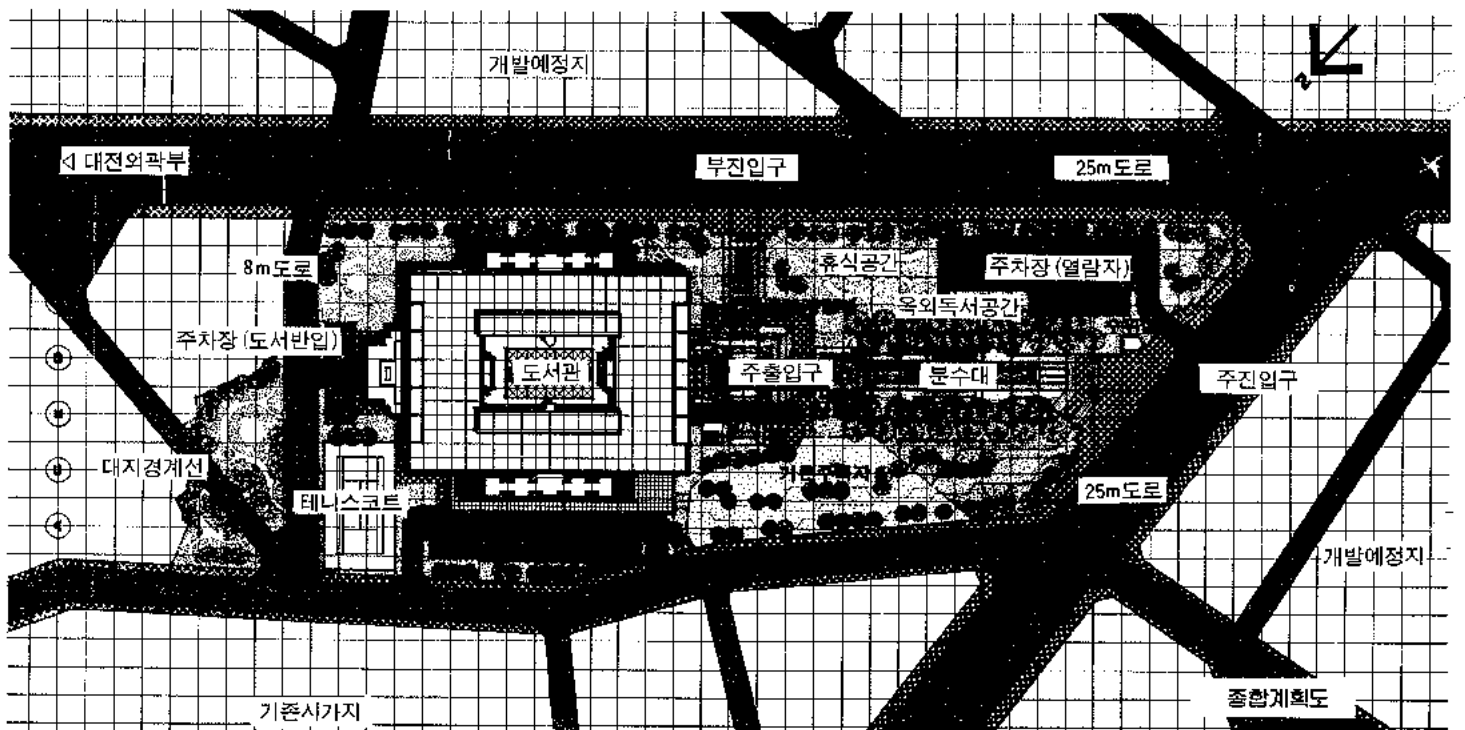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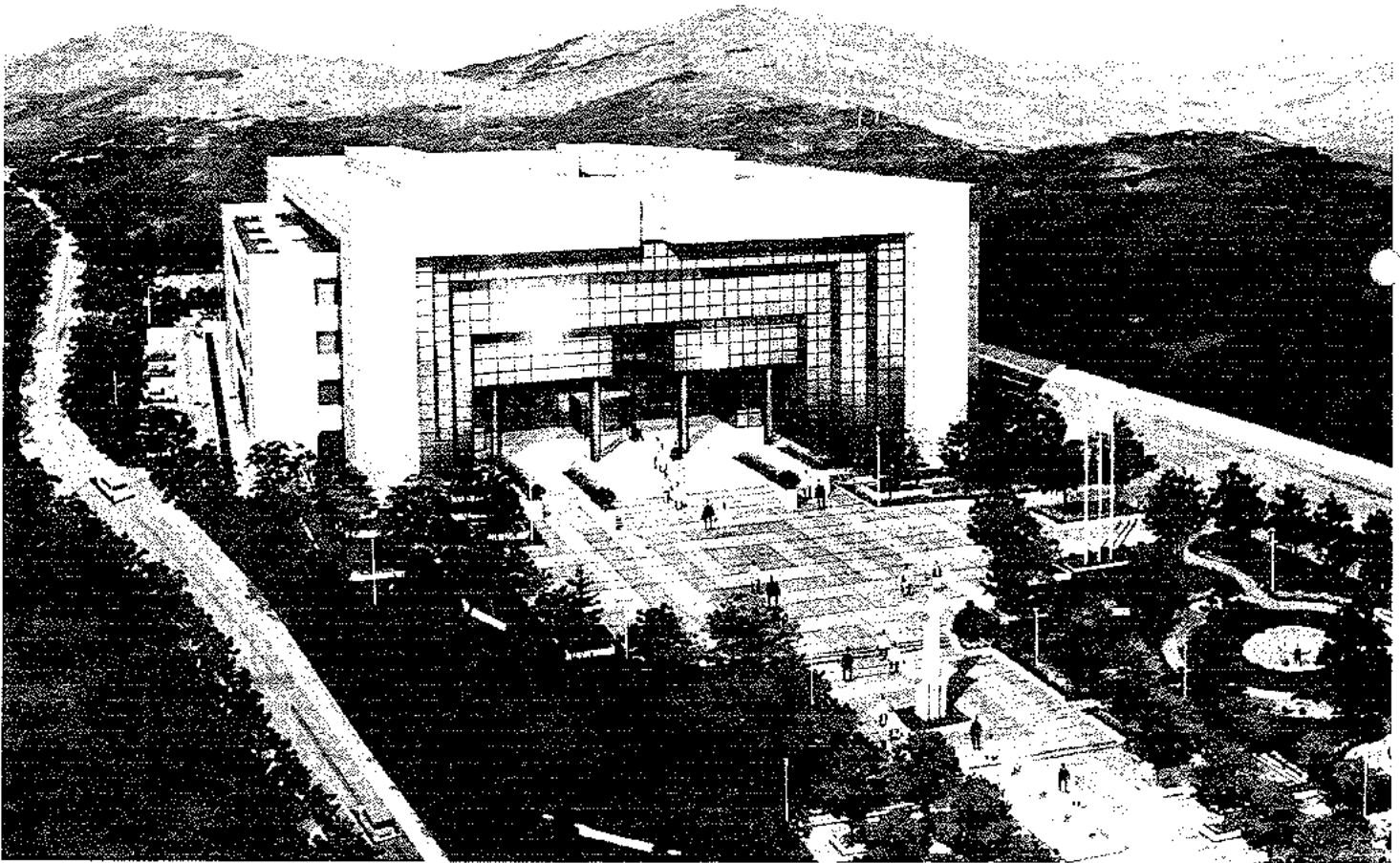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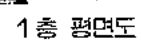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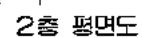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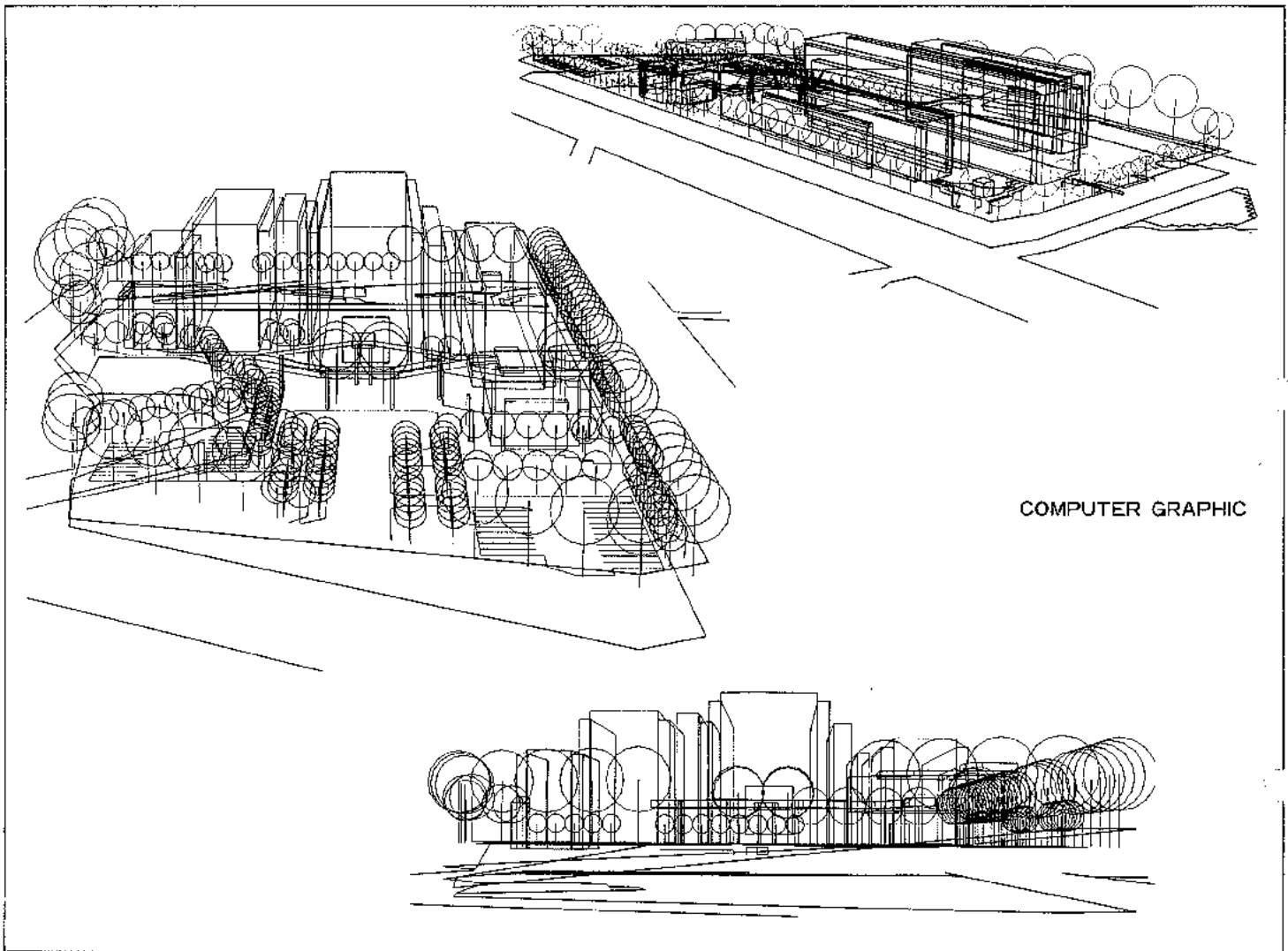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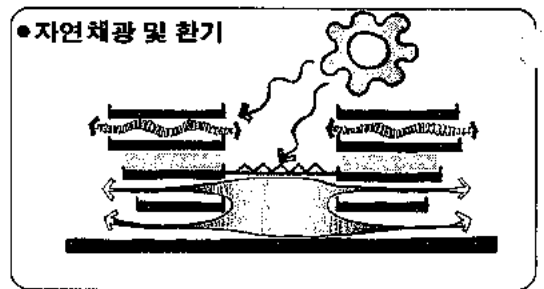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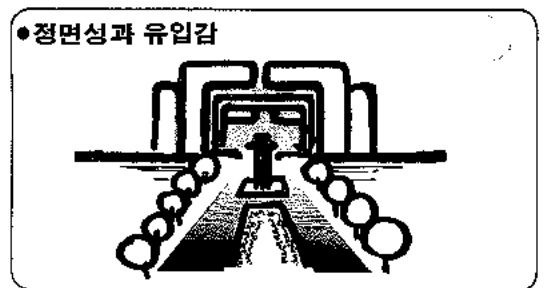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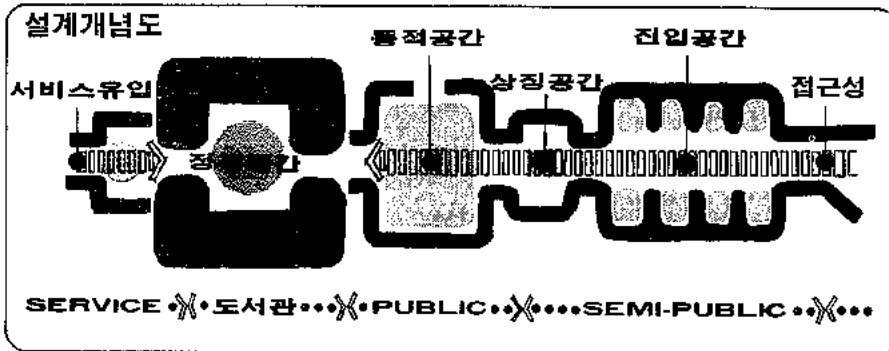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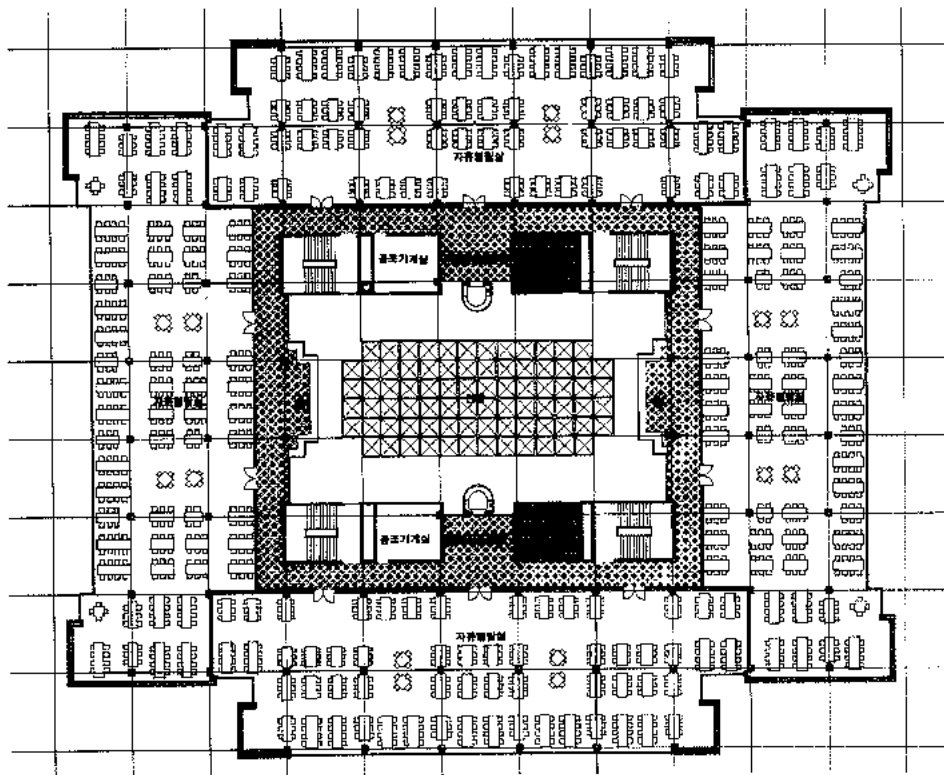
가람건축 · 장연철 (案)

- 대지면적 : 17,160㎡
- 건축면적 : 4,097㎡
- 연면적 : 21,964㎡
- 건폐율 : 23.88%
- 용적율 : 96.64%
- 규모 : 지하2층+지상5층
- 주요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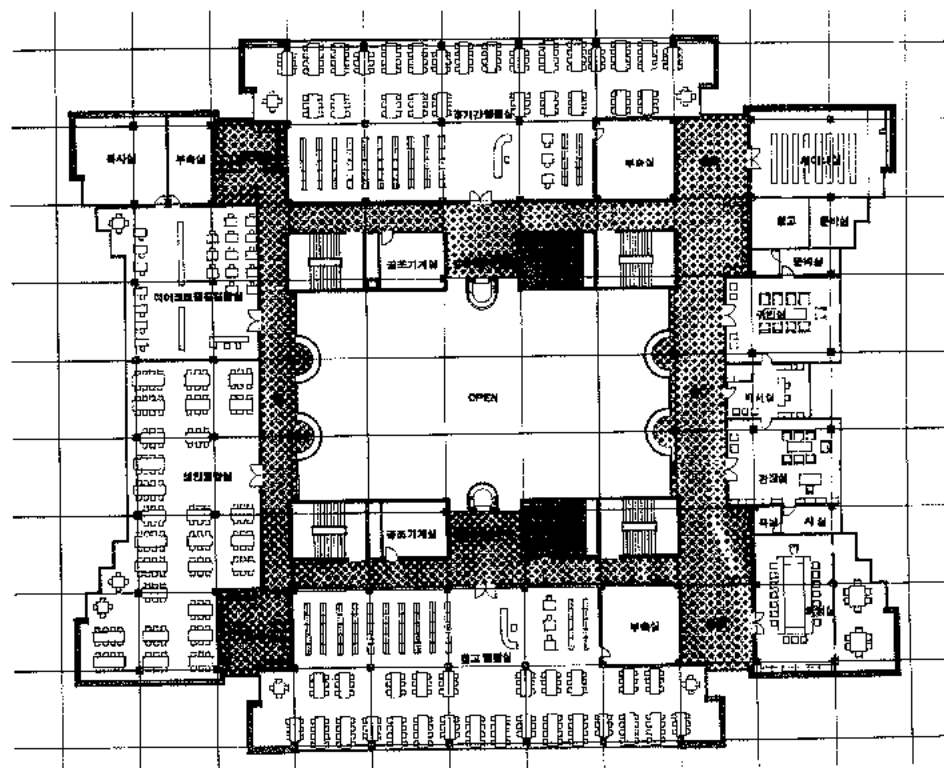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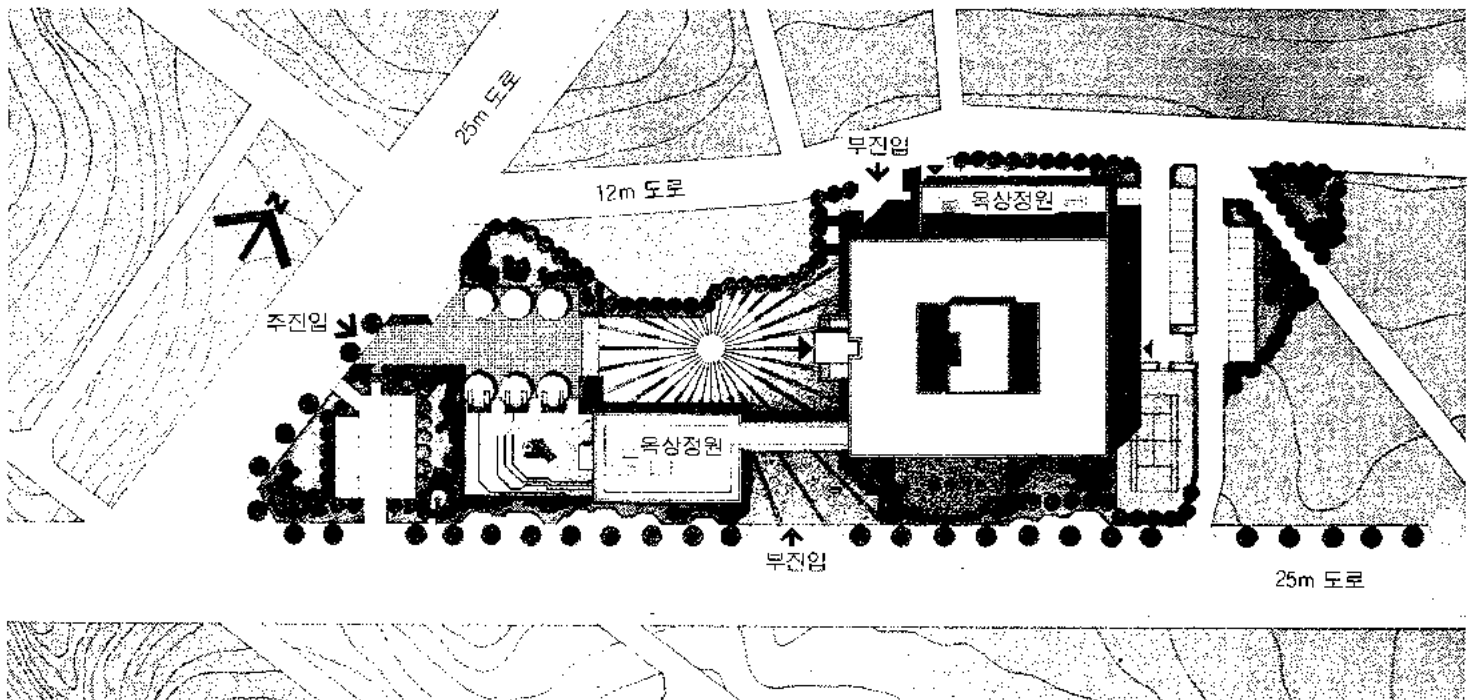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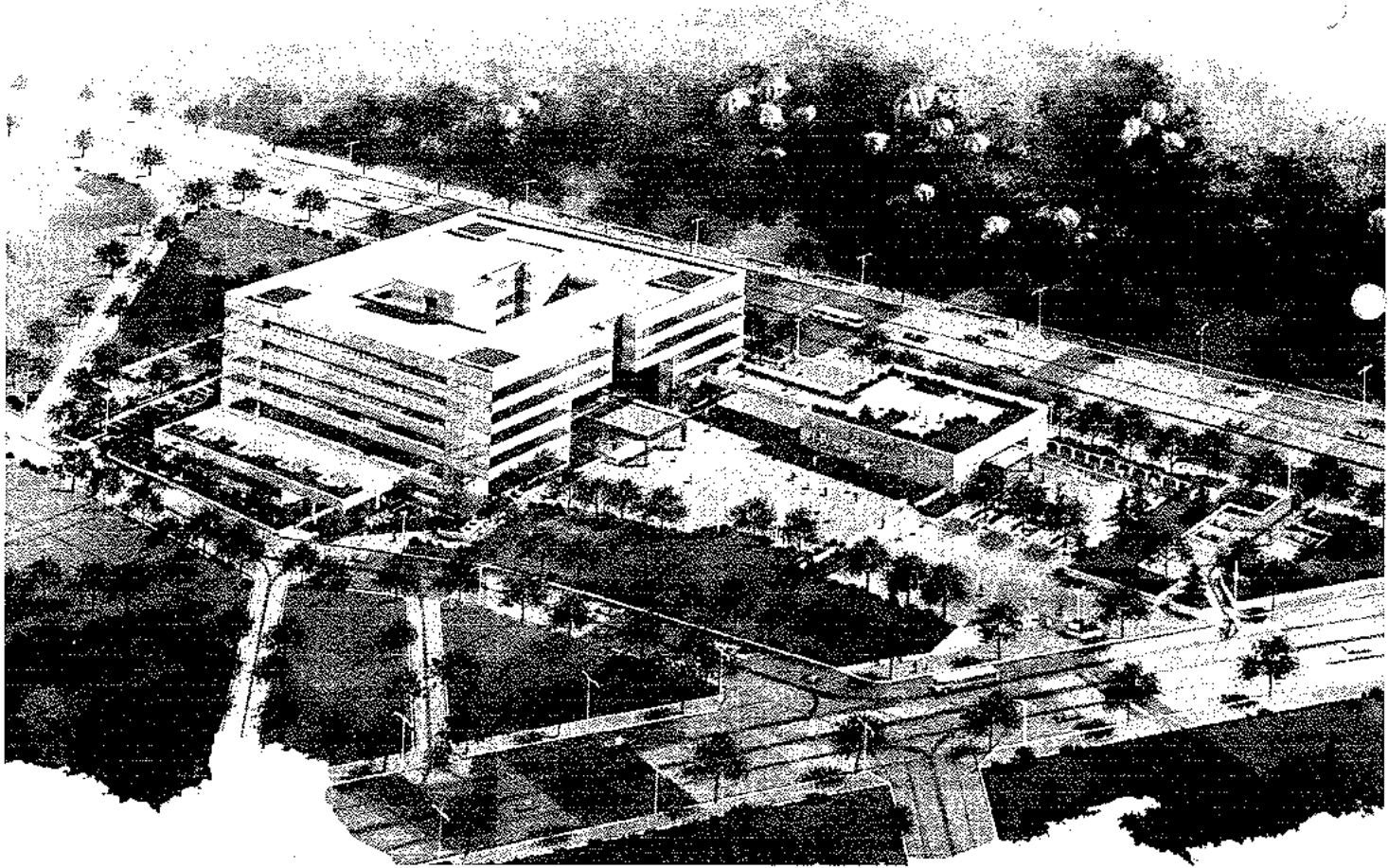
4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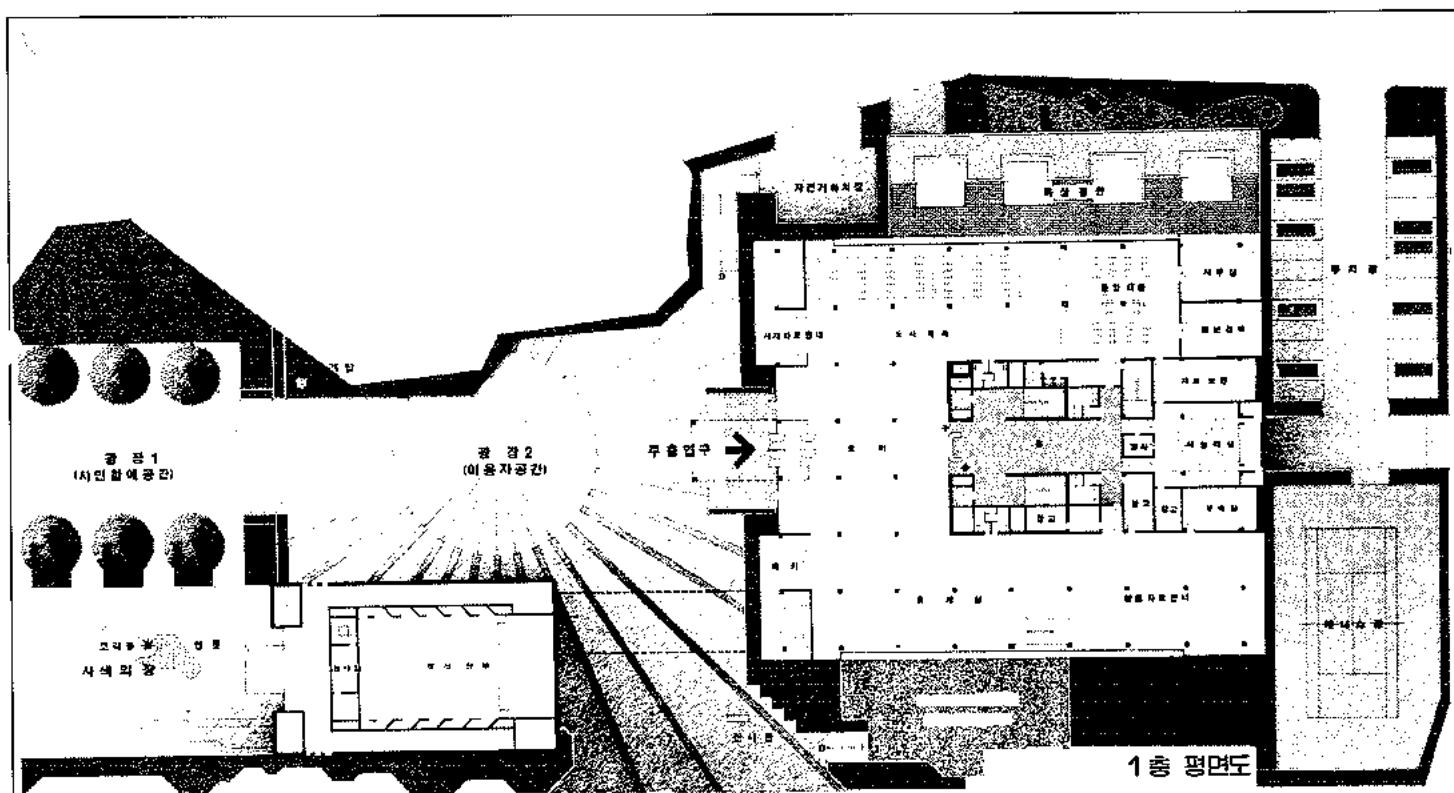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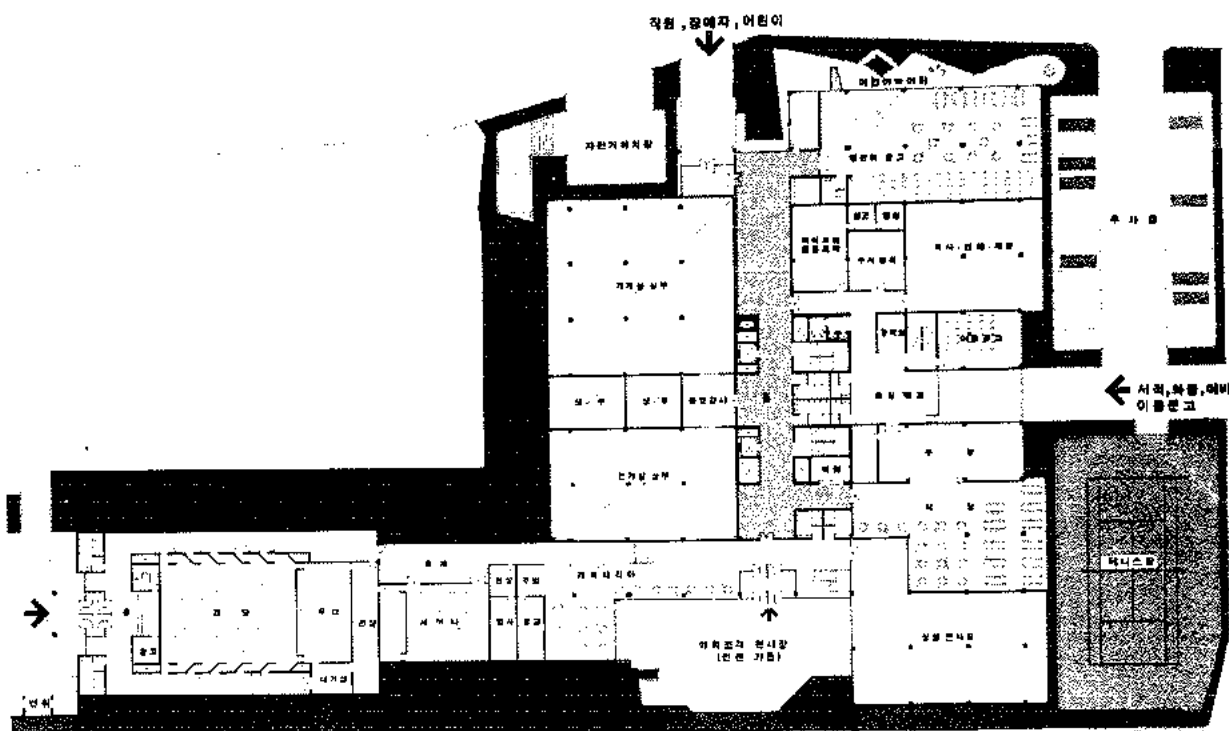
신건축 · 장덕형 (案)

- 대지면적 : 17,160㎡
- 건축면적 : 4,807.82㎡
- 연면적 : 21,943.90㎡
- 건폐율 : 27.32%
- 용적율 : 106.02%
- 규모 : 지상 5층, 지하 2층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외벽재료 : 화강석 버너구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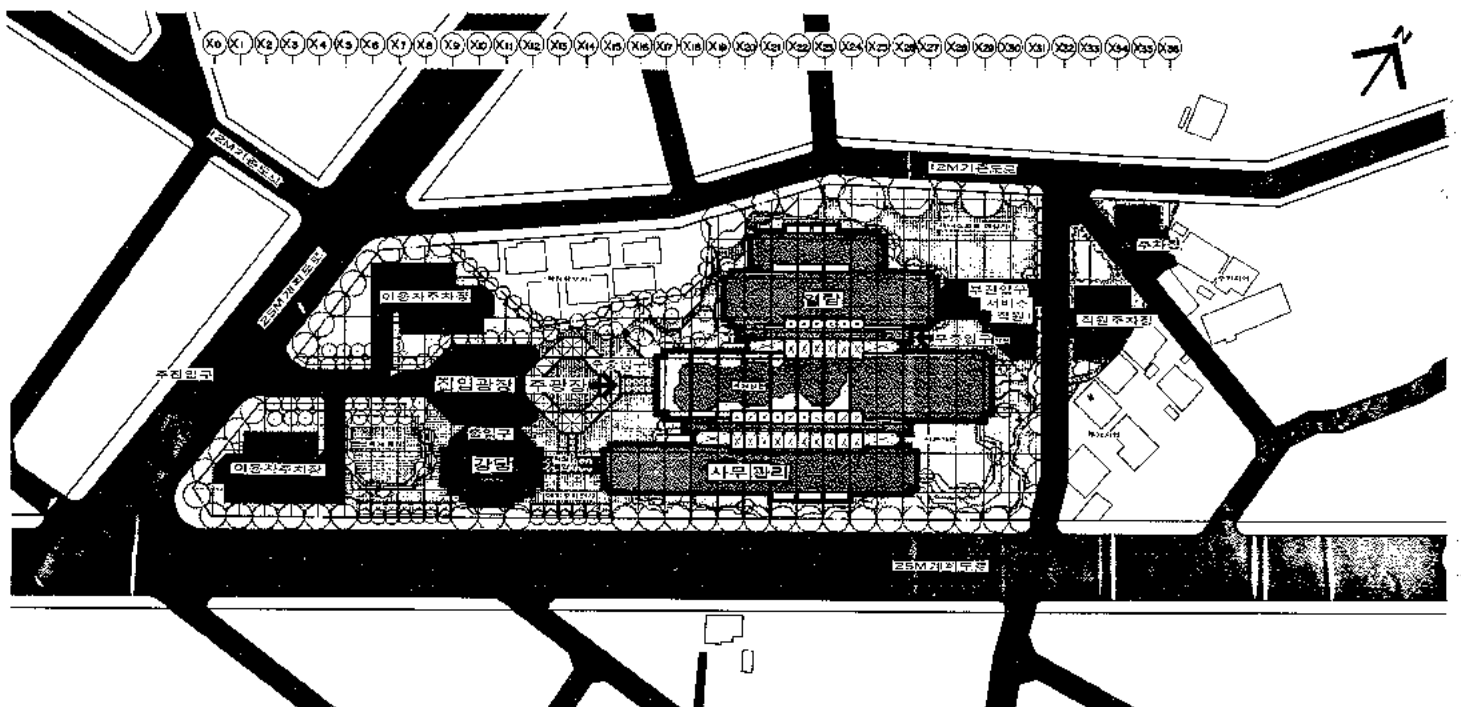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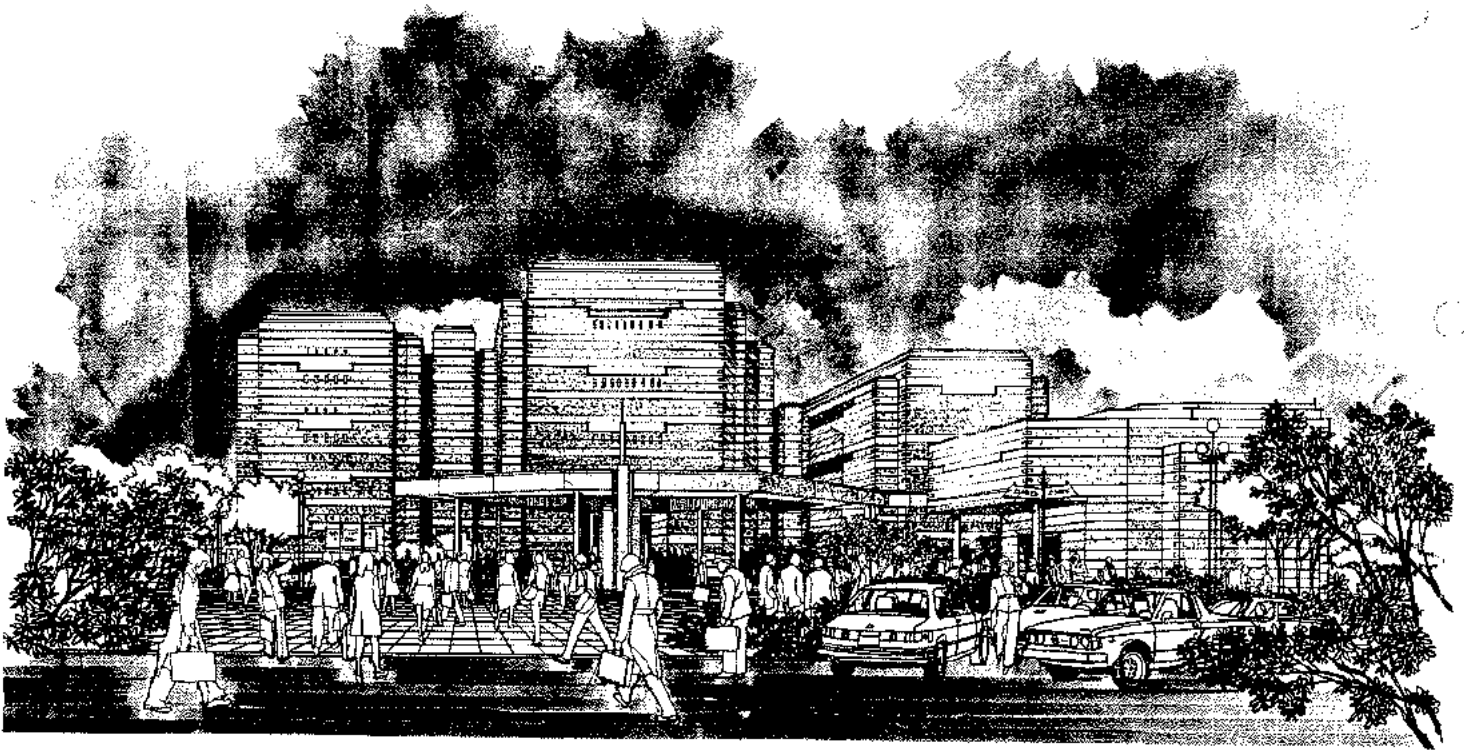
25M 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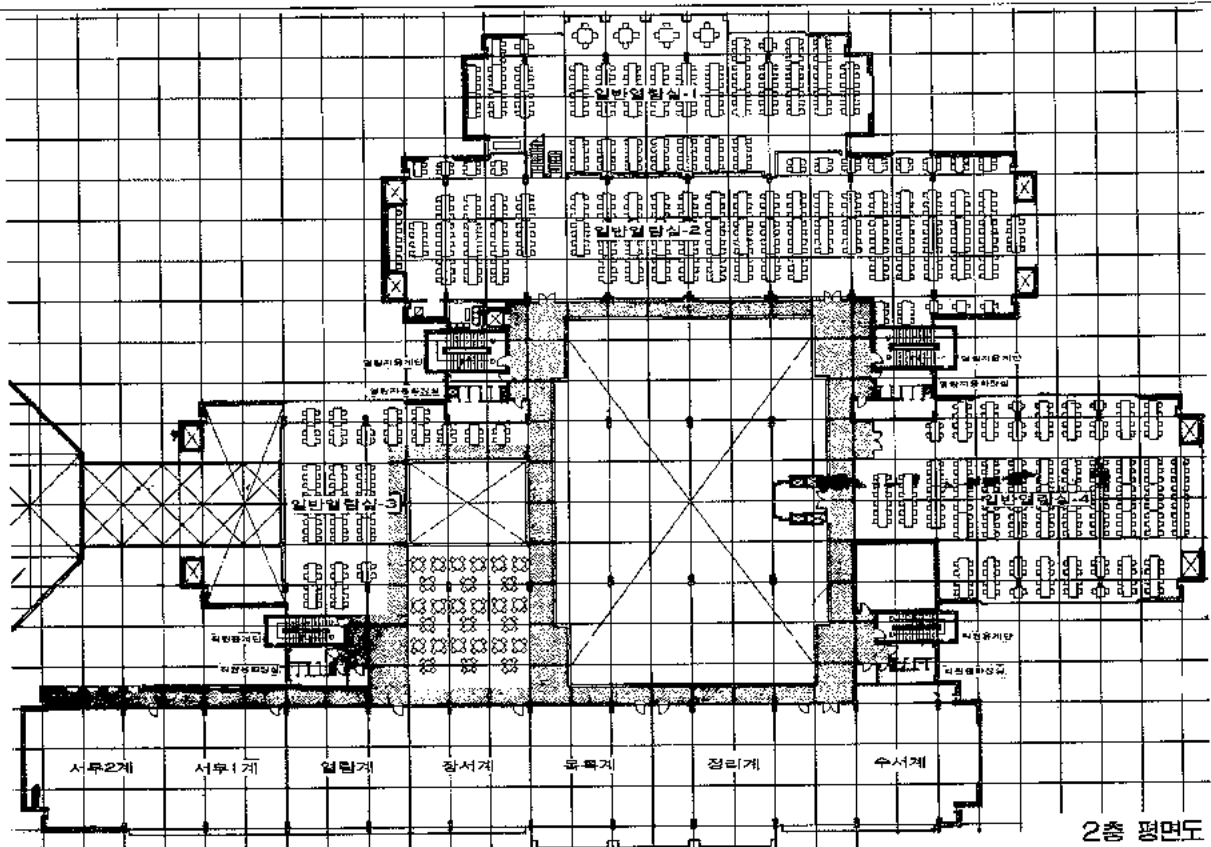


지하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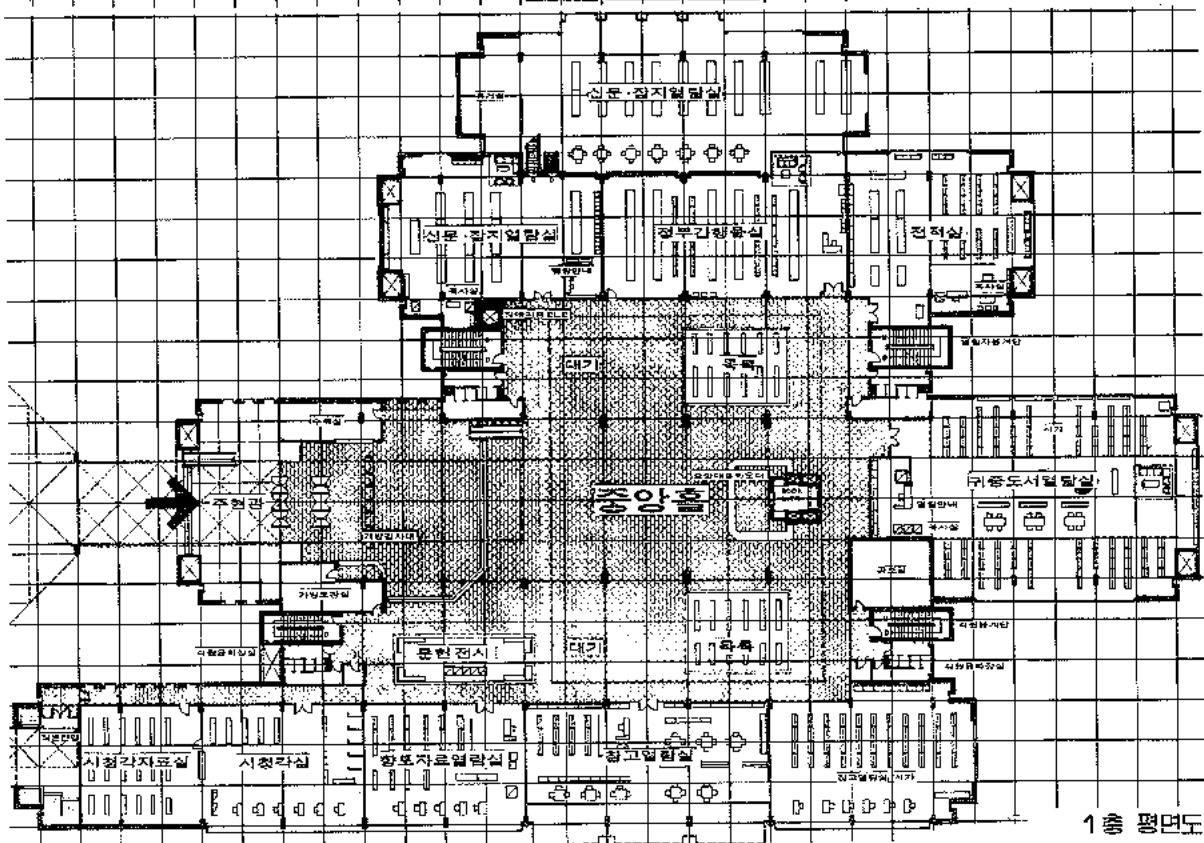
(주) 공간연구소 · 김수근(案)

- 대지면적 : 17,160㎡
- 건축면적 : 4,998.5㎡
- 연면적 : 21,650.5㎡
- 건폐율 : 29.1%
- 용적율 : 126.2%
- 구조 : 철골+철근콘크리트 라멘조
- 주요외장재 : 화강석 잔디등 및 물갈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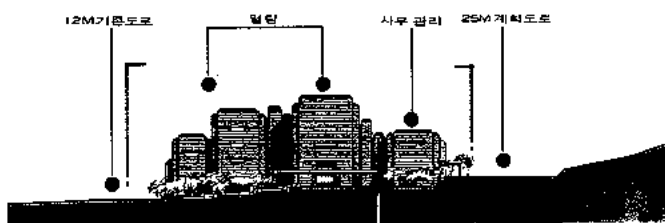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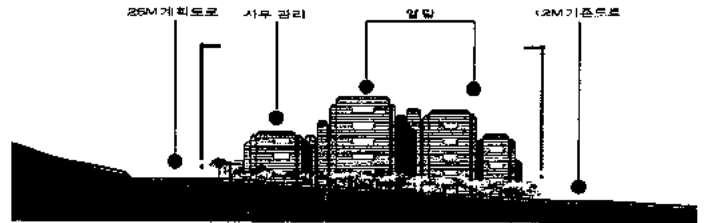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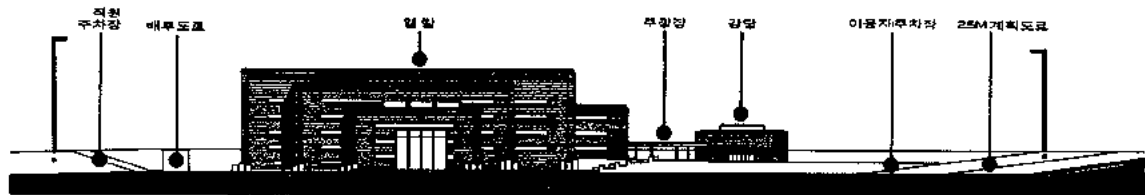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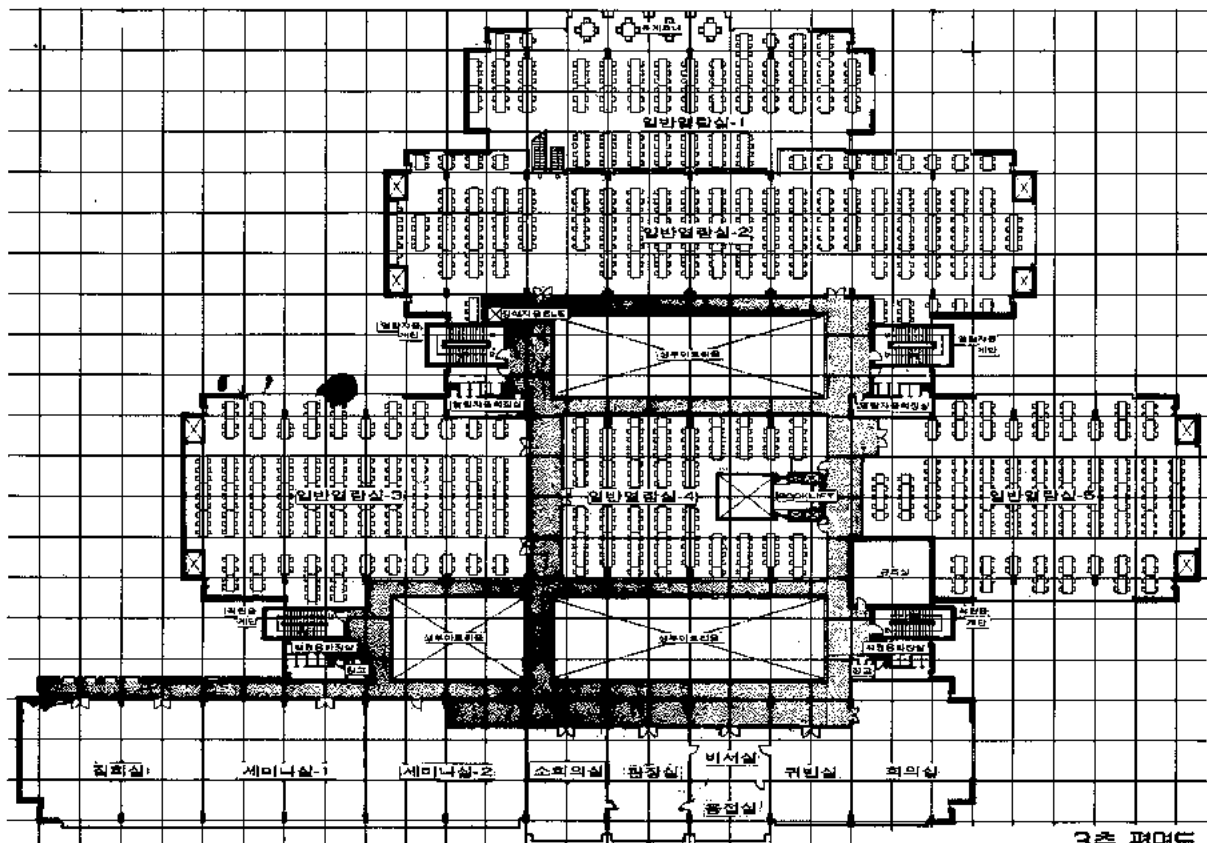
대지단면도 - 1



대지단면도 -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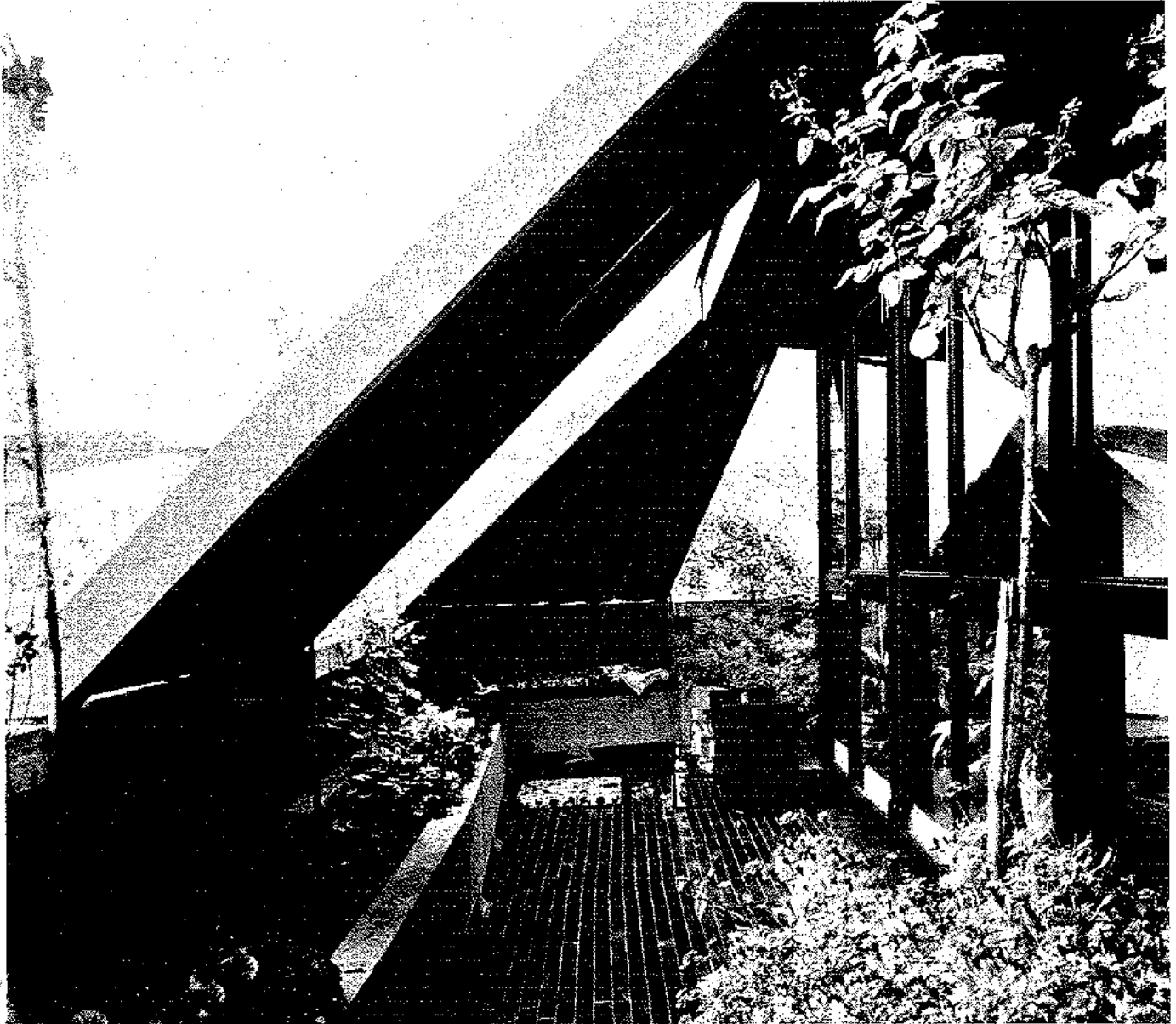


대지단면도 - 3



3층 평면도

발코니



趙 聖 烈
(건축가)

* 발코니와 데크

발코니는 실내 주거의 옥외 연결을 위한 공간, 즉 실내 공간에서 한 발만 내디디면 대기권과 접하게 되는 편리한 생활 공간으로, 주택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실내 공간의 연장 부분으로 준실내라

고 할 수 있으며, 실내와 근접되어 있으면서 사실상 옥외공간인 발코니는 창 하나를 사이에 둔 실내의 연장공간이다.

장독대, 빨래 너는 곳, 옥외 창고 등의 수용기능을 충족시키면서도, 정원의 녹음을 즐기거나 싱그러운 꽃과 수목들을 감상할 수 있고 휴식을 취할 수 있어 매마른 현대생활에서 잠시나마 낭만적인

감흥을 느낄 수 있고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곳, 산책 공간, 화초가 있는 뜰로서의 역할도 하는 곳이 발코니이다.

따라서 테라스는 항상 즐겁고, 밝고, 매력적이어야 하므로 주위의 풍경 역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발코니 인접창에 향아리에 담아놓은 꽃이나 식물들을 놓아 둔다면 한층 화사한 테라스가

된다. 또 옥외 전물을 담쟁이로 덮인 정자나 전망대와 같은 역할을 하게하고 연못과 테라스를 연결하여 실내로부터 소자연에 접하게 하는 일은 테라스의 정취를 돋우는 일이다.

현대 건축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것으로 거실과 같은 바닥 재료를 바깥까지 연장사용하여 일체감을 느끼게 하고 유리벽을 통하여 보여지도록 시각적으로 시원하고 넓은 공간을 형성한 것이 데크이다.

데크는 여름에는 옥외 생활 공간으로 거실의 대행 역할을 하기도 하므로 뒤뜰이나 정원을 배경으로 하는 것이 좋다. 데크에는 식탁이나 휴식, 일광욕을 위한 의자 등을 설치하여 자연속에서 안락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분위기를 주어야 한다.

데크는 주택에서 자연을 누릴 수 있는 환경으로서 대기권과 연결되어 대기의 공기, 초목의 향취를 피부로 느끼면서 파노라마로 전개되는 넓은 세상을 내려다볼 수 있는 곳, 가슴이 열리는 삶을 누릴 수 있는 곳으로 계획해야 한다.

* 발코니의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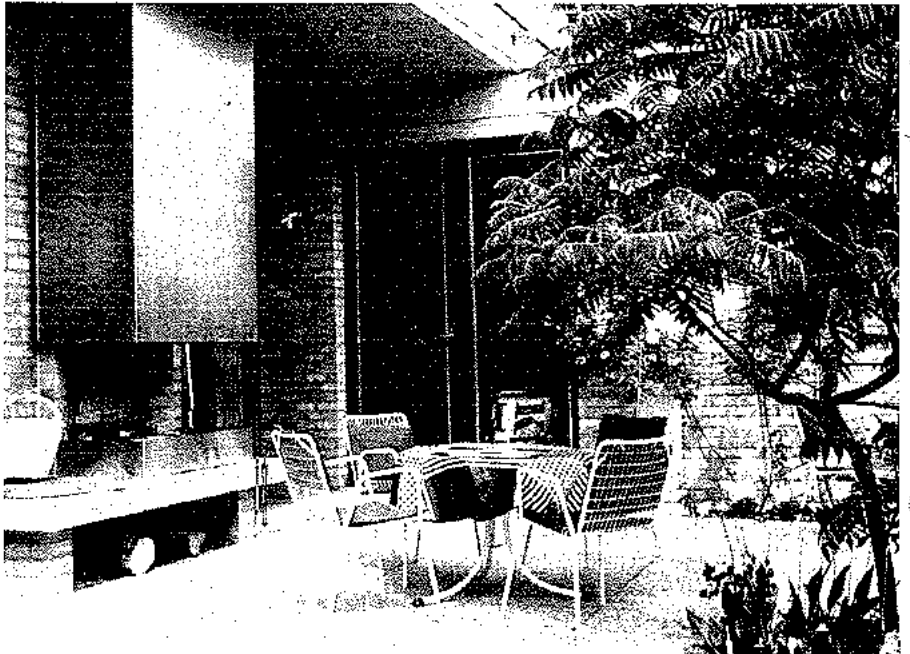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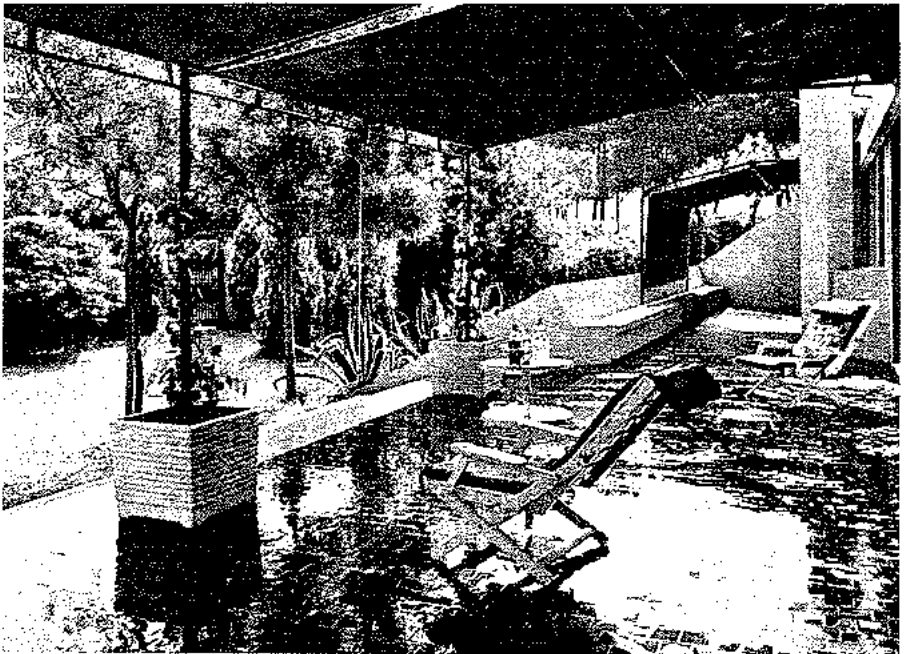
발코니의 위치는 반드시 실내 공간과 근접된 공간이어야 한다. 1층의 경우에는 지면과 격리되어 실내 바닥에 가깝도록 설치하는 것이 좋으며, 대개의 경우 2층 이상의 다층 건축에 대기와 자연환경을 접할 수 있도록 배치한다.

아주 작은 발코니는 창 밖에 또는 문 밖에 몸을 내놓고 난간에 기대어 밖을 조망할 수 있게할 수 있을 정도로 돌출시켜 설치하며, 이러한 돌출형 발코니는 아름다운 문양의 철책으로 난간을 형성하여 옥외의 경관이 되도록 한다.

* 발코니의 난간

발코니의 난간은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시설이자 장식성이 있는 경관으로 간주된다.

발코니의 난간은 안정성과 미관에 착안하여 설계한다. 콘크리트, 철판, 플라스틱 판 등으로 시각이 차단되는 차단형과, 철책, 유리 등으로 설치되는 개방형으로 구분되지만 절충식 난간으로서 반차단형으로 설계하기도 한다.



* 발코니의 장식

발코니는 단지 하찮은 곳, 여분의 공간이 아니라 생활 공간으로 가꾸어 다듬고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한 곳이다.

외부로 나쁜 경관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정돈된 생활 공간으로 아름답게 장식해야 한다.

발코니 장식의 주류를 이루는 것은 무엇보다 조경이다. 발코니의 조경은 인간 생활에서 자연을 보다 가까이 하고 살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하게 된다. 건축의 자연 환경은 가능한 한 건축과 근접시켜야 하고 실내 공간에까지 끌어들이는 것이 이상적이다.

발코니의 조경은 정원의 조경을 발코니에 연장시켜서 조성하는 방법과 발코니 자체에서 조경환경을 조성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정원조경의 연장으로 이루어지는 조경은 발코니 가까이 수목을 심어 나뭇가지가 뻗게 하여 자연환경의 근접 효과를 볼 수 있게 하거나, 건축의 외장과 발코니 주변의 덩굴나무가 발코니의 난간에 뻗어나게 하는 방법으로 조경 환경을 형성한다.

발코니 자체에서 독립적으로 조성되는 조경은 그 스케일이 작고 한계가 있다. 쉽게 바뀌고 주고 옮길 수 있는 화분의 배치를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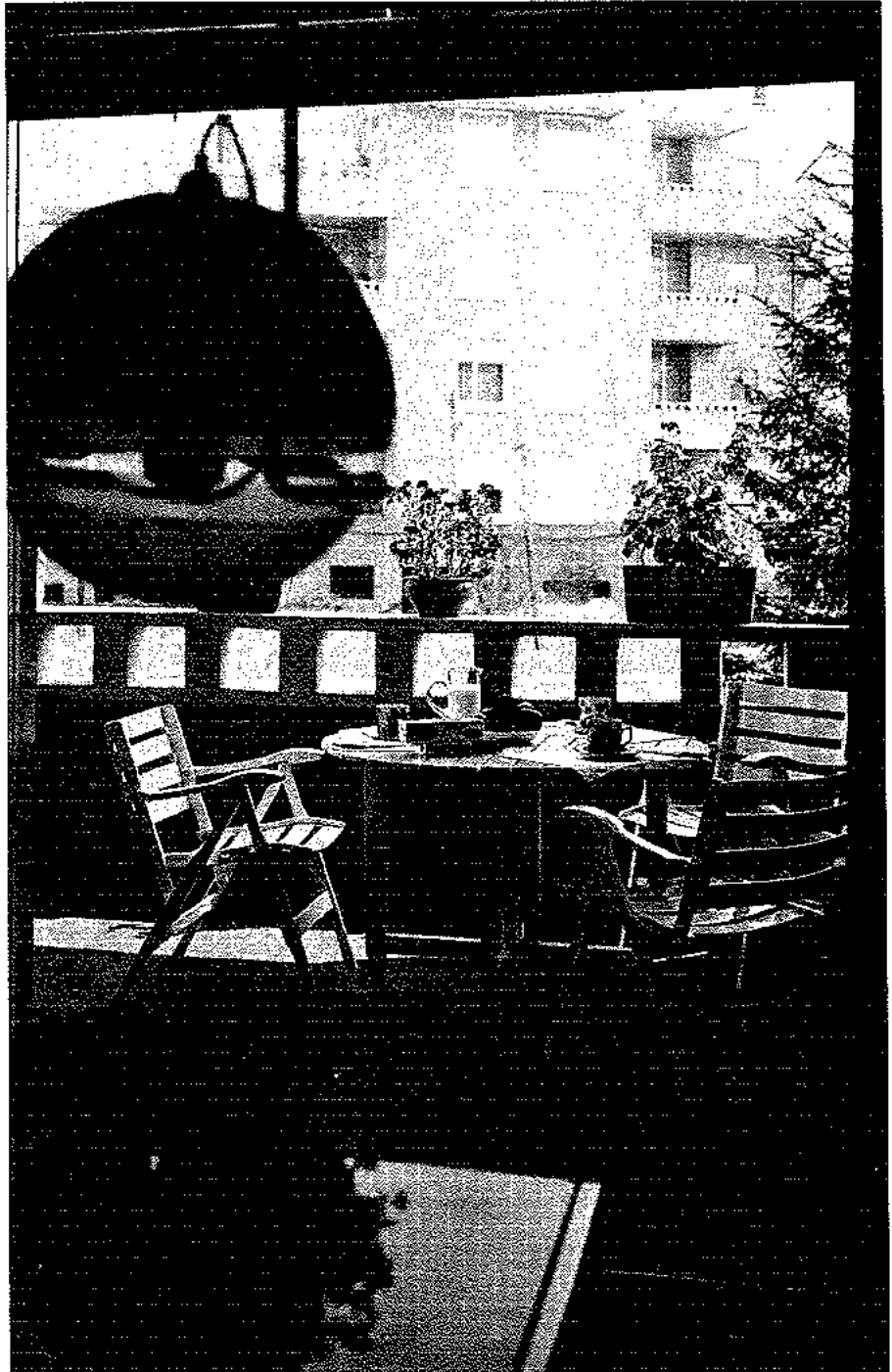
조경배치에서 유의할 것은 어떤 화초도 발코니 영공 밖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하는 일이다. 발코니의 큰 윤곽 안에서 장식이 되어야 한다.

* 아파트의 발코니

대지가 없는 집, 집단주택에서 유일한 옥외 공간으로서의 발코니의 역할은, 특히 도시주거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아파트에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대지의 공기를 마음껏 마시며 활기를 쫓 수 있는 곳인가 하면, 조경 공간으로서 도시의 집단 주거 생활을 살찌게 해 주는 곳이다.

그러한 발코니는 옥외 생활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꾸며야 한다. 키가 큰 수목의 화분을 발코니에 배치하면 옥외 조경의 볼륨이 생기며 바람에 흔들리는 큰 나무를 실내 공간에서 창을 통하여 바라볼 수 있게 된다.

아파트 발코니의 조경은 전체 단지의



경관이자 단위 아파트의 자연 환경 조성으로서의 가치를 갖는다. 밖에서 보는 발코니의 경관이 좋아야 하고 실내 공간에서는 옥외전망 사이사이로 보이도록 하는 것이 좋다.

* 데크의 형성

주택의 주된 부분인 거실과 식당은 옥외의 전망이 있는 쪽으로 그 개구부를 배치한다. 이 개구부는 정원에 면하게 되며, 개구부와 정원 사이에 데크를 형성하므로써 실내와 정원과의 근접이 용이

해진다. 데크의 디자인은 옥외 생활 공간의 차원에서의 조경 계획이고, 정돈된 기능적인 옥외 공간이 실내 공간과 이어져서 배치되는 것이므로, 데크를 계획할 때는 효율성을 생각하여 넓고 시원한 너비로 형성하는 것이 좋다.

데크의 재료는 콘크리트와 나무로 구성하는 것이 좋다. 데크를 떠받치는 구조체는 경제하고 날렵한 경계 구조의 P.C. 콘크리트 부재로 형성하고 데크의 판과 난간은 목재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 데크의 가구

옥외 생활에서 가장 중점이 되는 것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므로 무엇보다도 옥외 가구의 필수적인 요건은 안락함이다. 앉아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소파나 의자, 그리고 긴 의자 등을 배치한다.

또 옥외 공간에 설비되는 가구류는 경우에 따라 그늘이나 햇볕을 찾아 용이하게 이동할 수 있고, 우천시에 실내로 옮길 수도 있는 가벼운 것이 좋다.

옥외 공간에 가구를 설치할 때 유의할

점은 가구로 인해 자유스럽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침범을 당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데크의 가구는 내습, 내구력이 있고 청결관리가 용이한 것이 바람직하다. 플라스틱, 알루미늄으로 된 가구는 옥외 비치용으로는 적합한 가구라고 하겠다. 최근에는 표면처리를 분체 도장으로 하여 표면 강도를 높인 철구조로 된 옥외 가구도 잘 나오고 있다.

* 데크의 바닥과 난간

데크는 바닥이 그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므로 바닥 재료는 매우 중요하며, 특히 햇빛이 바로 내리 쏘이고 비나 바람과 같은 기후의 변화가 바로 닿는 곳이기 때문에 이러한 자연의 변화에도 변하지 않는 재질의 것을 이용해야 한다.

또 바닥 색깔은 태양의 반사를 막기 위해 일반적으로 중간색을 많이 쓰게 된다.

데크는 실내에 이어져 있으므로 정원의 바닥과 차이가 생긴다. 이 정원파 데크의 바닥 차이로 해서 데크의 난간을 설치하게 된다.

난간은 콘크리트, 조적조로 쌓는 구조적 폐쇄형과, 철책, 나무, 또는 유리로 설계되는 개방형이 있다. 난간은 무엇보다도 안전 기능과 함께 장식적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

데크의 난간을 투명유리로 하면 시각 장애도 없애고 세련된 외관을 살릴 수도 있으며, 철 구조에 적층유리를 끼우면 견고하며 수명이 길게 유지된다.

* 데크와 차양

강렬한 햇빛과 비를 차단하고 데크 주변의 이국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가벼운 건축물로서 데크 위에 차양을 설치하게 된다.

차양은 대체로 폐쇄적 고정형, 개폐식 천막형, 개방형 등의 세가지로 구분되는데, 폐쇄적 고정형 차양은 데크의 윗부분에 고정 설치하는 지붕같은 것으로, 텐트지, 슬레이트 등의 가벼운 재료로 간결하게 설치할 수 있다. 고정시설이므로 일정한 형태를 유지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하나, 햇빛이 항상 차단된다는 것이 단점이다.

개폐식 천막형 차양은 두루말이 장식이 되어 있어, 평시에는 폼다가 필요할 때 말아올릴 수 있는 편리한 기능이 있지만 넓은 데크용으로는 부적당하다. 천막의 무게, 개폐식 시스템의 한계때문에 좁은 데크에만 가능하다.

개방형 차양은 데크와 같이 가장 보편적으로 설치하는 루버 시스템의 공간지붕을 말한다. 광선의 굴절 효과와 심리적으로 느끼는 데크의 아늑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여러가지로 재미있게 설계하는 차양형이다. 그 위에 덩굴나무를 올려 조경적 차양으로 발전시킬 수도 있다.





국제그룹관 전경

창조공간의 도전

- 국제 그룹관 -

한 도 록

홍익대학교 미술대학교수

(1) 건 물

○대 지 : 830 m² (250평)

○연건평 : 327평 (1층 : 210평, 2층 : 117평)

○층 수 : 2층

(2) 전 시

○테 마 : 공존공영 (함께 번영하는 국제그룹)

"TOGETHER WE
PROGRESS"

○전시기본방향

- 국제그룹의 경영이념인 공존공영을 바탕으로한 그룹이미지 홍보
- 내수품목을 중심으로한 주력 생산

품의 상징적 전시

• 그룹관 건물 자체가 그룹이미지 홍보를 위한 전시품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설계 하였으며, 특히 순수 국산 자요및 기술에 의한 독립관 시공으로 국제그룹의 이미지를 허구성없이 표현 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3) 전시공간구분및 전시물 내용

○외 부

- 동양 최대의 대형 애드발롬 (길이 13m, 구경 10m, 헬륨가스 사용)

○1층입구

- 종합무역및 그룹이미지 홍보물을

C/T와 C/P로 처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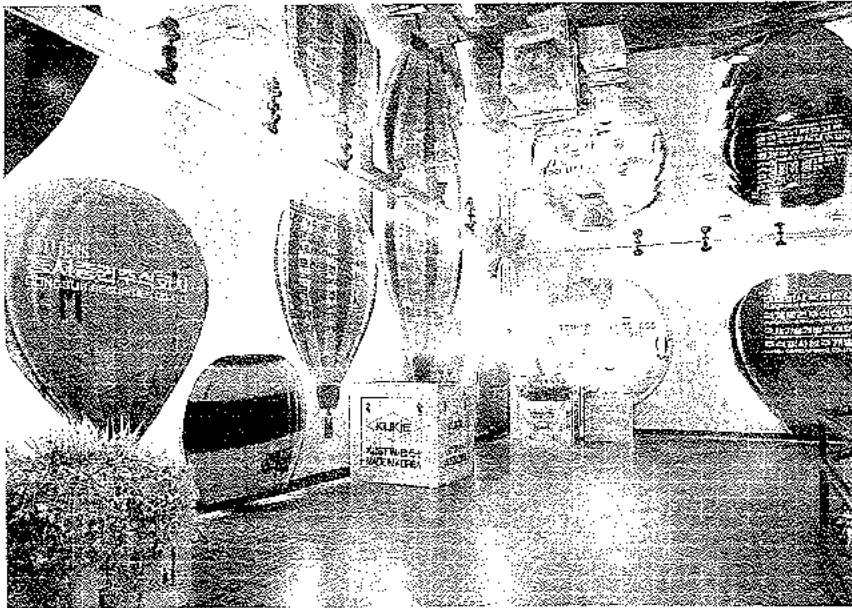
○1층전시실

• 국제그룹 신사옥 모형전시와 이를 상징하는 네온탑은 성장발전하는 그룹의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국내최초의 솔라에너지 이용 초현대식 오피스 빌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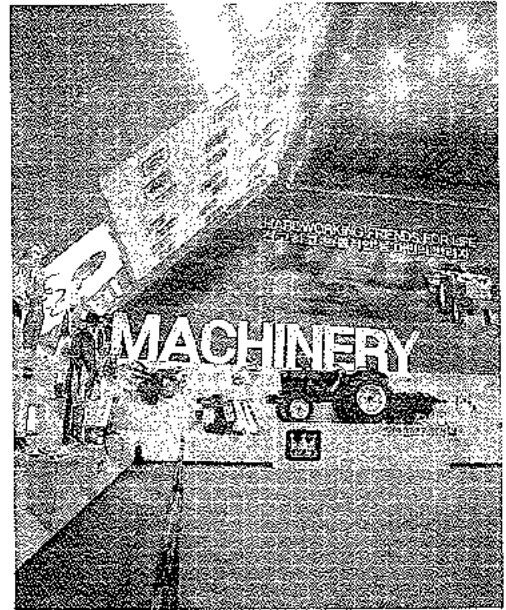
○2층전시실

- "미스터 국제" (일명 할크로보트, 신장 10m의 거인 로봇트)
- 트랙터 실물및 농기계 상징전시
- 철강및 건설부분 상징전시
- 프록스펙스및 리바이스제품을 마케팅과 함께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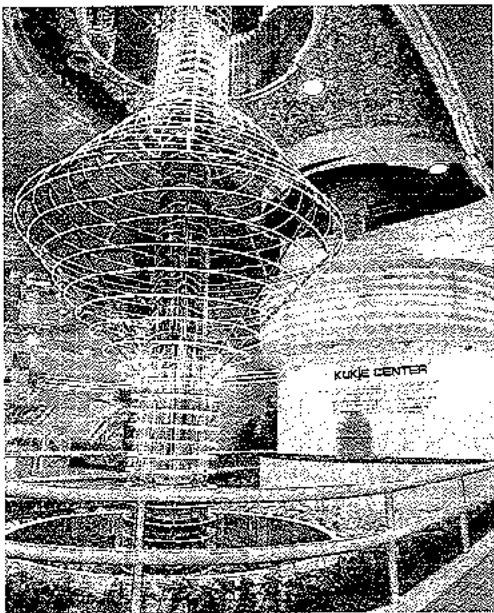
○1층출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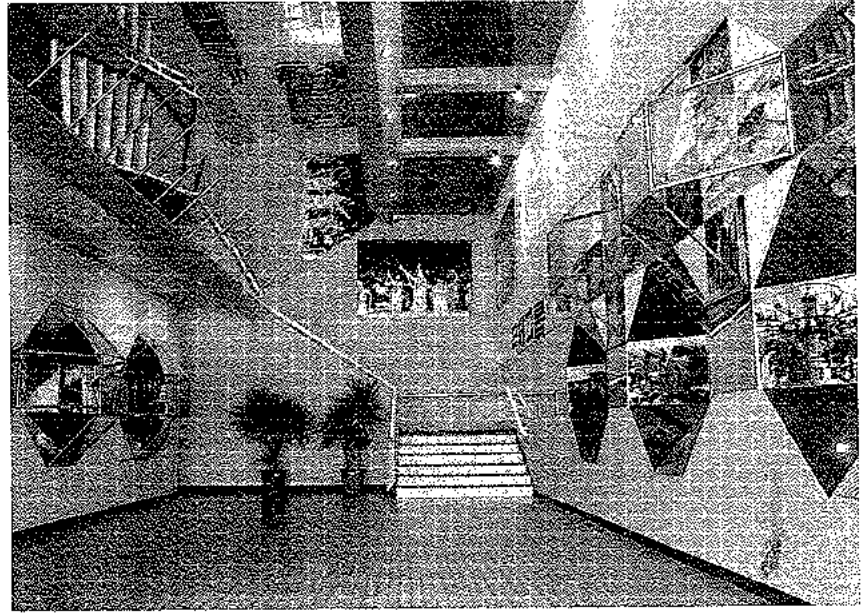
〈1층 전시실〉



〈2층 전시실 : 철강 및 트랙터 등 전시〉



〈그룹관 1층 전시실〉



〈1층 출구 벽면전시〉

- 그룹 관계사 홍보물 전시

(4) 동 선

○일반 관람객

외부가드레일→1층입구→1층전시실→2층전시실→1층출구로 이어지는 연속 동선으로서 관람객의 정체없이 최대한의 관람권을 수용할 수 있는 동선을 형성하였다.

○VIP 및 바이어

일반관람객과 동일한 동선을 유지하되 1층입구와 1층출구를 폐쇄복도로 연결, 관람후 커피실(상당실)을 경유하여, 1층입구(정문 우측의 바이어 전용도어)를 거쳐 강외로 나가도록 동선을 형성하였다.

(5) 건 축

○외형 특징

• 사다리꼴의 특이한 기하학적 형태 및 외부벽면을 거울로 처리하여 환상적인 느낌을 줌과 동시에, 무지개 색의 대형 애드발론을 전면에 설치하여, 그룹관 자체가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는 전시품으로 보이도록 구성하였다.

• 그룹관 전면에 국화꽃으로 대형화단(이는 외부의 거울 이용으로 입체효과를 더욱 높임)을 설치하여 많은 관람객의 휴식 및 기념사진 촬영장소로 이용토록 하였다.

또한 색상은 흰색, 빨강, 거울의 은색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 강력한 이미지 전달이 되도록 하였다.

○내부 특징

• 관람객에게 동선통제 등 부담감을 주지않고, 실물 전시보다는 홍보측에 치우친 전시방향과 부합되게 하기 위하여, 1층→2층→1층 순서로 연속적인 동선을 형성하는 개방적 전시장을 구성하였다.

• 2층은 천정의 높이를 최대한 확보하여, 힐크로보트, 트랙터 등 대형 전시물 전시를 위한 초대형 공간을 형성하였다.

• 상당실, 운영사무실, 주방, 탈의실 등의 부속시설 및 기계실은 그룹관 전면의 경사진 DEAD SPACE를 활용설치하여 전시장 면적활용을 극대화했으며, 이에 따라 부속시설은 일반관람객 동선과 자연스럽게 차단되도록 하였다.

外部環境設計

—어린이 놀이터—

崔 紀 秀

서울市立大學 造景學科 教授

어린이 놀이터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설치되는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되는 도시공원법에서 도시공원 중 어린이공원에 속하며, 도시의 녹지공간에서 최소의 단위가 되는 것으로 중요한 요소가 된다. 현대의 주거는 위생적이고 실용적이며, 건물 주변의 토지이용은 어린이들에게는 부적절한 공간에 방치된 장소가 된 어린이 놀이터를 호기심의 공간에서 즐거운 모험이나 체험으로 구김살 없이 활기있는 일상생활이 이루어 지도록 하기 위하여 살펴본다.

1. 어린이 놀이터 개념 및 분류

어린이 놀이공간이란 어린이가 스스로의 힘으로 이용하는 공간으로써 이곳에서 어린이들의 신체적·정서적·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그의 지능을 개발하고 지식과 지각을 발달시키는 놀이가 행해지는 모든 영역을 말하며, 놀이터란 놀이시설을 집중하여 놓은 장소를 말한다.

도시공원의 하나인 어린이공원은 15세 이하의 아동이 이용하는 住區基幹公園의 하나로 규모상 소공원에 속하나 이용률은 도시공원중 가장 높은 편이다. 보통 주 이용자인 어린이의 연령에 따라 2~5세용 어린이놀이터(幼兒公園), 5~10세 아동의 幼年公園과 12~15세 아동의 少年公園으로 분류한다. 또 놀이 공간의 특수 기능에 따라 모험공원, 교통공원, 신체장애아를 위한 공원 및 종합적인 어린이 공원등으로 분류되나, 이곳에서는 취학전 어린이들의 주거생활에서 이용률이 높은 어린이 놀이터만을 대상으로 고찰 해 본다.

주로 취학전 어린이가 이용하므로 보행거리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되는 근린단위가 기본이 되며, 150~250m의 범위가 적당하므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없고 보행자 도로와 인접하여 안전하고 접근이 용이한 곳으로 낮은 담이나 식재등으로 분리시켜 놓은 장소가 바람직하다. 관리면에서도 주거단지내 혹은 주거지에 설치되므로 공공단체의 관리보다 근린주민 스스로가 직접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인 운영이다.

주택건설기준에 의하여 어린이놀이터는 이용이 편리한 곳에 설치되되, 그 1개소의 면적이 100세대이하일 경우는 세대당 3.3㎡이상이고, 100세대가 초과할 때에는 330㎡에 초과하는 세대당 1.1㎡ 비율로 가산하도록 되어 있다. 놀이터 면적이 100㎡이하인 경우는 그 폭을 6m 이상, 1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폭을 9m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건축물의 1층 외벽면으로부터 5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또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중 상업지역, 특정가구정비지구와 재개발구역안에 주택과 동일 건물로 건축 할 경우 주택규모가 200세대이상이면 200㎡에 200세대를 초과하는 데 세대당 1.1㎡의 비율로 가산한 면적 이상의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하도록 정하였다(표-1).

2. 어린이 놀이 형태 및 시설

어린이는 놀이라는 행위를 즐기는 동안 일상생활의 불안함을 잊고, 그것을 통하여 사회적인 적응을 돕고, 또 놀이를 통해 협력정신의 양성, 문제 해결에 대한 사고력과 판단 및 독립심을 기를 수 있고 개인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 및 사회규칙의 터득과 존중하는 방법등을 배우게 하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

어린이의 놀이 활동은 연상의 어린이나 성인 활동의 모방으로 구성되는 것이 보통이며, 어린이의 근육과 지능발달에 따라 놀이가 달라지며 놀이시간도 감소하고 육체적 활동에서 최소의 에너지와 최소의 노력을 요구하는 놀이 유형으로 바뀌어진다. 어린이놀이는 시간과 공간을 무시하고 놀고 싶을 때 놀으며 아무 장난감이나 처음보는 사람과도 형식이 없이 자발적인 행위로서 이루어진다.

어린이 놀이 시설은 어린이 놀이 행태 특성을 고려하여 어린이에게 끊임없는 도전물이고 창조물이어야 하며, 예견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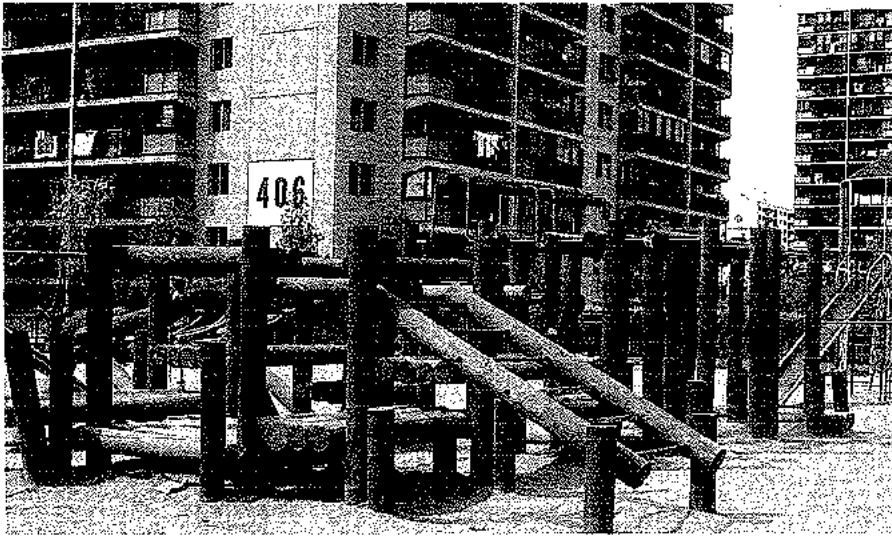


그림-2. 모래밭에 세워진 목재 놀이시설 (과천)

린이들의 생각은 사고가 구체화됨에 따라서 특정적이 되고 놀고 싶어하는 위치도 명확하게 되며 그 장소에 대한 흥미도 증가하게 된다. 어린이는 놀이 유형의 주제 및 대상이 다양하기 때문에 놀이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노는 것을 볼 수 있다. 주택지의 주변은 잠정놀이 기회 혹은 놀이 장소로 판단되므로 안전한 주변환경 마련이 우선적이다.

놀이공간의 바닥처리하는 기능에 따라 운동시설이나 놀이시설이 설치된 바닥은 모래·경양토나 수목 수피(bark) 등이 적당하며, 정적 놀이공간에는 연질포면 특히 잔디가 이상적이다. 또 앉아서 하는 놀이나 집중적으로 바퀴달린 놀이를 하는 공간은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바닥재료는 내구적이며 쉽게 청소될 수 있고 물이 흘러도 빨리 마를 수 있으며 비록 넘어진다고 하더라도 다치지 않는 탄력 있는 표면이어야 한다.

어린이 놀이터는 놀이를 위한 기능이 한 단위로 정비된 완결형으로서 하나의 놀이터만으로 독립해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꾸며져야 하며, 이용자의 나이가 어리기때문에 과히 움직임이 심하지 않

는 놀이터의 구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또 이용하는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자의 동반이 요구되는 일이 많으므로 함께 그늘에서 쉴 수 있는 시설과 장소 마련이 필요하며, 이 장소는 특히 어린이를 통한 지역사회의 중심역할을 하도록 꾸며져야 한다.

규모도 작고 이용자의 행동속도도 완만하므로 동일 공간속에서 동선이 교차되는 것을 피하여 시설물을 배치하고 어린이들의 시선은 어른보다 낮으므로 어린이의 사용에 편리한 크기로 설치되어야 한다.

〈표-2. 각종 놀이시설의 표준 치수

종	類	名	稱	치	수(m)	同時利用 人 數 員	1 個 當 所 要 面 積
				(高)	(길이)	(너비)	(m ²)
그	네	2	連 式	2.5	4.8	4.9	23
	"	4	連 式	2.5	9.3	4.8	36
	"	6	連 式	2.5	9.1	4.8	48
安 全 그 네	(椅子式 그 네)	2	人 乘	2.0	1.8	2.2	6
	"	4	人 乘	2.0	2.3	2.2	7
	"	8	人 乘	2.0	3.6	2.2	8
미	끄	單	走 式	2.7	4.2	1.0	30
	"	二	方 式	2.7	4.2	1.0	30
	"	波	狀 式				12
시	이	2	連 式	0.2	2.0	0.6	2
	"	4	連 式	0.4	2.0	0.8	3
정	글	5	面15段式	2.5	2.5	2.5	9
	"	橢圓	5 段式	2.45	2.0	3.89	12
사	다	圓	形	1.5	4.0	10.0	4
	"	方	形	1.5	3.0	1.0	3
	"	山	形 震 梯	1.6	3.0	0.8	3
놀 이	벽(play wall)	直	線	기능을 고려하여 치수 수를 定한다.			
놀이조각(play sculpture)		曲	線				
플 레 이 스	원						
도	설	方	形	1.5	3.0	1.0	
	"	圓	形				
	"	橢	圓 形				
철		低	鐵 棒	1.5	1.5	2.0	3
		組	合 低 鐵 棒	1.5	1.5	3.0	4

(자료: 조정설계기준, 건설부, 1976)

기 어려운 성질로서 시설물이 지루하고 따분하지 말아야 하며, 시설물의 형태는 놀이도구 이전에 조각물적인 아름다움을 갖게하여 상상력과 호기심을 키워주어야 한다. 놀이시설은 어린이의 연령, 놀이 그룹의 규모, 놀이터의 유형과 위치 및 기후·경제적인 조건, 아동의 요구등에 관한 지역적 상황에 맞는 적합성 및 적응성을 갖추도록 하고, 하나하나의 시설물 이용에 그치지 않고 연속적인 놀이행위가 가능한 배치 형태가 바람직하다.

어린이의 연령에 따른 놀이 패턴은 2세까지는 친구가 접근처에 소수가 있을 뿐 부모밑에서 육체적인 반사작용을 조

화시키는 것을 배우며 이유있는 사전에 대한 반복행동을 하게 된다. 2세때에는 4세까지의 어린이는 모방의 특징이 있으며 어떤 대상이나 결과를 대표하는 행위로 모래사장이나 진흙을 이용한 정적인 놀이와 고정놀이 기구나 소꿉장난등을 통해 집 근처에 친구가 생겨 그룹놀이로 향한다. 취학전 까지 4살이 지나면서 모래사장 이용이 줄고, 친구가 많이 생김에 따라 그룹놀이에 참가하게 되며 약간의 규칙을 가진 게임과 경쟁심이 있는 놀이를 한다. 이때에는 비논리적이지만 자신의 경험을 구체화하고 다른 어린이들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그들의 동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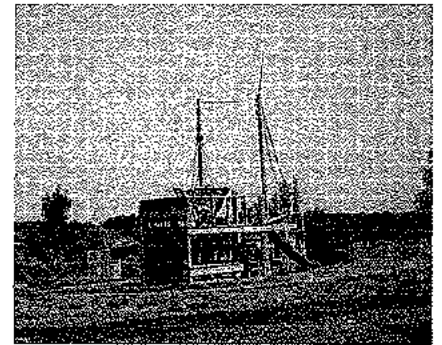


그림-1. 배모양의 종합 놀이시설의 어린이 놀이터(미국 조나슨사).

을 흉내냄으로 사회적 행동이 발달하기 시작한다.

놀이시설은 연령층에 따라 설치해야 하며, 그 종류는 운동체계에 따라 요동계(그네), 상하운동계(시이소오), 회전운동계(매리 고 라운드), 할강계(미끄럼), 현수운동계(사다리, 철봉), 동반운동계(정글짐) 평행도약, 기타 놀이 벽과 놀이조각등이 있으며, 물을 이용한 도설지(wading pool)도 있다. 이러한 놀이시설은 시설물별로 설치할 수도 있으나 복합적으로 설치함으로써 창조력·모험심과 협동심을 증진시킬수 있다(그림-1). 각 주요 시설물의 규격 및 소요면적은 표-2와 같다.

3. 어린이 놀이터 계획

어린이 놀이터의 기능은 어린이의 놀이와 휴식 및 동반자의 휴식시설과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균형을 이루어 유치권내의 모든 어린이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하고, 공간의 효율을 높여 계절이나 기후에 관계없이 놀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어린이의 심리나 활동과 놀이의 형태에 부응하여 지형의 변화를 주거나 어린이 발달에 좋은 영향을 주는 놀이 공간의 구성을 하여 관리가 쉽도록 해야 한다.

어린이들은 성장함에 따라 어른보다 물체에 집착이 강하며, 장소에 대한 어

〈표-1〉 놀이시설의 종류·시설기준 및 설치기준

놀이시설의 종류	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놀이시설의 설치기준
그네 미끄럼대	높이 2미터 이상인 2인용 그네 높이 2미터 이상, 상계판의 넓이 2제곱미터 이상, 활주면의 너비 0.5미터 이상, 차지판의 길이 0.6미터 이상 활주면 2개 이상	○대지안의 주택의 규모가 50세대 이하인 경우에는 2종(100세대 이하인 경우에는 4종)의 놀이시설 각 1조 이상을 설치한다.
철봉 씨이소오	대·중 및 소형의 철봉 씨이소오판의 높이 0.5미터 이하, 씨이소오 판의 길이 3미터 이상, 씨이소오판 3개 이상	○대지안의 주택의 규모가 100세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세대를 초과하는 200세대 이내마다 4종의 놀이시설을 각 1조의 비율로 가산할 수 이상을 설치한다.
정글짐	높이 2.5미터 이상, 폭 4미터 이상 (원형인 경우에는 폭 2.5미터 이상)	
래더 회전무대	높이 1.5미터 이상, 폭 1미터 이상 무대의 높이 0.3미터 이하, 무대판의 직경 2미터 이상	○놀이시설의 주변에는 모래 두께 0.3미터 이상인 모래판을 각각 설치한다.
모래판	넓이 6제곱미터 이상, 모래두께 0.3미터 이상	○1개의 놀이터마다 1개소 이상
공중변소	수세식으로서 대변기 1개, 소변기 2개 및 세면기 1개 이상	○1개소 놀이터마다 1개소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어린이 놀이터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이용이 가능한 공중변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음수기	1인용	○1개의 놀이터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한다.
긴의자	5인용	○1개의 놀이터마다 대지안의 주택의 규모가 5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6개, 5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3개 이상을 설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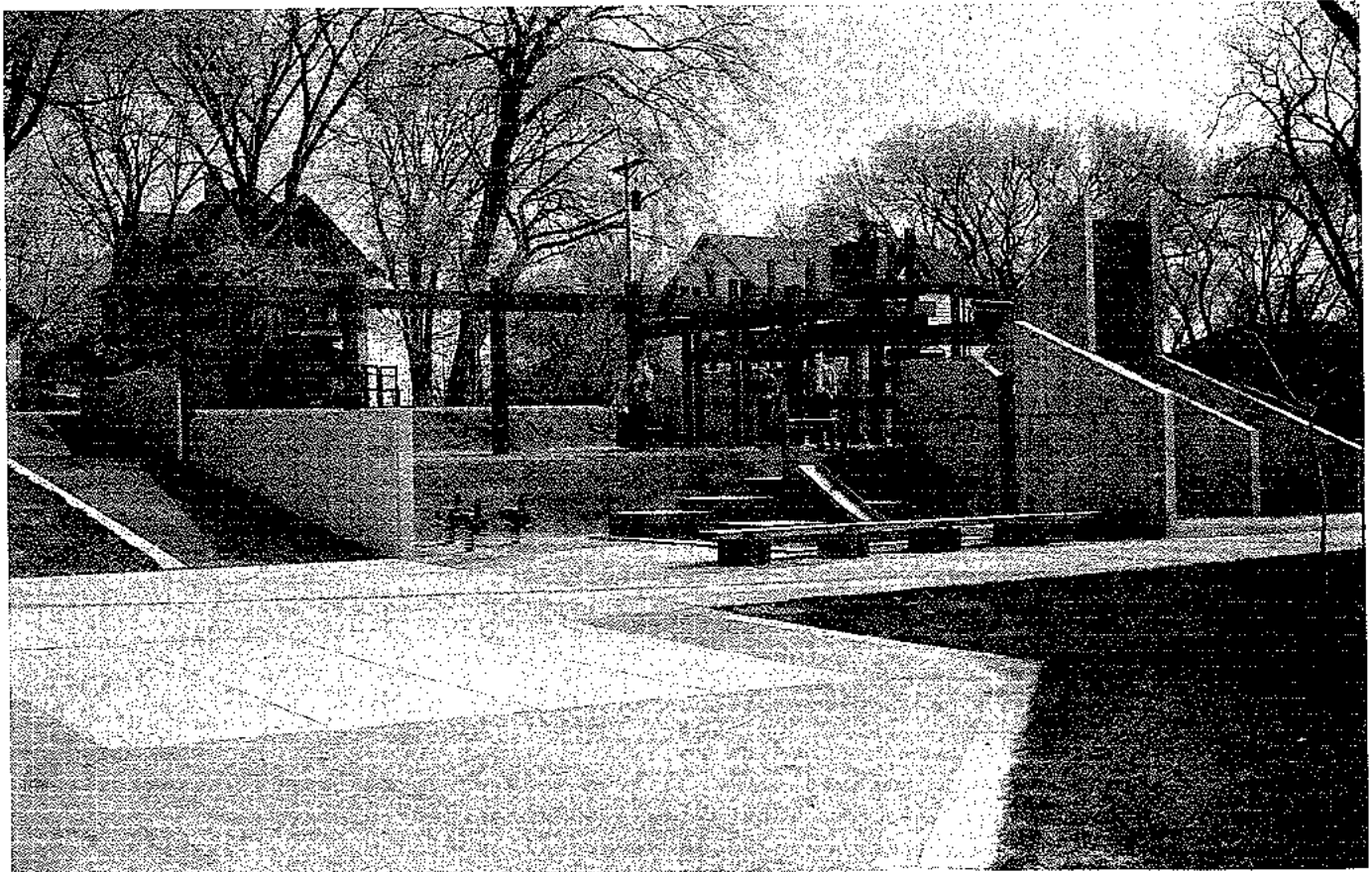


그림-3. 잔디밭의 운동시설 옆에 세워진 놀이시설 (미국 세이트 폴)

4. 식재계획

어린이 놀이터는 햇볕과 그들의 균형
을 맞추어야 하며, 정적인 휴식처나 정
적인 놀이 공간 주위에 녹음수를 식재하
는 정도로 하고 공원의 경계부에 공원의
성격을 부여 할 수 있는 식재 및 방풍
· 방음 · 차폐식재 성격을 갖도록 한다.
공원면적에 대한 식재지 면적의 비율은
약15%로 하며, 식재지 면적 당 수목의 본
수는 교목류 0.1주, 관목류는 0.2주로
한다.

도시에 설치되는 어린이 놀이터는 자
연환경과 접하는 기회가 적으므로 어린
이와 보호자에게 조금이라도 많은 녹음
을 제공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어
린이 놀이터에 적당한 수목과 초화류들은

재반 기능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측면,
아동의 건강 · 교화와 정서적 측면, 도시
의 미적 측면과 일반 생육상의 조건등
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선정하여야 한
다.

- 강건하고 잘 자라며 빨리 성장하는
수목 및 초화류를 식재.
- 병충해에 강한 것 특히 벌레가 많이
생기지 않는 식물을 선택.
-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특히 어린이
이들의 장난과 과도한 밟음등에 견딜수
있는 수종.
- 유독성이 없는 식물.
- 심한 냄새가 나거나 즙액이 나는 식
물과 꽃가루가 심하게 날리는 식물은 재
외.
- 교육적 가치에 유의하여, 식물의 발



그림-4. 어린이 놀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경계부
식재 (과천)

아, 개화, 결실 및 낙엽 과정을 관찰 할
수 있게 군집미를 살려 식재.

- 값이 싸고 쉽게 구할수 있으며, 수
형, 꽃과 과실이 아름다운 수종을 선택.
- 식물은 전체적으로 다이나믹한 감각
을 주고, 명암이 강한 식물, 계절의 변
화, 색채가 밝은 수종을 식재. *

건축가를 만들어내는 교육과정이 엉겨주춤하다. 학교가 만들어지면 우선적으로 포함되는것이 건축과이고 그래서 비온뒤 죽은 물이나듯이 전국에 산재한 건축과에서 건축에 뜻을 두고 살아져 나오는 지방생이 아마도 일년에 지어지는 집의 숫자보다도 많으면 많지 적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의 오늘

金 仁 喆
(주) 종합건축사사무소 엄·이건축

매년 연례행사처럼 되풀이 되고 있는 건축사면허시험에 각 사무소마다 응시하는 수가 많으리라 생각된다.

이러한 과정이 과연 제대로의 궤도로 움직이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 한번 정리를 해보려는 마음이 들었고 그런 뜻에서 우리의 오늘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오늘을 정확히 정리해 보는 것이 어제를 돌이켜 보거나 내일을 예측하는 데에 손쉬운 방법이기도 하거나와 전문적인 분석이나 자료를 동원하지 않고서도 개괄적인 설명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건축은 하나의 행위임에 틀림이 없고 행위라는 것이 그것을 하게 하는 주체가 있어서 그로 인한 결과라고 한다면 건축에 관련한 그 행위의 주체는 당연히 건축가이어야 한다.

이렇게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도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건축이라는 행위들 중에 건축가가 실제의 주체가 되어 만들어지고 있는 곳이 몇곳이나 될런지 궁금해진다.

이런 “궁금함”이 바로 오늘의 건축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수식어가 되고 있다고 한다면 지나친 표현이 될지 모르겠으나 우리의 주위를 살펴본다면 크게 무리한 것이 아닐듯도 하다.

우선 건축가를 만들어내는 교육과정이 엉겨주춤하다. 학교가 만들어지면 우선적으로 포함되는 것이 건축과이고 그래서 비온뒤 죽은 물이나듯이 전국에 산재한 건축과에서 건축에 뜻을 두고 쏟아져 나오는 지방생이 아마도 일년에 지어지는 집의 숫자보다도 많으면 많지 적지는 않을 것이다. 스포츠 용어에서처럼 저변확대가 이루어져 우수한 능력을 발굴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대표선수를 선발하거나 취미의 하나로 하는 것이 아닌 다음에야 그 많은 건축전공학생이 어디서 무엇을 하게 될지는 본인 스스로도 궁금해진다.

또한 그 학생들을 키우는 쪽도 문제가 단순치 않다. 우선 건축공학과, 건축미술과, 건축학과 하는 과의 명칭이 다양하듯이 그 과가 속한 대학마저 공과대학이기도 하고, 미술대학이기도 하며, 조형대학이기도 하다. 그렇다고해서 공학쪽 출신은 엔지니어, 미술쪽 출신은 디자인이어나 되느냐 하면은 그렇지 않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건축가들의 대부분이 공학계열의 출신이고 오히려 미대계열의 출신에서 구조역학이나 설비등을 전공하는 분들이 꽤나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 이 글을 쓰는 본인도 당초에는 수학 대신 댕상을 필수로 하는 건축미술과로 입학했다가 제대후 복학해보니 건축공학과로 과의 성격이 바뀌어 공학사의 졸업장을 받았다. 딸아이의 산수 숙제에 찢찢매는 공학사라니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 그것이 궁금하다.

어찌됐든 건축과는 만들어지고 만들어진만큼 학생들은 모이게 된다. 그렇게 되면 교수가 그만큼 필요하게 되고 필요한만큼의 교수를 충원하다보면 공대출신교수가 미대쪽으로 가게도 되고 또 그 반대의 경우도 생기게 된다. 물론 건축공학과나 건축미술과의 커리큘럼이 별차이가 없으니까 애써 전공의 구애를 받을 필요는 없겠지만 문제는 집짓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교수들에게 설계에서부터 집이 완성되기 까지의 경험을 공식적으로는 못하도록 되어 있는 애매한 규정에 있다. 교수의 겸직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 규정이 명문화된 것을 아직 보지 못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인식되고 있다. 다행히 실무에 종사하다가 학교로 옮긴 경우에는 그나름대로의 입장이 확실해 지겠으나 학부에서 대학원을 거쳐, 바로 교단에 서게되는 경우도 있을터인데 이런 경우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또한 궁금해진다. 물론 실무와 교육은 그 전문성이나 기능적인 면에서 전혀 다르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나 건축은

스포츠 용어에서처럼 저변확대가 이루어져 우수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대표 선수를 선발하거나 취미의 하나로 하는 것이 아니다음에야 수많은 건축전공 학생이 어디서 무엇을 하게 될지는 본인 스스로도 궁금해진다.

경험의 과학이라고 까지 말해지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때, 어딘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음을 그냥 지나칠 수 없기 때문이다. 의과대학의 교수가 개업은 할 수 없으며 그들의 이론을 실제로 대학병원의 임상을 통해서 완성시키고 있는 것은 건축의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된다.

건축 교육에 대한 개념이 확립되고 그것이 일관성있게 진행되어야만 나름대로의 성격을 갖춘 건축과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고 그속에서 최소한의 방향설정을 갖춘 건축지망생이 배출될 것이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정정한 상태로는 실제의 사회에서 받아드려 질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해서 건축에 참여하게된 많은 지망생들이 각양각색의 과정을 거치면서 나름대로의 길을 개척하며 꿈을 키우다가 다시한번 모이게 되는 계기가 건축사의 면허시험이 된다.

면허제도라는 것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할 의도는 없지만 그간에 있었던 면허 문제에 의한 일을 생각해보면 건축행위에 대한 사회인식의 모순을 느끼게 된다. 다시 말하면 건축사와 건축가에 대한 개념의 혼란이다.

현재 건축인이 편편되는 공식적인 사회단체는, 건축사협회, 건축가협회, 건축학회인데 문제가 되는 것은 앞의 두 단체가 된다. 건축사협회는 정부에서 인정하는 면허소지자로서 사무소를 개업하고 있는 건축사의 그것이고, 건축가협회는 특정한 면허의 유무에 관계없이 자체의 이사회를 통해 회원이 구성된다.

건축행위를 함에 있어서 하나는 실무와 법적책임에 근거를 두고, 또 하나는 창작활동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보는 것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겠으나, 창작과 실재를 어떻게해서 구분지을 수 있는지가 궁금함의 포인트이다.

건축사의 모든 것에 대하여는 건축사

법에 의하여 정리가 되어 있으므로 건축행위의 모든것은 건축사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마땅하다고 한다면, 건축가협회와 회원중에 명시된 것처럼 "건축에 관한 모든 창작활동의 자격을 부여함"이라는 문구의 해석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창작활동이라는 어휘의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자격이라는 용어의 근거는 무엇에 의한 것인지 애매해진다.

시험회 회원이면서 가협회 회원이기도한 경우는 천만다행한 일이겠으나 어느 한쪽에만 소속된 경우 소속되지 않은 쪽에 대해서는 항상 죄를 짓고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더구나 집을 지어보려는 아마추어가 스스로의 생각을 스케치하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 된다. 결국 구체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것은 하나의 건축물에 대해 창작자가 따로 있고 법적책임자가 따로 있었다는데에 있는데 전자의 경우는 건축사법을 위배한 것이 되고 후자는 면허대여라는 명목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귀결이 되었다. 그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알지 못하고 있으나 이것은 문제화되어 표면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왈가왈부가 되었던 것이고 사실을 살펴보면 우리의 주위에 이러한 경우는 셀수도 없이 많은 것을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건축사라 하더라도 면허를 취득해서 개업하기 이전까지의 작품들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가를 따져 볼 필요도 없겠지만, 건축사협회가 권익보호라는 명분으로 단속을 한다면 아마도 상당히 복잡하게 얽히게 되고 말 것이다.

여하튼 음악가, 화가, 조각가 등등의 창작 행위에 면허와 자격이 필요하다는 경우라면 건축가에게도 당연히 그것이 필요하겠지만, 그게 그렇지 않은 것은 설명하기가 새삼스럽고, 그렇다고 아무에게나 건축을 맡기자고 하자니 더욱 큰 사회적 혼란이 될것이고, 이렇게 애매하

고 어정정한 입장이 어떻게해서 명쾌히 정리될 수 있을 것인지도 궁금한 것의 하나이다.

글이 상당히 옆으로 빗나가게 되었으나 면허에 관한 현재의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를 얻고 싶다.

학교에서 건축을 전공한 뒤 일정기간의 실무경력을 갖추어야 테스트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오년, 칠년의 실무경력을 토대로 해서 치루게 되는 테스트란 것이 학교의 졸업시험과 비슷한 수준인 것도 이상하지만, 결과적인 합격선의 설정이 분명히 자격시험임에도 불구하고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의 처리를 하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들리는 이야기로는 건축사의 수준을 높이고 어떤 기준인지는 모르나 수급균형을 고려하여 결정한다고 하는데 이것 또한 모순이다.

건축사의 수준을 높인다는 것은 일견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건축사의 수준이 문제가 된 것은 이 제도의 역사가 짧음 때문에 일어난 기존 건축사의 수준이 문제였지 새로히 입문하는 대상이 아닌 것이므로 대상의 선정이 잘못된 것으로 생각이 되고, 수급균형의 항목은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여지는 상황에서 그러 큰 의미가 없다. 오히려 짙고 캐기있는 건축사가 전체적인 구성의 중점이 되도록 하는 것이 앞의 목적에도 부합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면허를 취득했다고 해서 모두가 개업이 가능한 현실도 아니고 더우기 건축작업의 프로세스를 이해한다면 건축사 면허의 남발로 인한 혼란은 일본의 경우를 보더라도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 오히려 취득의 조건이 까다로움으로 인해 시험이 있기 몇 개월전 부터 실제업무에서 손을 놓아야 하는 한창 일할 시기의 대상자들을 풀어주는 것이 보다좋은 수준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나 생각이 된다.

韓國의 構造物設計用 積雪荷重에 關한 研究

- 南韓地域 中心으로 -

崔 文 植

檀國大學校 建築工學科 助教授

1. 序 論

모든 構造物設計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중요한 사항은 荷重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固定, 積載荷重 등은 합리적으로 규정 사용되고 있으나, 기후조건에 따라 결정되는 積雪荷重에 대하여는 연구⁽¹⁾가 거의 없어서, 輕量構造物 특히 저층이며 長스판의 鉄骨構造의 경제적이고 안전한 설계에 많은 문제점을 주고 있다. 그래서 대한건축학회에 의한 荷重基準案⁽²⁾에 의해 문제점이 보완되었으나, 아직 적용 적설하중공식, 눈의 밀도, 設計用積雪深의 分布 등의 評價에 문제점이 있어 본 연구를 통하여 해결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1904~1984년 사이의 우리나라 휴전선이남 78개지역(표3)의 積雪量, 風向, 日平均風速, 日平均溫度를 조사하여, 많은 기록조사, 분석 및 연구에 의하여 만들어진 美⁽³⁾, 加^{(4),(5)}, 日⁽⁶⁾等 各國의 積雪荷重案과 비교 분석하는 방법으로 현재의 우리나라 하중기준안을 보완하고자 한다.

특히 많은 자료의 수집, 분석 및 연구

가 많이 이루어진 일본의 연구자료를 많이 이용하였다.

2. 各國의 積雪荷重基準案의 比較分析

各國에서 사용하고 있는 設計用 지붕 積雪荷重은 (표1)에서와 같이 공통적으로 地上積雪荷重에 諸係數를 곱하여 구하고 있다.

먼저 지상적설하중을 결정함을 보면, 일본의 경우는 (밀도)×(적설심)으로 구하나 대부분의 국가, 即 美, 加, 獨, 소련 등에서는 눈의 밀도에 대한 규정없이 지상적설하중을 地圖上에 등고선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역별로 地上積雪深에 대한 자료밖에 없음으로 이 방법을 채택 할 수가 없고 日本荷重基準案에 따른 地上積雪荷重을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장차 지상적설하중의 實測에 따른 研究가 있어야 할것으로 사료됨.)

다음으로 諸係數를 보면 美, 日은 거의 大同小異해서 係數決定에 지붕경사각, 바람에 대한 노출도, 그리고 건물의

重要度を 반영토록 되어 있으며, 加는 건물의 重要도가 빠진 지붕경사각과 바람에 대한 노출도로 결정되고 있다. 특히 獨, 소련의 경우에는 지붕의 경사각만이 반영되어 있다.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係數는 加와 同一하다. 그러나 구조물의 安全性과 경제적인 면에서 건물의 중요도를 무시하는것, 즉 임시건물이나 영구건물을 동일시 하고, 건축물의 파괴에 따른 피해의 영향을 무시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 따라서 건물의 중요도에 따른 영향을 係數에 포함시켜야 할것으로 본다.

모든 국가의 荷重規準에서는 地上積雪深과 지붕적설심을 같이 보고 있으나 실제로는 差異가 있다. 日本의 昭和56年豪雪⁽¹⁰⁾에 關한 調査研究(그림2) 및 기타 자료^{(7),(11),(12)}에서 지붕적설심이 지상적설심의 약 90% 였고, 英國에서의 調査⁽³⁾에서는 평지붕경우에 80%였다. 반면에 昭和53年의 調査研究⁽⁸⁾에서는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地上積雪深이 적었다. 따라서 지상적설심과 지붕적설심과의 관계를 적용시키는 것은 더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후에 諸係數에 반영토록 할 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위의 各國의 積雪荷重에 대한 規準案을 比較結果 우리나라의 設計用 지붕 積雪荷重 算定에 아래 식을 사용 할 것을 提案한다.

$$S = P \cdot Z_s \cdot C_s \cdot I$$

여기서 S : 設計用 지붕 積雪荷重
(kg/m²)

P : 눈의 設計用 平均單位중량
(적설 1cm당 kg/m²)

Z_s : 設計用 地上積雪深(cm)

C_s : 지붕의 경사, 형상 및 바람에 대한 노출에 의한 係數

I : 建物の 重要度

다음 各節에서 우리 기준안의 各係數 및 積雪深에 對하여 論하고 수정방안을 제시하기로 한다.

3. 積雪의 密度 P

積雪荷重을 옳게 평가하기 위하여는 눈의 밀도를 정확하게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같이 우리나라

表 1. 各國의 설계용지붕 설계하중 기준안

	設計用지붕 積雪荷重 (S)	눈의 밀도 (P)	지붕경사에 따른 계수(경사지붕)	비 고						
韓國 ⁽²⁾ 荷重基準案 (1980)	$S = P \cdot Z_s \cdot C_s$	전층平均密度 (1cm當 kg/m ²) 50cm 以下 1.0 150 1.5 200 2.0 200cm 以上 3.0	Canada의 N. B. C.와 동일함	• 재현기간 50년, 100년						
日本 ⁽⁶⁾ 建築物荷重規準案 (1975)	$S = P \cdot Z_s \cdot E \cdot R \cdot I$	전층平均密度 (1cm當 kg/m ²) 50cm 以下 1.0 100 1.5 200 2.2 400 3.5 700cm 以上 4.5	<table border="1"> <tr> <td>경사각</td> <td>25°</td> <td>60° 이상</td> </tr> <tr> <td>R</td> <td>0.9</td> <td>0</td> </tr> </table> * 금속판 지붕인 경우 60° 가 50°임	경사각	25°	60° 이상	R	0.9	0	
경사각	25°	60° 이상								
R	0.9	0								
Canada ^{(4), (5)} (N. B. C. 1977)	$S = C_s \cdot g$	地上 積雪荷重 全層 1cm當 2kg/m ²	$C_s = 0.8 \left(1.0 - \frac{\alpha - 30^\circ}{40^\circ} \right)$ *但, 바람에 노출시엔 상 기값은 25% 감소시킴	• 편측적설 고려 • 눈의 移動 고려 30년 재현기간						
美 ⁽³⁾ (ANSI, 1982)	$S = C_s \cdot C_e \cdot C_t \cdot I \cdot P_g$	地上 積雪荷重을 재현 기간 50년, 100년에 대 하여 등고선으로 나타 냄	건물의 난방유무, 지붕표면 의 매끄러움정도, 바람에 대한 노출도, 경사각에 영 향받음							
獨 ⁽¹⁵⁾ (DIN, 1055)	$S = K_s \cdot S_o$	地上 積雪荷重을 I- IV地域으로 區別 表示	$K_s = 1 - \frac{\alpha - 30^\circ}{40^\circ}$	• 재현기간 30년						
소련 ⁽¹²⁾ (1954)	$P_c = P \cdot C$	地域을 5 개로 区分 地上 적설하중 규정	<table border="1"> <tr> <td>경사각</td> <td>25°</td> <td>60°</td> </tr> <tr> <td>C</td> <td>1.0</td> <td>0</td> </tr> </table> * 사이각도는 보간법으로	경사각	25°	60°	C	1.0	0	
경사각	25°	60°								
C	1.0	0								

* C_e : 건물의 바람에 노출에 따른 계수

E: 環境係數

I: 用途係數(日), 重要도에 따른 계수(美)

P_g : 地上 積雪荷重(kg/m²) (美)

S_o : 地上 積雪荷重(kg/m²) (獨)

C_t : 건물의 暖房有無에 따른 계수

K_s : 지붕경사각에 따른 계수

g : 地上 積雪荷重(kg/m²) (加)

R: 지붕의 경사 및 형상에 따른 계수(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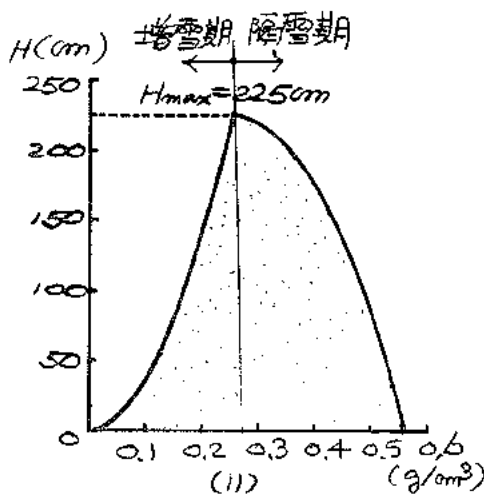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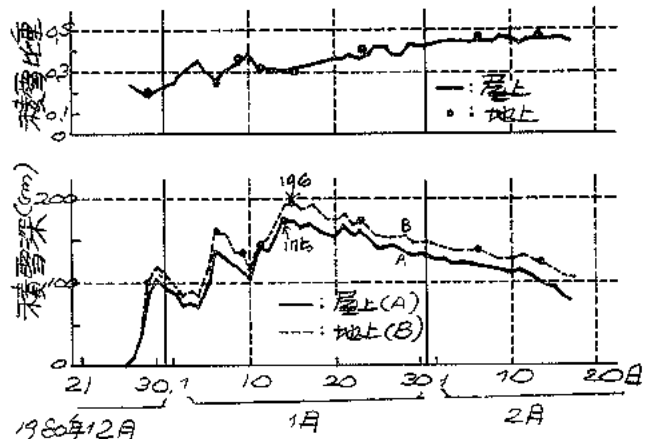


그림 1. 前田⁽¹¹⁾의 積雪深에 따른 눈밀도의 分布圖



(* 昭和56年豪雪被害調査報告, PSS)

그림 2. 屋上積雪과 地上積雪의 比較

에서는 눈의 밀도의 조사 및 연구가 全無하여 다른나라의 規準 및 研究資料를 利用하기로 한다.

현행 우리나라 적설하중안은 적설심에 따라 평균단위중량(표 1 참조)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의 타당성에 대하여 논하는 것은 이안을 적용한지가 5년정도 밖에 되지 않아 곤란하지만 본문에서는 이 밀도의 평가가 과소평가가 되어 있다고 보고있다. 왜냐하면 일본 하중안에서 적설의 밀도가 우리나라보다 약간 높게 되어있는데도, 昭和 56년 적설被害調査⁽¹⁰⁾에 의하면 많은 鉄骨構造物이 피해를 입었는데 그원인이 ① 눈의 密度가 基準값의 초과 ② 設計積雪深의 過小평가라는 結論이 나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눈의 밀도를 재평가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재평가방법은 美, 加 등과 같이 적설심의 구별없이 全層 均一하게 적용시키는 방법보다는 日本 하중기준안의 방법을 따르되, 일본의 연구 및 자료를 중심으로 재평가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적설의 밀도는 増雪期와 融雪期로 나누어 지는데 前田⁽¹¹⁾의 적설의 밀도(그림 1) 및 昭和 56년被害調査에 따르면 밀도는 적설심이 증가함에 따라 서서히 증가하나 그러나 隔雪期の 끝에도 0.45~0.5g/cm³ 이상은 되지않는다고 따르면 적설의 최소밀도가 적설심 50cm이면 0.12g/cm³(0.1), 100cm이면 0.167g/cm³(0.15), 150cm이면 0.204g/cm³(0.2), 200cm이면 0.236g/cm³(0.3)으로 최소 밀도가 基準안보다 크다. (괄호안의 숫자는 한국기준값) 기타의 文獻^{(11),(12),(13)}에서도 같은 結果로 나타나고 있다.

융설기의 積雪의 性狀은 복잡하여 아직 完全하게 규명되어 있지 않으며(그림 2)를 보면 적설의 밀도가 0.5g/cm³까지 증가하나 실제 積雪荷重은 밀도와 적설심의 곱으로 융설기엔 적설심이 낮아지기 때문에 실제 構造物設計時엔 융설기의 積雪荷重이 큰 문제가 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既研究資料로 미루어 보아 増雪期の 積雪의 밀도가 過小評價되어 있어, 다음(표 2)와 같이 積雪의 密度를

재평가 하여야 한다고 본다.

(표 2) 적설심과 눈의 전층평균단위중량(P)

적설심	제안평균단위중량	비고(현우리기준안)
50cm이하	1.5	1.0
100	2.0	1.5
150	2.5	2.0
200cm이상	3.0	3.0

* 평균단위중량은 1cm당 kg/cm²임

* 중간의 적설심은 直線補間法으로 구함.

4. 設計用 積雪深(Zs)

構造物設計用 적설하중을 구하기 위하여 最大積雪深을 구하여야 한다. 이 적

설심이란 통계학상의 最大值가 아니라 氣象統計資料를 기초로 하여 構造物의 可用期間중에 발생 할 수 있는 最大積雪深을 말한다.

이 最大積雪深을 구하기 위하여는 충분한 통계자료가 필요하나 현실정이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1904~1984년사이의 전국 78개지역(測候所 28개소, 분소 50개소)의 氣象資料를 조사하였으며, 대표적 적설특성을 갖는 5개지역, 즉 울릉도, 대관령, 속초, 서울, 광주의 적설특성을 알기 위하여 최고적설심이 나타난 해의 積雪深, 風速 및 氣溫의 推移를(그림 4~8)과 같이 도표화 하였다.

대관령, 울릉도지역(그림 4~5)은 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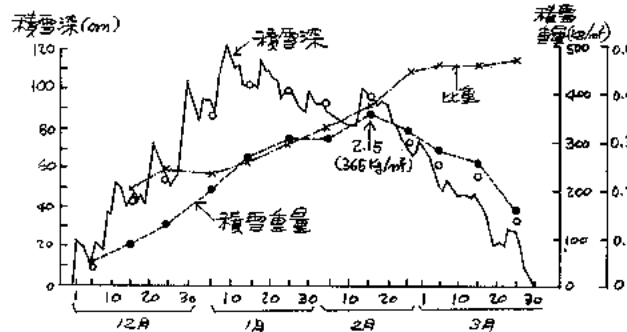


그림 3. 札幌의 地上積雪深, 比重 및 積雪重量(昭和 41~4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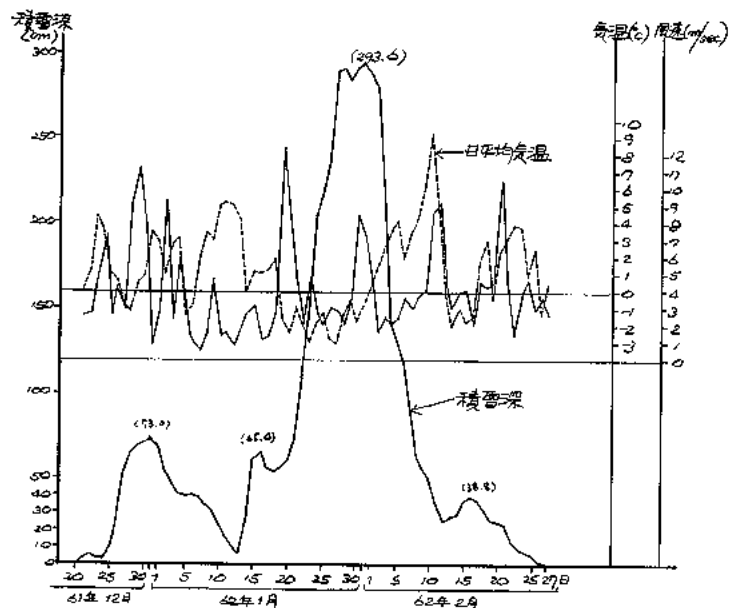


그림 4. 울릉도地方의 積雪深의 時間的 推移 및 氣象狀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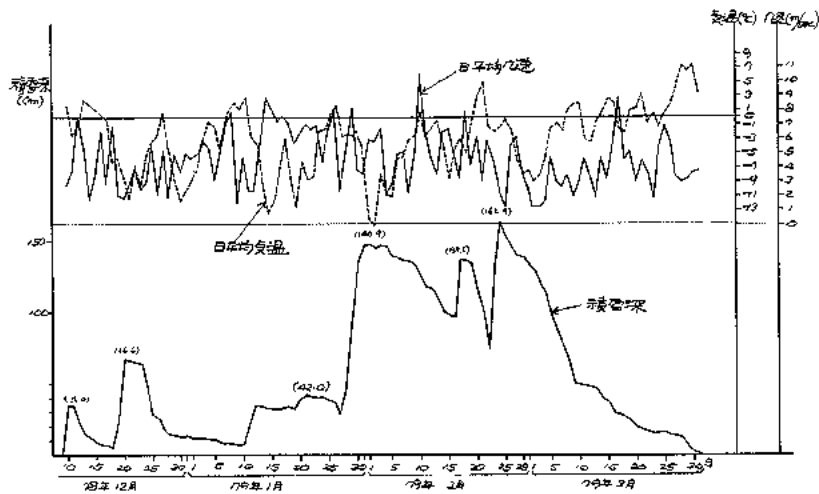


그림 5. 大關領地方의 積雪深의 時間的 推移 및 氣象狀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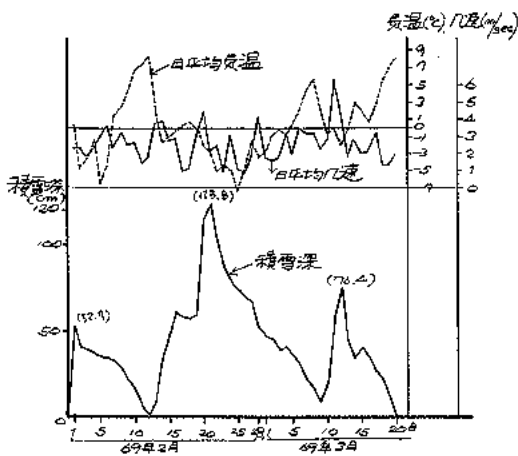


그림 6. 東草地方의 積雪深의 時間的 推移 및 氣象狀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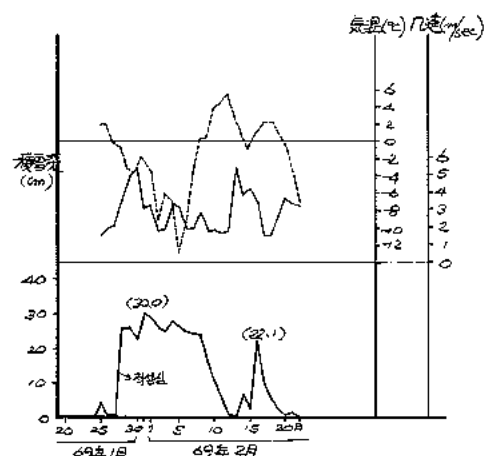


그림 7. 서울地方의 積雪深의 時間的 推移 및 氣象狀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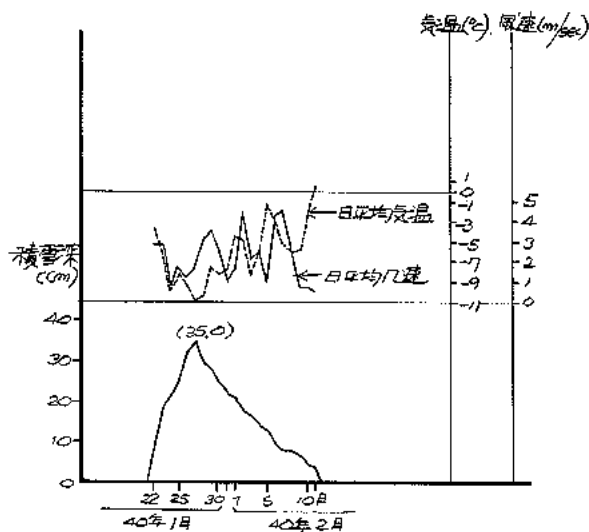


그림 8. 光州地方의 積雪深의 時間的 推移 및 氣象狀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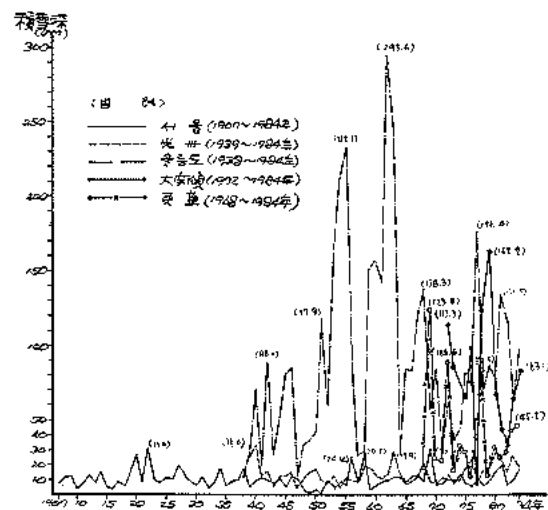


그림 9. 南韓重要 5 個 地域의 年度別 最高積雪深 推移

의 1 달이상 100~200cm 積雪深이 계속되어 多雪地方의 특성이 나타났으며, 平均風速도 3~7m/sec로 나타나 적설의 심한 이동이 예상되고 있다. (일평균 기온이 -5℃~-7℃ 정도로 계속되어 積雪深의 변화가 적었다고 사료됨). 서울, 광주지역(그림 7~8)은 적설량이 적었으며, 일평균기온이 -6℃~-10℃로 낮았으나 추가적인 降雪이 없어 적설이 오래 지속되지 않고 있다. 속초지방은 (그림 6)과 같이 위의 그지방의 中間의 性質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측후소설치지역(28개소)는 비교적 통계연수가 많으나 분소지역은 10~20년 정도의 통계자료밖에 없음으로 재현적설기대치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나, 구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 일반적인 건물 的 耐久年限을 고려하여 50년, 100年再現期間의 最大積雪期待値를 Fisher Tippet 방법과 2重指數分布方法에 의하여 구하였다. (표 3) (각국에선 30년, 50년, 100년의 재현기간을 적용시키고 있음)

그러나 (표 3)에 나타나는 것과 같이 Fisher Tippet方法에 의한 값은 너무 과다하여 참고로만 사용하고 指數分布方法에 의한 값을 채택하기로 한다.

(그림 9)에서 중요 5개지역의 연간최대적설심의 추이를 보면 통계연수동안에 최대적설심에 가까운 적설심이 나타난 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적설기대치를 결정함에 있어서 재현기간을 50년으로 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設計用 最大積雪深을 지도상에 등고선으로 나타냄이 옳으나, 분소지역의 통계가 20년미만이라 (표 3)에 나타난 최대적설심과 50년재현 최대적설치를 근거로 하여 (그림 10)과 같이 지도상에 6개지역으로 구분 표시하였다. 더욱 자세한 지방별 구분은 (표 4)에 따른다.

현재 하중기준안은 4개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특히 건축물의 구조설계主對象地域이 1, 2지역인데 지역구분이 너무 단순화 되어 경제적 구조설계에 문제가 있어, 본문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키 위하여 더욱 지역세분을 하였다.

그리고 울릉도, 대관령의 적설상황(그

表 3. 各地域의 最大 積雪期待値 및 最大 積雪時의 氣候狀況(1)

지명	관측시	통계연수	最大積雪時의 氣候狀況					최대적설기대치 (cm)			
			最大積雪深 (cm)	年 月 日	風向	日 平 均 風 速 (m/sec)	日 平 均 溫 (°C)	2重指數分布方法		Fisher Tippet 방법	
								50년	100년	50년	100년
서울*	1907. 10	79	31.0	1922. 3. 24	W	2.27	-3.5	26.0	29.3	35.5	41.3
인천*	1904. 4	15	17.4	1979. 12. 26	SW	2.6	-2.7	28.2	32.0	33.1	38.0
수원*	1964. 1. 1	22	28.3	1981. 1. 2	SSW	1.0	-9.2	25.9	29.3	36.9	42.7
광주*	1939. 5. 1	47	35.0	1940. 1. 27	WNW	1.7	-10.8	32.0	35.7	47.8	55.4
군산*	1968. 1. 1	18	37.1	1983. 11. 17	W	2.3	-1.4	48.9	51.2	67.5	78.9
전주*	1919. 1. 1	67	28.1	1965. 1. 12	NW	0.2	-7.9	25.3	28.5	36.7	42.8
목포*	1904. 4. 1	82	56.1	1946. 12. 10	NNE	1.6	-4.0	39.2	44.6	42.3	48.5
여수*	1942. 4. 1	44	20.6	1945. 2. 25	NE	7.3	0.7	20.5	23.6	15.7	17.7
서산*	1968. 1. 1	18	32.0	1969. 1. 7	NNW	2.0	-5.1	37.1	42.0	43.9	50.3
청주*	1967. 1. 1	19	39.0	1969. 1. 31	NNE	4.3	-2.0	45.8	52.0	52.7	60.7
추풍령*	1935. 9. 1	51	37.1	1953. 1. 18	W	-	-2.3	35.2	39.6	46.6	53.8
대전*	1969. 1. 1	17	25.5	1974. 1. 21	NE	1.7	0.6	30.0	33.7	35.0	40.5
춘천*	1966. 1. 1	20	44.2	1969. 2. 1	SSW	2.4	-3.6	40.5	45.6	58.0	67.3
대관령*	1971. 7. 11	15	162.9	1979. 2. 24	E	2.3	-2.1	90.7	215.4	240.2	273.5
울릉도*	1938. 8. 10	48	293.6	1962. 1. 31	NNE	7.2	-1.0	298.3	338.8	382.5	440.2
강릉*	1911. 10. 1	75	130.2	1923. 1. 27	WSW	1.8	3.9	101.4	115.0	129.8	150.1
속초*	1968. 1. 1	18	123.8	1969. 2. 21	NW	2.1	-2.7	128.5	148.6	124.2	142.3
포항*	1942. 2	44	30.0	1954. 3. 7	SEW	4.7	1.3	28.5	33.0	17.5	19.4
대구*	1907. 1. 7	79	55.4	1953. 1. 18	NNW	3.3	-1.7	30.2	34.7	23.8	27.0
진주*	1969. 3. 1	17	13.0	1974. 1. 21	NW	1.4	2.7	15.5	18.0	11.6	13.0
부산*	1904. 4. 9	82	22.5	1945. 2. 25	WNW	5.7	1.4	15.2	17.8	9.6	10.8
울산*	1931. 7	55	21.9	1963. 1. 17	-	-	-	13.2	15.2	7.5	8.1
제주*	1923. 5. 1	63	21.5	1959. 1. 18	WNW	10.5	1.4	19.5	22.2	19.5	22.4
서귀포*	1961. 1. 1	25	37.8	1963. 1. 25	NW	6.4	-1.8	24.8	29.2	24.7	28.5
충무*	1967. 1. 1	19	9.4	1982. 2. 4	SW	1.8	4.2	12.5	14.2	12.8	14.8
완도*	1971. 5. 1	15	6.9	1982. 1. 18	NW	1.8	1.3	12.1	14.0	16.5	18.2
안동*	1970. 7. 8	16	19.3	1974. 1. 21	WNW	1.0	1.3	18.3	21.0	24.4	29.9
울진*	1971. 1. 1	15	45.1	1976. 12. 4	E	3.0	7.3	55.3	63.2	68.5	75.0
미진	1971. 1. 1	15	18.1	1984. 1. 3	-	0.8	-1.3	19.5	22.5	26.0	30.7
남원	1969. 6. 11	17	36.1	1978. 11. 29	NE	1.0	-3.2	42.5	49.5	53.3	60.8
정읍	1969. 5. 11	17	58.7	1980. 12. 29	WNW	4.0	-7.6	63.0	69.5	75.2	84.5
임실	1969. 5. 11	17	34.0	1980. 12. 14	SW	3.5	-6.5	40.5	45.8	52.2	58.9
부안	1969. 5. 11	17	59.5	1980. 12. 30	SE	2.5	-9.5	66.2	33.6	78.3	88.3
여수	1968. 5. 11	18	24.6	1979. 2. 2	WNW	0.9	-7.2	19.8	22.3	31.2	36.8
해남	1971. 2. 1	15	17.5	1975. 2. 22	WNW	1.9	-3.0	20.2	23.9	28.7	33.6
장흥	1971. 1. 1	15	12.5	1975. 2. 22	W	2.0	-3.5	17.5	20.1	25.4	31.2

림 4~5)을 보면 1 달이상 장기적으로 적설이 지속되고 있어, 이 지역을 多雪地域으로 간주하고 積雪荷重을 長期荷重으로 취급함이 타당하다.

積雪深分布圖를 구할때 군의 기상관측 자료를 얻을 수 없어, 더욱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여 유감이다.

5. 形狀係數(Cs)와 重要係數(I)

5.1 形狀係數

各國荷重規準案에서는 設計用積雪荷重은 지붕의 傾斜狀態, 모양과 건물의 바람에 대한 노출에 따라 다르다.

지붕경사각에 대해서는, 미국이 15° 이상, 일본과 소련이 25° 이상, 캐나다와 독일은 30° 이상 일때 積雪荷重을 감소시키도록 되어 있으며, 지붕의 모양 즉 평지붕, 신형지붕, 아취지붕등에 따라 틀리다. 또 바람에 대한 노출상태에 따

表 3. 各地域의 積雪期待値 및 最大 積雪時の 氣候狀況(2)

지명	관측개시	통계년수	最大積雪時の 氣候狀況					최대적설기대치 (cm)			
			最大積雪深 (cm)	年 月 日	風向	日平均風速 (m/sec)	日平均溫度 (°C)	2중지수 분포발법		Fisher Tippet 발법	
								50년	100년	50년	100년
승주	1971. 6. 1	15	14.7	1978. 1. 22	W	1.6	-4.9	16.8	19.5	24.9	30.7
부여	1971. 1. 1	15	31.8	1983. 11. 17	W	0.7	5.7	35.4	39.7	46.5	54.8
보령	1971. 12. 10	15	26.0	1983. 11. 17	WSW	1.8	7.2	24.3	27.5	31.2	36.8
이산	1971. 1. 1	15	19.3	1980. 12. 4	ESE	2.0	-6.6	22.2	25.8	29.5	34.8
보은	1971. 6. 16	15	21.0	1974. 1. 21	NNW	1.1	-0.5	24.5	28.1	30.7	36.4
충주	1971. 1. 1	15	19.5	1980. 12. 14	W	2.0	-6.7	23.2	26.4	31.0	36.4
제천	1971. 1. 1	15	17.5	1976. 2. 16	NE	1.4	1.2	19.7	22.5	26.2	30.4
금산	1971. 1. 1	15	25.7	1974. 1. 21	NNW	1.0	0.5	23.8	26.8	32.0	37.5
유성	1971. 1. 1	15	25.3	1974. 1. 21	N	0.8	1.1	28.1	32.4	36.2	42.1
원성	1971. 9. 1	15	33.3	1984. 1. 3	W	0.8	-10.6	37.0	42.5	44.0	49.8
홍천	1971. 7. 1	15	24.3	1973. 1. 7	W	0.2	0.9	28.9	33.2	35.5	40.2
인제	1971. 9. 1	15	18.7	1976. 2. 16	NE	2.5	-0.8	23.2	26.7	31.5	36.1
삼척	1971. 2. 1	15	70.4	1978. 12. 20	S	1.3	-3.2	85.3	95.2	98.2	112.0
칠곡	1968. 1. 1	18	20.3	1974. 1. 21	WNW	1.6	1.4	25.4	28.8	35.5	40.9
영천	1971. 1. 1	15	17.5	1974. 1. 21	NW	1.5	-1.5	18.5	21.3	25.7	30.2
의성	1971. 1. 1	15	21.9	1974. 1. 21	WNW	1.0	0.3	20.3	23.1	26.3	32.1
신안	1971. 1. 1	15	29.3	1974. 1. 21	WNW	2.2	0.6	35.4	40.0	48.4	55.7
문경	1971. 1. 1	15	31.6	1974. 1. 21	WNW	1.4	0.9	42.3	47.3	56.7	64.5
영주	1971. 1. 1	15	22.3	1984. 3. 21	NW	2.3	0.6	23.3	26.5	30.2	36.7
거창	1971. 1. 1	15	24.0	1974. 1. 21	NW	1.3	0.8	27.2	30.8	37.2	43.3
함천	1971. 1. 1	15	24.8	1974. 1. 21	NW	1.0	1.0	29.5	33.4	38.4	44.8
함안	1971. 1. 1	15	18.7	1974. 1. 21	NNE	0.9	1.6	22.3	25.8	29.7	34.5
산청	1971. 1. 1	15	36.0	1972. 12. 23	N	0.9	4.8	43.1	47.7	57.2	66.8
영덕	1971. 1. 1	15	27.9	1974. 2. 2	NNE	2.7	-0.1	30.5	35.0	43.2	50.0
함평	1971. 1. 1	15	21.8	1977. 2. 16	NNW	2.5	-9.3	22.5	25.8	30.2	35.2
성산포	1971. 1. 1	15	25.4	1977. 2. 17	NW	3.9	-1.0	29.8	33.5	37.2	42.5
밀양	1971. 1. 1	15	10.7	1983. 2. 23	WNW	1.8	0.4	15.2	17.9	21.5	24.8
거제	1971. 1. 1	15	10.6	1982. 2. 9	NNW	1.3	3.0	14.3	16.2	20.8	23.9
남해	1971. 1. 1	15	12	1982. 2. 4	SE	0.9	3.4	18.7	20.5	23.3	27.8
고흥	1971. 1. 1	15	10.3	1982. 2. 4	WNW	1.1	2.9	15.9	18.0	20.8	24.2
대정	1971. 1. 1	15	8.5	1984. 1. 18	NNW	7.2	-0.8	10.3	12.5	15.2	17.9
강화	1971. 1. 1	15	17.4	1979. 12. 26	SW	2.6	-2.7	17.3	20.5	24.3	29.0
양평	1971. 1. 1	15	17.2	1974. 1. 21	NW	1.0	0.4	26.5	29.3	33.5	38.6

* 1. *表示는 測候所임

2. 이자료는 71~78年 사이 운영하던 폐쇄된 관측소를 제외한 남한 전지역

라 국가간에는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달리 평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와같은 각국규준을 보면, 미국안은 너무 세분되어 있고, 일본안은 너무 간략하게 되어있다. 따라서 많은 연구가 없는 우리실정에서는 미, 일의 중간적 성격을 갖는 캐나다기준안을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그림 11)의 계수를 제의한다.

(그림 4~8)를 보면 적설기간중 거의 일평균 2~7m/sec의 바람이 있었는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 2m/sec의 바람으로도 눈의 이동⁽¹³⁾이 발생함으로 지붕적설하중이 변화가 생기며, 또 太陽熱에 의한 지붕東西面 또는 南北面의 積雪深의 변화^{(14),(19)}가 있어 偏側積雪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반드시 편측적설의 검토가 있어야겠다. 偏側積雪에 대한 규준은 미국, 캐나다案이 잘 다루어져 있으며 차이점이 별로 없음으로 환경계수와 동일성을 갖게 하기 위하여 캐나다규준을 적용시켜(그림 11~12)와 같은 계

수를 적용시키기로 한다.

사용지붕재료에 따라 적설하중이 차이가 있다. 즉 콘크리트 평지붕, 금속판 지붕, 기와지붕의 순으로 지붕 적설하중이 적어지나,^{(8),(10)} 아직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 지지않아 구별을 두지 않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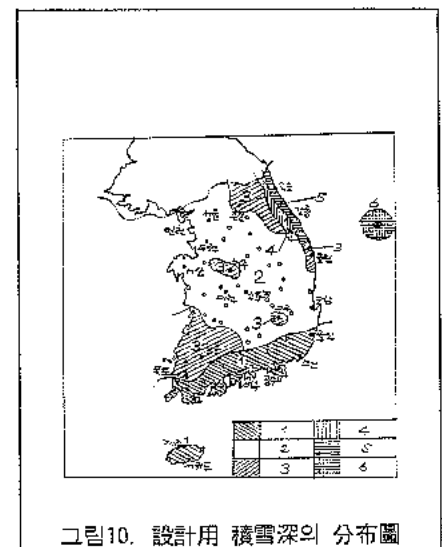
5.2 중요계수

건축물의 용도 및 중요도의 구별없이 일괄하여 같은 적설하중을 적용시킴은 합당치 않다. 왜냐하면 건축물의 사용기간이 영구적이냐, 임시적이냐에 따라, 그리고 건축물이 피해를 입었을 때 이 피해로 인하여 미치는 영향, 즉 중요도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하중 안에서는 적용치 않고 있다. 이것은 모든 건물을 동일시 하게 되어, 중요성이 없는 건물(임시건물)을 안전성을 높게 하여 경제성이 없는 구조물을 만들게 되고 또 중요 건물(대중이 모이는 대회장)은 안전성이 낮아지게 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우리 하중안에서도 중요계수를 채택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 ANSI를 참고로 하여(표 5)와 같이 할 것을 제안한다.

	용도	I
영구	일반건축물	1.0
	집회장, 체육관, 비상시 사용건물(병원등)	1.1
임시	임시용도의 건물	0.8

〈표 5〉 중요계수 (I)



타일의 接着強度 改善方案 (下)

— 타일의 施工法과 그 問題點 —

李 在 玉
건설부 기술관리실 건축기과

가. 떠붙임工法

떠붙임공법은 붙임모르터의 두께를 10~20mm의 범위로 하고 외벽의 하단에서부터 상단으로 시공해나가는 방법이며 接着強度의 확보를 위한 공법상의 개선점은 다음과 같다.

(1) 바탕모르터의 표면을 흙손으로 긁어서 요철을 많이 만들어줌으로써 타일 이면의 接着面積이 증대되도록 할것.

(2) 붙임모르터의 配合比는 1:3 내지 1:4 정도로 할것.

(3) 붙임모르터의 1회 비비는량은 물을 섞어서 비빈지 30분 이내에 전부 사용을 완료토록 할 것이며 2시간 이상 경과된 것은 사용하지 말것.

(4) 붙임모르터는 타일의 뒷면에 공극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또한 密實하게 퍼갈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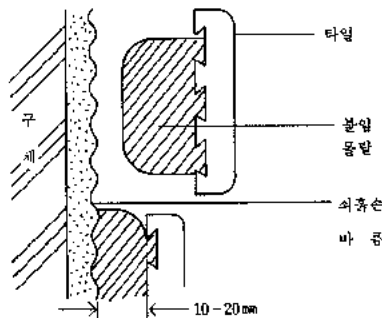
(5) 시멘트페이스트를 줄눈에 뿌리는 것은 白華現象을 촉진시키므로 이를 금지시킬 것.

(6) 1일의 최대붙임높이는 타일의 규격에따라 차이가 있으나, 小口型인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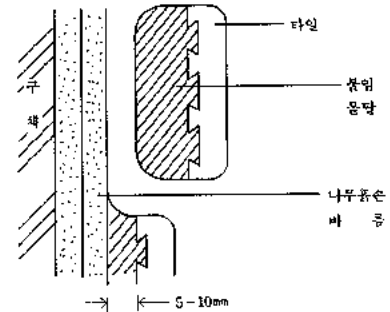
1. 工法上的 對策

타일의 붙임공법을 대별하면 떠붙임공법과 압착 및 밀착공법이 있으며 이외에도 이들 공법을 약간씩 변형시킨 개량떠붙임공법 및 개량압착공법등이 있다. 각각의 工法에 대한 圖解는 그림 2-1, 2-2, 2-3, 2-4 및 2-5와 같으며 특히 그림 2-5의 밀착공법은 최근에 개발되어 보급의 단계에 있는 공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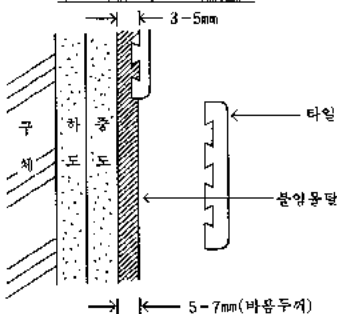
〈그림 2-1〉 떠붙임공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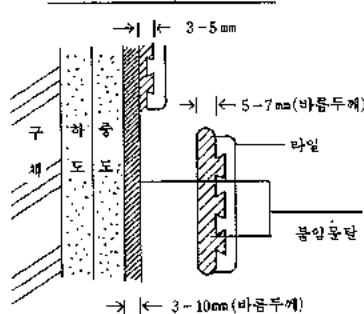
〈그림 2-2〉 개량떠붙임공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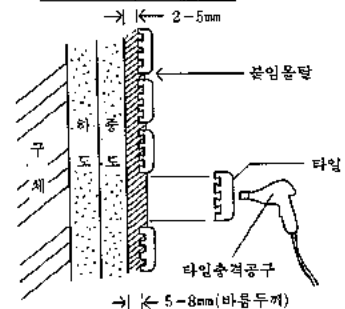
〈그림 2-3〉 압착공법



〈그림 2-4〉 개량압착공법



〈그림 2-5〉 밀착공법



에는 최대붙임높이를 150cm 이내로 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100c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7) 개량떠붙임공법인 경우에는 모르터의 配合比를 1:2~1:3 모르터로 할 것.

나. 壓着工法

압착공법은 본래, 떠붙임공법등에 의해서 타일을 접착시공할 경우 白華現象이 심해지기때문에 이를 방지하기위하여, 모자이크타일붙임공법을 참고하여 고안해낸 공법이다.

압착공법은 작업성이 좋고 작업능률이 향상되며工期가 단축되는 등의 장점이 있는 공법이다.

그러나 압착공법은 작업능률이 좋은대 비해, 기능공의 인식부족으로 부리하게 많은 면적을 단시간내에 시공하는 경우에는 접착강도상의 하자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공법이다.

참고로 日本에 있어서 압착붙임에 의한 타일의 脱落事故를 그 원인별로 분석한 통계를 표 2-6에 정리소개하였다.

표 2-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압착공법은 압착용 모르터의 바름후부터 타일 붙임작업시까지의 시간의 준수가 타일 사고의 방지를 위해 가장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압착공법에 의한 타일붙임시의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바탕모르터는 나무흙손으로 표면에 요철이 있도록 곁어서 타일이면의 接着

面積이 증대되도록 할 것.

(2) 붙임모르터의 배합비는 內裝用인 경우에는 1:0.5 내지 1:1로 하고 외장용인 경우에는 1:2 내지 1:2.5로 할 것.

(3) 保水性和 作業性を 좋게하기 위하여 지정량의 混和劑를 첨가시킬 것.

(4) 모르터는 충분히 전비빔을 한 다음에 기수할 것.

(5) 1 회비빔모르터의 량은 30분 이내에 완료할 수 있는 양으로 하고 2시간 이상을 경과한 것은 사용하지 말 것.

(6) 平壁에 있어서는 상부에서부터 하부로 붙여내려오도록 할 것.

(7) 붙임용모르터의 도포면적은 2m²이 내로 하되 기상조건등에 따라서 적절하게 하향조정 할 것.

(8) 붙임모르터를 붙인후 시간이 경과하여 타일을 타입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필히 모르터를 곁어내고 새로운 모르터를 도포한 후 압착시킬 것.

(9) 붙임후의 줄눈의 수정은 15분 이내로 할 것.

(10) 개량압착공법인 경우에는 바탕모르터의 두께를 4~6mm 정도로 하고 타일의 이면에는 3~4mm의 모르터를 균일하게 퍼갠다음에 압착토록 할 것.

다. 密着工法

밀착공법은 그림 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타일붙임용 바이브레이타를 사용하여 타일을 바이레이팅하면서 접착하는 공법으로서 1980 년향에 日本에서 개발

되어 보급된 공법이다.

밀착공법은 붙임모르터가 타일의 줄눈 사이로 밀려나올때까지 충격을 주면서 붙이는 공법이기때문에 별도의 줄눈재료가 필요치않아 일명 동시줄눈공법이라고 명명되기도 한다.

밀착공법의 장점은 우선 바탕에서 밀려나온 모르터로 줄눈처리를 하기때문에 工期 단축과 工費의 절감을 기할 수 있다는 점이며, 다음으로는 접착력이 다른 공법보다도 훨씬 우수하다는 점이다.

이외에도 밀착공법은 접착력의 편차가 적은점, 밀착여부를 자동적으로 측정가능하다는 점 및 타일의 입체감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다.

따라서 현재 建設部에서는 동 공법의 국내보급을 위해서 現行 建設部制定 建築工事標準施工方書의 타일공사부분을 개정하기위한 연구를 진행중에 있으며 아울러 표준품셈상에 동 공법을 신설하기 위한 實查를 또한 병행하고 있는 중이다.

밀착공법용 타일의 뒷발길이는 1.5~3mm정도가 적당하고 석기질타일등 굵수율이 5%이상인 타일은 미리 타일의 이면에 물을 뿌리고 시행토록 하여야 한다.

밀착공법의 施工上の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타일을 붙일때에 흙손으로 고른 바탕모르터표면에 물을 약간 축일 것.

(2) 붙임모르터의 배합비는 1:1 내지 1:2로 하고 지정량의 混和劑를 混入할 것.

(3) 초벌과 재벌은 계속되도록 이어서 하고 바름두께는 5~8mm가 되도록 할 것.

(4) 타일붙임의 Open Time은 30분 이내로 하여야 하고 2시간 이상이 경과된 모르터는 사용치말아야 하며 참고로 Open Time과 접착강도와의 관계를 例示하면 그림 2-7과 같다.

(5) 타일에 대한 바이브레이팅회수는 15회를 표준으로 할 것. 참고로 두들김회수와 접착강도와의 관계를 도시하면 그림 2-8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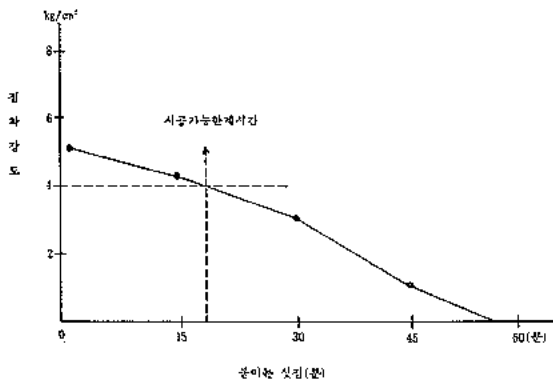
이상에서 언급한 각각의 공법에 대한 장단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각의 공법은 나름대로의 장점을 가지고있기 때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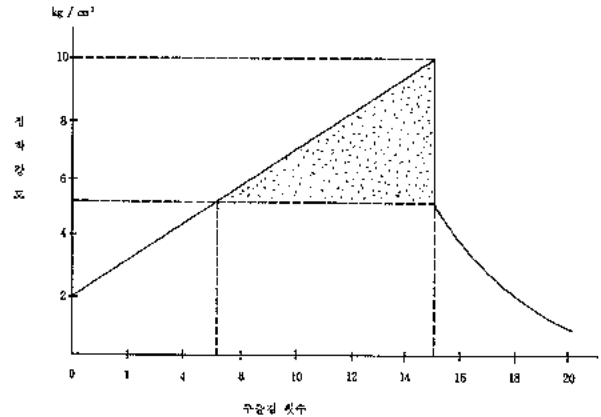
(表 2-6) 壓着붙임타일의 脱落事故原因

區 分	內 容	件 數	比 率
붙임時間의 부적정	• 붙임時間의 부적정에 의한 接着不良	19	47.7%
	• 붙임모르터의 配合의 부적정에 의한 接着不良	2	
	• 붙임모르터의 바름두께의 부족에 의한 接着不良	2	
	• 바탕면의 濕潤度 부족에 의한 接着不良	2	
	• 夏節期施工 및 南向에서의 養生處理 잘못으로 인한 接着不良	3	
	• 타일의 두들김부족으로 인한 接着不良	3	
타일이면 형상의 부적정	타일이면 형상의 부적정에 의한 接着不良	11	16.9%
바탕의 變形	바탕의 變形 및 균열	17	26.2%
기 타	타일의 줄눈족의 부적정	2	9.2%
	타일의 加水팽창	4	

〈그림 2-7〉 OPEN TIME와 접착강도



〈그림 2-8〉 두층길 첫수와 접착강도



에 설계자가 당해 건축물에 가장 적절한 공법을 취사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 일공사에 있어서의 하자발생의 방지를 위해 대단히 효과적인 방법이다.

또한 타일의養生에 대해서 미국 AIA 의 MASTER SPEC에서는 타일붙임 시의 타일붙임면의 온도를 최소한 10℃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타일시공이 끝난 뒤의養生時에도 최소한 7일 이상을 10℃ 이상으로 유지토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대한 건축공사표준시방서의 내용 또한 일부 개 선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법별 장단점

	장 점	단 점
떠 붙 임	1. 탈락율이 적음 2. 벽면의 굴곡조정 용이	1. 백화가 극심 2. 시공비가 높음 3. 공기가 늦음 4. 기술자의 부족
압 착	1. 공기가 단축 가능 2. 시공비가 저렴 3. 기술자의 양성 용이	1. 탈락사고가 많음 2. 벽면의 굴곡 조정 곤란 3. 백화가 발생 4. 양수결장 공법으로의 전이
밀 착	1. 탈락사고가 거의 없음 2. 백화가 적음 3. 공기단축 가능 4. 타일의 입체감 발휘	1. 시공 숙련도가 필요 2. 재료의 보급 3. 바이브레이터 확보

2. 材料選定上의 對策

가. 타일의 選定

타일의 선정은 타일의 크기와 용도 및 내동해성을 고려한 급수율조건등을 감안 해서 결정되되 보수성이 80%이상 95% 이내인 것으로서 급격한 모르터의 結晶水脫取를 방지할 수 있는 성능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연성 또한 오래 유지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타일의 길이변화율은 재령4주에서 0.2%이하의 것으로서 붙임재료의 백체수축에 의한 타일의 들뜸, 탈락, 균열등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타일은 또한 처짐이 없는 것이어야 하고 타일의 굴곡강도는 80kgf/cm²인 것으로서 뒷발의 길이는 표 2-9를 참고 하여 결정한다.

나. 타일붙임모르터의 選定

〈표 2-9〉 타일의 종류별 뒷발길이

타일종류	구분	뒷발길이	붙임물탈두께	중 량
87 × 57 × 6 mm		0.2 mm	4 mm	100 g
108 × 60 × 7.7 mm		1.3 mm	4 mm	110 g
111 × 90 × 11.3 mm		2.4 mm	5.5 mm	250 g
190 × 90 × 12.6 mm		2.5 mm	6 mm	430 g
210 × 100 × 18 mm		1.2 mm	8 mm	800 g
190 × 190 × 11 mm		2 mm	6 mm	760 g
240 × 117 × 11 mm		3.9 mm	7 mm	650 g
300 × 200 × 10 mm		0.5 mm	5 mm	1.240 g
225 × 61 × 36 mm		4.4 mm	10 mm	750 g
225 × 90 × 21 mm		5 mm	10 mm	920 g

* 국내사용 타일 기준

붙임모르터는 타일의 크기, 무게,材質 및 뒷발의 모양등에 적절한 배합비와 골재의 粒度分布를 갖고 있는 것으로서 표 2-10의 배합비를 참고하여 결정한다.

다. 타일붙임모르터의 接層強度基準
개정되는 표준시방서의 타일붙임용 모르터에 대한 접착성능은 常溫에서 접착 강도시험을 할 경우 표 2-11에서 보여 주고 있는 각종 공법별 평균접착강도의

〈表 2-10〉 배 합 비

	타일종류	조 합 비		골 재 입 도 분 포
		시멘트	골 재	
외 장	모자이크	1	0.2-1	1.2% 이하의 적당률
	자 기 질	1	1-3	2.5% 이하의 적당률
	반자기질	1	1-3	2.5% 이하의 적당률
내 장	모자이크	1	0.5-1	1.2% 이하의 적당률
	자 기 질	1	2-3	2.5% 이하의 적당률
	반자기질	1	1.5-3	2.5% 이하의 적당률
	도 기 질	1	0.5-1	1.2% 이하의 적당률
바 닥	모자이크	1	1-2	1.2% 이하의 적당률
	자 기 질	1	1-2	2.5% 이하의 적당률
	반자기질	1	1-2	2.5% 이하의 적당률
비고		포틀랜드 시멘트	강모래	* 단, 타일의 뒷발의 넓이, 길이에 따라 조정되어야 함.

〈表 2-11〉 工別事故率 및 接着強度

	사고율(%)	평균접착강도	편 차	비 고
머 붙 임	22.2	8.5	5-12	재료배합, 접착면적 부족
개량머붙임	2.4	9.4	8-10.8	재료배합
압착공법	62.2	5.3	2-12.3	재료배합, 몰탈두께, 두들김 붙이는 실패
개량압착	2.4	12.8	9-16	재료배합
밀착공법	1.2	11.0	9.8-12	재료배합
직접붙임	1.2			바탕면 처리
모자이크		8.6	4.3-15.4	

〈表 2-12〉 타일붙임재료 품질선정 조건표

구분	재료명	유 기 질			
		무 기 질 시멘트+모래+운화재	아크릴에멀전	합성고무라텍스	에폭시면접합성 고무라텍스
필요성능	접 착 재	○	○	○	○
	내 수 성	○	○	○	○
	보 수 성	○	△	△	△
	작 업 성	○	○	○	○
	내 열 성	○	×	×	×
	내 한 성	○	×	×	×
	내 구 성	○	×	×	×
시공장소	외 벽	○	×	×	×
	욕 실(벽면)	○	○	×	×
	욕 실(바닥)	○	×	×	×
	욕실(욕조내부)	×	×	×	×
바탕	미 장 물 탈	○	○	○	○
	석고보드, ALC 판등	프라이마처리	프라이마처리	프라이마처리	프라이마처리
타일	자 기 질(외장)	○	×	×	×
	자 기 질(내벽)	○	○	×	×
	자 기 질(바닥)	○	×	×	×
	도 기 질(벽)	△	○	○	○
바탕의 전습		○	전 조	전 조	전 조
양생조건		10℃이상	10℃이상	10℃이상	10℃이상

현황을 비교해볼때 우선 최소한 4 kg/cm² 이상의 접착강도는 확보하도록 하여야 타일의 脱落現象과 凍害에 의한 내구성 저하를 방지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상기한 표 2-11에서는 각각의 공법들 중에서 접착강도의 편차가 가장 적은 밀착공법이 가장 우수한 공법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압착공법에 있어서는 시공의 정확도를 엄격히 유지하여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에서 전술한 바를 종합하여 이를 각종 타일붙임 재료의 品質選定上의 조건표로 집약한것이 표 2-12이다. 특히 표 2-12는 타일붙임재료가 지녀야 할 모든 성능에 대해서 조건표를 작성한 것이어서 붙임재료선정시에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3. 타일工事의 品質管理

가. 타일의 品質檢査

타일의 품질검사항목과 그 빈도에 대해 건설부제정 選定 및 管理試驗表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우선 選定試驗에 있어서는 치수 및 두께측정시험과 뒤틀람측정시험, 급수율 시험 및 귀열에 대한 시험을 제조회사를 달리하는 제품을 선정하여 사용할 때마다 시험토록 되어 있다.

또한 관리시험에 있어서는 시험의 항목을 뒤틀람측정시험과 급수율시험 및 귀열에 대한 시험을 실시토록 하고있으며 시험의 빈도는 3000m²마다 실시토록 하고 있으며 마모시험과 凍結融解試驗 및 耐酸性 시험 등에 대해서는 도면이나 特記示方에 따르도록 현행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서는 규정하고 있다.

(1) 吸水性能

타일의 燒成의 정도를 검사하기위하여 행하는 시험으로서 105~110℃의 공기 건조기내에서 恒溫狀態로 3시간동안 방치시킨 다음에 이를 상온에서 냉각시켜 측정된 무게를 건조시의 무게로 하고 다음에 그 타일을 24시간동안 상온의 물속에 침지시킨 후에 타일의 급수율을 측정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text{吸水率(\%)} = \frac{\text{乾燥時重量} - \text{吸水時重量}}{\text{乾燥時重量}} \times 100$$

吸水率을 결과 자기질타일은 내외장 및 바닥등의 용도에 관계없이 1%미만이어야 하고 석기질인 경우에는 10%미만이어야 한다.

(2) 오토클레이브시험(갈라짐시험)

타일이 공기중에 방치되는 기간 즉 타일시공후의 그 건물의 經過年數가 많아짐에따라 타일의 균열발생 가능성은 높아지게된다.

오토클레이브시험은 이와같이 타일이 外氣에 노출되는데 따른 타일의 耐龜裂性能을 측정하기위해 시행하는 시험이다.

이 시험방법은 타일을 오토클레이브라고 하는 高壓蒸氣爐에 집어넣어 과열연기에 노출되도록 함으로써 공기중에 있을때보다도 훨씬 짧은 시간내에 素地の 풍화를 강제로 촉진시켜 그에따른 균열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시험이다.

이같은 시험의 결과에 대한 일반적인 예를 들면 증기압력 10kg/cm²이고 증기의 온도 183℃에서 1시간동안 노출시켰을때 素地나 또는 釉藥에 균열등의 이상이 일어나지 않으면 공기중에서는 3년간은 耐龜裂性能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또 이같은 증기압력과 증기온도를 5회 반복시킨후에도 이상이 일어나지 않으면 15년간은 균열에 대한 耐性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있다.

韓國工業規格에 의한 오토클레이브시험기의 게이지압력은 자기질인 경우에는 10kgf/cm²이고 석기질인 경우에는 7kgf/cm²이지만 보통의 경우 자기질은 대부분 10kgf/cm²이상에서 거의 균열이 일어나지 않기때문에 시험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衝擊抵抗性試驗

충격저항성시험은 타일의 면에 충격이 가해지게 될 때의 타일의 파괴저항성의 大小를 측정하기 위한 시험이다.

이 시험방법은 수평을 이루고 있는 타일의 면에 100g 정도의 磁器製品으로 된 Ball을 균열이 발생할 때 까지 계속해서 수직으로 낙하시킨 후 다음의 식에 의해서 그 성능을 산출해내는 시험이다.

$$\text{衝擊強度} = \text{Ball의 重量} \times \text{落下距離}$$

(g·cm)로서 산정하고 있으나 현행의 한국공업규격에는 아직 이에대한 시험방법과 충격저항성능에 대한 규정은 하지않고 있다.

(4) 磨耗抵抗試驗

마모저항시험은 주로 바닥타일이나 모자이크타일등의 磨耗抵抗性을 비교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험으로서 크기를 40~50mm의 정사각형으로 절단하여 무게 100g 이내로 조정된 供試體를 만들어서 이를 낙사식의 마모시험장치를 이용하여 45도각도로 試料를 장치하고 여기에 탄화규소연삭제 2c의 粒度20번을 낙사시켜 타일의 표면에 접촉마찰을 받도록 하는 시험이며 결과는 10분간의 마찰에 의한 중량감소량을 측정하여 磨耗저항성을 산정하는 방법이다.

현행의 한국공업규격에서는 바닥타일과 모자이크타일에서는 磨耗에 의한 감량을 각각 0.1g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내장타일과 외장타일은 이에대해서는 규정치않고있다.

(5) 꺾임強度試驗

타일素地の 꺾임강도를 비교하기위한 시험으로서 시험은 試驗片의 兩端을 單純지지해놓고 그 중앙점에 荷重을 작용시킨 후 휨파괴하중을 산정해내기위한 것이다.

하중의 조건은 30초동안에 내장타일은 1.2kgf/cm, 외장타일은 6kgf/cm, 바닥타일인 경우는 12kgf/cm가 작용토록 하고 1cm당의 꺾임파괴하중은 다음의 식에 따라서 산한다.

$$\text{꺾임파괴 荷重} = \frac{P}{b}$$

여기에서

p: 파괴하중

b: 타일의 너비

(6) 耐凍害性試驗

주로 외장용의 타일에 대해 동절기에 발생하기 쉬운 凍害의 可能性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으로서 凍結融解에 따른 대략적인 내구성 저하를 측정해보기위해 실시하는 시험이다.

이 시험은 -20±3℃의 냉동실에 넣고 8시간 경과시킨 후에 이를 꺼내어 상온의 물속에 6시간동안 浸漬시킨 후 갈라짐이나 素地 또는 유약의 벗겨짐여부를 관찰하는 시험이다.

관찰시에는 素地나 또는 유약에 균열

등의 발생이 있는 가를 검사하고 보통 10회반복으로 凍結融解에 대한 저항성을 판별하는 시험이다.

(7) 기타의 試驗

타일에 대한 시험은 상기한 각종의 시험외에도 유약의 硬度和 光沢度 및 光度시험과 소지의 내압강도와 탄성 및 열팽창시험등이 있으며 특히 치수측정시험과 뒤틀림측정 및 치수의 불규칙도등은 어느경우에나 실시하여야 하고 기타 구성타일인 경우에는 접착성시험과 침지 떨어짐 시험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타일의施工監理上 留意事項

타일공사의 監理內容을 크게 대별하면 첫째는 적절한 타일이 선택되고 있는 가를 감리하는 것이고 둘째는 적절한 시공이 행해지고 있는가를 감리하는 것이다.

(1) 타일의 選擇에 대한 監理

타일로 마감한 건물이 오랜 기간동안 그 아름다운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적체적소에 맞는 타일의 선택이 그 선결요건이 될 것이다. 따라서 타일선택에 대한 감리를 함에 있어서는 하기의 사항을 유의하여 타일의 美觀的 機能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색상의 選擇에 대한 監理

타일공사의 감리시에는 우선 선택된 타일의 색상이 적절한가를 판정하여야 한다.

특히 타일의 색상에 대한 적정여부를 판정할 때는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실제로 사용된 타일로 구성된 色圖表(Colour Chart)를 제출받되 色圖表의 크기는 가로와 세로가 각각 30cm이상 크기의 합판 또는 하드보드에 붙인 타일의 樣本을 제출받아 판정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특히 외장의 타일에 있어서는 주변에 있는 色 및 形態와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을 선택하도록 監理하여야 하고 실내의 타일은 벽이나 천정과와의 조화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선택토록 감리하여야 한다.

색상의 선택에 대한 감리에 있어서는 특히 탈색이나 변색 등의 발생이 쉬운 특수한 색상은 가급적 선택치않도록 하

여야 한다.

(나) 規格의 선택에 대한 監理

타일규격의 선택에 대한 監理에 있어 서도 타일규격의 正倍數가 붙임면적과 거의 일치되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 내장이나 외장 및 바닥등의 構造部位別에 따라 그 용도에 적절한 규격을 선택토록 감리하여야 한다.

특히 한냉지에 있어서는 냉해의 영향을 감안하여 급수율이 2% 정도 이내의 것으로서 가급적 뒷발이 있는 것을 사용토록 감리하여야 한다.

(2) 適切한 施工여부에 대한 監理

타일시공의 적정여부에 대한 監理를 함에있어서 우선 가장 중점적으로 점검할 사항은 시공이 끝난 타일이면의 全面에 모르터가 균일하게 부착되어있는 가를 확인하는 것이다.

확인을 한 결과 타일의 이면 전체에 균등하게 모르터가 부착되어 있으면 모르터에 타일을 붙이는 시간 즉 Open Time과 바탕모르터의 도포량 및 여타의 시공조건을 거의 만족시킨 상태하에서 시공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중요한 점검사항은 白華發生의 원인이나 시공불량에 따른 脫落의 가능성을 조사하여 발견되는 대로 즉시 수정토록 監理하는 것이고 이외에도 모르터의 배합비는 정확하고 소정의 접착강도는 견지할 수 있는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타일의 붙임은 건축물의 골조에 있어서는 수축이나 변동이 끝날때쯤 해서 시행토록 하고 끝으로 바닥에 붙이

는 바닥타일이나 모자이크타일면이 배수를 위한 충분한 勾配를 확보하였는가를 조사하여 적정치 못한 경우에는 이를 바로잡도록 監理하여야 타일에 대한 하자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기능적으로나 미적으로도 훌륭한 타일공사를 완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4. 結語

세라믹타일은 건축물의 내외장 및 바닥로서 외장효과와 증대는 물론 耐火, 耐水, 耐磨耗性を 또한 발휘하기 때문에 주택과 사무조건물등에서도 널리 이에 대한 사용이 촉진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타일은 개체의 상태만으로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이며 이를 벽이나 바닥등에 붙여 건축물의 한 構成部分이 될 때에야 비로소 그 가치가 발휘되는 것이며 그 가치의 발휘도 접착력의 신뢰도와 정밀한 시공법의 확립에 크게 좌우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日本에서는 이미 1963년에 「도자기질 타일의 接着工法委員會」라는 단체를 전부 망라한 연구조직체를 발족하여 타일의 시공법에 대한 조직적이고 계통적인 연구를 개시하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이 위원회에서는 다년간의 연구와 실험의 결과를 토대로 「타일工事標準仕様書」를 제정함으로써 타일의 올바른 시공법의 보급에 대한 공헌은 물론 압착공법과 밀착공법등을 정착시키고 Open Time의 중요성과 신축줄눈의 필

요성등을 강조하여 일본의 타일공사설계 및 시공에 귀중한 시공지침을 제공하였으며 현재까지도 신공법등의 개발연구와 신개발접착제의 활용을 위한 실험등에 진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이에대한 연구개발노력은 극히 부진한 실정이며 타일공사의 하자에 대한 신빙성있는 조사보고조차 거의 없는 상태여서 타일공사에 대한 품질관리는 지극히 구태의연한 방법으로 수행하고 있다.

다만 최근에 타일의 接着劑開發에 성공한 일부 중소기업체등에서 타일의 공법개발등을 위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음은 건축계를 위해서도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이에부응하여 관계기관에서도 관련기준과 관련규격등의 개정을 통한 지원책으로 타일공사의 품질향상과 타일의 탈락에 의한 인명 및 재산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적극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全國タイル業協會, タイル工事早わかり, オーム社, 1982.
2. 日本建築学会, JASS 5 鐵筋コンクリート工業, 1983.
3. ACI Committee 212, Journal of ACI, Nov., 1963.
4. 田中 弘, タイルの話, 学芸出版社, 1982.
5. 林田 健之助, タイル工事の実際, オーム社, 1981.
6. 本間 力雄, 図説タイル工事, 理工学社, 1984.
7. 장성주, 타일工事의 問題點과 對策, (주) 삼호특수건설, 1985.
8. 中島 義明, タイル・れんが施工法, 金園社, 1968.
9. AIA, AIA, MASTER SPEC 2, Division 9, 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 1984.
10. 建設部, 建築工事標準示方書, 1984.
11. 建設部, 標準普通 建築部門, 1984.
12. 當綱協會, 建築工事共通仕様書, 1970.
13. JIS A 5209, 陶磁器質타일, 1981.
14. KSL 1101, 도자기질타일, 1983.

韓國의 構造物設計用 積雪荷重에 關한 研究

【參考文獻】

- (1) 金昌石: 南韓各地에서의 風壓力과 積雪荷重, 大韓建築學會誌, (2) 大韓建築學會: 荷重基準案(1) 作成報告書, pp. 5~9, pp. 29~43, 1980.
- (3) ANSI: American National Standard Minimum Design Load for Buildings and Structures, pp. 16~18, pp. 64~73, 1982.
- (4) National Research Council of Canada; National Building Code of Canada, 1980.
- (5) National Research Council of Canada; Commentary on part 4 of the National Building Code of Canada, pp. 71~84, 1977.
- (6) 日本建築學會: 建築

- 物荷重標準案, pp. 66~72, 1972.
- (7) 日本建築學會: 昭和56年 大會學術講演梗概集(構造系), pp. 991~1002, 1981.
- (8) 日本建築學會: 昭和59年 大會學術講演梗概集(構造系), pp. 1023~1038, 1984.
- (9) G. R. Mitchell; Snow on the roofs, Wind and snow load, 1978.
- (10) 日本建築學會: 昭和56年 大會學術講演梗概集, 1981.
- (11) 日本建築學會: 昭和57年 大會學術講演梗概集, pp. 1147~1158, 1982.
- (12) 建築學大系: 建築耐風・耐雪論, pp. 468, 1977.
- (13) 日本建設機械化協會: 新防雪工學ハンドブック, pp. 21~66, 1977.
- (14) 梁성권

- : CIB의 雪荷重研究: 大韓建築學會誌, Vol 16, No. 48, 1972.
- (15) Verlag von Wilhelm Ernst & Sohn; Reichenwert der Schneelast, Beton Kalender, pp. 94~97, 1977 Teil II.
- (16) T. Kármán; snow loads in Hungary, CIB 6TH Congress in Budapest, 1974.
- (17) 중앙관상대 기후년감: 1904~1984.
- (18) 기상재원: 육군연구 발전사령부, 1972.
- (19) 日本建築學會: 昭和58年 大會學術講演梗概集: pp. 2451~2564, 1983.
- (20)

헤겔에 있어서 예술의 죽음

崔 富 得
建築士事務所 空間構成

1. 헤겔에 있어서의 ‘예술미’의 개념

1). 헤겔미학 성립의 철학적 기초

헤겔에 있어 세계의 근원이 되는 존재는 절대정신이다. 이 절대정신은 주관적인 정신인 即自的 存在(An-Sich-Sein)와 객관적 정신인 對自的 存在(Für-Sich-Sein)의 변증법적인 존재의 발전법칙에 의해 即自對自的 存在(An-und-Für-Sich-Sein)로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변증법적인 발전법칙은 인간정신의 자기발전의 표현으로서 역사이며, “이성적인 것은 현실적이고, 현실적인 것은 이성적”인 이성의 필연적인 법칙을 가져오고, 결국 인간의 지혜는 이성이 만들어 놓은 역사발전을 수행하는 중에 파악된다.

절대정신의 철학은 ‘세계창조 이전의 신’을 창조된 세계의 유한한 형상들로 서술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영원한 본질속에 들어있는 신의 서술은 순수사유의 규정들로 이루어지는 내재적 삼위일체성의 전개로 파악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절대정신의 자기서술의 한 단계

로서 독자적 형태를 띠고있는 예술은 철학의 근본입장과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현상하는 정신의 <최고의 영역>이 <일반자 속에서> 규정됨을 표현하는 것이다.”

2). 헤겔의 ‘美’ 개념의 변천

헤겔의 미학적 사유의 중심과제는 生의 원천인 진리의 문제이다. 헤겔은 사실적이고 일상적이며, 비본질적인 제한을 받고있는 生을 고양시키기 위해서 미의 진리를 추적한다. 진리로서의 미는 과연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고유한 본질을 해방시킬 수 있는가 하는 물음에 대한 해답으로서 사랑의 경험을 예로 든다. 대상의 본질을 상실하지 않고 대상과의 疎遠性(Entfremdung)을 解遺하는 것, 그것은 곧 대상과 자아의 즉자대자적 통일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통일은 부분의 유한성을 부수고 오히려 전체를 포용하게 되며, 이때 대상은 무한하고 신적인 生을 그의 본질로 드러내게 된다. 즉, 진리로서의 미는 그의 무한성을 인간형상화 된 신속에서 직관하는 해방된 生을 실현하게 되는데, 그것은 회람적인 定存속에서 나타난다. 그러나, 절

대적이고 무한한 生의 핵심은 그의 부분속에서 자기자신을 재발견하지만, 이성적 사유속에 포함되고 만다. 미의 진리는 즉자대자적 통일의 ‘가능성’을 가질 뿐이지만, 사유의 진리는 자신의 고유한 내용, 이념, 세계, 유한한 정신들을 산출해 내는 신의 <절대적 사유>으로 해방시킨다. 미는 유한성을 파기하지만 그 자신 여전히 유한하며, 유한자 속에서의 무한자의 模像으로 파악되므로써, 모든 대립을 능가해 있는 사유의 절대성으로의 역사적 발전단계의 한 역할로서 격하되고 만다. 헤겔은 그의 실재철학에서 美는 진리를 감추는 베일이라고 규정하므로써 미를 더욱 격하시켰으며, 여기에서 예술작품이란 내용과 형식이 동일한 즉, 감각적인 재료가 사실상 정신의 현상인 절대적 작품을 말하며, 미는 다만 직접적으로 행동하며, 자신을 초월하지 못하는 知일 뿐이다. 결국 정신은 자신의 파악의 더 높은 단계를 이룩하기 위하여 예술을 지나치게 된다.”

3). 헤겔의 ‘예술미’의 개념

헤겔의 예술고찰은 형식상의 가능성과 내용상의 가능성을 동시에 서술해야 한다. 그러므로, 예술의 표현에 있어 형식과 내용은 상호 침투되어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헤겔에 있어서 유한자의 우연성에 사로잡힌 자연미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예술미의 (그리고 정신의) ‘우월함’은 단지 상대적인 것만이 아니라 정신은 모든 것을 자신속에 파악하는 자로서 ‘진실한 것’이며 그럼으로써 모든 미는 이런 우월함을 담지하고 있고 이를 통해 산출되는 한에서 아름답고 진실할 뿐이다.” 따라서 헤겔에 있어서 예술미의 근거는 정신에 있고, 정신의 미적 본질을 이루는 것이 사유이며, 예술이 비록 가상이지만 <정신미의 산물>인 까닭에 <사유의 외화>로서의 예술작품은

1) 林貞嘉; 헤겔미학에 있어서의 ‘예술미’의 개념. pp. 53, 54

2) 임정희; op. cit., pp. 33~37.

3) Seondi. peter; Hegels Lehre von der Dichtung, in: Poetik und Geschichte philosophie I. (여광동·윤미애역; 『헤겔미학입문』, 종로서적, 1983.)

〈파악하는 사유의 영역〉에 속하게 된다.

그 자체 목적이고 자유로운 예술의 학문적 고찰방식에서 헤겔은 예술의 개별적 고찰과 다른 경험적 방법이나, 추상적 보편적 고찰에 따른 미의 추상적 철학을 모두 지양한다. 헤겔은 형이상학적 보편성과 실재적 특수성의 규정을 매개적으로 통일하려고 하였다. 즉, 예술이 그의 독특한 속성에 따라 고려되면서 미학은 철학과 통일된 체계내에서 예술작품을 신적인 것의 표현으로 간주하였다. 이런 신적인 것의 표현을 위해서 예술이 어떻게 이념의 감각적 가상으로 나타날 것인가? 가상은 본질에 대해 본질적이다. 만약 진리가 현현하지 않고 현상하지 않는다면, 또한 진리가 그 통일적 일자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다면 진리는 진리임을 종식하게 되고 진정하게 현실적인 것은 즉자·대자적 존재자인 것이다. “예술작품은 인간의 감각을 위한 것이며, 감각적인 것으로부터 나온다.” 예술작품의 감각적인 것은 “인간의 정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한 현존재를 갖는 것이지만 감각적인 것 그 자체의 감각성 때문에 현존재를 갖는 것은 아니다.” 활동성과 예술가의 상상력으로 부터 산출되는 창작은, 이것이 자신에게 담지한 것을 의식에 가져오되 비로소 감각적인 형식 속에서 실현한다는 점에서 이성적이다. 즉, 예술적 생산은 정신적이며, 자기의식적 방식이며, 결국 예술은 정신의 감각성을 매개로 하여서만 자신을 나타낼 수 있다.

헤겔에게 있어 예술의 필연성은, 자신의 의식화로서 즉자대자적 존재로의 도程으로 파악되는 정신의 과정속에서 개별적으로 포착된다. 그러므로 미학의 이상인 〈예술미〉는 예술의 고유한 개념에 의거하여 규정들의 총체성으로 자기 전개를 하여 입증하는 것이다.

〈예술미〉는 〈이념의 감각적 가상〉이고 의미와 형태, 내용과 형식의 통일이지만 통일은 일시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실현되고 사라진다. 〈예술미〉개념에 내재적인 이념과 형태간의 각축의 양상은 처음에는 원초적으로 초월적인 의미가 서서히 형태속으로 함입되는

가운데 마침내 완전한 일치와 통일성의 순간에 도달하지만, 다시 이 지점에서 정신은 기존의 감각적 형상을 딛고 넘어 서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 나가는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다. 이것이 이념과 형태, 내용과 형식의 변증법적 통일로서의 〈예술미〉의 개념이다. 따라서 〈예술미〉의 개념은 역사적 과정속에서 이루어지고, 예술의 역사인 동시에 정신의 전개속에서 한 부분을 형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예술미〉의 개념은, 사실상 역사적 규정으로서의 세가지 예술형식들의 역사철학을 선취하고 있는 것이다.⁴⁾

2. 헤겔에 있어서의 예술의 삼형식

헤겔 ‘미학’ 제2부에서 “이념상이 어떻게 예술미의 개별적 형식으로 발전하는가?”라는 문제를 제기 하면서 역사철학적 성격을 드러낸다. 여기서 헤겔은 역사적 과정이 이념적 과정의 〈표현〉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과정이 단순한 서술이 아니라 〈의미〉가 부여된다는 것을 중요시 한다.⁵⁾ 즉, 이념은 감각적 예술 형태속으로 삼부되어 그것과 완전히 화합하고나서 다시 극복하여 이제는 더 이상 감각적 현존방식이 아닌 종교와 철학으로 나아간다. 이런 과정에서 세 단계가 곧 헤겔이 예술사를 파악하는 기준으로서 세 예술형식들과 대응하는 것이다. 그것은 상징적·고전적·낭만적 예술형식을 말하며 이는 각각 동방·화랍·기독교시대를 표방하며, 그가 주장하는 자유의 발전의 역사적 세 단계인 동방적, 그리스·로마적, 게르만·그리스도적인 것의 구분과 관련을 갖는다.⁶⁾ 이런 시대구분은 헤겔의 독창적 업적은 아니다. 그의 미학 전반은 칸트 이래 철학자 및 미학자, 문학가들이 숙고해 왔던 문제에 대한 종합적 연장선상에 있으며, 특히 괴테 시대의 사유에서는 역사철학적 시대구분인 고전적 예술시대와 낭만적 예술시대로의 이분법에 관련된다. 그런데 이와같은 이분법에 대해서 새롭게 고전적 예술형식에 선행하는 ‘상징적 예술형식’

이 오히려 첫번째 예술형식으로 헤겔에 의해 도입되게 된다.⁷⁾

1). 상징적 예술형식⁸⁾

상징은 직관에 대해 직접적으로 현전하거나 주어진 외적 실존이지만, 그것은 직접적 상태 그대로 취해질 바가 아니라 나아가 하나의 확대된 보편적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상징에서는 동시에 두가지가 구별될 수 있는데 첫째가 〈의미〉이고 둘째가 〈의미의 표현〉이다. 전자는 어떤 내용인든 상관없이 하나의 표상 혹은 대상을 말함이고, 후자는 하나의 감각적 실존 혹은 일정한 방식의 형상이다. 이와같이 헤겔이 쉴레와 함께 사용하는 상징이라는 용어는 어원론적 의미와는 달리 유한자와 무한자, 이념과 형태의 완전한 일치를 뜻하지 않고, 고전시대에서 산출된 바 있는 상호 교체적 결합 대신에 동방에서의 ‘의미함’, ‘지시’의 관계를 뜻한다. 즉, 추구되는 의미와 한갓 부분적으로만 일치되는 직관에 있어서 가능한 외적형상을 뜻하는 것이다.⁹⁾ 따라서 상징적 예술형식은 “전체적으로 이념과 이것의 형상과의 관계를 단순히 이 양자의 화해를 향한 탐구와 추구로 규정지을 수 밖에 없다.”¹⁰⁾ 이러한 상징적 예술형식은 의미와 형상의 직접적 통일인 단계와 인도종교에서 볼 수 있는 환상적이고 회화적인 상징의 단계를 거쳐, 이집트예술속에서의 본래의 상징예술까지의 계단계를 포함한다. 첫번째 단계는 “상징적이라고 부를 수도 없고 고유하게 예술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단계이다.” 왜냐하면 이 단계에서 〈신적인 것〉의 감각적 표현이 정신에 의해 예술영역내에서 산출된 것이 아니라 외계

4) 임정희; op. cit. pp. 55~77.

5) ibid., p. 78.

6) 金澤鎭 역; 「역사철학강의」, 삼성출판사, 1985. p. 26.

7) 여관동 역; op. cit. pp. 135, 136.

8) 임정희; op. cit. pp. 79~84.

여관동 역; op. cit. pp. 136~165.

9) pöggeler, Otto(Hrsg); Hegel, Einführung in seine philosophie, Verlag Kar / Alber Gmbr H, Freiburg / München; (황태연 역; 「헤겔철학서설」, 중원문화, 1985.) p. 188.

10) ibid., p. 189.

세계의 현존물로서 직접적으로 취해지는 동일성의 단계이기 때문이다. 또한 헤겔은 인도의 예술형식이 정신적인 것과 감각적인 것의, 즉, 의도와 소재간의 분열의 결과로 이해하며, 이집트예술에서 비로소 헤겔이 예술형식의 시초로 파악하는 상징적예술형식의 징후가 나타난다. 인도예술에서 보여주는 부적절성과는 달리 이집트예술에서 이념의 대상적 관계는 하나의 부정적인 것이 된다. 헤겔적 의미에서 대립의 해소는 하나의 신으로 고유한 측면에 따라 부정의 부정을 거쳐 긍정적인 것으로 확증된다. 이집트인들에게 있어서 영혼의 불멸성은 완전히 정신의 자유에 접근하는 것이며, 자아는 현존재의 자연성을 제거하는 것으로, 자기를 근거로 하는 것으로 파악한다. 이러한 자기지가 자유의 원리이다. 즉, 정신과 자연, 영혼과 육체의 관계속에서 헤겔은 이집트예술의 육체의 자립성을 보고 있기는 하나, 정신의 자유가 단지 〈결핍된 방식속에〉 실현되어 있다고 파악한다. 결국 헤겔에게 있어서 스피크스의 암석으로의 轉變은 상징적 예술형식의 전복이라는 상징이며, 동시에 인간의 자기인식이다. 상징적예술에서 고전적예술로의 이러한 역사적 전환은 돌이라는 비영혼체에서 드라마적 행동의 영혼성과 운동으로의 전환이며, 동시에 의미와 표현, 정신과 자연의 이원론으로 부터의 매개적 통일로의 전환인 것이다.

2. 고전적 예술형식¹¹⁾

고전적 예술형식은 유일하게 그리스 문화만을 포함한다. 그리스 문화는 신화와 관련하여 그 특성이 명확히 드러나고 그리스 신들은 정신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의 하나의 구체적이고도 개인적 통일성에 도달한 개인들로 나타난다. 이런 신들 속에서 자연적인 것이 止揚되어 머무르며, 신들은 정신적인 보편성의 단순한 추상이거나 보편적 이상이 아니라, 그들의 개인들인 한에 있어 자신속에 현존과 거기에 따른 규정성, 즉, 정신으로서 성격을 지니는 하나의 이념상으로 등장한다. 헤겔은 정신적이고 실체적인 자유로운 개체성으로서 그리스 신들을

신적인 것의 완전한 개체화로 생각함으로써 그리스 고대의 조각과 일치하는 견해를 보여준다. 즉, 개체적 정신성으로서 이념을 자신에 즉하여 갖게 되는 형상이란, 〈인간적 형상〉이라는 것이다. 〈정신〉은 그의 〈육체〉속에서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현상하기 때문에, 예술이 감성적 방식속에서 정신을 직관으로 가져가는 한에서 이러한 인간화의 진행은 필연적이다. 고전적 예술형식속에서 인간의 신체는 감성적 현존재로서가 아니라, 정신의 자연형상과 定在로서 취해지며 그것은 단지 감성적인 것과 현상들의 유한성의 모든 결핍을 제거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신적인 자기내 존재, das geistige In-sich-sein〉인 지복한 고귀성(die selige Hoheit)과 그의 외적이고 육체화된 미 사이에 모순이 존재한다. 정신성과 감각적 현존, 고귀성과 특수성의 내재된 모순은 이념상이 완전히 실현되고 이념이 그의 감각적 실존과 완전히 하나가 되었던 정점으로서의 고전적예술의 해체를 가져오게 된다. 그리스 신들도 운명속에서 그들의 규정을 가지고 있게되어, 신들은 이전에는 자기지에 존립할 수 있었던 내적인 주관성을 상실한다. 이념상으로서 정신적인 개체성을 즉 자대자적 존재로서 무한한 주관성을 의미했던 자기의식적 존재를 포기하게 되는 것이다. 헤겔에 따르면, 이제 이러한 주관성에 상응하는 신적인 것의 현상이 〈기독교의 신〉인 “자신을 아는 현실적인 주체(das sich wissende wirkliche Subjekt)”인 것이다.

3. 낭만적 예술형식¹²⁾

여기서 낭만적 예술형식이란 고전주의 예술형식이후의 총괄적인 예술로서 〈기독교적 예술〉이라고 할 수 있다. 정신의 외부적인 지관속에서 수행하였던 동일은, 정신의 진정한 개념에 따라서 단적으로 통일되어 분열되지 않던 이념상의 총체성으로부터 해체되어, 다시 정신의 자기和解로 성립되는 것이 더 높은 단계의 〈낭만적 예술형식〉이다. 이제 예술은 〈아직 없거나, Noch-nicht〉, 〈더 이상 없거나, Nicht-nein〉사이에서 완전한

일치와 통일성의 순간에 도달하였던 그리스 예술의 종말과 함께 종교와 철학으로 止揚된다. 헤겔은 고대 신과 구별하여 낭만적 예술의 신을 보는 자이며, 자기를 알며, 내적이고 주관적으로 현상하며, 그의 내부를 내부에게 開示하는 것으로 파악한다. 정신의 자기 전개에 따라 획득되는 낭만적 예술형식의 보다 풍부한 내용은 기독교 신이 정신으로 표현되는 것과 일치하며, 고전적 예술과 달리 자체내에 그 기원을 갖고있지 못하고 신적인 것이 발생하는 매개체가 아닌 기독교적 성사(聖事)속에서 실재성을 발견한다. 즉, 진리의 내용이 직관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리의 내용이 자체적으로 예술형식 밖에서 표상과 감정속에 존재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술은 더이상 진리의 직접적 표현일 수 없고 다만 신앙속에 미리 제시된 진리, 종교에 의해 매개된 내용을 표현해야 하며, 진리는 더 이상 감각적 표현에 의존하지 않고 단지 제한적으로만 의존하게 된다. 낭만적 예술내에서의 주된 표현은 가장 직접적으로 이 예술형식의 고유한 내용을 이루게 되며, 이때 미는 고전적 예술에서처럼 객관적 형태의 이상화가 아니라, 영혼의 내면적 형태에서 이루어 짐으로써, 〈내면성의美〉가 된다. 기독교 세계의 역사적 대두와 함께 낭만적 예술은 신앙의 내용을 표현하는 종교적 범주로, 마지막으로 모험은 바뀌는 행동을 지닌 개인적 성격이라는 제삼 범주로 전개된다.

3. 헤겔에 있어서의 예술의 죽음.

헤겔은 그의 ‘최초의 독일관념론의 체계화’에서 “진리와 선은 오직 머속에 서만 자매가 된다고 확신하고 있다.”¹³⁾ 고 말한 이래로 헤겔에게 있어 ‘美’를 향한 예술은 진리와의 관계에서 그 존재의

11) 임정희: op. cit, pp. 85-90.

여관동 역: op. cit, pp. 165-185.

12) 임정희: op. cit, pp. 90-95.

여관동 역: op. cit, pp. 186-218.

13) 황태연 편: 헤겔정신 현상학 해설, 이삭, p. 173.

미를 갖는다. 그에게 진리란 인간을 인간의 고유한 본질로 해방시키는 것을 말하며, 이는 대상의 본질을 상실하지 않고 대상과 자아의 즉자대자적 통일을 실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술작품에 있어 내용(절대자)과 형식(인간)이 완전히 통일될 때 〈이념의 감각적 가상〉으로서 〈예술미〉는 성립한다. 그는 이런 통일을 인간형상화된 그리스신상에서 직관하여, 그리스예술속에서 실현되었던 것으로 파악한다. 예술이 즉, 이념상에 관한 헤겔의 규정이 완전히 실현되는 것은 예술의 정오라고 할 수 있는 고전적 예술형식이다. 그리스예술에 대한 헤겔의 구상은 18C 말 빙켈만 이후로 독일의 지배적 견해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초기에 예술일반에 맡겨졌던 유한자와 무한자의 '아름다운 통일'이 이 그리스의 예술종교에서 가능케 된 것이다. 그리스 신들의 개체성은 정신적이고 실제적인 것으로 그들의 특성은 '유한적인 것이 갖는 결핍과 다양다기한 목적을 추구함으로써 야기되는 동요속에서의 불구적 특수화와 결합된 현란한 가상으로 부터 벗어나, 자기속으로 귀환하여 고유한 보편성과 영원하고 명확한 토대에 의존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그들이 "정신적 보편성의 단순한 추상이나 보편적 이상이 아니라 개인들인 한, 그들 자기자신속에 현존과 이에 따른 규정성 즉, 정신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하나의 이념상으로 출현한다." 그러나 신적 형상들속에 진지함과 정신적 자유가 등장할수록, 이런 고귀함의 규정성과 육체성 사이의 대립은 더욱더 잠지되어 진다. 지복한 신들은 동시에 그들의 지복성과 육체성에 대해 비판해 한다. 자신들의 형상속에서 그 앞에 놓여있는 운명을 잃게되는 것이다. 이때 운명은 정신성과 감각적 현존사이의 고귀함과 특수성사이의 모순이 현실적으로 발현하는 것으로 고전적 예술이 몰락하는 과정으로 더이상 이념상의 통일이 가능하지 않게 될 운명인 것이다. 아직 존재치 않음과 더이상 존재치 않음 사이의 실현은 이러한 중간적 위치 바로 그 때문에 결코 순수한 실현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리스 시대의 신들이 자기

의식적 정신의 현상을 얻게되는 절대적 예술품은 적어도 세계의 완전성으로서의 일반적 내용을 전달하게 되며, 여기에서 예술의 시대는 정점에 달하여 종결된다. 왜냐하면 예술은 미리 자신의 정신적 본질에까지 철저히 삼투되지 못함으로써, 후에 '정신이 예술을 넘어서기' 때문이다.

헤겔은 이념적 무한성을 통한 감각적 대상의 생동화로서 미를 〈이념상〉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무한성의 실현은 영웅시대에서나 가능했으며, 현재의 한계적인 총체성의 표현속에서 이념상은 돌이킬 수 없는 〈과거〉에 속한다. 예술작품은 그리스시대 이후로 더이상 신적인 것으로 경배되고 존경될 수 없으며, 또한 낭만적 예술시대에서 나타나는 기독교적 신의 본질은 더이상 예술속에서 현실성을 획득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술은 그의 지고의 의미를 상실하게 되고, 사유와 반성이 아름다운 예술을 능가하게 되, 예술의 몰락, 예술의 종말을 가져오게 된다. 그래서 예술은 직접적인 직관으로서 자신의 진리성을 확증할 능력을 얻지 못한 채 단순히 확신으로 끝나게 되고 만다.¹⁴⁾ 결국 헤겔의 초기고찰에서 아름다운 것의 이념에 귀속되었던 것, 즉 지식의 생숙으로의 통일은 그리스시대 이후로 철학의 과업으로 넘어간 것이다. 그러나 낭만주의에 대한 헤겔의 비판이 회람시대 이후의 예술의 죽음을 의미하는 〈예술의 과거성〉을 밝혀주고 있으나, 동시에 철학으로의 예술의 궁극적인 해방을 〈예술의 종말〉과 동일시하는 연표도 공존하고 있다.¹⁵⁾ 그리스예술의 종말과 함께 예술은 정신적인 것과 감각적인 것의 양극단이 더욱더 소원해져 가고, 이 같은 내부와 외부의 〈소원함〉을 예술의 원리로 삼는 낭만적 예술형식은 예술과는 다른 방식으로 종교와 철학이라는 새로운 종합속에서 단지 止揚될 뿐이다. 따라서 예술은 그것이 최고의 규정을 지녔던 측면에 따라 보자면 우리에게는 〈과거의 것〉이다.¹⁶⁾ 미학의 관점에서 낭만주의에의 도달은 몰락과정으로 보이지만 정신의 철학적 관점에서는 상승과정으로 받아들여 지며 이것은 예술미의 한계를

초월하는 것이다. 그러나 낭만적예술이 더이상 예술로 간주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4. 건축적 관점에서의 예술의 죽음

헤겔은 건축의 전형을 상징적 예술형식 단계, 즉, 동방예술에 귀결시킴으로써 초보적인 예술단계로 건축예술을 격하시킨다. 헤겔의 판단처럼 이집트의 피라밋은 명확한 상징성을 띠고 있다. 그러나 그 상징성은 헤겔에서의 부분적인 의미로서 존재하기도 하나, 발생과정에서 부터 그 축조과정과 현대에 이르기까지 무한히 내포되어 표출되는 현상들이 과연 상징성만으로 얼마나 해명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헤겔은 그리스 예술에서의 이념상의 완전한 표출로서 조각 특히 신상을 예시한다. 그것은 절대자와 인간의 완벽한 만남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헤겔이 말하는 그리스예술이 예술의 절정이고 그에 대한 꾸준한 모방이 현대에까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비록 수많은 인체조각들이 헤르베스, 아폴론, 아프로디테나 라온군상을 벗어나지 못할지라도, 그리스 이후 현대까지의 수많은 건축물들 역시 아크로폴리스의 파르테논 신전의 모범에 결눈질을 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설명될 것인가? 그리스 신상들이 〈신적인 것〉의 자기의식을 얻게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 신전들도 〈그안에 신이 있는 것〉의 자기의식화로서 완벽한 통일성을 가질 수는 없는가? 그러나 이같은 예술사적 관점에 대한 판단과 평가를 일단 유보한다면, 건축사에서 근대기능주의 양식이 자리를 잡기 전까지 분명히 그리스 건축은 최소한 서양건축의 규범이 되어 왔다.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는 구호가 교지가 되며, 모든 장식적 요소를

14) 여균동 역; op. cit., pp. 170, 171.
15) 여균동 역; op. cit., p. 172.
16) Pöggeler, otto; op. cit., p. 181.
17) ibid., p. 183.
18) 임정희; op. cit., p. 116.
19) ibid., p. 96.

배제한 기능주의의 탄생은 결국 그리스 건축이 가진 규범의 많은 부분을 박탈하게 되며, 결국 이는 고전적 예술형식의 종말을 고하게 되었다. 현금에와서는 이런 기능주의 건축의 비인간성에 반기를 든 사조가 이미 기능주의가 탈취했던 규범들을 하나씩 잠식함으로써 기능주의 건축의 종말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헤겔이 주장하는 변증법적인 역사발전과정을 예증하나 과연 합(Synthesis)의 상황은 어느때 쫓일까 하는 의문은 영원히 문제로 남게 될 것이다.

結論

근대예술은 각개인의 제한과 특수화를 가져왔고, 이는 그리스예술의 고유한 보편성과 상반된다. 그러나 헤겔은 이런 특수성이 근대 및 오늘날의 인간들을 분열시킬 뿐만 아니라 또한 결합시킨다는 사실을 간파했다. 즉, 특수화란 모든 개인이 지배당하는 것이 오늘날 사회상태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 세계의 완전한 제한성속에서 개별자의 표현은 다른 모든 개별자를 위한 재현일 수 있는 것이다.²¹⁾ 헤겔은 논리적으로 예술이 끝났음을 도출해내고, 체제내적 규정에서와 같이 역사적 서술속에서도 예술은 절대 정신의 완벽한 단계이지만 시대에 뒤쳐진 단계로서 자신을 입증한다. 현재를 사는

고찰자의 관점에서 필연적으로 수용되어야 하지만 이것은 오직 역사상 지나간 진리이며, 현재로서는 단지 최고적인 진리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예술은 사유하는 고찰을 촉구하면서 자신으로부터 예술의 과학에 대한 열망을 전개시키고 있다. 이 과학이 수립되지 않을 경우 예술은 진보된 지식으로 볼 때 여전히 불투명한 것으로 남게된다. 그런데 예술이 자신의 先驅性(Vorläufigkeit)에 대한 통찰을 얻은 후 어떻게 될 것인지 헤겔 '미학' 속에서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다. 헤겔은 예술이 표현가능성의 終止에서 자기해소되어 종결되었다는 판단을 두고 망설인다. 예술은 'Humanus'를 그의 새로운 聖物로 삼고 이 기반으로부터 세계관적·종교적 내용을 벗겨내고 있는 것이다.²²⁾ 또한 헤겔이 당대의 일정형식의 예술만이 知에 대한 요구에 충분치 않다고 생각한 것인지, 예술일반이 과거세계에 대한 단순한 '몽상'이라는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는지는 아직 미지수로 남아있다.²³⁾

문제점은 고전적 예술의 조건이 헤겔이 말하는 바와 같이 특정한 '세계상태'라는 말속에는 이미 고전적 예술은 결코 시간적으로 제약이 없는 모범일 수 없다는 것, 그 시기는 지나가 버리고 오늘날의 세계상태는 다른 예술형식을 조건짓는다는 것인지 하는 한낱 고전적이라는

것의 역사화만이 함축된 것은 아니다. 문제가 되는 점은 과거 귀속된 이런 상태가 고전적 예술을 위한 대립뿐만 아니라 예술표현일반을 위한 안티테제가 된다는 점에 있다. 또한 고대 그리스의 종말과 함께 예술이 그야말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며, 미의 변증법적 과정은 계속되는 것이다.

- 20) 임정희; op. cit., p. 97.
21) 여균동 역; op. cit., p. 178.
22) Pöggeler, Otto; op. cit., p. 191.
23) ibid., p. 179.
24) 여균동 역; op. cit., pp. 175, 176.

參考文獻

- Pöggeler, Otto(Hrsg); Hegel. Ein führung in Seine philosophie, Verlag Karl Alber GmbrH, Freiburg / München: 1977.
(황태연 역; 「헤겔철학 서설」, 중원문화, 1985.)
- Metscher, Thomas; Hegel und die Philosophische Grundlaägung Kunstsoziologie, Szondi, Peter; Hegels Lehre von der Dichtung in: Poetik und Geschicht philosophie I, (여균동·윤미애 역; 「헤겔미학입문」, 종로서적, 1983.)
- 황태연 편; 헤겔정신현상학해설, 이산, 1983.
- Glockner, Hermann; Vorlesung über die philosophie der Geschichte mit einem Vorwort von Eduard Gans und Karl Hegel in: G.W.F. Hegel, Sämtliche Werk, Frammannes Verlag, Stuttgart: 1928.
(김종호 역; 「역사철학강의 I」, 삼성출판사, 1985.)
- Janson, H. W.; History of Art, Harry N. Abrams, in Incorporated, New York: 1977.
(김윤수 역; 「미술의 역사」, 삼성출판사, 1985.)
- 임정희; 헤겔미학에 있어서의 「예술미」의 개념, 종익대학원, 1982.

고

◎ 체신부고시 제96호

1. 우편법시행규칙 제1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층건물 우편수취함의 표준규격, 재료, 구조 및 표시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85년 6월 12일

체신부장관

가. 규격내용

(1) 규격

- 높이: 23센티미터이상
- 가로: 30센티미터이상
- 폭: 12센티미터이상

(2) 형태: 상자형

- (3) 재료: 인장강도 28% 이상, 연신율 36% 이상, 두께 0.80mm 이상의 강판 또는 스텐레스판

(4) 투합구

- 앞면중앙 윗부분에 다음 구분에 따라 시설

— 가로 27센티미터이상

— 세로 3센티미터이상

(5) 개폐문

- 적당한 위치에 시설하되 자물쇠 장치가 되어야 함.

나. 표시사항

- (1) 고층건물 우편수취함 전면에 “우편”이라는 문자와 동호수 및 성명 또는 상호를 표시해야 한다.
- (2) 우편수취함에는 상업광고를 표시해서는 안된다.

다. 시행일: 1985년 6월 10일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중개정령

대통령령 제11,741호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5 조 제 5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용도지역을 다른 용도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당해 용도지역의 면적중 10 제곱킬로미터의 범위안에서의 변경. 다만, 도시지역·취락지역·공업지역·관광휴양지역 또는 개발촉진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중 1 제곱킬로미터의 범위안에서의 변경에 한 한다.

제13조제 1 항제 1 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의 규

정에 의한 배출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1 에 해당하는 배출시설

제13조제 1 항제 3 호중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제23조제 1 항”을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제25조제 1 항”으로 한다.

제14조제 1 항제 9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11호 내지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지목상 대지·공장용지·임야 또는 잡종지에 해당하는 지역에서의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설치

가. 환경보전법 제 2 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중 소음 및 진동배출시설의 설치

나. 환경보전법 제 2 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이 아닌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설치

다. 환경보전법 제52조의2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폐기물종말 처리시설이 아닌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설치

11.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탐사 및 지하광물의 채굴

12. 지역개발 또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레미콘 및 아스콘의 제조를 위한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설치

13. 농축산업의 목적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토석의 채취

제15조제 1 항제 6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 제 9 호 다목중 “산림법 제87조 및”을 “산림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으로부터 국유림안의 토석을 매수하거나”로 하며, 동항에 제10호 내지 제1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지목상 대지·공장용지 또는 잡종지에 해당하는 지역에서의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설치

가. 환경보전법 제 2 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중 가스·입자상 물질 및 악취배출시설과 소음 및 진동배출시설의 설치

나. 환경보전법 제 2 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이 아닌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설치

10.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총면적 20만 제곱미터만의 초지 및 농지의 조성

11. 지역개발 또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레미콘·아스콘 및 연탄등 연료의 제조를 위한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설치

12. 양어장·양식장등 어업용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설치

13. 소방법 제14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제조소·저장소 또는 취급소의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설치

14.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제25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화약류저장소의 설치

15. 다음 각목의 1 에 해당하는 행위중 총면적 1만제곱미터만의 부지안에서의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설치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나.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사업내 직업훈련을 위한 시설 및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설치

다. 의료법 제 3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병원중 일반인과 격리하여 치료 또는 요양을 하여야 하는 정신병원·나병원·결핵병원 기타 이와 유사한 병원의 설치

라. 국민체력향상을 위한 운동·교육연구시설, 근로자의 근로복지향상을 위한 시설(노동복지회관 및 근로청소년회관에 한한다) 또는 국민의 지적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연구시설중 각각 주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설치

16.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환경보전법 제52조의2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폐기물종말처리시설의 설치

17. 청소년야영장·자연학습원 또는 심신수련장 등 청소년이용시설의 설치

제17조제 1 항에 제 4 호 내지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자연경관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탐사 및 지하광물의 채굴

5. 양어장·양식장등 어업용으로 이

용하는 시설의 설치

6. 자연경관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도로·철도·항만 등 공공시설의 유지·보수 등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토석의 채취

제1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이 아닌 공장의 설치

제21조제2항제5호중 “진에 및 오물처리장”을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과 산업폐기물종말처리시설”로 한다.

제25조제3항중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 동일인이 일단의 토지이용을 위하여 동일인으로부터 부분적으로”를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일단의 토지이용을 위하여 토지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1년안에 다시 같은 사람과 일단의 토지 등의 나머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로 한다.

제30조제2호중 “경매법”을 “경매법 또는 민사소송법”으로 하고, 동조제6호 내지 제11호를 각각 제10호 내지 제15호로 하고, 동조에 제6호 내지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7.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8. 산업기지개발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를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공급을 위탁받은 자가 양도하는 경우

9. 지방공업개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개발장려 지구안에서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지지정을 받은 자에게 동법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제4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24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당해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기준의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용도를 종전의 부적합한 정도이하의 범위 안에서 이를 이용하기 위한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5조의2 제1항중 “이를 위하여”를

삭제한다.

제5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8조 (권한의 위임) 법 제3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권한중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또는 공용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건축물의 입지에 관한 협의 및 승인에 관한 권한과 이 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락지역개발계획의 승인에 관한 권한을 각각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시설 또는 건축물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공시설

가. 교통운수시설: 철도·도로·궤도·삭도·교량

나. 공공시설: 상수도·전기공급설비·전기통신시설·가스시설

다. 기타의 시설: 하천·관개 및 발전용수로

[별표 1] 중 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서. 국제공항관리공단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國土利用管理法施行令 改正理由

국토이용계획에 의한 용도지역중 경지지역·산림보전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의 내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행사에 대한 제약을 완화하며, 아울러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정비하려는 것임.

◇ 主要骨子

가. 건설부장관이 입안한 국토이용계획은 국토이용계획심의회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부장관이 고시함으로써 결정되나, 그 중 경미한 사항에 관한 국토이용계획의 변경은 국토이용계획심의회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종전에는 용도지역의 변경중 그 면적이 10제곱킬로미터이내의 변경에 대하여는 국토이용계획심의회회의 심의를 생략하도록 하였으나, 용도지역의 변경이라도 그 변경되는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취락지역·공업지

역·관광휴양지역 또는 개발촉진지역인 때에는 그 면적이 1제곱킬로미터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국토이용계획심의회회의 심의를 생략하도록 함(영 제5조제5호).

나. 경지지역안에서 허용되는 행위로 농축산업의 목적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토석의 채취 등 3개행위를, 산림보전지역안에서 허용되는 행위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총면적 20만 제곱미터미만의 초지 및 농지의 조성 등 9개행위를,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허용되는 행위로 자연경관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조사 및 지하광물의 채굴 등 3개행위를 각각 추가함(영 제14조, 제15조 및 제17조).

다.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고,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건설부장관이 지정한 규제구역안에 있는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 등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관할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건설부장관이 지정한 거래계약신고구역안에 있는 토지 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관할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바, 위 허가제 및 신고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등 4개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새로이 추가함(영 제30조).

라. 종전에는 건설부장관의 권한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공시설 및 공용건축물로서 그 부지면적이 3천300제곱미터이하의 시설 또는 건축물의 입지에 관한 협의 및 승인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하였으나, 앞으로는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미만의 시설 또는 건축물의 입지에 관한 협의 및 승인권한까지 확대하여 도지사에게 위임하도록 하며, 또한 철도 등 교통운수시설, 상수도 등 공공시설과 같은 공공시설용지의 입지에 대한 협의 및 승인권한과 취락지역개발계획의 승인권한을 도지사에게 추가하여 위임함(영 제58조).

(법제처 제공)

환영합니다
신입회원



□崔善翊 / 18. 9. 3 / 서울 /
와세다고등공업학교 / 종합건축
사사무소정일 / 강남구삼성동8-
2 / 546-7544



□郭騎準 / 52. 3. 13 / 서울 /
유한공고 / (주)정일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 서울용산구
서계동209 / 714-7938



□丘在完 / 27. 3. 15 / 서울 /
서울공대 / 도양종합건축사사무
소 / 영등포구여의도동44-21 /
783-6419



□李仁植 / 52. 2. 24 / 서울 /
연세대공대 / 우양종합건축사사
무소 / 서울강남구역삼동831-38
/ 562-8849



□文榮鐸 / 42. 7. 29 / 서울 /
연세대공대 / 대동종합건축사사
무소 / 서울종로구신문로2가55
/ 725-7178



□趙光衍 / 53. 3. 29 / 서울 /
한양공대 / 종합건축사사무소홍
진건축 / 서울영등포구여의도동
44-33 / 782-8829



□安吉元 / 44. 6. 21 / 서울 /
인하공대 / (주)무영건축사사무
소 / 서울강남구역삼동735-41/
568-3912



□元裕成 / 53. 10. 25 / 서울 /
인천공전 / 원유성건축사사무소
/ 강남구역삼동790-8 / 555-17
89



□李輝彦 / 42. 11. 24 / 서울 /
인하공대 / 휘건축사사무소 / 서
울동대문구용두동767-8 / 95-
5069



□文炳國 / 55. 7. 29 / 서울 /
서울대학교학원 / 향종합건축사사
무소 / 용산구동부이촌동302-60
/ 794-9318



□林承茂 / 48. 1. 31 / 서울 /
인천공전 / (주)박춘명종합건축
사사무소 / 서울중구묵정동1-2
/ 266-1370



□吳段鐸 / 56. 6. 14 / 서울 /
서울공대 / (주)무영건축사사무
소 / 강남구역삼동735-41 / 568
-3912



□金永雄 / 50. 6. 19 / 서울 /
서울공대 / (주)종합건축사사무
소삼정 / 서울용산구한강로3가
16-85 / 716-97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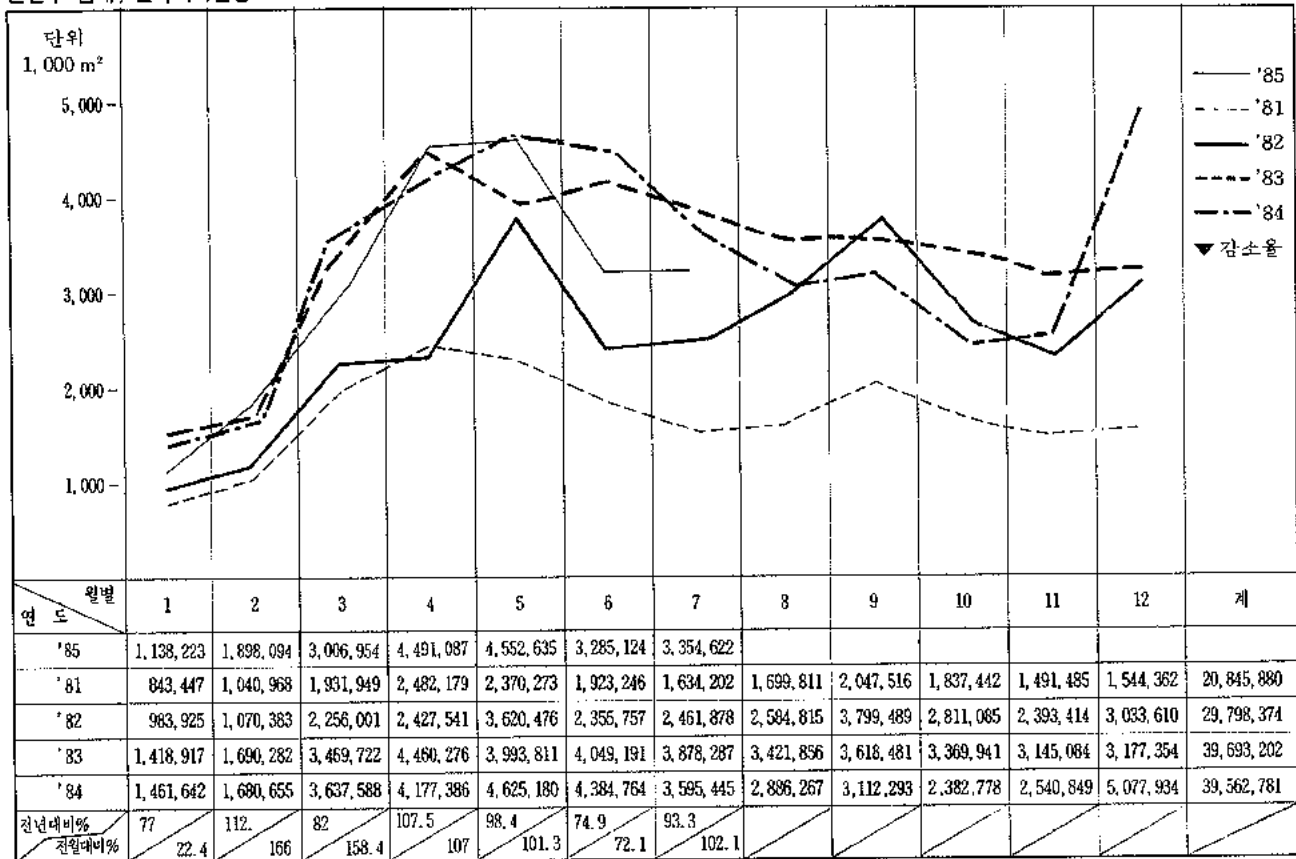
□金眞變 / 48. 11. 11 / 경희대
/ 대림산업 / 서울종로구수송동
/ 730-8221

준회원

건축허가 (도서신고) 면적변동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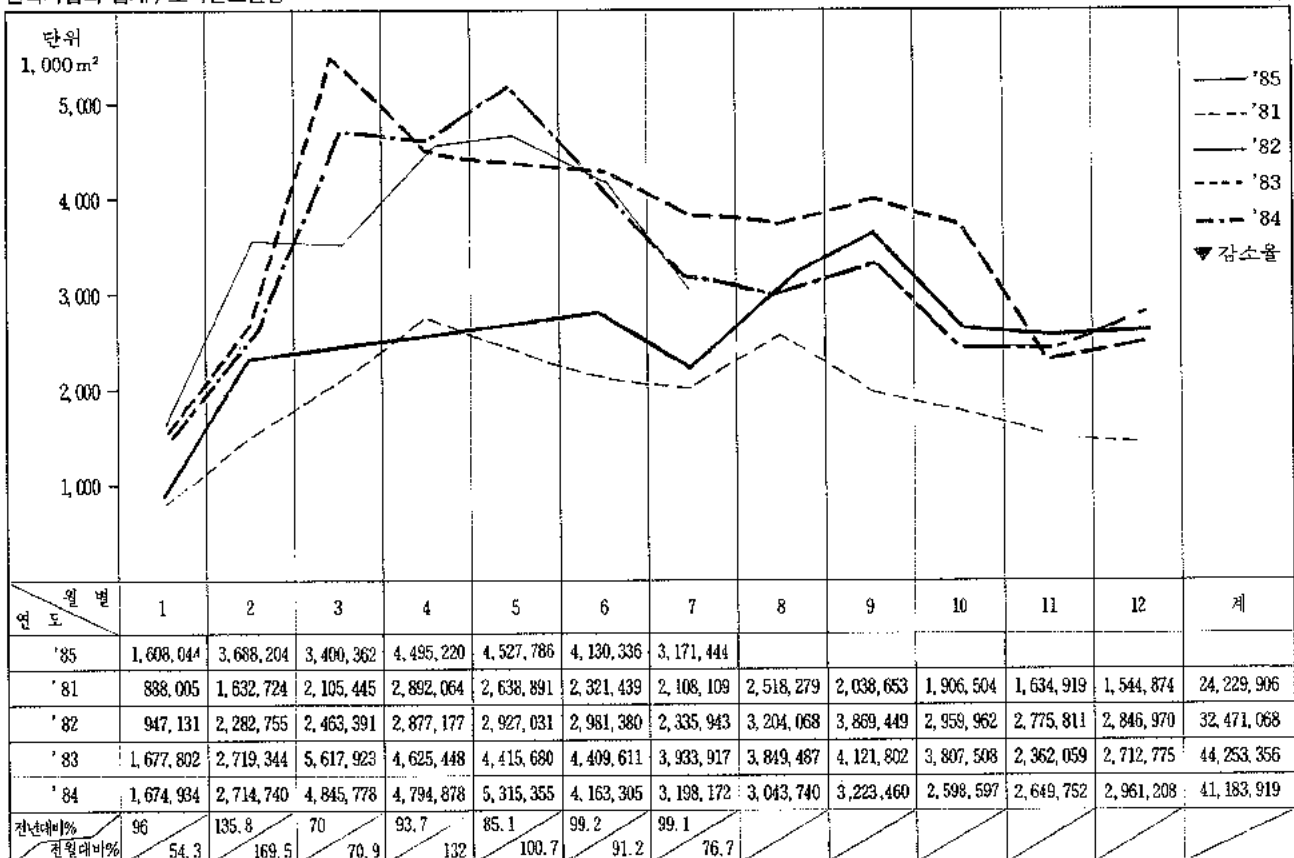
건설부 집계 / 건축허가현황

〈'85. 7 월말 현재〉



건축사협회 집계 / 도서신고현황

〈'85. 7 월말 현재〉



開 業 人 事

高堂의 建勝하심을 기원합니다.

저희들은 1985. 7. 1 부터 시행되는 改正消防法 施行規則 제20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防災設備專門設計用役業을 開設하였습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人事드리는 것이 道理이오나 우선 紙面을 通하여 알려드리오니 각별하신 지도와 편달을 양망합니다.

1985. 9.

소방설비기술사 김상욱, 나채수, 전홍재, 최 진 드림

과기처등록 제 4 - 54호	과기처등록 제 4 - 56호	과기처등록 제 4 - 55호	과기처등록 제 4 - 57호
소 防 技 術 士 長 金 相 旭 서울·정릉로구영동로동九四의一〇一 신계양빌딩 1101호 金相旭防災技術研究所	소 防 技 術 士 長 羅 采 修 서울·정릉로구영동로동九四의一〇一 신계양빌딩 1101호 聯合防災技術研究所	소 防 技 術 士 長 全 弘 宰 서울·동대문구영동로동一〇三의四三 신계양빌딩 五〇三호 全로스프리벤션	소 防 技 術 士 長 崔 進 서울·영등포구영등포동九四의一〇一 신계양빌딩 1101호 韓國防災研究所
85년 9월 30일까지는 전화국번이 453국입니다.			
(전화) 466 - 1119	(전화) 784 - 8033	(전화) 922 - 8351~3	(전화) 677 - 4499